

장애해방 그 한길로!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전국장애인가족협회 활동기록집을 발행하며

통합 2대 회장 채종걸

장애운동을 시작하던 20여년 전에 우리는 장애인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혼자 외출할 수 있도록 도로의 턱을 낮추어 달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일을 하고 보람을 먹고살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40여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고, 대학에 입학해도 공부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해 거리에서 행상을 하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기생적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너무도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계획되고 움직여지는 피동적인 삶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장애 해방의 큰길인 것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앞에서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과의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새로운 이념과 활동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 큰 장애해방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전국장애인가족협회라는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의 활동이 스스로 돌아보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암울했던 시기에 장애 해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던, 가열차게 투쟁했던 젊은 활동가들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순수한 열정을 모아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의 활동기록집은 단순히 지난 시기를 정리하고, 한 조직의 과거를 정리하는 마침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이 써내려 가야 할 빈 노트, 새로운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고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오늘의 기록을 남기었던 동지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함께 했던 감동과 열정을 장애 해방 그날까지 이어가는 좋은 동지로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에게 DPI의 이념과 활동을 전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송영욱 명예회장님과 이익섭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기록집의 제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경미·김대성 회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2년 10월

장애해방을 꿈꾸는 이들의 거름이 되길.....

통합 3대 회장 이 석 형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의 현실은 생존권투쟁이라는 장애운동을 필요로 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의 피해를 한치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잘 못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문제는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재활의 문제, 복지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들어갈 틈이 없었다.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고 재활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의 본질은 인권의 문제이며, 그 내용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장애인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로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장애인 스스로가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정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 최소한 장애인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라는 것과, 자기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나가는 출발점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의료기이고, 장애인이 어떤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정형외과 의사의 몫”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가 국가권력의 지지를 받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장애해방을 목표로 활동하였던 한 단체가 해산하면서 활동기록을 남기는 일은 운동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던 책임을 다하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내용은 활동한 기록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기로 했으며, 스스로의 평가를 실지 않기로 했다.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였던 기간이었지만 부끄러운 기록이나 지금 장애해방을 꿈꾸는 활동가들에게 작은 거름이라도 된다면, 이 기록집이 부끄러움을 잊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판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고 장애인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감수해왔던 활동가들의 헌신을 다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 기록집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성님과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를 탄생시킨 황광식 초대회장님과 영원한 장애운동가로서 현장에 계신 채종걸 2대 회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뜻을 밝힌다.

2002년 10월

목 차

연혁	1
조직활동	4
조직기구표	
중앙사무소	
지역조직	
부설기관	
- 노들야학	
- 새날도서관	
주요활동	49
행사 및 공청회	49
전장협아카데미	
장애인/학생 대동제	
장애인날시대회	
장애인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발표회	
광주 망월동 순례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	
노들돌 창립공연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모형에 관한 공청회	
간부수련회	
전장협 후원의 밤	
전장협 하루주점	
투쟁사업	63
장애인노동권리확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	
장애인의무고용율 1%하향조정 저지 결의대회	
장애인7급공무원 정강용씨 임용봉쇄 철폐투쟁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반대 운동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열사 분신관련투쟁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	
장애인노점상 이덕인열사관련 투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투쟁	
장애인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	
장애인 대중교통 확보운동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	
전경련, 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기타 성명서 모음	
홍보출판활동	135
어깨동무	
열린세상	
부록	196
대의원대회 자료집	
전장협 발간자료	
역대임원 및 후원자 명단	
정관	
화보	275

연혁

93

8. 8	장청 산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개교
8.13 ~ 15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통합수련회 개최 통합초대회장 황광식 취임
11.27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신문 발간

94

1. 8 ~ 9	2차 중앙위원회 회의
3.12	3차 중앙위원회 회의
4. 2	제1기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아카데미 개최
5. 6	4차 중앙위원회 회의
5.20	제1회 장애인·학생 대동제 개최
5.23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의 일요운동회 인수
6.25	5차 중앙위원회 회의
6.26	대전 장애인 단체 「푸른 뒀」와 대전지부 통합
7. 1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의 새날도서방 인수
7.30	제13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수련대회 개최(주관 : 경남지부)
8.28	자원활동분과 「또바기」 출범
9. 4	제 2회 장애인 낚시대회 장애인복지신문사와 공동주최
9.25	6차 중앙위원회 회의
9.27	장애인의무고용율 1%하향조정저지와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위한 결의대회
10.1 ~ 3	지역간부수련회 개최
11.26 ~ 27	7차 중앙위원회 회의
11.27	장애인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발표회 참여
12.14	장애인 7급 공무원 정강용씨 임용봉쇄에 대한 기자회견 공동주최
12.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반대 운동전개

95

- 1. 2 | 95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 3. 4~5 | 95년 1차 중앙위원회 회의
통합 2대 회장 채종걸 취임
- 3. |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열사 분신관련 투쟁
- 4. 1 | 새날도서방 발행 월간 '새날을 여는 사람들' 발간
- 4. 7 | 서울시로 부터 사회단체 필증 교부받음.
- 4.20 | '장애인고용촉진 쉼기대회' 민주노총과 공동주최
- 5. |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결성(전장협·전노련 연합기구)
- 5.21 | 광주망월동순례
- 6.10 | 95년 2차 중앙위원회 회의
- 7. 2 | 경남지부 새날도서방 개관
- 7.14 | 대전 새날도서관 개관
- 7.19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 공동주관
- 7.29 | 제14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수련대회 개최(주관 : 중앙사무소)
- 8.21 | 울산 새날도서관 개관
- 8.25 | 제주 새날도서관 개관
- 9. 2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노래모임 "노뚝돌" 창립공연
- 9.16~17 | 95년 3차 중앙위원회 회의
- 10. | 5·18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참여
- 11. |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열사관련 투쟁
- 12. 9~10 | 95년 4차 중앙위원회 회의

96

- 1.20~21 | 96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 1.25 | 장애아동교육정보지 월간 '어깨동무' 창간호 발행
- 2.10 | 부설 새날도서관 인준 및 상계동 이전
- 3.23~24 | 96년 1차 중앙위원회 회의
- 4. 7~20 | 제1회 장애인생존권보장과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범국민걷기대회 주최
- 4.29 |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모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6. 8~9 | 96년 2차 중앙위원회 회의
- 6.~11. | 장애인의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투쟁
- 8.12~15 | 제15회 96 전국장애인열린마당(제주지부)
- 9. 2~15 | 장애인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사진전 및 서명운동
- 9. | 김영삼대통령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수상 향의 집회
- 9. | 96년 3차 중앙위원회 회의
- 12.22 | 장애아동을 위한 어깨동무 공부방 개설

97

1. 7	노동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함 : 칠야농성(장소 : 향린교회)
1.25	대의원대회 개최 통합 3대 회장 이석형 취임
1.31	에바다 사건 집회 참여(종묘)
2.22 ~ 23	간부수련회 개최(가평)
4.20	제2회 장애인 생존권보장과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범국민걷기대회 주최
5. 1	노동절 집회 참여(장충당 공원)
5.10	중앙사무소 이전(서울 노원구 상계7동)
5.20 ~ 22	장애인 체전 참여 / 전장협 및 새날도서관 홍보(상무체육관)
6.15	어깨동무 공부방 폐쇄
7.23	장애인 대중교통권(저상버스)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결성
8. 1	97 전국장애인열린마당 개최(서울지부)
9.27 ~ 28	97년 3차 중앙위원회 회의
9.28	나우누리에 전장협 CUG 개설
10.24 ~ 12.	장애인 참정권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결성 및 투쟁
12.20	98 대의원총회

98

2.28	한가족의 밤(전장협 후원행사)개최
3.21 ~ 22	98년 1차 중앙위원회 회의
4.20	장애인의무고용율 1% 하향의도 저지를 위한 전경련 항의집회
5.25	중앙사무실 이전(서울 노원구 중계4동)
6.13	98년 2차 중앙위원회 회의
6.27	하루주점
7.24 ~ 26	98 전국장애인열린마당 개최(강원지부) 98년 1차 임시중앙위원회 회의
8.14	98년 2차 임시중앙위원회 회의
9.	전장협 홈페이지 개설(http://netizen.att.co.kr/senal/)
11.	직업재활법 관련 투쟁

조직 활동

◇ 조직구표

◇ 중앙사무소

편집출판부 / 정보통신부 / 자원활동부 /
자립사업부 / 재정사업팀 / 정책연구실 /
월간 어깨동무 / 어깨동무 공부방 /
노래패 노뚝돌 / 청년학생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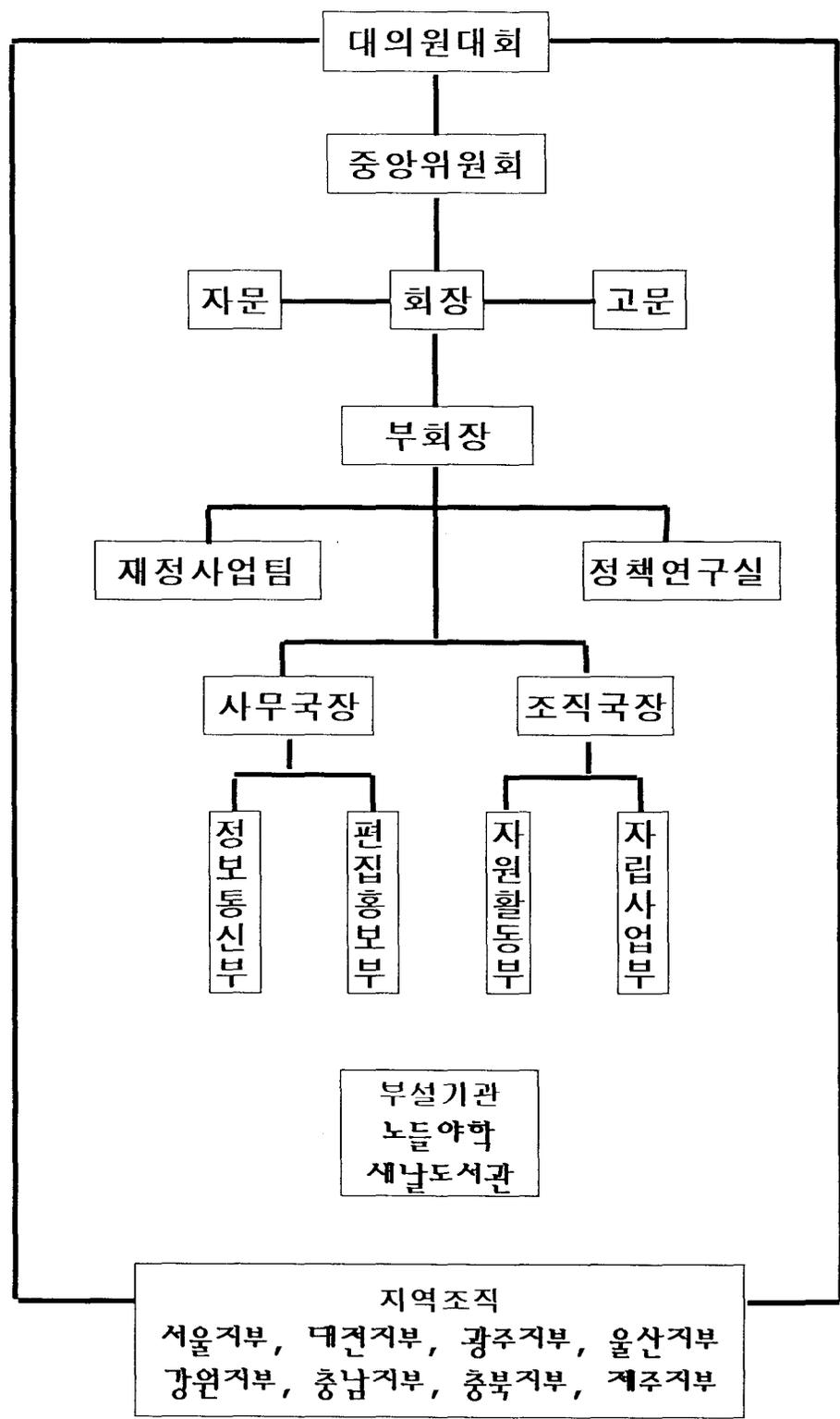
◇ 지역포직

서울 / 대전 / 울산 / 충북 / 충남 /
광주 / 강원 / 제주 / 경기 / 부산

◇ 부설기관

노들야학 / 새날도서관

**조직
기구도**
(98년 12월 현재)



중앙사무소

- ▣ 편집출판부
- ▣ 정보통신부
- ▣ 자원활동부
- ▣ 자립사업부
- ▣ 재정사업팀
- ▣ 정책연구팀
- ▣ 월간 어깨동무
- ▣ 어깨동무 공부방
- ▣ 노래패 노뚝돌
- ▣ 청년학생특별위원회

편집홍보부

편집홍보부는 전국장애인가족협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각종 실천사업들을 회원과 일반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 사업내용

◦ 전장협 기관지인 '열린세상'의 제작 및 발송 - 전장협 신문 제작은 편집홍보부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매달 혹은 격월간으로 발행했다. 93년 11월 27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28호, 호외 1호를 발행했다. 내용은 시기별로 장애인계의 쟁점이 되는 정치적인 사안과 전국 8개 지부의 소식, 취미생활 소개, 독자 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신문은 각 지부로 보내져 회원들에게 배포되며, 후원회원과 전장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발송되었다.

◦ 리플렛 제작 - 전장협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 편집부 약사

93.11.27 '전장협신문' 창간호 발행, 김대성 편집인 제작

94. 2. 1 '전국장애인가족협회'로 제호 변경

94. 7.20 강태훈 편집인 제작

94. 8.30 김종환 편집인 제작

95. 7.15 김호원 편집인 제작

96. 6.15 '열린세상'으로 제호 변경, 이석구 편집인 제작

96.12. 1 한광수 편집인 제작

정보통신부

사회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통신 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재원 회원이 부장을 맡으면서 97년 8월 정보통신부를 만들었다.

■ 사업목표

전장협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 대내적으로는 회원간 정보 및 의사의 교류와 공유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전장협의 활동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회원확대에 기여한다.

■ 사업내용

◦ PC통신 나우누리에 전장협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였다. 97년 9월 28일 게시판을 설치하고 꾸준히 메뉴 개편과 자료 올리기를 통해 전장협을 홍보하였다. 나우누리 전장협 CUG회원은 120명여명이었다.

◦ 나우누리 CUG 초기화면

Nownuri	
JJH	전국장애인가족협회 ☎ 02-3391-2251
1. 협회소개	41. 사랑방(온라인대화실)
2. 공지사항	
3. 새소식	42. 우리들의 이야기
4. 홍보/광고/행사안내	낙서장/알고지내요/
5. 문의/상담/제안	의명게시판/활동후기
6. 자유게시판	
	51. 중앙부서/지부게시판
11. 회원가입/조회/탈퇴	중앙부서/서울/경기/강원/
12. 가입인사/환영인사	충북/충남/대전/울산/부산
13. 운영자 수신 편지	
	52. 모임게시판
21. 자료실	또바기(자원활동분과)/
22. 주제토론실	어깨동무/노정분과/바둑동
31. 열린세상(전장협신문)	53. 부설기관
32. 어깨동무(장애아교육전문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33. 공문서(회의록/성명서)	새날도서관
명령어안내(C) 도움말(H) 초기화면(T) 이동(GO,P,A,N) 종료(X) 선택>	

◦ 정보통신부는 또한 인터넷에서도 전장협의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98년 10월 공식적으로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전장협의 활동과 투쟁 속보 등이 신속하게 기록되었다. 홈페이지는 이석구 회원이 제작, 운영하였다. 주소는 <http://netizen.att.co.kr/senal/> 이었다.

자원 활동부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자원활동가의 중요성을 인식해 94년 8월 28일 자원활동분과 '또바기'를 설립, 활동을 시작했으며, 98년 자원활동부로 승격시켰다. 또바기는 '한걸같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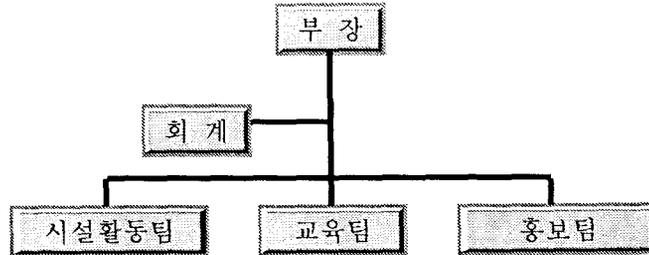
■ 사업목표

자원활동을 매개로 한 전장협 회원의 확대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고민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 사업내용

- 시설활동 : 학습지도, 놀이, 생활훈련(세면, 운동, 의사표현, 산책), 청소, 목욕, 세탁, 빨갈기, 쓰레기 소각, 땀감마련 등
- 일요운동회 보조

■ 조직구성



- 시설활동팀 : 시설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활동전에 참여가능한 인원을 파악하고 시설측에 사전에 연락하는 일을 한다. 새로운 시설을 섭외하고 시설에 관계된 내용을 자료화한다.
- 교육팀 : 신입회원 기초교양 및 구회원 세미나의 내용을 잡는다. 기타 현안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장애관련 기사를 스크랩한다.
- 홍보팀 : 상·하반기 신입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전장협 중앙 및 장애관련 타단체와의 연대, 또바기의 대외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 회계 : 회비관리,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후원회원 혹은 재정사업을 고민한다.

조영임 부장을 비롯해서 총 37명의 회원이 활동하였다.

■ 회의체계

- 월례회(월1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7시, 사무실)
전회원이 참가해서 한달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평가, 다음달 일정에 관한 조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팀장회의(격주 목요일, 19시 30분)
부장과 팀장들, 그리고 회계, 이상 5명이 진행한다. 3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월례회 안건을 토의한다. 중앙의 확대간부회의 안건에 대한 소통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 팀별회의
각 팀별로 만나 활동한다.

■ 활동연혁

- 1994 8/28 이철수 분과장 이하 회원 14명으로 출범
- 9/ 4 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으로 활동 시작
- 12/17 또바기 소식지 발간
- 1995 2/22 나눔의 집 장애인개별교육 프로그램시작(한글, 산수, 미술, 음악등)
- 이후 장애관련 간담회, 발표회 등에 참가하여 활동을 계속해나가며 단위를 재정비하는 기간을 갖고 시설을 다시 정함.
- 1996 1/ 제2기 신입회원 모집
- 5/ 양평에 위치한 은혜의 집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에 위치한 새롭의 집으로 시설활동 재개
- 8/17 M.T.(대성리)
- 1997 1/ 제 3기 신입회원 모집
- 2/16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신소망의 집으로 옮겨서 활동
- 8/31 또바기 출범 3주년 기념 간담회
- 9/ 제4기 신입회원 모집
- 9/20 M.T.(새터)
- 12/ 또바기 송년의 밤
- 1998 2/ 제5기 신입회원 모집
- 8/29 출범 4주년 기념 하루찾집
- 9/ 제6기 신입회원 모집

**자립
사업부**

95년 3월 노점상 최정환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빈민문제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장협 중앙 사무소내에 노점분과를 95년 5월 구성했다. 노점분과는 98년 자립사업부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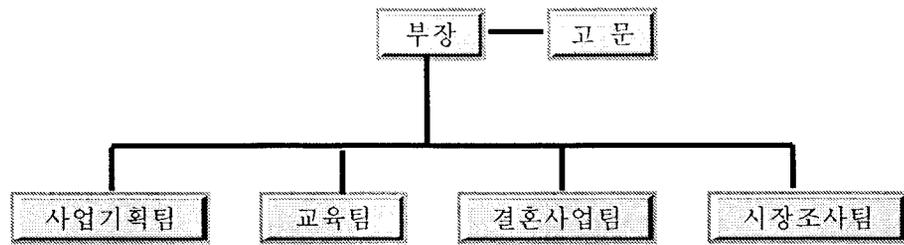
■ 사업목표

전국의 노점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장협의 조직강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 사업내용

- 빈민장애인을 위하여 노점자리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하였다.
- 95년 4월 중구 청계8가 삼일아파트 13동 앞 2자리 확보를 시작으로, 95년 동서울 터미널 앞에 자리를 만들었고, 8월에는 동대문 경동시장에 2자리 확보, 삼일아파트 20동 앞에 20자리를 확보하는 등 계속 노점자리를 확대하였다.
- 98년 4월 이후에는 삼일아파트 16, 17, 18동에 3개의 자리를 만들었으며, 24동에 20여자리의 노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조직구성



98년 11월 고문으로는 박홍수 회원, 초대 부장은 조성남 회원, 그 뒤를 이어 최의왕 회원이 부장을 역임하였다. 총 회원은 32명이었다.

■ 활동평가(이 평가는 매년말 평가서를 기초로 작성함.)

95년도 사업에서 8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되는 등의 투쟁을 전개했다. 청계천에서의 2차에 걸친 노점확보 싸움, 강변역, 인천 아암도 등의 현장 투쟁을 벌였다. 그 성과에 따라 외형적인 회원 확대와 유통회사가 생기게 되었으며 전장협 조직사업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대중 활동공간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빈민으로서 장애인을 생활의 공간에서 만나고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빈민조직과 연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몇가지 성과와 함께 문제점들도 상당히 도출되었는데 그 문제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가. 타장애단체의 노점사업에 대한 개입과 방해행위

- 기간 장애계에서 대중사업에 대한 정체가 몇년이 되었다. 그 시기에 전장협 노점사업이 시작되면서 타장애단체의 개입으로 사업내용에서 혼선이 왔다. 이들의 사업작풍은 지도부의 이익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계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단체를 대체로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나. 현장 집행에서의 문제

- 전노련과 함께 현장에서 자리를 개척할 때의 과정에서 지도력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확보한 회원이 전노련이 중심이 된 지도체계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향후 노점분과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고 장자추 사업기조를 바로 잡는 노력을 요한다.

다. 빈민운동으로서의 정립이 부족하다.

- 전장협이 경험하지 못한 활동공간 <빈민운동>이기에 현장에서의 전술이 생소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돌출되는 과정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 특정인의 전술로 바라보아야 할 지 빈민조직의 생리에 적응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후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 노점분과 사업의 방만성

- 분과 진방에 대한 기획과 관리가 시급하다. 중간 관리자들과의 교육내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업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필요성과 당위성에 입각한 사업은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조직상층부와 공유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힘있게 추진되기에 한계가 있다.

96년도에는 인천 아암도가 완진 철거를 당하면서 상황이 좀 어려워졌으며 청계천이 잦은 철거 시비를 겪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함께 추진해야 하는 진노련과도 제대로 이야기가 안되면서 일정 담보상태에 빠져 있다. 노점분과 및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97년도 노점분과는 빈민특위로의 발전을 상정하였으나 인적, 재정적 기반의 부족으로 현재의 모습을 담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정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현재 부채의 청산 및 활동자금을 준비해야 할 과정에 놓여 있다. 노점분과 자체의 회원확보는 담보상태이며, 종로지역에 1자리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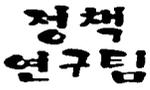
98년도 자립사업부로 개편되면서 빈민장애인의 자립생활 자원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재정
사업팀**

전장협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활동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재정을 담당한 팀은 초기 사업기획단(단장 김규성 회원)부터 재정특위(특위장 이석형, 이선우)를 이어 재정팀(간사 곽철주)에 이어졌다.

■ 사업내용

- 자판기 사업 : 94년 2월 정립회관에 커피 자판기 2대와 캔자판기 2대를 놓고 시작하였다.
- 사랑의 카드 판매사업 : 94년 겨울
- 꿀 판매사업 : 94년 겨울
- S&J LIFE
- 동양화재 보험영업 : 97년 시작
- 장애인차량 LPG장착 사업 : 98년 시작



◦ 전장협 의 각종 사업의 이론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연구사업이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실(실장 송병화)에서 정책국(국장 김대성), 정책기획실(실장 이재원), 정책연구실(실장 김대성) 등으로 개명되었으나 기본 골간은 계속 이어져 왔다.

◦ 정책연구실은 과제별로 팀을 조직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팀 : 장애인자립생활연구팀>

팀장 : 이경미, 팀원 : 고제현, 박찬오, 임기현, 박진숙, 유금희, 유영근

<제2팀 : 장애인 관련 법안 비교 분석팀>

팀장 : 이연재, 팀원 : 고명선, 김희찬, 김은희, 조현민

<제3팀 : IMF와 장애인 실업>

팀장 : 이훈희, 팀원 : 양희택, 박경석, 조영임, 김수열

■ 사업내용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공청회」 공동 개최

95년 7월 산재추방의 달을 맞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신입활동가를 위한 교육자료집」 발간

95년 전장협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신입활동가 교육자료집으로 사용하였다.

◦ 「지방자치제, 알고보니 좋으네요!!!」 자료집 발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부회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자료집 발간

장애인 문제의 각 영역에 대해 고찰하면서 올바른 시각속에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등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기본학습교재로 사용하였다.

◦ 「간부수련회」 자료집 발간

지부에서 지도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 내용들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장애인자립생활연구」 발표회 개최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도와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립생활을 구현하고 사회환경의 개선을 꾀함으로써 사회 성원으로서 기본권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3차례의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내용을 자료집으로 묶어내었다.

월간 어깨 동무

◦ 94년 두 번의 창간준비호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유익한 교육 정보와 힘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98년 8월호까지 꾸준히 발행하였다.

◦ 구독자가 약 200여명 이르게 되었으며, 매월 말 700부를 발행 500부를 발송하였다.

◦ 어깨동무는 편집장과 기자, 기획위원이 실무를 담당하여 만들어나갔다. 초대 편집장은 박수현이 맡았으며, 그 뒤를 고제현이 이어 활동하였다. 그간 활동한 기자로는 김수중, 이선민, 김은영 등이 있으며, 기획위원으로 이경면 회원이 수고해 주셨다.

어깨 동무 공부방

어깨동무 공부방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대와 통합교육의 현실화를 위한 시도로 성동구 지역에 장애아동 방과후 지도기관으로 만들어졌다. 공부방을 통해 뒤떨어진 학습도 보충하고 음악, 미술, 놀이 등을 통해 정서적인 발달을 꾀하고 일반아동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또래의 동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어깨동무 공부방은 96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었다.

■ 공부방 설립 제안 배경

95년 4월 교육분과의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모형에 관한 공청회'와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특수교육 센터의 설립에 대한 모색으로 '장애아동 방과후 지도기관(공부방)'의 형태를 결정, 공부방을 통해 지역부모모임과 교사모임 등을 꾸리고 그에 힘입어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 설립준비

◦ 예산 마련

공부방 설치에 관한 재정적인 부담이 컸으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일정액(약 300만원정도)을 모았다.

- 시계판매 : 노점분과의 도움을 얻어 시계를 판매함.
- 이대 특수교육학과와의 연대장터 : 장애아동 수용시설인 '성로꼬의 집' 아동들과 놀이, 장터를 진행하였다.

◦ 후원자와 지원자 확보

서울시 홍승채의원 : 성동구에 이런 공부방을 설치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기타활동

성동구 지역내 공공기관(구민회관, 교회, 문화센터 등)에 선전물을 부착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약 20평 정도 규모의 공간을 마련 12월 23일 개원

하였고 명칭은 '어깨동무 공부방'으로 하였으며 97년 1월 6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 개원이후

개원시기에는 월간 어깨동무와 공청회 준비시기에 만들었던 자원에 힘입어 아동을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 때마침 장애아동이 정말 갈 곳 없는 방학시기였으며 주체였던 유금희씨도 휴학중 방학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듯하다. 프로그램도 방학중임을 심분활용한 “풍물배우기”, “공동체놀이” 등으로 당시 결합했던 특수교사들과 자원교사들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함께 교사로 있던 이선민씨가 유학준비로 교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실상 거의 준비주체였던 김혜옥씨도 교사발령을 받게 되었고, 자원교사들도 새학기 준비 등으로 2월부터 공부방 주체는 지치고 어려워지게 되었다.

■ 공부방의 해체

이 과정에 고제현씨가 3월 1일자로 공부방 교사로 들어오게 되어 공부방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 즉 공부방을 센터로 전화시키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재정, 활동가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판단. 주체들은 공부방과 관련된 사업을 당시 새롭게 시도되고 있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구모임에서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부방을 정리하고 연구모임의 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노래패 노랫돌

노래패 노랫돌은 95년 결성되어 전장협의 이념과 사업을 노래로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95년 9월 2일 창립공연을 마친 후 주요 활동 인자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활동을 지속시키지 못했다.

창립공연에 대한 자체 내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재정 부족과 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인 공연이었음.
- 팸플렛, 포스터, 티켓 제작에 있어 준비기간이 짧아 문제점이 있었음.(예상외의 지출, 오타)
- 공연준비 체계에서 지휘체계가 불명확하여 어려움 발생했음.
- 공연내용에 대한 노래패내의 공유작업이 부족하여 공연내용을 가슴으로 안아 내지 못했음.
- 공연이후 노래패 활동에 있어 가지게 될 의의 등을 공유할 기회가 없어서 공연을 통해 패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음.
- 기능적 전문성과 장애인 노래패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노래패내에 있어왔는데 공연을 통해 장애인 노래패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음.



청년학생특별위원회(이하 청학특위)는 93년 통합 당시부터 청년학생조직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결성되었다. 청학특위는 95년까지 전장협 내의 각 부서 상설사업에 대한 지원단위로써의 역할과 청년연대사업을 펼쳐나갔다.

또한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의 터밭을 일궈내는 지역 현장의 결성을 위해 대학생 자원활동분과의 연대체인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에 결합하여 공동 사업을 펼쳤다.

■ 사업내용

◦ 장애인 대동제<94년 5월 이화여대 대동제 기간중>

문화사업과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각 단체가 각자의 프로그램으로 결합하고 이를 한 지점으로 모아 학내에 장애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기하고 이슈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 사진전, 슬라이드전, 시설장애인 초청, 연대장터, 문화공연 등.

◦ 공동 세미나<94년 7~8월 방학 기간중>

제 영역의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대안과 공통의 실천을 모색한다.

◦ 실태조사 사업<94년 연중>

장애인대학생과 지역 장애인 실태조사로 나뉘는데 93~94년에 실시한 장애인 대학생 실태조사는 학내에 있는 장애인학우들의 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제를 자료화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역조직

- ▣ 서울지부
- ▣ 대전지부
- ▣ 울산지부
- ▣ 충북지부
- ▣ 충남지부
- ▣ 광주지부
- ▣ 강원지부
- ▣ 제주지부
- ▣ 경기지부
- ▣ 부산지부

서울지부

96년 9월 2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7개지회를 인준함

- 동대문지회 : 초대 지회장 전승훈
- 중랑지회 : 초대 지회장 정경희
- 광진지회 : 초대 지회장 강재봉
- 성동지회 : 초대 지회장 이장원
- 송파지회 : 초대 지회장 고희석
- 은평지회

■ 지부장

- 통합 당시 지부장으로 김철호 지부장, 문희 부지부장 선출
- 94년 총회에서 김철호 지부장 연임, 이석구 부지부장 선출
- 96년 12월 8일 정기총회에서 정태영 지부장 선출

■ 일상사업

◦ 일요운동회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사업으로 93년 창립되어 진행되던 일요운동회를 94년7월 서울지부 사업으로 이관하였다.

일요운동회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사회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88년 장애인올림픽을 시작으로 대두된 재활체육의 개념을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장애의 악화를 막고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다.

월 3회(1,2,3주 일요일) 정립회관에서 모이며, 회비와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등의 후원으로 유지된다.

■ 역대주요사업

- 97.3. 하루호프 개최
- 97.8.1~3 삼육재활센터에서 열린마당 개최
- 98.3.7~8 수련회(가평수련원)

재활체육의
개념을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확대..

대전지부

85년 7월 1일 창립된 대전지부는 94년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조직인 푸른피와 통합을 거쳐 조직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97년 활동인자들의 잇단 탈퇴로 사고지부가 되었다가 예진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98년 새롭게 건설되었다.

■ 지부장

- 초대지부장으로 차창섭 지부장, 임생규 부지부장 선출
- 송희성 임시 지부장 선출
- 94년 8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최일권 지부장 선출
- 98년 김대형 지부장 선출

■ 연혁

- 85년 7월 1일 창립
- 94년 푸른피와 통합
- 94년 10월 중증재가장애인중 단독 세대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 소속 '다크호스'와 체육대회 개최
- 95년 10월 통합사회실현을 위한 대전지부 소식지 '장애시민' 창간호 발간
- 95년 10월 23일 대전시청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문의
- 95년 11월 24일 [올바른 특수교육실천을 위한 연대모임]결성
- 95년 12월 17일 장애인 가족 교류를 위한 '폐택의 밤' 주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촛불행진
- 96년 2월 27일 ~3월 2일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촉구 서명운동
- 96년 3월 15일 대전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운동 기금마련을 위한 사진전 및 일일부페
- 96년 3월 26일 대전시장 면담, 대전 전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함.
- 96년 4월 13일 96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고용촉진걷기대회 주관
- 97년 갈마 건강체련관 건립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 참가

■ 역대주요사업

한글반과
검정고시반 운영

- 새날 야학
94년 11월 초 한글반 야학 시작하여 검정고시 반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또래 공부방
96년 3월 개원

전장협사업소개와
생활정보
회원소식 담은
장애시민 발간

- 소식지 '장애시민' 발간
95년 10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대전지부 소식지 '장애시민' 창간호를 발간한 후 96년 7월 통권 4호까지 발간하였다. '장애시민'에는 전장협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장애인을 위한 생활정보, 회원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 투쟁사업

대전시 6개 특수학급 폐지 반대 투쟁

장애아의
교육권과
통합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항하기로..

95년 9월 모일간지의 보도내용은 대전지역의 6개 특수학급을 유등중학교 1개교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장애아 학부모와 교사들이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리를 가진 분들은 전교조대전지부, 전장협대전지부, 그리고 통폐합조치대상 중학교 중 1개 중학교 학부모들과 특수학급 교사들이었다. 이 작은 모임에서는 통폐합조치의 결정은 특수교육에 있어 비전문가인 소수의 교육관료에 의해 진행된 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물이며, 장애아의 교육권과 통합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몰상식한 행위라 판단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모임에서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서 발송과 기자회견을 통한 지역여론형성, 항의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진행과정에서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결함을 유도해 내었다.

장애인교육문제
담당할 지역조직
공식 결성

또한 모임에서는 중학교 3학년 장애아 부모들이 아동의 고등학교 입학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어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한(특수교육 대상자 일반고교 지정배치)를 요구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게 되었다.

위의 두가지 목적이 실현된 후 모임의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모임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아의 교육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조직이라 판단하고 공식적인 결성과 조직의 확대를 결의하였다.

○ 교육청에 보낸 질의서

1.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2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특수학급 입학 대상자들이 근거리 학교의 특수학급에 입학할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교육청이 특정 중학교에 배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대전지역 중학교 특수학급을 통폐합하여 특정 중학교로 배치하였을 경우,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특수교육 대상자는 그 거주지의 가까운 일반 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3. 특수학급을 통폐합하는 것이 일반 학생과의 통합 교육이 가져오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지의 여부.
4. 중학교 특수학급을 1개교로 통폐합함으로써 현행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중학 진학대상자들이 학급수 부족으로 희망학급에 진학하지 못하는데 대한 대책은?
5. 특수학급을 유등중학교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교육관련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 특수교육전문가 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
6. 96년도 특수학급 대상 신입생의 특수학급 배치에 대한 시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서

。질의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의 답변서

가. 특수학급 분산 운영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 통합 운영은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음.

- * 종래 1개 특수학급의 편성은 2개 학년이상의 혼합 편성으로 복식 수업을 하였으나 통합운영함으로써 학년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이 가능하고
- * 복식 수업으로 인한 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에서 탈피, 전문지식과 능력있는 교사와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 * 행·재정적 지원의 집중화로 특수교육의 여건 조성에 효과를 고양하고
- * 현재 일반학생과의 통합교류 학습은 합리적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충실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 * 통학버스의 운행으로 원거리 통학생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중임.

나. 앞으로 검토 사항은

희망학생
전원에게 진학의
기회제공-오직
한 학교안에서!

- * 매 학년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요 자원을 파악, 증가에 따른 학급증설로 희망학생 전원에게 진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 * 96년도에는 통학버스 1대를 증차하여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켜 주고
- * 향후 증설되는 특수학급은 점진적인 지역 균형 배치로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임.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호응?

- * 특수학급의 통합 운영 결과 교육내용 및 여건 조성에 있어 현 대전 유등중학교 특수학급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특수교육을 발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시교육청 답변 반박문

반박문

중학교 특수 학급을 유등중학교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5개 단체의 질의서에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분산 운영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합운영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그에 따른 근거가 비논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

우선 종래 특수학급의 운영이 2개 학년 이상의 혼합편성으로 복식수업을 하여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기능이 어려운 것처럼 서술하면서 정작 유등 중학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없이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는 막연하게 학년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수교육에 있어서 학년제라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특수교육은 학생의 정신연령과 개인별 학습 능력에 따라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교수-학습 기능의 효율성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그에 따른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에 따라 그 효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학년제나 복식수업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학년제나
복식수업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90년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서에 의하면 1, 2, 3학년 복식학급의 경우 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학년제일 경우 15명이 정원이다. 지금 현재 유등중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하며 16명이 한 학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실정으로 볼 때 어떤 새로운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6명이나 되는 한 학급에서 어떻게 개별화 교육이 잘되어 가는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믿기도 어렵고 그것을 확실히 실시할 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도의 정신지체 아동이 있는 해광학교의 초등부 저학년의 경우도 교사 1인이 보조교사 없이 한 학급의 15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도의 장애인인 특수학급의 학생에게 보조교사 배치를 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을 믿기가 어렵다.

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담당학생수와
수업시간수를
줄여야..

결국 특수학급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담당 학생 수와 수업시간 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정, 재정적 지원의 집중화를 통해서 특수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는 답변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은 시교육청이 그 동안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소홀했던 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중등의 경우 담당 장학사도 없이 초등에서 함께 업무를 보는 것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지원의 소홀함과 매년 특수학급으로 배당된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금(대략 85만원-100만원)조차 계획서에만 명기되었을 뿐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았던 재정적 지원의 부실함에 대한 것 등, 특수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특수학급의 분산으로 문제가 생긴 양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지원 소홀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장은 특수학급 학생은 뭔가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우려만하였고 별도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다가, 유등중학교로의 통합이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향후 증설되는 특수학급은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는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지금 현재의 학생들이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상태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를 일부러 교통상 불편함을 만들고 다음에는 또 증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며, 증설에 대한 약속은 그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청은 자신들의 인위적이고 편의적으로 바꾸어 놓은 정책이 많은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원래의 것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얼버무리면서 지금의 정책은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한다고 했다.

어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어년 사고만
일으키지 않고
관리하면 된다는
발상

그러나 이제까지 특수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된 시각이 학교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는 결국 이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 이들은 일반 학생과는 다르게 별도로 사고만 일으키지 않고 관리하면 된다는 발상 등이 지금까지의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 대다수의 시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의 유등중학교 통합은 그러한 시각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은 학교에서 올바른 대인 관계, 사회성 발달, 언어 이해력, 변별력, 수기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의 방침속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재정적 지원은 다른 특수 학급에는 거의 지원을 단절한 채 유등중학교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결과는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지금 현재의 나머지 특수 학급 2, 3학년에 대한 불평등한 처사이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이 있어야 한다.(95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는 매년 상정된 특수학급운영 예산조차 언급되지 않았음)

또한 현재 유등중학교에의 집중적 투자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모형을 그대로 중학교 특수학급에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특수학교 직업교육조차 현실에서 장애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특수 학급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중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이 얼마만큼 중학교 졸업 후 아이들이 직업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일반학생과
통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

오히려 학생들의 사회성과 자립도, 적응력을 높여 내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일반학생과 통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등중학교로의 통합은 단적으로 신탄진에 거주하는 특수 학급대상 아동이 중

학교 진학시 유등중학교(유천동)까지 가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편함 때문에 특수학급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큰 불편을 겪으면서 유등중학교까지 가면서 같은 동네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또 하나의 LABEL을 달고 자신이 가진 열등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 특히 초·중·고생의 경우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의 학교에 배치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보겠다는 교육청의 잘못된 시각이 내놓은 정책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에게 그들의 장애를 고려하여 교육적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의 의견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후에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엘리베이터
설치투쟁

장애인 및 교통약자, 대전지하철 이용을 위한 22개역 엘리베이터 설치 투쟁

<경과>

1. 1995년 10월 23일 대전시청에 질의서 발송

제 목 : 대전시지하철의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문의

주요내용 : 대전시지하철의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계획에 대한 질의

2. 95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지하철기획단으로부터 회신 받음.

제 목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의 회신

주요내용 :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기본설계 중이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장애인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은
실지로 장애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됨.

3. 96년 1월 27일 중앙로 지하상가 장애인 리프트카 고장과 이에 대한 방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승강시설에 있어서 실지로 이용 가능한 것은 엘리베이터 뿐임을 알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96년 2월 1일 발표된 녹색교통운동의 '지하철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은 실지로 장애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됨. 이에 전장협 대전지부는 대구의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협의회'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운동 경과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 본 결과 대전에도 충분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

4. 96년 2월 2일 대전광역시 지하철 기획단으로부터 협조공문 받음.

제 목 :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협조

주요내용 : 장애인의 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체에 대한 의견 제시해 줄 것에 대한 협조 요청

5. 96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지하철기획단에 본지부의 의견서와 그 동안의 자료를 발송함.

제 목 : 대전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따른 의견서 및 자료

주요내용 : 대전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함.

6. 96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지하철기획단에 도시철도1호선의 장애인승강시설에 관한 질의서 발송

제 목 : 대전도시철도 1호선 장애인 승강시설에 관한 질의

주요내용 : 대전지하철도 1호선의 엘리베이터 설치 숫자, 설치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관한 질의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질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요구

7. 96년 2월 27일~3월2일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촉구 서명운동

8. 장애인선거참여 포스터 1,000장 부착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음.

9. 96년 3월 15일 대전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운동 기금마련을 위한 사진전 및 일일부패

대전지부는 용두한식부패를 빌려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날 사진전은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을 비교한 사진들과 대전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10. 96년 3월 26일 대전시장 면담, 대전전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함.

울산 지부

- 울산지부는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 이전 전장협 경남지부로 활동하다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 통합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회원들의 이동과 상황변화로 현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 지부장

- 초대지부장에 김상욱 지부장, 최진숙 부지부장 선출
- 94년 4월 임시총회에서 하종수 지부장 선출
- 홍순석 지부장, 최진숙 부지부장 선출
- 96년 이광제 지부장 연임

■ 역대주요사업

- 재가 장애인생활 지원, 불우아동 수용시설 애리원 방문 봉사활동과 월 7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은 일일차집을 통해 확보한다. 93년부터 월 1회방문
- 94.7.30~8.2 제13회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수련대회
- 94.12.17~22 재가장애인 돕기 위한 바자회 개최
- 98년 7월 19일 정인지체장애아 수용시설인 '태연재활원'에 타단체 회원과 50여 명이 방문

충북 지부

- 95년 6월 증평연락소 자격으로 중앙위원회 참석.
- 96년 3월 23일 창립총회를 갖고 지부로 인준됨.
- 97년 9월 충북지부 증평지회 승인, 지회장 조정원씨 임명.

■ 지부장

- 초대 지부장으로 김원태 지부장, 이재훈 부지부장, 이영호 부지부장 선출.
- 96년 12월 14일 총회에서 김원태 지부장 연임
- 98.2.22 정기총회에서 안재찬 지부장 선출

■ 역대주요사업

- 97.6.21 '열린야학'을 위한 일일호프

■ 현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2121번지
연락처 0431-232-6409

충남지부

- 94년 7월 정식 인준되어 전장협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 정회원 250명, 일반회원 3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회원은 현재 20명 정도이다. 전장협 다른 지부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매월 20일 정기회의를 열며, 분회장급이상 간부회의를 한다.

■ 지부장

- 초대 지부장에 차상록 지부장이 선출되어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다.

■ 지부조직구성

지부장 1인
 부지부장 2인
 사무국장 1인
 총무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사업복지부장 1인
 분회장(각 읍·면·동) 17인
 후원회장 1인
 후원회 사무국장 1인
 자문위원 3인
 운영위원 5인
 감사 2인

■ 역대주요사업 및 연혁

- 94년 4월 20일 제1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한가족 후원회 발족(초대 이진영회장 선출)
- 94년 5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장애인체험대회 참가
- 94년 7월 충남지부 정식 승인
- 94년 7월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배부사업 시작(회원 100명에게 배포)
- 95년 4월 20일 제1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95년 10월 장애인복지신문 배부사업 중단
- 96년 4월 19일 장애인걷기대회 및 봄 나들이
- 96년 12월 장애인한가족 송년의 밤
- 97년 4월 22일 제1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을 교통장애인협회와 공동주최로 지역인사들을 모시고 개최
- 98년 4월 24일 제1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아산시 장애인 자활촉진대회를 개최, 장애학생 5명에게 장학금 전달

■ 현사무실

충남 아산시 온천2동 673번지
 연락처 : 0418)545-6108(지부장 자택)
 0418)549-2580(사무실)

광주 지부

■ 지부장

- 초대지부장으로 이정범 지부장 선출
- 94년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이종균 지부장 선출

■ 일상사업

- 97년 7월 '밀알들' 장학회 설립

이 사 장 : 고용주

감 사 : 김영배, 이명십

사무간사 : 김안수

회원 13명으로 출발한 장학회는 앞으로 7년간 적립한 후에 사업을 정하기로 하였음.

강원 지부

94년 9월 18일 결성되어 지부로 인준되었다.

■ 지부장

- 초대지부장에 김철순 지부장, 배문주 부지부장 선출.
- 94년 배문주 지부장, 김현재 부지부장 선출
- 김미량 지부장
- 96년 정선교 지부장 선출

■ 역대주요사업

- 1일 장애체험대회 및 장애예방 캠페인

사람들에게 장애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회원을 확보한다. 진행과정에서 장애체험대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은 후원을 받았다.

- 수화모임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회원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한 사업. 초기 동사무실을 빌어 주1회로 시작되었다. 재정은 회비를 통해 확보되었다.

- 보장구지급사업

영세장애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협회에서 지급하는 무료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5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새날도서방 활동

제가 장애인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는 사업

- 97. 5월 장애인생활공동체 '애덕의 집' 개원
- 97.8.26. '장애인 복지의 방향' 포럼개최
- 98.7.24~26 98 전국장애인열린마당 개최

제주 지부

- 제주지부는 86년 8월 '밀알들'로 창립했다.
- 창립초대회장은 이영민씨가 담당했고 2대 양찬현, 3대 진영림, 4대 문성탁, 5대 남병우, 6대 이영민, 7대 오성진, 8대 문진철 지부장으로 이어지면서 93년 장애인 운동청년연합과 통합을 하게됐다.
- 통합 이전에도 89년 제주 장애인 대토론회, 92년 장애인복지조례안 제안 등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통합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지부장

- 통합초대지부장으로 남명우 지부장, 김미정 부지부장 선출
- 94년 8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오성진 지부장, 김미영 부지부장 선출
- 96년 김정훈 지부장 선출
- 97년 4월 6일 임시총회에서 강성범 지부장 양우철 부지부장 선출
- 98년 정기총회에서 오성진 지부장 선출

■ 연혁

- 93년 9월 살레시오의 집 사건으로 대책위 구성
- 94년 5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세미나
-제주도 장애인 고용실태를 중심으로-
- 96년 4월 제1회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범국민 걷기대회
- 96년 8월 전국장애인한마당 개최(제주신양해수욕장)
- 96년 10월 보행환경 체험 시민걷기 대회
- 96년 10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제주연대회의 구성
- 97년 7월 국제와이즈맨 남부지구에서 봉사대상 수상
- 98년 5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98 장애인실태보고 세미나 개최
- 98년 9월 제주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책위 발족

■ 일상사업

- 장애아동 장학금 지원사업
영세 장애아동의 학비를 지원한다. 재정은 별도의 후원자를 구성하여 충당한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 장애아동교육지 발간
일일찾집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이다.
- 95년 8월 새날도서방 개관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있다.
- 수익사업
- 94. 7 장애아동 교육지 발간을 위한 음악찾집
- 96. 1 장애아동 장학금 및 '새날도서방'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공옥진 초청공연
- 98. 3 전장협광고기획단 운영
- 98. 8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갈비집 운영 후원회 사업

경기 지부

- 1993년 6월 13일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의 성남지부로 창립되었다가 통합과 함께 경기도 지부로 인준되었다.
- 성남지회(지회장 조명필, 96년 12월 19일 총회에서 선출), 광명지회(96년 6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초대지회장에 최난희 지회장 선출) 등이 만들어지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지부와 중앙사이의 의견이 갈려 98년 전장협에서 탈퇴했다.

■ 지부장

- 초대 지부장에 노민규 지부장, 배은이 부지부장선출
- 96년 12월 19일 총회에서 연임

■ 일상사업

◦ 장애인컴퓨터 교육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회원을 확보한다. 비장애인의 컴퓨터 교육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3개월, 4만원 × 12명)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의 큰 어려움은 없으나 장소의 문제(현재는 지부장 집을 이용)가 남아있다.

◦ 장애아동 조기교육실

취학전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은 학부모가 일정 부담하고, 후원과 자체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곧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 지부

- 95년 7월 1일 부산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이후 부산지부로 인준됨.
- 97년 초 대의원대회에서 사고지부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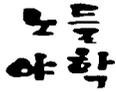
■ 지부장

- 96년 대의원대회 갈등근씨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
- 부산지부는 96년 제1회 국민걷기대회를 거치면서 중앙사무소와 의견이 엇갈려 탈퇴하게 되었다.

**부
설
기
관**

▣ 노들야학

▣ 새날도서관



■ 사업목표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회복시키는 것, 즉 의무 교육조차 보장되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그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장애인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사업내용

검정고시준비

○ 검정고시 준비과정

- 매년 4월, 8월에 시행하는 검정고시(중검, 고검, 대검 전 과정)를 준비한다.

○ 야학 행사

- 해오름제 : 한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 이때 학생들의 졸업식과 입학식, 그리고 퇴임하는 교사가 있으면 퇴임식을 한다.

- 봄 소풍 : 매년 5월에 실시한다. 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난 후, 새롭던 기분을 다시 한 번 활기차게 만들고,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노들체육대회 : 매년 8월 말에 개최된다. 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립회관 체육관에 모여 한테 뭉치고 뒹구는 행사이다. 퇴임교사와 졸업생들이 많이 오는 행사 중에 하나이다.

- 노들모꼬지 : 매년 10-11월에 있다. 교사, 학생, 그리고 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진 노들의 큰 행사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노들인들이 함께 즐기고, 진지한 대화를 통한 앞으로 노들이 나아가야 할 길등을 이야기해 보는 자리이다. 매년 안면도, 가평, 강화도 등 평소애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장소로 선정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매년 12월말
노들인의 밤
개최-한해의
마무리 자리

- 노들인의 밤 : 매년 12월 말에 개최된다. 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까지 모여서 노들 식구들이 만든 공연으로 노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친분을 두텁게 하는 자리이다. 연극 공연, 노래 공연, 수화 공연, 슬라이드 상영 등 노들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노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알리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매년 정립회관 강당에서 열리며 노들의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공연 참가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일일호프 : 노들의 재정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월에 개최한다.

◦ 야학 소식지 제작

- 부딪들 발간 : 매년 2번 학기 초에 나온다. 노들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글 속에서 담아,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노들의 역사서를 만드는 구실을 한다. 주 내용은 교사와 학생들의 글, 그리고 매 호 마다 한가지씩 테마(주로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 제도권 교육을 벗어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내용)를 가지고 내용을 채운다.

야학의 모든 생활상을 야학을 알고 있는 모든이에게 알리는 노들바람

- 노들바람 발간 : 매월 발행하는 노들바람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기존의 부딪들이 야학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 야학의 모든 생활상을 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

◦ 타 야학과 연대 사업

- 서울경인지역장애인야간학교연합(서경장련) :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야간학교가 모여, 장애인야간학교간의 단합을 꾀하고,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조직적으로 풀어 가려 하는 공간이다. 현재 여기에는 노들야학과 인천야학, 그리고 은평야학, 등대야학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매년 2월 : 총회 개최

2달에 한 번 정기회의 개최(각 야학 집행부 단위에서 참가)

8-9 월 : 체육 대회 개최

11월 : 서경장련 문화제 개최

- 서울경인지역야학협의회(서경야협) : 서울과 경인지역 소재 약 50여개의 야학이 모여 만든 협의체 기구인데, 여기서 노들은 하나의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서경장련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야학인 한마당 참가, 서경야협 소식지에 글을 보냄.

◦ 세미나

노들세미나, 학생강좌, 교사 세미나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마련

- 노들 세미나

진행 내역

1차 : 야학사 ('98년 3월)

2차 : 정치,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98년 4월)

3차 : 1960년대의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98년 5월)

4차 : IMF와 신자유주의에 대하여(6월)

5차 : 산업제해와 장애인(9월)

6차 : 장애인의 고용(10월)

7차 : 장애인 교육(12월)

- **노들 강좌 진행 내역(연혁 참조)**

강사 섭외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강사의 강의 내용 : 강사의 재량에 맡기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역사, 사회복지, 장애인 법률 문제, 치아 관리,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 **조직**

1) **인적구성**

정식교사 13명,
학생 17명,
퇴임교사와
졸업생 모두
노들의 가족

- 교사 : 정식교사 13명, 휴직교사 2명, 훈련교사 3명
- 학생 : 한소리반(대검반) 7명, 불수레반(고검반) 6명, 청솔반(중검반) 4명
- 기타 : 퇴임교사, 졸업생, 운영위원

2) **조직 구성**

- 교장 :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2년의 임기로 야학을 대표한다.
- 교사대표 : 교사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한 학기의 야학 사업을 총괄주관.
- 집행부 : 총무부장, 홍보부장, 편집부장, 담임대표
 - 총무부 : 야학의 재정관리를 담당하며, 기타 야학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 홍보부 : 야학과 관련된 홍보를 담당한다. 교사, 학생 모집, 타 야학과 연대사업, 후원 관련 사업 등을 주관하며, 후원회 관리를 담당한다.
 - 편집부 : 야학 소식지 발간을 담당한다.
 - 담임부 : 각 반의 학생들을 관리하며, 교사의 수업을 관리한다.
- 총학생회장: 모든 학생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매 학기에 선출한다.
학생의 대표 역할을 한다.
- 학생총무 : 학생 관련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3) **회의체계**

운영위원회,
교사회, 총학생회의,
교사, 학생
집행부 회의,
교사회의
부서별 회의

- 운영위원회 : 교장, 교사대표, 총무부장, 총학생회장, 학생 총무, 감사, 퇴임교사 회장, 전장협 간부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대표성있는 회의로써, 매달 1회 개최한다.
- 교사회 : 모든 교사가 참여하며, 야학의 전반적인 운영과 기타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월 2회(2,4 주 토요일 저녁)
- 총학생회의 :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는 야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월 1회 개최
- 교사, 학생 집행부 회의 : 교사 학생 집행부가 모여 야학의 사업 계획을 잡고,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는 공간. 월 2회(2,4주 월요일)
- 교사 집행부 회의, 부서별 회의

4) 재정 운영

· 재정 수입은 후원 관련 사업에서 받고 있다.

- 재정 지원 : 분당, 일산 E-마트, 리폼시스템, 동광사, 처갓집 양념통닭(구의점), 기독교 총회와 개인 후원으로 약 100여명이 지원하고 있다.

- 차량 지원 : 성동구 소방서에서 차량지원을 하고 그 외 개인 차량 지원이 있다.

노들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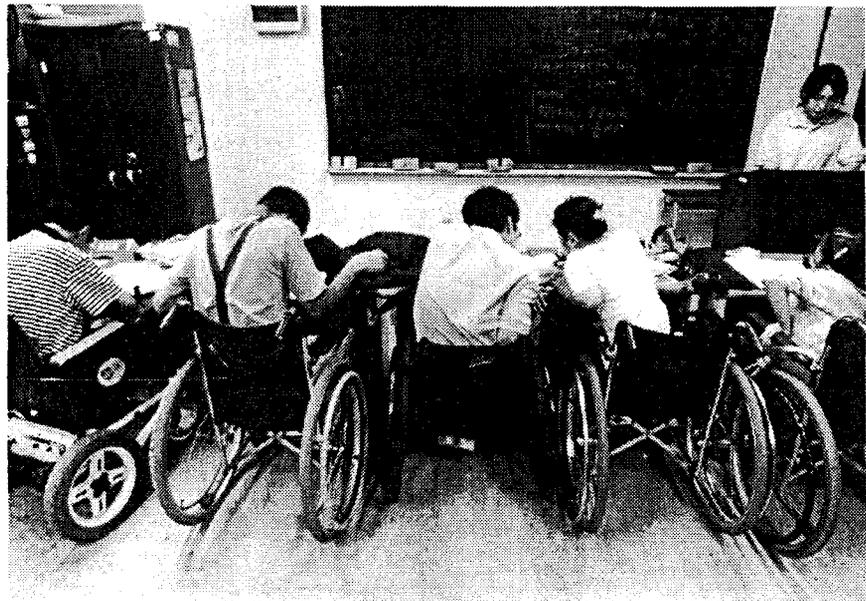
■ 연혁

93년 8월 8일	교칙 제정. 중검반 고검반으로 개교 제1대 교사대표 : 김두영, 학생대표 : 안명옥, 교장 : 손복목.
94년 3월15일	입방식(교장 : 최종문.) 탁구장 임시교실에서 정립회관 구관 3층으로 이전(교실 2칸과 교무실)
94년 5월	중입 검정고시 총5명(이재훈, 손경오, 정영란, 왕계현 박경미) 합격
94년 8월	고입 검정고시 - 이철근 합격
94년10월	제1회 노들 교사·학생 모꼬지 - 가평
95년 3월	대검반 전과목 수업
95년 4월	검정고시 - 고검 유연구 합격
95년 5월	중입 검정고시 - 김명학, 남순, 고정숙 합격
95년 8월	검정고시 - 대검 이철근 합격
95년10월	제2회 노들 교사·학생 모꼬지
96년 4월 5일	검정고시 - 대검 정영란 합격
96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 걷기대회 행사 참석
96년 5월21일	서울 장애인 야간학교 대표자 모임
96년 8월 2일	검정고시-고검 김경군 합격, 대검 김영자, 이경미, 서민정 합격
96년 8월18일	개교 3주년 기념 체육대회
96년10월	제3회 노들 교사·학생 모꼬지 - 대천
97년 4월 5일	고입·대입 검정고시 21명 응시
97년 4월18일	제1회 학생수련회 - 제2대 총학생회장 : 김경군
97년 4월20일	제2회 장애인생존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국민걷기대회 참석
97년 5월14일	서울 경인지역 장애인야학연합 출범식
97년 5월24일	중입자격 검정고시 응시 - 안정호, 김숙자 합격
97년 8월 1일	검정고시 22명 응시 - 박순애 합격
97년 8월21일	제3대 총학생회장 이재훈, 총무 왕계현
97년 8월30일	개교 4주년 기념 체육대회
97년10월	제4회 노들 교사·학생 모꼬지 - 안면도

노들의 역사-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현재, 99학년도
1학기가 진행중.

98년 2월	제 9회 교사수련회 (가평)- 제 11대 교사대표: 최정숙 선출
98년 4월 5일	검시(고·대검) - 이구연, 이재훈, 김범준 고검 합격
98년 4월12일	98년 1차 교사세미나 '한국 야학사와 노들야학의 방향성'
98년 4월20일	장애인의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의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참가
98년 4월	노들바람 창간호 발간
98년 5월16일	퇴임교사총회 개최 -1대 퇴임교사회장 : 박찬오 선출
98년 5월23일	검시(중검) - 박순천 합격
98년 5월24일	2차 교사세미나 '한국사회의 정치적 현실'
98년 5월30일	봄소풍.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강으로
98년 5월	노들바람 2호 발행
98년 6월2~12	연구수업기간
98년 6월29일	학생강좌 'IMF와 사회복지' 강사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선생님
98년 6월	노들바람 3호 발행
98년 7월 5일	3차 교사세미나. '3-4공화국을 통해서 본 한국경제와 현 한국경제의 실상'
98년 7월31일	검시(고,대검) - 이영지 대검 합격
98년 8월 4일	4차 교사세미나 '한학기 세미나 평가 및 노들의 방향성'
98년 8월8~9일	제10회 교사수련회(혜화동) - 제12대 교사대표 : 성장기 선출
98년 8월20일	학생강좌 '건강한 치아에 대한 교향곡' 강사 : 홍준석 치과의 홍준석 선생님
98년 8월29일	개교5주년 기념 체육대회, 퇴임식 - 정유진, 유상운
98년 8월31일	1학기 해오름제



■ 역대 사업 계획서

○ 1998년 2학기 사업 계획서

98년 2학기
계획서

월	구분	내용	기타
1 학 기	3	- 2학기 개학식 (3월2일) - 모의고사 (3월 20-21일) - 교사세미나	
	4	- 고·대입 검정고시 (4월5일) - 학생수련회 (미정) - 학생강좌	
	5	- 중입 검정고시 - 봄소풍 - 학생강좌	* 학생강좌 (4회) ◦ 형식: 외부강사 초청강연 또는 자유주제 ◦ 주제: 학생회에서 결정 집행부 지원
	6	- 모의고사 - 학생강좌	* 신입교사&학생모집 및 훈련 ◦ 약2개월간의 훈련 ◦ 수시 입학가능
	7	- 모의고사 - 학생강좌	* 교사회의(2,4주 토요일 6시)
	8	- 고·대입 검정고시 - 교사 여름수련회 - 교사 L·T - 전장협 여름수련회 - 부싯돌 발행 - 노들 체육대회 - 방학 (木)	* 운영위원회 * 교사세미나(월 1회) * 정기총회 (가안)

◦ 99년 1학기 사업 계획서

99년 1학기
계획서

월	구분	내용	기타
2 학 기	9	- 1학기 개학식 (8월 31일) - 노들세미나 - 노들강좌	◦ 학생강좌→노들강좌 ◦ 교사세미나→노들세미나로 명칭 변경, 형식은 유지
	10	- 노들세미나 - 노들강좌 - 야학인 한마당 참가	* 신입교사&학생모집 및 훈련 ◦ 약2개월간의 훈련 ◦ 수시 입학가능 ◦ 신입교사 트레이닝 강화 ◦ 학생 오리엔테이션 신설 (총학생회에서 주관)
	11	- 노들모꼬지 - 노들세미나 - 서경장련 문화제 참가	* 교사회회의(2,4주 토요일 6시)
	12	- 노들인의 밤 - 노들강좌 - 노들세미나	* 운영위원회(매달 1회) * 노들세미나(월 1회)
	'99.1	- 모의고사 - 노들강좌 - 노들세미나 - 방학	* 교사, 학생 집행부 회의 신설 ◦ 후원 관련 사업 확충
	2	- 노들 일일호프 - 교사 겨울수련회 - 교사 L·T - 부싯돌 발행	◦ 특활 수업 신설 -수화반, 노래반 (매주 목요일 1,2교시) ◦ 퇴임교사 회의 체계화 ◦ 졸업생 동문회 신설 계획 ◦ 서경야협, 서경장련 사업 적극적 참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칙

제정 : 1993년 8월 8일
 개정 : 1995년 9월 27일
 개정 : 1996년 3월 22일
 개정 : 1996년 9월 2일
 개정 : 1997년 3월 2일
 개정 : 1998년 9월

전 문

이 땅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왔으며, 형식적인 교육 행정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 환경은 그 적합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한 취지 아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우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는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의 기본 권리인 교육권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1장 목 적

- 제 1조 <명칭> 본교는 전국장애인가족협회 부설기관으로 명칭은 「노들장애인야간학교」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교의 교육 목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를 통한 검정고시 합격이며 이와 아울러 참된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제 3조 <소재지> 본교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으로 한다.
 제 4조 <교훈> 본교의 교훈은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로 한다.
 제 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 6조 <총괄> 본 야학의 총괄 및 최종 책임은 『전국장애인가족협회』로 한다.
 제 7조 <회원> 본교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2장 입 학

- 제 8조 <입학> 입학 시기는 학년 시작 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 9조 입학 시기가 지난 후의 입학은 담임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입학 조건> 본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사람(인)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초등학교를 중퇴했거나 미수학한 인
 ② 초등학교 졸업자(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인)로서 중학교를 중퇴했거나 혹은 미수학한 인
 ③ 중학교 졸업자(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인)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혹은 미수학한 인
 제 11조 <제출 서류> 본교에 입학할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등록 등본 혹은 장애인 수첩 사본 1통
 ② 입학 지원서

③ 최종 학력 증명서

제3장 학사 일정

제12조 한 학년은 학년 시작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 정기 방학은 학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로 한다.(단, 상황에 따라서 교사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휴학·자퇴 및 제적

제14조 <휴학>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담임회의의 심의와 교사회의의 결정을 거쳐 휴학할 수 있다.

제15조 휴학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16조 <복학> 휴학생은 사유가 끝난 후 혹은 기간 만료 후 복학한다. 단, 휴학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교사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17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담임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제적>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담임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사회의에서 제적 처리한다.

- ① 휴학 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학생
- ② 2주 이상 사유 없이 수업에 결석한 학생
- ③ 기타 교사회의에서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학생

제5장 교과 이수

제19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중검반의 경우는 초등학교 6년 과정, 고검반의 경우 중학교 3년 과정, 대검반의 경우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20조 <수업> 매 주 수업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시 확대나 축소할 수 있다.

제21조 <보충 수업> 보충 수업은 학생의 요구나 교사의 제안에 따라 교사회의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이유로 이를 결정 할 수 없다

제22조 <시간표> 수업 시간표는 매 학기 초 교사회의를 통해 작성한다. 사유가 있어 교사회의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이유로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제23조 <시험>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담임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직제

제24조 <직제> 본교는 교장, 교사대표, 부서장, 담임을 두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교장 :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전장협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교장에 대한 재심의권을 가진다.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장협의 중앙위원의 자격을 가지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본교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 총무부장, 교육편집부장, 홍보부장, 담임을 교사대표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교장에 대한 탄핵은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제외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중앙 회장이 탄핵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가진다.

- 44조 사항에 의거하여 교사회의에서 상정된 교사의 징계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다.

② 감사 :

- 노들장애인야간학교의 학기별 회계내역을 감사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으로 한다.

③ 교사대표 :

-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 임기는 학기 시작 일로부터 다음학기 전날까지로 한다.
- 총무부장, 교육편집부장, 홍보부장, 담임들을 교장에게 추천한다.
- 학교의 대내적인 행정을 총괄하고 학사 운영을 지휘한다.

④ 부서장 :

- 임기는 학기 시작 일로부터 다음학기 전날까지로 한다.
- 25조에 명시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총괄과 책임을 진다.

⑤ 담 임 :

- 임기는 학기 시작 일로부터 다음학기 전날까지로 한다.
- 학생의 환경조사, 개인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특히 학생의 편의를 학사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검정고시 교재 연구 및 자료집 발간, 연구수업준비, 비치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부서> 본교는 총무부, 교육편집부, 홍보부를 두며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 ① 총 무 부 : 야학에서 전반적인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괄과 후원회를 조직과 관리, 비품 및 소모품관리, 문서 관리 행사 물품 준비
- ② 교육편집부 : 야학 소식지 발간, 교사 세미나 자료, 신입교사 트레이닝자료 준비 및 관리, 야학문고, 학생강좌 준비 및 관리
- ③ 홍 보 부 : 홍보 매체 편집, 교사·학생 모집, 타 단체와 연대를 담당

제7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야학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야학 예산의 결정권 및 결산에 대한 감사권
- ② 야학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권
- ③ 야학운영의 월별 평가 및 전반적인 방향성 수립
- ④ 제반 야학운영에 관한 심의
- 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27조 <구성> 운영위원장은 교장이 담당하며, 운영위원은 전장협 1인과 교사대표, 총무부장 그리고 총학생회장, 총무, 감사, 퇴임교사회장 등 8인으로 한다.

제28조 <회의> 운영위원회회의는 교장이 주관하며 정기회의는 월초로 하고, 운영위원 중 3인 이상의 소집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장 교사회의

제29조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교사회의를 둔다.

- ① 예산안 계획
- ②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ㄱ.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ㄴ. 시험에 관한 사항
 - ㄷ. 학사일정에 관한 제반 사항

- ③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징계
- ④ 부서장 및 담임의 선임에 대한 동의권
- ⑤ 기타 교사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0조 <구성> 현직교사 정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31조 <의결> 현직교사 인원의 과반수 참석을 정족수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월 2회로 한다. (격주)
- ② 임시회의는 교사3인 이상 또는 교사대표나 부서장회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 ③ 교사의 불참은 회의 2일 전까지 교사대표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교사징계의 사유가 된다.
- ④ 회의는 교사대표가 진행한다.

제 8장 부서장 회의

제33조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 계획하기 위해 부서장회의를 둔다.

- ① 신입교사 트레이닝에 대한 심의
- ② 교사 징계에 대한 심의
- ③ 기타 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제34조 <구성> 교사대표, 각 부서장, 담임 1인으로 한다.

제35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월 2회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교사대표가 소집 할 수 있다. 이는 정기회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③ 회의는 교사대표가 진행하며 전원 참석으로 한다.

제9장 담임 회의

제36조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계획하기 위해 담임회의를 둔다.

- ① 입학 시기 지난 후 입학
- ② 학생의 휴학, 자퇴, 제적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학습진도 점검 및 시험주관
- ④ 검정고시 교재 연구 및 자료집 제작
- ⑤ 비치교재의 관리
- ⑥ 학생상담 주관 및 반교사회의 주관

제37조 <구성> 훈소리, 불수레, 청솔반 담임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38조 <회의> 월 2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임시회의는 3인의 담임 중 1인 이상과 교사대표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11장 현직교사 규정

제39조 <자격> 본교 교사는 일정기간의 신입교사 훈련을 거친 자로 한다.

제40조 <모집> 신입교사 모집은 12월과 6월 연 2회 실시한다

제41조 <임명> 교사회의에서 임명한다.

제42조 <임기>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단 연임을 6개월 단위로 한다

제43조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교사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② 모든 교사는 학교 행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나 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사징계는 부서장회의에서 심의하며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 ④ 모든 교사는 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⑤ 모든 교사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을 가진다.
- ⑥ 모든 교사는 교사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44조 <징계>

- ① 교사의 징계 사유는 수업결손, 교칙위반, 생활태도불량 등 학교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이루어진다.
- ② 교사의 징계 방법은 경고, 권고사직 등이 있다.
- ③ 무단 수업 결손, 교사회의 불참, 학교 행사의 불참은 교사징계의 대상이 된다(통고 결강인 경우 교사회의에서 심의하여 사유내용 부당시 무단 수업결손으로 간주한다. 단, 무단 수업결손 1회경고, 3회 권고사직).
- ④ 교사징계는 부서장회의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은 교사회의에서 한다.

제 12장 제정

제45조 <학비> 모든 학생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제46조 <후원>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주 재정으로 한다.

제47조 학생 및 교사의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

제48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49조 <감사> 운영위원회에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둔다.

제 13장 교칙 개정

제50조 <입안> 부서장회의의 혹은 교사회의에서 입안 할 수 있다.

제51조 <개정>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52조 <시행> 개정 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부 칙 -

본 교칙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교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반 사항은 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새날 도서관

■ 사업목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도로 문화 및 정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가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문화 및 정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적 역할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하며, 공동체 의식의 배양에도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장애인의
생활·문화적
욕구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장

이에 건전한 장애인 문화를 일구어 내고 장애인간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상호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특히, 노원지역 장애인들에게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장애인의 생활·문화적 욕구를 공동으로 해결해가고자 한다.

■ 사업내용

(1) '새날을 여는 사람들' 발행과 발송

- 발행취지 : 회원들의 일상적인 습작품과 다양한 문화적 정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면을 통한 회원간 유대를 강화한다.
- 내 용 : 현재는 주로 회원들의 글을 중심으로 싣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담는다. 점차적으로 회원 글을 많이 실어서 회원문집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 발행상황 : 지난 97년까지 격월간으로 발행하다가 현재는 재정문제로 인해 기간(3개월마다)으로 700부를 발행하며, 새날회원과 장애인단체, 후원 회원에게 발송하고 있다.

(2) 회원모집, 도서대출 방법

- 현재 회원모집을 위해 대자보를 작성, 노원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대학 등에 붙일 예정이며, 점차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광고하고, 홍보용 전단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이전에는 주로 지역신문과 홍보용 전단을 이용하였다)

- 회원가입절차는 일단 전화로 신청을 하면 주소지로 회원가입서와 도서목록집을 보낸다.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다시 우편으로 보내오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그 때부터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장애인 회원은 이용료가 무료이며, 비장애인은 후원금으로 매월 3,000원을 받는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

- 도서대출은 주로 전화신청 -> 우편발송 형태로 이루어진다. 도서목록집을 보고 원하는 책을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반송용 봉투 포함) 우편으로 반송하기 힘든 회원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직접 배달해 주기도 한다.

(3) 도서전산작업의 취지, 내용, 진행상황

소장 도서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중

- 취지 : 체계적인 도서 관리, 도서 대출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회원들의 도서 대출 실적 및 내용에 대한 일관된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하게 되었다.
- 내용 : '좋은친구' 라는 도서대여집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소장도서를 한국소설, 외국소설, 비소설, 시, 아동도서, 전집, 사회과학 으로 분류, 입력하였다. 소장 도서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도서 분실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기 좋다. 도서 대출 회원 명단을 입력하여 회원별 도서 대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체 및 회원간 도서 중복 문제 등을 처리하기가 좋아졌다.
- 진행상황 : 현재까지의 이용회원(150여명)과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6,000여권)는 모두 입력하였고, 실제 대여상황에 이용하고 있다.

(4) 도서확보 방법, 도서의 종류, 전체 권수

- 도서확보 방법 : 시사저널사의 후원으로 신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 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최소한 매월 1권씩 신간을 구입하기로 했다.
- 도서의 종류 : 한국소설 - 1,600여권, 외국소설 - 1,000여권, 비소설(수필, 자서전, 기행문 등) - 2,000여권 시 - 500여권, 아동도서 - 500여권, 전집 - 60여권, 사회과학 - 600여권, 기타(문학지, 만화 등) - 80여권 <총 6,300여권>

(5) 도서대출 회원들의 일반적인 연령, 성별, 직업, 장애유형 등

주로 많이
빌려보는 분들은
20대후반에서
30대 중반

- 도서대출 회원들의 일반적인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많이 대여하는 연령대는 20대후반에서 30대 중반이다.
- 도서대출 회원들의 성별은 남자가 60%정도로 여자보다 많다.
- 도서대출 회원들의 직업은 거의 무직이며, 회사원이 몇 명 있는 정도이다.
- 도서대출 회원들의 장애유형은 거의 중증 지체장애(1급)이며, 뇌성마비 회원이 많다.

(6) 회원 소모임 활성화

- 아직 구체적인 기획안은 나와 있지 않으나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소모임을 꾸려 나갈 계획이다.
- 요구를 수렴하는 작업은 이전에 했던 설문조사를 참고하고, 영화보러 가기, 공연보러가기, 여행가기 등의 행사를 일회적으로 실시해보면서 그 참여도를 비교, 분석하여 파악할 계획이다.
- 일단 소모임이 구성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운영은 소모임에 일임하고, 도서관에서는 이동 및 재정지원에 대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체계 및 연혁

(1) 인적구성

- 관장 1인(채종걸관장), 사무장 1인(고제현), 상근간사 1인(김희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간사는 주로 도서관리 및 회원관련 사업, 도서대출 사업을 중심으로 맡고 있으며, 사무장은 재정관리 및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회원수

- 도서대출 회원(정회원) 150명 정도, 새날지 받아보는 회원(준회원) 350여명, 후원회원 15명 <총 500여명>

(3) 연혁

- 1992. 9. 새날도서방 설립 :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에서 설립
- 1994. 7. 새날도서방 인수 : 전국장애인가족협회가 인수
- 1996. 2. 새날도서방 이전 :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전
- 1996. 3. 새날도서관으로 문고 등록 : 서울 노원구청에 등록
- 1996.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중앙사업에서 부설이 됨.
- 1997. 2 - 11. 이동도서관 실시 : 서울 노원구 중계 3동 시영3단지에서 실시
- 1998. 5 - 10. 도서 및 회원 전산화
- 1998. 9. 회원나들이 : 인천 월미도로 나들이
- 1998. 10. 회원과 영화나들이 : 서울회원과 극장에서 영화관람
- 1998. 10. 도서목록집 발행 : 소장 도서 6,000여권을 목록집으로 발행
- 1993 - 1998. 10 '새날을 여는 사람들' 발행 : 초기 설립부터 현재까지 소식지 발행

(4) 소재지

- 위치 :

무 길다고 이야기했으며, 이용자가 주로 아동이어서 재가장애인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용자층이 확대되지 않고, 고정적인 회원들만 이용하였다. 대학교 사회봉사단 인력을 활용한 것은 효과적이었다.

(2) 회원나들이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도서관
회원과
바다구경

- 취지 :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회원들에게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안에서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내용 : 강원도 철원의 시설에 거주하는 회원이 다수였으며, 이들의 요구에 따라 바다를 보기 위해 인천 월미도로 나들이를 갔으며, 바다를 둘러보고, 점심을 먹고, 각자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실시일 : 1998년 9월 25일
- 평가 : 시설의 회원 5명과 서울 회원 2명, 자원봉사자 2명, 직원 2명, 운전자 2명 등 총 13명이 참여하였으며, 시간이 짧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3) 회원과 함께 영화나들이

영화보는 모임
현재는 서울2명,
경기2명

- 취지 : 98년 하반기부터 새날도서관에서 매일 영화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TV, VTR 등 기자재를 마련하지 못하여(재정적 어려움) 회원들과 직접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가서 문화적 욕구도 해결하고, 그안에서 회원간 유대도 강화할 취지로 실시하였다.
- 내용 : 서울 광진구 소재 테크노마트 10층 영화관에서 “리쉬아워”를 관람하였다.
- 실시일 : 1998년 10월 31일
- 평가 : 서울지역 회원 80여명에게 홍보편지를 보냈으나 서울회원은 2명 신청했고, 경기도 회원이 2명 신청하였으나 이동문제로 인해 서울회원 2명과 직원 2명만 참여하였다. 홍보기간이 좀 짧아서인지(약 10일) 신청율이 매우 저조했으나 참석한 회원은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영화에 대한 회원 요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동문제 때문인지, 회비문제(회비 1만원)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영화 볼 마음의 여유가 안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차츰 파악해야 할 것 같다.(홍보물에는 이동문제와 회비문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저조했다)

■ 기타

(1) 전장협과의 상호협조 관계에 대하여

- 서울지부가 활성화되고, 노원지역에 지회가 설립되면 노원지역 새날 회원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 확보나 지역사업을 위한 협조체제가 보다 확고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발전방안에 대하여

- 첫 번째는 회원들의 글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고유의 취지에 보다 심도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으며,

- 두 번째는 다양한 소모임개발을 통해 노원지역 장애인의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세워갈 계획이다.
- 세 번째는 위와 같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 네 번째는 이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활동

◆ 행사 및 공청회

전장협아카데미

장애인/학생 대동제

장애인 뉴시대회

장애인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발표회

광주망월동순례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

노들돌 창립공연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모형에 관한 공청회

지역간부수련회

전장협후원의밤

전장협하루주점

전장협아카데미

- 전장협 아카데미는 조직화와 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계획은 봄과 가을 정기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의식화를 통해 단합과 사업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인연의 확충과 대외 홍보의 기회, 최소한의 재정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제1회 아카데미에 약 20명 정도의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 등록하였고 강의는 주 2회씩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제1회 아카데미>

- 기간 : 1994. 4. 21 ~ 5. 20
- 장소 : 향린교회(명동성당앞)
- 시간 : 오후7시
- 수강료 : 40,000원

◦ 일정

- 제 1 회 - 4월 21일 강사 : 박준성 (역사학 연구소 연구원, 성대강사)
입학식 및 올바른 역사란 무엇인가
- 제 2 회 - 4월 22일 강사 : 조현욱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과정)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 제 3 회 - 4월 28일 강사 : 김종박 (민중정치연합 사무처장)
현시기 한국의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 제 4 회 - 4월 29일 강사 : 박규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자본주의의 진단
- 제 5 회 - 5월 6일 강사 : 남구현(한신대 강사)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사회복지제도 진단
- 제 6 회 - 5월 12일 강사 : 김기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자본주의의 사회복지현황
- 제 7 회 - 5월 13일 강사 : 이경미(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연구실원)
한국자본주의와 장애인 문제
- 제 8 회 - 5월 19일 강사 : 김대성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한국 장애인 그들은 누구인가
- 제 9 회 - 5월 20일 대토론회 및 졸업식

장애인과 학생 대동제

- 장애관련 학과의 대학생들과 연대강화를 목적으로 전장협은 2년에 걸쳐 대학내 대동제 기간에 '장애인/학생 대동제'를 개최했다.

<제1회 장애인대학생 대동제>

- 일시 : 1994년 5월 25일 6시 - 26일 오후5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 주최 : 장애인문제의올바른해결을위한공동사업운영위원회(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전국자원활동연합회, 키비탄연합회, 이화여대손짓, 서울대 손말사랑회등)

◦ 행사 내용

1. 5월 25일 - 대동제 사업 설명회 및 강연회
 - 가. 94정세 및 대동제 참여 인원 전체 교양
 - 나. 강연 - 빈민장애인에 관하여
2. 5월 26일
 - 가. 연대장터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나. 선진진 : 이화여자대학교
 - 다.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진전 : 한양대학교 키비탄
 - 라. 장애체험대회 : 광명시 사랑의 집과 함께
 - 마. 장애해방 물품 및 자료집 판매
 - 바. 사랑의 징검다리 : 영세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신문 구독을 후원연결
3. 폐막식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와 장애인 대동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수화노래 함께하기

장애인의 / 학생 대동제

<제2회 장애인 학생 대동제>

- 일시 : 1995년 5월 29일 6시 - 30일
- 주최 : 올바른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전국 장애인한가족협회, 명지대 키비탄, 단국대 키비탄, 명지대 인문대,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 주관 : 장애인, 학생 대동제 준비위원회

◦ 목적

- 1) 학내 공간을 빌어 장애인과 학생들의 하나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문제를 사회내에 확산시킨다.
- 2)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장애관련 단체와 학생단체, 현장단체가 이후의 유기적인 결합속에서 장애대중의 현실적인 삶과의 연결고리를 갖는다.
- 3) 장애대중과의 호흡속에서 장애문제의 해결의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한다.

◦ 사전교양 :

- 1) 장애인 학생 대동제의 의의, 목적에 대한 설명
- 2) 각 단위 소개
- 3) 대동제의 각 프로그램별 교양
손에라(이대 특교과), 이영환(단국대 키비탄), 백연희(극단 오늘)
- 4) 강연내용에 대한 발제
박수현(공동사업운영위원회)
- 5) 분임토의
한국사회구조내의 장애인 문제 - 노동권, 빈민장애인, 지역사업 등
- 6) 총화

◦ 대동제 프로그램

- 1부 1) 장애인 사회 체험대회
2) 선전전 및 사진전
- 2부 - 우리한마당
- 3부 - 민중연대 한마당
1) 전장협 노래패 노래공연
2) 연설 (장애인 부모)

장애인의 낚시대회

■ 행사 취지

건전한 여가문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간의 상호 교류를 유도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는데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신문사와 함께 장애인 낚시대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 일시 : 1994. 9. 4

◦ 장소 : 고삼저수지(경기도 안성군)

◦ 주최 : 장애인복지신문사,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참가방법

- 대상 : 장애인 및 가족, 관련단체 및 기관종사자 등

- 참가규모 : 120여명(자원봉사 및 운영요원 20명 포함)

- 참가비 : 1인 2만원, 동행인 1인당 5,000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참가비는 8월30일까지 온라인 입금

- 접수 :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65-1 대송빌딩 3층 장애인복지신문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2-6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장애인대학생실태및의식조사발표회

■ 장애인대학생 실태조사는

장애인 대학생이라는 특정계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 장애인대학생들의 학내 생활조건 및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 조사과정에서 장애인대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적 의지를 고취할 수 있으며,
 - 이후 장애인대학생 및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 실태조사는 서울지역 28개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대학생 132명의 명단을 파악하여 그 중 43명을 조사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후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실태조사의 목적

장애인 대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현재 대학생활에서의 문제점, 장애인 대학생의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정치의식 등을 조사하여 현재 장애인대학생 집단의 상태를 명확히 밝힌다.

1)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장애인 대학생의 과거 대학입학 이전 생활에서의 어려움, 대학입학 이후 현재의 학내 생활, 학외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장애인 대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실태를 알아본다.

2) 장애인대학생의 입장에서 본 전체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의 전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다.

3) 장애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장애인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장애인 문제 해결의 전망을 알아본다.

◦ 조사기간 : 1994년 9월 - 10월

◦ 주최 : 장애인문제의올바른해결을위한공동사업운영위원회

◦ 발표회

- 일시 : 1994년 11월 27일

- 장소 : 한양대

광주망월동참배

■ 광주망월동참배는

선배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투쟁의 성과 위에 발 딛고 사는 우리들의 최소한의 예의와 그 숭고했던 투쟁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전국장애인가족협회와 장애인운동청년연합이 통합한 지 2년째 되었지만 아직도 서로 잘 모르고 각 모임별로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일시: 1995년 5월 21일

◦ 주최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사무국

◦ 일정 : 9시 집결(정립회관) - 3시 도착(망월동) 및 참배 - 9시 도착(서울)

◦ 회비 : 10,000원

◦ 준비물 : 간편한 옷, 즐거운 마음, 경건한 자세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사회보장공청회 취업문제와 회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는 산재추방의 달 7월을 맞아 산재로 장애인이 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밝히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산재추방대책회의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이 공청회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일시 : 1995년 7월 19일 오후 6시 ◦ 장소 : 종로성당
 - 주최 : 전국산업재해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
 - 주관 : 산재추방대책회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후원 : 한국재활재단
- 진행
 - 사회자 : 이용근(민정련 전 노동위원장)
 - 주제발표 :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 토론발표
 - 산재장애인의 실상과 직업재활/ 김학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장)
 - 전체장애인문제속에서 산재장애인의 문제/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 산재장애인노동자문제와 사회보장에 대하여/
윤우현(전 국민주노동연맹준비위 집행위원)
 -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형력(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 질의응답



노릇돌창립공연

■ 노릇돌 창립공연은

장애인노점상 고 최정환씨를 추모하며 “분노 그리고 작은다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일시 : 1995년 9월 2일 5시 ◦ 장소 : 정립회관
- 주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주관 : 노래모임 노릇돌
- 찬조출연 : 류금신

■ 내용

◦ 플로로그

공연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여는노래 : 슬픔이 기쁨에게

◦ 제1장

한 사람이 중도장애인이 되면서 느끼는 절망감을 그린다.

노래 : 갈수 없는 고향, 휠체어에 기대어

◦ 제2장

행상,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한 장애인의 삶을 표현하고 대부분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상을 알린다. 노래 : 청계천8가, 창작곡

◦ 제3장

그러나 노점장사를 시작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자신의 노동을 통한 희망과 삶에 대한 애착을 그린다. 노래 :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희망의 노래, 내일이 오면

◦ 제4장

폭력적인 노점단속으로 더욱 절망스러워지는 한 장애인의 분노를 표현한다. 그분노와 한으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는 처절한 투쟁을 그린다.

노래 : 뒤돌아 보고, 끝내 살리라, 목숨(창작곡)

◦ 에필로그

한 장애인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노래 : 내 이름은 장애자, 장애해방가(창작곡), 그날이 오면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모형에 관한 공청회

-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모형에 관한 공청회는 특수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이 공청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특수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공청회를 준비하며 성동구 지역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과 일정 정도 관계를 만들었다는 데 성과가 있었다.
- 일시 : 1996년 4월 29일 오후3시
- 장소 : 성동구청 20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 주관 : 교육분과
- 진행
- 사회자 : 고제헌(전국장애인가족협회 교육분과장)
- 주제발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특수교육 발전방안
정정진(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모형
박진숙(전국장애인가족협회 교육분과원)
- 토론발표
기준현(성동구청 시민국장)
- 사례발표
유병우(올바른 특수교육 실천을 위한 대전시민모임)
- 질의응답

지역간부수련회

■ 지역간부수련회는

전장협의 이념을 지역 활동가와 공유하고, 지역활동가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어 2차례 진행되었다.

<94년 10월 제1차 수련회>

- 일 시 : 94년 10월 1일 - 3일
- 장 소 : 가평수련원

<97년 2월 제2차 수련회>

- 일 시 : 1997년 2월 22일 -23일
- 장 소 : 가평수련원

■ 내용

<이런 간부가 됩시다!!>

규율을 잘 지키는 간부!/정치정세에 민감한 간부!/항상 배우는 간부!/ 할 일을 계획하는 간부!/항상 메모하는 간부!/항상 회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간부!/새로운 일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간부!/원활하게 역할을 분담할 줄 아는 간부!/상호비판하고 점검하는 간부!/지역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간부!

<실무지침>

1. 실무교육에 대해
2. 실무교육 일반사항



전장협 후원회

■ 전장협 후원의 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동안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선·후배를 모시고 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기획되었다.

**행사
취지**

전국장애인강아지협회는 1982년 창립된 '밀알들'(이후 전국장애인강아지협회)과 1991년 창립된 장애인운동청년연합이 1993년 통합한 민간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동안 전국장애인강아지협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증진과 인권옹호를 위해서라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 스스로의 목소리로 여론을 형성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만 장애인복지는 진정 장애인의 것이 된다는 신념아래 군사독재 시절에서부터 문민독재에 이르기까지 온갖 거짓과 위선에 항거하며 비타협적으로 사회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청년정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악인 자본이라는 거대한 거림들에 걸린것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참으로 모질게 버티어 왔건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존립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로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뒤에서 또는 일선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IMF 시대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이나마 장애인 운동을 위해서 기여 낼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 민간장애인운동단체로서 제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후원회의 밥을 개최하여 전장협을 알리고 뜻있는 분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장협을 알고 지냈던 선후배들과 새로 알게된 가까운 친구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후원회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 주 최 : 전국장애인강아지협회 후원회
- 일 시 : 1998년 2월 28일 오후5시

■ 진행

- 1부 - 식전행사(5시) : 사회 : 고재현
 음악듣기 --- 15분/ 다함께 노래부르기 --- 20분/ 공연 --15분/
 통합이후 활동보고(슬라이드 및 비디오)--15분/
 전장협 활동보고 및 계획 --10분/ 후원가입 설명회--10분/
 보험설명회--5분
- 2부 - 개막식 (6시 30분)
 후원회장 인사말--10분 / 전장협 회장 인사말 --5분 /
 격려시 --5분 / 후원의 밤 경과보고--5분 / 광고 --5분
- 3부 - 식사 및 장기자랑 (7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세요

◎ 후원금액

- 1구좌는 매월 1,000원이며, 그이상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 : 통장, 통장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이체 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장협의 통장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로 : 후원회 가입신청서에 기록된 주소로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하오니 가입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 : 전장협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후원활동에 참여하시게 되면

-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때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후원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장협 신문과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행사 및 각종 사업에 초청,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부탁의 말씀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꼭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문의처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26-1 일신빌딩 501호 (139-207)

전화 : 3391-2251/2, 930-0320, 931-6198

팩스 : 3391-2253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후원회

후원회장 채 종 길

전하 장루 협주 점

- 전장협 하루주점은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중앙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이전자금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 하루주점의 수익금으로 중앙사무실 이전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다.
 - 일시 : 1998. 6. 27
 - 장소 : 동대앞 하이마트 호프집

주요 활동

◆ 투쟁사업

장애인노동권리확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경기대회
장애인의무고용율 1%하향조정 저지 결의대회
장애인7급공무원 정강용씨 임용봉쇄 철폐투쟁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반대 운동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열사 분신관련투쟁
장애인고용촉진경기대회
장애인노점상 이덕인열사관련 투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투쟁
장애인 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
장애인 대중교통권 확보운동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
전경련, 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기타 성명서 모음

장애인노동권리확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컨퍼런스

■ 제 1회 컨퍼런스 ■

일 시 ; 1996.4.7 ~ 4.20

장 소 : 제주도,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온양, 청주, 강릉, 서울

주 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후 원 : 한겨레신문사, 장애인복지신문사, 장애인신문사

협 찬 : 대한사회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림회관, 에덴하우스,
DPI, S&J라이프,

행사 취지

장애인고용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취업률은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매우 낮습니다.

15세 이상 노동 가능한 장애인중 32%만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장애인은 주로 자영업(40%)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31%), 단순노무(23%)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기업체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0.45%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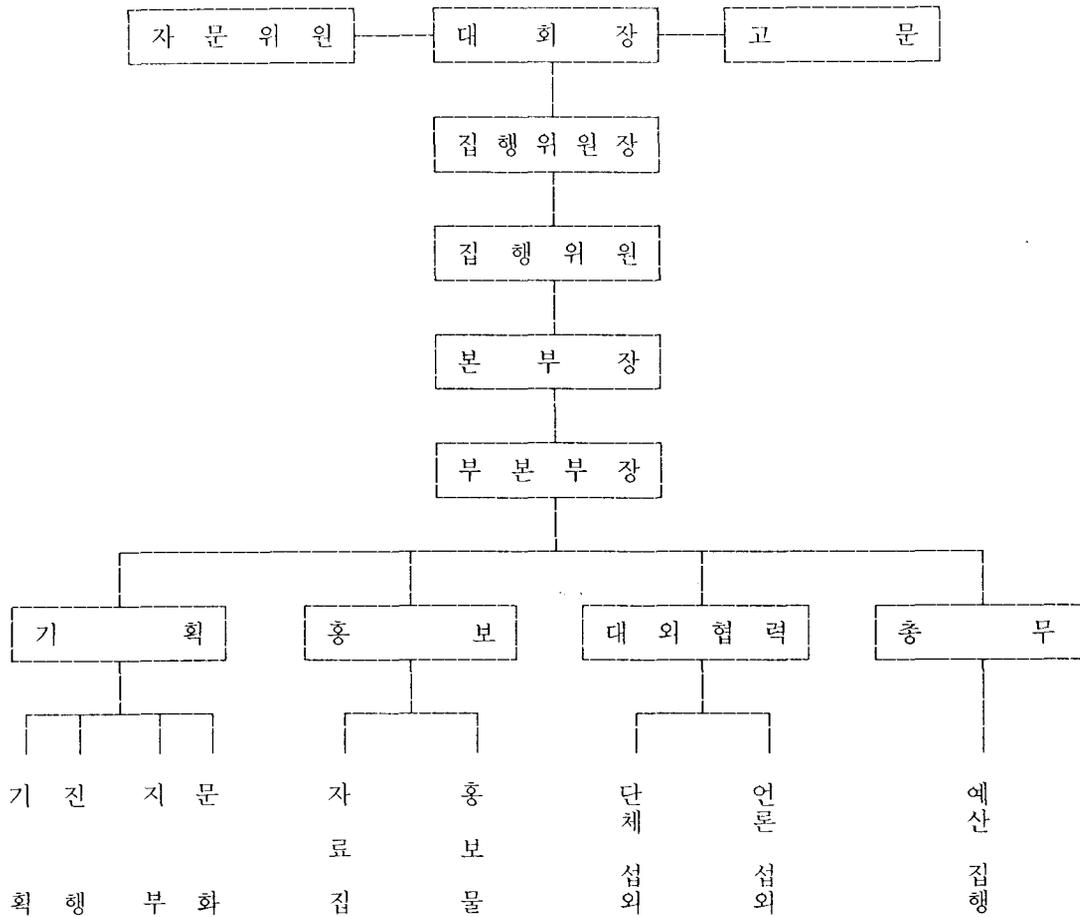
장애인고용의 또다른 문제는 보호작업장 등으로 사회와 격리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컨퍼런스를 통하여 사회에 알리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행사목적

- 장애인 고용문제의 심각성 고발
-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홍보
-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사회적 저변인식 확대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
- 장애인 복지 구현

■ 대회조직



■ 걷기대회 일정 및 개요

날 짜	지 역	장 소	시 간	참가예상인원
4월 7일	제 주	광 양	오후 12시	400명
9일	부 산	부 산 역	오후 12시	400명
10일	울 산	제1공업탑	오후 12시	300명
12일	광 주	도 청	오후 12시	250명
13일	대 전	대 전 역	오후 12시	500명
14일	온 양	온 양 역	오후 12시	150명
15일	청 주	상당공원	오후 12시	300명
17일	강 릉	강 릉 역	오후 12시	200명
19일	성 남	종합운동장	오후 12시	500명
20일	서 울	대 학 로	오후 12시	2,000명
계	13박 14일			5,000명

■ 평가

1) 초기준비단계

- 준비단계에서 중앙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초기 준비단계부터 팀으로 구성하여 역할분담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교육부에 일임하는 것부터 문제였다. 이는 중앙의 자체역량의 한계로 실질적인 팀 구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이덕인 열사 사건으로 기획이후 바로 준비단계로 착수하지 못했고 중앙부서장들 사정으로 중앙이 전체적으로 받아안지 못했다.

2) 지역건기대회

- 지역에서 현재역량을 초과한 사업이었으나 몇몇 지역은 관련단체와 연결하여 잘 치루었다.
- 대내적으로 지역대회를 성사하여 이후 지역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역대회는 지역별로 치룬 것 자체가 성과다.
- 지역언론이 받아안고 총선 직후 당선자들이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탈 수 있었다.
- 지부에 대한 중앙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대회였다.
- 지역조직의 활성화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부산지부의 반발은 예상밖으로 지부에서 행사를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로 승화시켜내지 못하고 결국 타단체의 힘을 빌어 행사를 치르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행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생긴 문제로 지부가 해체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 기획단계에서 지부대회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아 혼선을 가져왔다.

3) 대회장 및 집행위원 등의 섭외 및 결과

- 집행위원장이 너무 나선 경향이 있었다.
- 대회장 섭외부분은 대외적으로 일정 역할을 해준 분이었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본인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 집행위원의 경우 각 계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각 계에 장애인 문제를 알려내고 당일 대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형식적인 경향이 있었다.
- 서울대회에서 집행위원장이 실무에 일정 역할을 해 주었다.

4) 서울 본대회

- 당일집회는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조직동원도 잘된 것 같다.
- 본대회에 서울지부의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당일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의식적 준비가 부족했으나 전장협, 장애인운동과 관련해 내용을 가진 규모있는 집회로 자리잡았던 것 같다. 그러나 조직동원이 몇몇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점은 반성해야 한다.
- 충북지부는 본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는데 신설지부로서 대단한 성과라 하겠다.

5) 언론홍보

- 장애인계의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도 일정정도 홍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방송사의 기획·취재 등은 실패로 사전에 치밀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방송 인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6) 전체 성과물

- 타단체와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고, 장애인계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 대내적으로 지역대회를 성사하여 이후 지역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대외적으로는 진장협 이름을 알렸다는 성과가 있었다.
- 대내적으로 중앙단위의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가 아니라 지부의 실체를 파악,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고, 대외적으로 장애인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의 부분을 알려내고 부문운동으로서 장애인 운동을 알린 것이 성과라 하겠다.

■ 제2회 걷기대회 ■

일시 : 1997. 4. 20. 늦은 1시

장소 : 제일은행 본점 앞 ⇨ 종묘

주최 : 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한국장애인연맹

주관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후원 : 한겨레신문사, 장애인복지신문사, 장애인신문사, 복지연합신문사

참여단체 :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감신대 동료,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고려대 하니들다섯, 교통장애인협회, 낮은올타리, 뇌성미비연구회 바롬,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두리하나, 몬디덤돌,
명지대 키비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서강대 손짓사랑, 서울경인지역 장애인야간학교 연합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서울대 손말사랑,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에덴하우스, 연세대 개르니카, 연세대 동아리연합회,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연세대 웅성웅성 편집위원회,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풍물패협의회,
용인대 특수체육학과, 우리,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조합, 장애인문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특수교육학교연합회,
청년정보문화센터, 편한사람들, 한국소아미비협회 정립회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한국청년전문가연합회, 한벗회,
한신대 재활학과, 한양대 키비탄, 훈호우, 홀트노동조합

**행사
취지**

● **장애인 생존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생존의 문제는 노동에로의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2일 새벽에 시각장애인이 “생산성 없는 삶은 아무 의미없다”라는 단 한마디의 유언을 남기고 부산의 지하철 역에서 분신자살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장애인은 생존할 권리마저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채로 놓여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서, 길거리에서 비관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보건사회부의 「'95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의 32%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낮은 임금과 지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 '취업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기 위하여 90년에 장애인고용 촉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후 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의무고용은 거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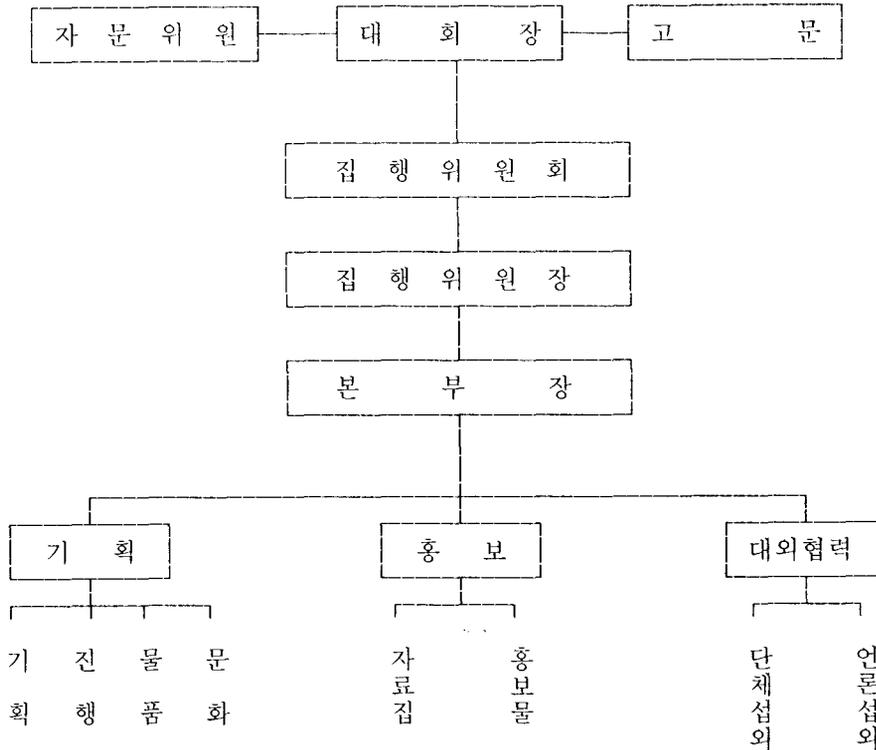
● **장애인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리 확보는 분명히 사회적 책임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국민거기대회를 통하여 열악한 장애인의 생존조건과 고용현실을 사회에 알림으로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이 직장에서, 거리에서,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행사목적**

- 제1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
- 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
-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 노동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
- 장애인과 일반인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 장애인복지의 구현

■ 대회조직



■ 대회 입연

- 대회장 : 서영훈(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고 문 : 강원룡(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 권영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김성재(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김중배(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정진모(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
 - 조일묵(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본부장)
- 자 문 : 김정희(부름의 전화 대장)
 - 박용수(한글문화연구회 회장)
 - 방귀희(장애인문인협회 회장)
 - 윤석용(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 이성재(국민회의 국회의원)
 - 이완수(정립회관 관장)
 - 이필두(전국노점상연합회 회장)
 - 임통일(교통장애인협회 회장)
 - 정덕환(에텐하우스 원장)
 - 채종걸(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고문)
 - 최병권(한국청년전문가연합회 회장)
- 집행위원장 : 송영욱(한국장애인연맹 회장)
- 본부장 : 이석형(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회장)

■ 행사 개요

I 부 - 문화공연(• 13:00 - 14:00)

- ▷ 노래공연 ◦ 길놀이
 - 노래배우기(장애해방가)
 - 노래패공연(꽃다지, 애오라지)
 - 수화노래발표(열손가락)
 - 노래공연(유금신)

II 부 - 추모제(• 14:00 - 14:30)

- ▷ 셋김굿(춤세상)

III 부 - 본 행사(• 14:30 - 18:00)

- ▷ 개회사 : 송영욱 집행위원장
- ▷ 애국의례
- ▷ 내외빈 소개
- ▷ 대회사 : 서영훈 대회장
- ▷ 연대사 : 권영길, 이성재, 조일묵
- ▷ 초청연사 :
- ▷ 결의문 낭독 : 이석형 본부장
- ▷ 걷기대회(제일은행 본점 앞 ⇨ 종묘)

장애인의무고용을 1%하향조정 저지 결의대회

■ 결의대회 배경 및 과정

94년 6월

중소기업협동중앙 위원회 공청회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 중의 하나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거론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춰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

7월

상공자원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중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당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힘

8월 9일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가지고 민자당과 당·정 협의

8월 14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중앙 집행위원회 1차 긴급회의

8월 17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중앙 집행위원회 2차 긴급회의
 [장애인의무고용을 1%하향조정 저지를 위한 전장협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태완(조직국장)
 부위원장 이재원(청년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보국 김종환(편집출판국장)
 투쟁국 이상호(청년학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외협력국 송병화(연구실장)

8월 19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황광식) 성명서 발표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의 하향 조정은 용납될 수 없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 성명서 발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인하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24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호외발행-'(가칭)법 장애인계 대책기구'를 제안하며

8월 25일

상공자원부 지체장애인협회의의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1%이하 방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노동부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통보

<하향조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내 용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상시근로자 기준고용율 100분의 2(300인 이상)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상시근로자 : 기준고용율 100분의1 (300인 이상)
법 령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제39조

8월 26일

가칭 '범장애인 비상대책회의'의 개최

참가단체 : 대한성인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8월 27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 청년단체 회원 소속 5명, 국회와 민자당에 항의방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9월 24일

장애인 의무고용율 1%하향조정 저지 결의대회

'정부와 민자당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인하 조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 장애인단체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함.

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8개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민자당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인하 조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 출범을 장애인 105단체에 제안한 것임.

성명서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의 하향조정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민자당과 상공부의 당정협약체가 발표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다시 한 번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89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힘겨운 투쟁의 성과로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2%고용'으로 결정된 것 만으로는 우리는 커다란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2%고용율이 제대로 실시된 지 2년도 채 안된 지금, 그리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90연말 7,758명에서 1,085명이 증가되어 고용의무인원 3만 9천명의 22.3%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인 지금, 기업과 정부는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1%, 국가유공자는 상시근로자의 2%로 고용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여기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1% 기준고용율이라는 것이 90년 장고법시행령 제정 당시의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시행령의 결정과정에서 100명 이상 사업장의 2%고용이라는 노동부안마저 경총이 반대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 2%고용으로 타협하게 한 것이다. 만일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기준율이 1%로 하락한다면 당시 지적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고용촉진법이 되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의지가 결국은 기업에 의해 조정된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율을 1%로 하락시키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아직도 장애인의 고용을 생산과 무관하게 인식하는 작태이며,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이려는 알뜰한 처사라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치는 현재의 장애인 고용의 미흡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지난 6월 노동부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과에서 98년까지 3,000여 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94-98투자계획]마저도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법제정 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어 보지도 못한 채 껍질만으로 남는 것을 반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장애인고용율 1%를 거부한다 !
장애인 생존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 !
장애인 노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94. 8. 19.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항 의 전 화 합 시 다!

민자 박성만 상공위 전문위원 (☎ 788-2908)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500-2714)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우리는 이번 장애인 의무고용율 1%하락 음모에 대해 4백만 장애인과 더불어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는 지난 89년 청년장애인들의 힘겨운 대정부 투쟁 끝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사망선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권리마저 박탈된 대다수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의무고용율 1%하락에 대해 단식으로써 거부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장애인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율 1%하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실로 열악한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 재벌을 비호하고 살찌우는 담보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분노한다. 더구나 정부와 기업 주장의 근거가, 장고법 시행 이후 현재 고용율이 0.39% 밖에 되지 않으니 1%로 하향조정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니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율이 저조하다면 더 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마땅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진단으로 장애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말인가. 1%의무고용율 하락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장애인들이 또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겠는가. 정부와 민자당은 1%하향조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이번기회에 장고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범장애인계의 총단결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장애인계는 모든 임의단체와 법인 단체들이 주도권 다툼이나 압투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법인 임의단체들이 제각기 '회의'를 제안하였을 뿐, 각자의 목소리만을 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 편승한 기업이 집단의 장고법에 대한 공세는 실로 위협적인 상황이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법인 및 임의단체, 장애인관련기관, 그리고 청년단체, 학생단체, 장애인단체, 부모단체가 모두 망라되어 장애인 대중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표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번 투쟁은 장애인계의 총체적 대응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영역별, 성격별 제단체가 적절한 역할을 맡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는 대책기구의 구성이 시급한 것이다. 우리 청년장애인들은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모든 투쟁의 현장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장설 것이다. 다시 한 번 범장애인계의 단결을 촉구한다.

장애인계의 대동단결로 의무고용율 1% 하락 음모를 분쇄하자 !

1994년 8월 27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단식지 5인
 김종환 김호원 이상호 이해영 임태완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합니다.

-5일간의 단식농성을 풀면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압력과 정부와 민자당의 야합으로 사장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고용을 확인했던 정부가 장애인고용율을 1%로 하향조정하려는 것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상태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의무고용이 국한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 고용을 거의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조차 부담금이나 자립사업장의 계열화로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가 고용의 일차적인 과제인 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조차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일차적인 주체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2%로 유지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장애인 문제의 전반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실제 장애인복지의 주체인 400만 장애인은 장애관련 제도에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것에 대해 기관의 장애인계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왔던가!

반목과 갈등, 단체 이기주의에 젖어 어느 누구도 400만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들을 장애인문제의 주제로 세우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장애인계의 단결을 내올 수 있도록 각 단체 마다의 역할을 묶어내고 올바른 방향과 목적들을 세우고 또한 이것을 상설화시켜 실제적인 장애인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어떤 시기 어떤 역사를 보아도 단결의 대가는 비싸다. 장애인계에 있는 모든이가 단결을 준비하고 그 대가를 자신의 집으로 짊어지고자 할 때만이 400만 장애대중에 대한 항명과 순교소에서 단결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만이 장애인 복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의 정상화라는 수세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노동권리 확보를 촉구해내기 위하여 이번 단식농성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과 이후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힘을 결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단식농성을 풀게 된 것은 장애인계의 책임있는 분들이 단식장을 방문하여 총단결에 대한 책임있는 결의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송영욱 변호사님, 장애인재활협회 조일묵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님,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김성재 위원장님, 에덴하우스 정덕환 원장님, 교통장애인협회 임동일 회장님의 '범장애인대책기구'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약속이 우리에게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번 회합과 단결의 과정에서 최초의 대중집회였던 8월 27일 장애인고용률 1%하향 조정 저지와 장애인계의 단결을 위한 제1차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투쟁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투쟁결의가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8월 27일 투쟁과 우리의 단식을 통한 장애인계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의 단결에 대한 약속과 결의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성. 장년 장애인 단체의 다양한 역할과 민주적인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범장애인계대책 기구가 가시화는 94년을 희망한다.

- 우리의 주장 -

1. 장애인고용률 1% 하향조정을 운명으로 거부한다.
2. 다시한번 장애인계의 총단결을 촉구하며 '(가칭)범장애인계대책기구'를 제안한다.
3. 대책기구를 가시화하는 모든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대책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장애해방 염원 투쟁 9년 8월 31일
장애인 고용률 1%하향조정 저지와 범장애인계의 단결을 촉구하며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단식농성자 일동

성명서

장애인의 노동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자당의 장애인복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8월 9일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협의회가 발표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장애인 의무고용율 1%로의 하향조정안은 그나마 장애인고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장애인이 노동자로 설 수 있는 권리를 고용촉진법으로나마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89년 제정된 고용촉진법은 시행령 34조에서 보여지듯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2% 의무고용으로 밖에 나타나지 못했다. 그나마도 시행은 91년 1%, 92년 1.6%, 93년 2%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었고, 이를 지켜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최저임금의 60%, 인당 월 13만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내면 될 뿐이었다.

이는 당연히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낮은 의무고용율에 적은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이루어내리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조치였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90년말 7,758명에서 93년말 8,843명으로 1,085명 증가되고 있을 뿐이고 기업은 일년에 고작 몇 백만원의 부담금을 내고는 의무를 다한듯이 행동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이 아닌 부담금을 내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때,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을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을 상시근로자의 1%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 사회의 가장 소외된 구석에서 아무리 힘없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인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1%로 낮아지면 지금도 도외시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겠는가. 기업은 지금보다 더 적은 부담금을 내려는 간교한 생각만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의무인원 6명에 대해 월 89만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내던 것에서 이제 그 반인 3명에 대해 40만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무시시키려고 한다. 장애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총체적 분석없이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장애인 고용거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해서 장애인 고용거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장애인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서 나오는 이런 조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며 장애인의무고용율 1% 하향조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장애인고용율 1%를 거부한다 !
장애인 생존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 !
장애인 노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94. 8. 24.

교통장애인협회 / 뇌성마비연구회비움 / 싹틔 / 자원활동연합회 /
 전국장애인허가족협회 / 푸른하늘가족모임 / YWCA만남의광장 / 경실련교통광장
 / 우리사회복지연구회 / 더불어사는집장애인일동 / 도시교통연구소 / 엠마오의집
 / 사랑의차태우기운동본부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회 / 공동리차량봉사대

우리의 입장

국민의 정부인가, 기업의 정부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에 명백히 규정된 ‘사회복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을 치장하기 위한 미사여구일 뿐인가? 우리는 ‘문민정부’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군부독재의 시퍼런 서늘 앞에선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민주와 복지와 사회정의의 이제는 일으며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들린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문민정부가 그토록 외쳐대던 개혁의 본질에 대해 하나 하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5, 6공 시절에도 철마다 등장했던 국제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해묵은 구호 앞에 노동자, 농민의 요구가 또다시 묵살되고 있다. ‘복지’라는 단어는 거내기조차 두렵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호언은 어디로 갔는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뿌리조차 사라지고 있다. 얼마전 사회복지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그들 민간기업의 입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향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는 없으면서 기업활동의 대상으로는 삼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자명하다. 결국 장애인은 ‘시장’으로서의 가치 대살일 수 없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결코 부당한 주장을 해오지 않았다.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노동력을 가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당장에 선진국형 복지를 내놓으라는 것도, 고귀한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장애인을 잘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을 주장해 왔을 뿐이다. 복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떼어 주었다가 필요하면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복지라는 식의 발상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 사고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은 장애인에게 있어 최소이자 최초의 권리 획득 과정이다. 직장이 없는 장애인에게, 계단을 내려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 승차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400만 장애인 중 무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제는 우리의 문민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지는 번명이 될 수 없다.

고용촉진법은 법안의 통과와 시행령 발표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장애인의 수가 90만명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적정 기준 고용율 2%가 산출되었고 그나마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의 산출에 의하자면 이러한 기준의 시행령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해도, 전체 실업 장애인 중 10분의 1도 안되는 인원만이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도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9년 이후 지금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정부가 발표한 고용의무인원 3만9천명의 22.3%만이 고용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여전히 장애인의 수를 100만명 미만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용 장애인 중 상당수는 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법의 효과로 추가 고용된 손인원은 1,085명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주장대로라면 60만명이 넘는 실업 장애인의 600명중 1명만이 추가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가막힌 결과이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근거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지원제도가 미흡한 점, 그리고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마비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과연 그런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의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장애인이 가질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대다수가 숙련공이 아닌 채로 국내에 들어온다. 결국은 장애인의 노동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용촉진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자.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부가 말하는 취지이다.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불리와 교육의 미비 등은 시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직업재활 서비스 문제의 경우 법 시행령의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예상된 한계였다. 장애인의 고용

에 대한 분석과 준비의 방안은 결코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대목이다. 기업이 부담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발견도 아니요, 굳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해서야 알 수 있는 어려운 경험도 아니었다.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시행 의지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1%기 경제를 살린다?

정부와 민자당이 발표한 소위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의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1%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 장애인 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선, 얼마전 노동부가 발표한 '94~98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계획'의 뒤늦은, 그리고 그나마도 제한적인 장애인 고용의 개선 전망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 의하자면 소요 기금의 대부분을 기업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이제 노동부의 계획은 또다시 4년 후에 반성문으로나 남게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1% 하향조정의 논리는 '현실화'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율이 고용의무율을 한참이나 밑도는 0.39%이므로 의무율을 1%로 낮추어도 장애인 고용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꾀변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노출인데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

나아가 3년간 적립된 980억의 부담금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의 대기업이 달성하고 있는 한해 매출액이 수 조에 달하고 있다. 물론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단 1억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장애인의 생존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이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산업인력 확보에 재투자되는 셈이 아닌가. 우리는 최소한의 이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자당이 이를 그대로 수렴하여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기업을 향한 귀만 열려있는가. 민자당의 장애인 복지는 선거철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가.

하나의 정부에 속한 부서들이라면 일말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계획이 발표되지 채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순간 순간의 '정책'만 있고 일관된 '정책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총체적 무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고용 촉진 시책이 벽에 부딪히면 보사부, 교육부,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차원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나가야 하지 않는가.

화살의 방향이 뒤바뀌고 있다. 경제 정책의 오류는 보다 본질적인 경제 구조의 분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인가?

지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 잡혀있다. 전세계적으로 거대해지는 자본의 힘이 국가를 축소시키고,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들을 풀어 헤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논리에 밀려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특히 장애인 분야의 후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자가 참아야 하고, 장애인이 차별되어야 하고, 환경이 훼손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라는 논리에도 양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질적투자에 대한 보증없이 규제완화라는 단기적인 방편을 내놓는 것, 특히 장애인, 환경, 산업안전 등의 국민적 생존에 관한 부분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걸맞지 않다. 단편적인 측면에서만 자본을 살찌우는 이런 정책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규제는 제정되는 것보다 푸는 것이 쉬운 데도 지금 타당성의 검토없이 정부는 기업이 요구하는대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규제들을 풀어버리려고 한다. 여당이라고 하는 민자당이 이를 부추긴다. '정책목적'을 저해하지 않고는 철폐할 수 없는 극히 민감한 규제까지 풀어버린다고 당당히 내세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더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이성적인 판단마저도 포기한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시적인 복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실행까지 이어지겠는가.

지금은 고용촉진법이 그렇지만, 이후 교육, 편의시설, 의료, 생활보장 등 어느 것 하나 지금의 경제논리로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고,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삶이 경제논리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가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은 장애인인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가칭)범장애인계 대책기구’를 제안하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기업가 집단의 전면적인 공세는 실로 위협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개별 단체의 소규모 대응이나 항의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처절한 장애인 생존권 투쟁의 현장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투쟁을 되돌아 보자. 당시 공대위에는 상당수의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관련 단체가 포함되었으며, 진정으로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 과정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과된 법안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비추어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고, 투쟁의 마지막 단계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대중은 장애인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가 참여한 국회에서의 타협 과정은 '의무고용율 1~5%'라는 애매한 문구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다. 결국 이것은 1년후의 시행령 확정시 경영계의 입김이 반영된 '의무고용율 2%'의 관철이 가능하게 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의 공대위는 형식상 범장애인계 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정으로 장애인 대중의 실질적 요구를 끝까지 수렴해 내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다시 싸움을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은 장애인 대중을 대변할 만한 실질적 대표기구조차 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급히 범장애인계 대책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계 현황에 대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장애인계에는 장애인 대중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만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 대중의 요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도 장애인 대중의 요구가 최소한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법인 단체, 임의 단체,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 단체, 학생 단체, 장애인 단체, 그리고 부모 단체가 모두 망라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의 내용적 구성은 이들 모두의 의사가 민주적인 형태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89년을 상기하자. 왜 투쟁이 왜곡되었는가. 마지막 단계의 투쟁이 민주적인 의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대표기구는 반드시 내용적으로도 대표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번 투쟁은 장애인계의 총체적인 대응을 수반해야 한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영역별, 성격별 제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대응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만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후 정부와 자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우리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역량을 축적하는 데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다.

어떠한 형태로도 변질되지 않는 투쟁, 어느 곳으로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일 개인, 일 단체의 입장을 위한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사수해 낼 수 있는 물러서지 않는 투쟁, 이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인계 모두의 발전과 단결을 준비할 수 있는 투쟁, 그리고 진정으로 장애인 대중이 중심으로 우뚝서는 투쟁을 이끌어 내자. 우리 청년 장애인은 이러한 투쟁의 모든 현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범장애인계 대동단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 7급 공무원 정강용씨 임용봉쇄 철폐투쟁

■ 사건 개요

- 11살 때 폭발물 사고로 왼손부상장애(3급3호)를 가진 정강용씨(1962년 출생)가 1988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93년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됨.
- 정강용씨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해서 충청도청이 7급 공무원을 2% 고용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정소송을 제기.
- 전장협은 정강용권리구제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정강용씨의 공무원 임용을 위해 노력함(구체적으로 1994년 12월 ‘장애인 7급 공무원 정강용씨 임용봉쇄에 대한 기자회견’ 공동주체)

■ 제소이유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 지방공무원법 33조 평등의 원칙 침해
- 장애인복지법 3조 2항 장애인차별금지조항 위반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 34조 2항 장애인 불이익 금지조항 위반
(충청도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209명인데도 160명만 9급에 채용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의 위반이다.)

■ 사건경위

- 1993년 8월 8일 : 충청남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함
- 1993년 9월 10일 : 불합격 발표. 당시 41명 모집에 1600명 응시자중 석차 21위였으나 불합격됨.
- 1993년 11월 8일 : 충청남도 지사에게 동 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와 임용절차 의무이행 확인 행정심판 청구제소.
- 1993년 12월 17일 : 정강용권리구조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1993년 12월 27일 : 행정심판 청구 기각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음
- 1994년 2월 26일 :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
- 1994년 12월 : 장애인 7급 공무원 정강용씨 임용봉쇄에 대한 기자회견 공동주체
- 1994년 12월 16일 : 선고공판

■ 이후 사건 전개과정

1. 1995년 4월 4일 대전고법 승소판결

지난 4월 14일은 3년여 동안 열차례 공판을 끌어오던 정강용씨 사건에 대해 드디어 대전고등법원에서 충청남도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부장판사 최병학)는 정강용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7급행정직 공개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제도에 대한 피해로 불합격 처리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정강용씨에게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열린세상 1995. 7. 제12호)

2.1997년 3월 28일 대법원 패소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8일 정씨가 94년 충청남도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장애인복지신문, 1997. 4. 4)

3. 1997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

보도자료

▷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및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최근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장애인으로써 응시한 정강용(31세, 지체장애3급)씨가 위법부당하게 불합격 처분된 사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자료를 송부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지체 장애인 정강용은 88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공·사 기업의 채용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처분되었음.
- ▷ 지난 93년 8월 8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 7급행정직 공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처분되었음.
- ▷ 당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밝힌 합격선은 82.22점 이었으며 정강용의 취득점수는 78.33이었음.
-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강용은 합격자 41명중 39명이 군복무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특혜로 각각 총점 45평균점에서 5점씩을 부여받은 사실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장애인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법정 장애인고용 의무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1,2항)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 현재('93.12.16) 정강용은 12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예정이다.
-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행정심판위원장을 충청남도 인사위원장이인 부지사로 결정함으로써 심판이 제기된 사건의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심판까지 맡게 되어 공정한 심판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명서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가 분신자살한 지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영세 중증장애인의 현실이 철저히 드러난 매우 가시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초보적인 장애인 문제가 노정된 상태에서 93년 충청남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정강용'씨에 대한 위법 부당한 법의 적용 및 판결은 또 다시 반이성적인 정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정강용씨는 대학을 누구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자그마치 6년간이나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필답고사에서는 타응시생보다 월등한 성적을 획득하고서도 면접과정에서 탈락하는 어려움을 감당하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만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93년 9월 8일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지빙공무원 임용 공개경쟁에 응시해 78.33이라는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다. 이 점수는 군필자 가산점 5점이 합산되었을 경우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은 점수였다.

이것은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 동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34조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호를 받는다"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경쟁 모집인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충분히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장애인에게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유공자예우법 70조와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 2항을 똑같이 철폐하여 군 제대자, 장애인, 여성 등 일체의 모든 수험생에게 균등하게 자유경쟁의 기회를 허용하든지 국가유공자예우법 70조와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 2항을 똑같이 적용, 이행하여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내려진 대전고법 판결 역시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정강용씨와 비대위를 무색하게 했고, 여전히 장애인을 엄연한 인격으로 보는 것을 철저히 배재해 버리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 8일 최정환씨의 분신사건을 보면서도 알았지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이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허구적인 세계화 구호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더는 희생시킬 수 없기에 분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 불이익을 책임질 수 없다. 그보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정강용씨에 대한 불합격 처리를 취소하고 부당한 판결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주장

세계화 허구속에 장애인복지법 기만이다. 정강용씨의 합격을 인정하라!

말로만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정부부처에서 솔선수범하여 지켜라!

장애인의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장애인 임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라!

1995. 4. 14.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반대운동

■ 개요

- 94년 12월 정부는 2배수고용제와 재활시설 연계고용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자 했다.
- 이에 전장협은 이 내용이 장애인고용의 실질적인 향상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인간화한다고 판단하여 개정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 당시 국회의원 원혜영의원을 비롯 국회에 개정내용의 문제점을 알려나갔으며, 12월 19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최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 이에 정부의 개정안에는 2배수고용제 항목은 누락되었으나, 연계고용제는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서 내용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내용의 문제점

올 초부터 기업과 정부는 의무고용률 하향조정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장애인 진영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치자 공식적인 철회의사 없이 잠잠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다시 장애인고용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의무고용률 하향조정보다 더 교묘하게 법률 문안들의 수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어짐.

내용별 문제점

라. 보조금 고용제의 신설(안 제37조 제4항)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시 강제징수되는 부담금(벌금)이 장애인들의 고급기술 습득을 위한 시설건설과 프로그램개발등에 투자되어야 함에도 기업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모순을 갖고 있음.

마.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의 신설(안 제38조제3항 단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2급까지 확대한다는 규정은 기업으로부터 고용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견지않겠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애인고용률의 하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률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어질 수 있다면, 반가운 일로서 고용률 또한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

바. 재활시설 연계고용제 신설(안 제38조 제3항)

도급제의 신설로 이는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립작업장과 같은 곳에 도급을 줌으로서 고용과 같은 효과를 보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촉진법의 본래 취지인 사회통합에 크게 어긋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사. 장애인고용 부담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조정(안 제38조제5항)

기간조정은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벌금납부 기한 자체의 연기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촉진법 자체는 기업이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법으로서 기업의 의무이다. 부담금 자체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 법률이 정한 납부금 강제징수는 법의 실효성을 강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자. 기금의 용도에 고용보조금 추가

이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벌금을 기업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다시 환원하는 조항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장애인이 다음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진다고 할 때 확보된 기금은 다음 3가지 영역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으로 기금의 용도에 고용보조금 추가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됨.

1. 재가 장애인 : 재가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과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함.

그러므로 재가 장애인을 위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시설 대폭 건립 및 취업을 위한 이동상담서비스 확대강화가 시급히 요구됨.

2. 수용시설 장애인 : 시설 수용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임.

현재 고용촉진공단의 이동상담서비스 제도가 있으나 상담의뢰가 없으면 시설등을 순회방문하지는 않고 있으며, 수용시설 장애인들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법인 수용시설 및 고용촉진공단등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이 절실히 요구됨.

3. 노동하는 장애인 : 노동하는 장애인들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3D업종 종사자 및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분됨. 노동하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시급히 요구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현재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노동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등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단지 고용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으로서 노동하는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참고**

노동법에는 각 계층(여성, 아동)에 대한 착취금지 및 보호조항이 있으나 장애인계층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으며, 고용촉진법 또한 고용촉진을 이유로 장애인들의 질 높은 기술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등에 쓰여져야 할 예산(납부금)이 기업주에게 다시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예)3D 업종의 경우 청각 장애인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으며 프레스작업중 손 잘릴 경우 일반산재처리를 받게 되는데 청각 장애인에게 있어 손은 언어입과 동시에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불가피함.

차.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조정(안 제62조 및 제64조 제1항)

의무고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전체 고용촉진법안 내용 중 중요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의해 힘을 받고 있다고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고용촉진법 자체는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법으로서 기업의 의무이다.

고용촉진법의 위반은 경미한 사안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사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회 장 황 광 식

■ 열린세상 제10호 칼럼

국민의 정부인가, 아니면 기업의 정부인가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부처

서인(회원)

4백만 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기로에 놓여 있다. 다름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희생양으로 도마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조만간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무고용 시행 3년이 경과됐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가 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인식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뜯어 보면 과연 '국민의 정부'가 장애인 고용정책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개정안의 의도는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해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지 결코 4백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개선일는지 몰라도 우리네의 관점에서는 개악에 불과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장고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막연한 문구에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 촉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노동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이것의 전제없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명분 역시 그럴듯하다. 경증장애인만을 선호하는 현행의 세태속에는 중증, 중복장애인(단순히 등급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의미한다. 현행 복지법상 등급판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등이 설 땅은 방구석밖에 없을 것이 뻔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를 이같은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이 앞선다. 그 실질적인 의도가 기업체의 이해를 옹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하나로 일부를 명목상 양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이다.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다시말해 기존의 노동환경하에서 경증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협소한 상황인데 하물며 2배수 고용인정이라는 장치만으로 중증장애인에까지 그 기회가 확대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몽상일 것이다. 중증장애인고용은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전제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어쨌든 정부는 그 실효성 여부와는 별도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를 아주 싼 값(기껏 2배수 인정이라는 미끼만으로)으로 명분을 획득한 셈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주가 2급이상이라는 근거에 입각해 고용비용이 저렴한 중증장애인(주로 2급에 해당할 것임)들을 선별함으로써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가능한 2급 이하의 경증장애인들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나, 만일 노동생산성과 고용에 따른 비용지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담금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의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기업측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보장을 기업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자본의 원리에서 벗어난다.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의 직접투자에 의한 보호작업장 등의 형태보다 현실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우수사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와 고용보험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안도 마찬가지로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위해서는 기업체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성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안은 앞뒤가 전도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법 시행이 4년이 되도록 현재의 고용 장애인 수가 의무고용대상자의 20%를 겨우 상회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수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보조금제의 시행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에 앞서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수사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와 고용보조금 조항 역시 현정부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가 반영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정부의 편향적인 자세는 연계고용제의 신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노동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천민적인 정책관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하청구조를 발판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설이다. 하청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희생으로 지금의 대기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제의 시행은 바로 이같은 하청구조의 도입에 다름아니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보다는 역으로 장애인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불균등한 부의 분배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반동적인 경제정책이다. 기존의 영세한 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청계열화시키는 이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신설이 만일 영세한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기반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기업에 종속된 하청업체 방식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부의 개정안은 국가의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거의 도외시 하고 있다. 기껏 교육, 홍보 등의 인식개선 부분만이 추가됐을 뿐이다. 장애인고용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극히 인색했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이번 개정안은 반장애적인 개악이다. 장애인들에게 지극히 제한된 노동기회를 열어주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자본의 책임을 경감해 주고 이것도 부족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실질적인 의도이다.

현 남한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반동적인 정책인 의무고용제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하에 진정 4백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시된 개정안이 마련될 때 '국민의 정부'로서 현정부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다.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95년 7월 18일 전국장애인헌기축협회

제38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4항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개정안에서 중증장애인의 2배수인 정 고용제와 고용지원금 부분만이 삭제된 채 이루어졌다. 당시 문제가 됐던 연계고용제는 아무런 보완도 없이 그대로 남았으며, 다른 모색도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법안을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장애인의 실질 취업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부담금을 감면시켜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회수된 부담금을 다시 기업으로 돌리는 측면에만 방향이 맞추어진다면 그것은 개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직업재활시설의 산적한 문제해결에 대한 보완없이 재활시설 연계 고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열악한 작업조건은 차치하고라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수준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은 한 톨이 아니다. 이러한 개선은 장애인 2% 의무고용제의 이행여부와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노동부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관할이라며 그 열악함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위해 현재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직업재활시설이 이용되고는 있으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사회 속에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통합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실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연계고용 인정제가 현 장고법 안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립직업장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2%의무고용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고법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나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온 개정안이 실제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킬 수 없고, 여전히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갖지 않으며, 그 원칙조차도 장애인의 사회통합과는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주의 편의만이 고려되어 있다면 이 개정안은 개정이라는 오식행위 이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개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진정 장애인의 실질 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 법 개정이 아니라 의무고용율의 상향과 사업장규모(300인 이상)의 축소, 기업부담금액의 증가라는 기본적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분신관련투쟁

■ 분신사건 개요

95년 3월8일 오전 8시50분경 서초구청 단속반과의 실랑이끝에 노점에 필요한 스피커와 배터리를 빼앗긴 최정환(37,지체장애1급)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5분경 구청 당직실로 압수당한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거부당하자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강남병원으로 이송된 최정환씨는 얼굴 3도, 신체 2도, 전신 88%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기도절제후 산소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 오던 중 95년 3월 21일 오전 1시50분경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삼륜 오토바이에 카세트 테이프 좌판을 신고 노점을 하는 최씨는 94년 7월경에도 서초구청의 폭력단속반의 폭행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 당시 구청측에서는 최씨가 고소하지 않으면 노점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최씨는 분신후 병원에 실려와서 “4백만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내 한목숨 죽어도 좋다”, “복수해 달라” 고 절규해 이번 분신이 개인차원의 한풀이가 아닌 근본적인 장애인문제를 사회에 알려내려는 의지임을 표현했다.

■ 투쟁일지

3월 8일

- 오후 9시 45분경 서초구청 당직실에서 분신

3월 9일

- 오후 1시경 분신소식을 접한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의 단체회원 70여명은 서초구청을 향의방문함. 이 자리에서 구청 건설관리국장, 정보과장 등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으로 구청직원 1인을 파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6월경 단속반에 의해 최정환씨가 부상당한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 이라고 약속했으나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오후 4시경 회원들은 다시 서울시청을 향의방문해 ‘시장면담’,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확답도 듣지 못하고 당시 최정환씨가 옮겨진 강남병원에 집결함.

- 오후 6시30분경 병원에 모인 3개 단체 대표들은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분신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현)를 구성함.

3월 10일

-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분신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3월 11일

- 오전 11시경 전노련, 성장협, 전장협, 학생단체 등 회원 3백여명은 서초구청 앞마당에 집결해

·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분신사건에 관한 폭력단속반 해체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영세장애인 및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함. 또한 항의의 표시로 최정환씨가 노점을 할 때 사용하던 삼륜오토바이와 카세트테이프 및 좌판을 소각함. 대회 참가자들은 책임자와의 면담을 위해 청사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서초구청측은 진경 5백여명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고 청사내로 들어가지 못한 참가자들은 이후 구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이번 분신사건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대시민 홍보전을 벌이고 오후 2시 30분경 다시 병원에 집결해 정리집회를 가짐.

- 오후 7시경 강남병원에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02-569-0317) 마련.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분신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발표.

3월 15일

- 12시경 종묘에서 1천5백여명의 철거민 등이 참여한 '전국철거민대회'(전국철거민연합회 주최)에 비상대책위원회 김도현 위원장이 참가하여 연대사를 낭독했으며, 비대위 자체 홍보물로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분신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보완 발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분신사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3월 16일

- 오전 11시 종묘에서 있었던 전국노점상연합회 주최의 '살인단속 분쇄 및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사건 규탄대회'에 참가함. 약 1천8백여명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김영삼 정권의 노점상 대책의 부재와 살인적인 폭력 단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함. 또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최정환 분신 사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가 분신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 정치적인 상황들을 진단하고 세계화의 허울 속에 자행되는 기층민중에 대한 탄압을 폭로, 이후 강고한 민중연대로 민중생존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함.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마지막으로

1. 전국적으로 노점상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등 벌과금을 철회하고, 대책없는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
2. 각 구청에 고용되어 있는 불법 폭력용역반을 즉각 해체하고 용역반에 의해 자행된 폭행 등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치료비를 즉각 보상할 것.
3. 서초구청의 무차별 폭력단속으로 결국 죽음의 분신으로 이끌었던 최정환씨의 분신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한 후 평화행진에 들어감.

오후 2시 30분경 도로진출을 시도했으나 진경 약3천여명의 저지로 심한 몸싸움을 벌임.

오후 2시 50분경 대열을 정비한 후 봉쇄를 뚫고 종각 - 을지로 2가 - 명동성당까지 최정환씨 사진을 담은 피켓과 프랭카드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국민 홍보전을 벌임.

오후 4시경 명동성당에 도착해 내무부로 항의방문을 간 대표단을 기다리며 진경과 대치함. 오후 6시30분경 대표단이 도착하여 면담내용 발표함.

<면담내용>

1. 폭력용역반에 해체요구 - 단속반은 해체할 수 없고 다만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겠다고 약속함.

2. 광주광역시 풍물시장 시한 연기건 - 자세한 상황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함.
3. 장애인 노점상 생계대책 마련 요구 -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가판대 점유 및 택시운전자격을 주는 것 등을 마련하겠음.
4. 전국 노점상에 대한 과대료, 부당이득금 징수 고지서 등의 해제 - 가게 또는 노상적치물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것이나, 노점상은 생존권차원이므로 동일하게 단속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함.
5. 최정환씨 분신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요구 - 서울시청에 지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노력하겠다고 함.

오후 7시경 전국노점상연합회의장 권한대행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함.

3월 18일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성명서 발표.

3월 20일

- 환자 상태 악화.

3월 21일

- 오전 1시 50분경 최정환씨 사망.
- 사망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장애인노점상최정환열사빈민장장례위원회'로 전환.

3월 22일

- 장례위 참가단체 확대.
- 장례식 실무준비.

3월 23일

- 장례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3월 24일

- 오전 11시경 영안실 주변 진경 20개 중대 배치되어 시신이 장례식장인 연세대로 가는 것 봉쇄하고자 함.
- 오후 10시경 생선판매펀트릭에 시신을 위장하여 연세대로 가던 도중 진경들에 의해 시신탈취당함.
- 오후 11시경 시신이 탈취, 보관되어 있는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신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함.

3월 25일

- 오전 7시경 시신이 연세대로 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시신을 돌려받음.
- 오전 9시경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인 연세대로 가는 것을 재시도하였으나, 강남병원 정·후문을 쓰레기차로 막아 연세대로 가는 것을 포기, 용인장지로 떠나 장례를 치름.
- 오전 11시경 연세대에서 2,000여명의 학생, 노점상, 장애인, 사회단체, 시민 등이 모여 규탄집회를 가짐.

■ 투쟁평가

중증장애인과 기층민중의 생존권 문제 사회공론화 일정정도 성공

이번 최정환 열사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추구해왔던 시민운동, 복지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본질적인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전면 제기하고 장애인 단체들의 단결된 모습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그러나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인 단체들의 소극적 대응과 단체 이기주의적 사업작풍으로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 전체 투쟁평가

1.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 연명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조차 실천적으로 결합하지 않았고 각 단체별로 절박성을 공유하지 못했으며, 장애인 단체들을 포괄, 조직화하는데 전장협의 영향력이 부족했다. 또한 각 장애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한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2.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문민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중증장애인과 기층민중의 생존권문제를 전반적인 사회여론화시키는데 일정정도 성공했으나, 대중투쟁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침체되어있던 민중민주운동단체들이 각각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단일한 전술로 국민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3. 국민대중에게 장애인 복지문제의 심각성과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는 것과 함께 재야인사와 진보적 민중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운동의 열악함을 알고, 이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있음을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4. 투쟁에 함께 했던 여러 빈민 운동단체들과 전장협의 연대활동이 이후 다양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공동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한계에서 탈피하여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며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야 함을 알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장협 비상대책위 활동평가

전장협 비상대책위 내에 안정적인 논의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상황을 총괄하고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데 문제가 드러났으며, 따라서 특정단위에 일이 집중되고 비대위체제안에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원들이 생겼었다. 또한 전체 비대위에서 전장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도 내부활동을 제대로 총괄해 내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의 구성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이다. 그러나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투쟁했으며, 전장협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싸움이었다.

앞으로 전장협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 발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 승리적 경험이었다.

투쟁자료집권두언

최정환동지의 가열찬 투쟁을 헛되게 하지 말라!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며, 남아 있을 우리들에게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 그를 안쓰럽게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자신의 한 몸 불살라 가난과 장애인이라는 멍에를 날려 보내고자 했던 희망을 이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다. 자신의 분신(焚身)을 헛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유언인 것이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밑바닥까지 내려 앉고만 삶. 척수장애에 한 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길거리에서 노래테잎을 팔아 연명해야 했던 모질디 모진 삶이었건만 그도 모자라 폭력단속반에게 성한 다리 한 쪽마저도 빼앗겨야 했던 기구한 운명이 그의 이력이다. 그러나 이 냉정한 사회는 월세 10만원 단칸 셋방의 궁색한 서른 일곱의 생존을 허용치 않았다. 노점가판대의 스피커 배터리를 빼앗음으로 그의 삶을 압류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신나를 끼었고 상체만 남은 몸뚱아리를 불살라 불의한 억압을 물리치려 했다.

타들어 간 뼈와 살가죽의 고통스런 의식을 부여잡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1주일 가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과연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고자 했을까?

‘복수’ 아니면 언놈의 말대로 ‘서초구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을 확보’(장애인에게서 그나마 지명도 있는 한 단체의 실무책임자가 이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하기를 바랬을까? 과연 그를 죽음으로 내몬 서초구와 서울시 그리고 내무부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서슬퍼런 노점단속의 눈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가난과 장애라는 천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자신 아직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증오와 분노의 근저에는 인간다운, 그리하여 빈곤과 저주스런 몸뚱아리에 찍힌 낙인을 지우고 평화와 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인식처가 있는 해방된 사회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빈곤의 굴레를 벗고 장애인이라는 족쇄를 풀고 노동하는 망치소리에 흥에 겨워 너와 나 함께 신명나게 더듬실 어깨 춤 추는 그런 인간다운 세상이 그로부터 거취들여야만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여기 살아 남아 있을 우리들이 그를 옥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새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대오를 꾸리는 것이다. 죽음마저 자신의 치열한 생존양식의 하나로 포용하려 했던 그의 가열찬 투쟁을 헛되게 하지 말라.

최정환 동지여! 부디 죽음보다 더할 고통에서 일어나 해맑은 봄 햇살로 우리의 조인 가슴을 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같이 열어 제쳐 봅시다.

1995. 3. 15

전국장애인가족협회 회원 서 인

성명서

지난 3월 8일 오후 9시 서초구청의 노점행상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생계수단마저 빼앗긴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의 분신을 접하면서, 우리는 지금 또 다시 더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를 느낀다. 더우기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한 명의 장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그 시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자랑하고, 세계12위 무역국이라는 허울로 후진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문민정부에서조차 장애인의 생존은 여전히 짓밟히고 있다. 우리의 정부는 잘난 사람들만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이번 사태는 400만 장애인을 포함한 이 땅 기층 민중 모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단적으로 드러낸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탈은 무수히 자행되어 왔다.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으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기관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가해와 폭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모든 곳에서 내몰린 이 땅의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 강탈한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최정환씨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강탈하려고 한 정부에 분신으로 항변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이면 무조건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하여 폭행하고 부수는 현 정부가 고통한 단속반에 대해 아무 힘도 없는 이 땅의 장애인, 이 땅의 노점상을 대변해 몸을 불사른 것이다.

철저히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로 살아왔고, 마지막 살고자 하는 발버둥마저 외면당해버린 최정환씨의 삶이 곧 우리 장애민중의 삶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장애인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그 노점에서마저 쫓겨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현 정부의 허구적인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 장애민중의 뒤편 차디찬 눈총과 무자비한 방망이 그리고 죽음 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정환씨의 분신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전체, 기층민중 전체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분신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응징하고,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에 맞서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장애인 생존 압살하는 세계화는 기만이다 !
-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라 !
- 폭행단속반 해체하라 !
- 서초구청장 해임하라 !
- 내무부장관, 서울시장 퇴진하라 !

1995. 3. 15.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분신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회, 청년학생대표자모임, 전북장애인운동청년,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 연락처 : 강남병원 569-0317

성명서

이 땅위에 영세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했던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37, 지적장애 1급)의 분신은 '중증영세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후진국의 사회복지를 지원하겠다는 세계화를 외치는 현 정권이 기증 장애인 민중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에 대한 4백만 장애인중의 항변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경 서초구청 폭력단속반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던 최정환씨는 채 6개월도 지나지않은 3월 8일 또다시 노점에 필요한 스피커 배터리를 압수당했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스피커 배터리를 찾으려다가 거부당하자 온몸에 시너를 끼었고 분신했다. 최정환씨는 전신에 88%의 화상을 입고 기도를 절제한 후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에 실려온 직후 '4백만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내 한몸 죽어도 좋다' '복수해달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유일한 생계수단마저 빼앗아가는 현 정권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분신으로 항거한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쳐도 돌아오는 것은 온갖 억압과 냉대뿐 이었다. 현정권은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난한 장애인중, 나아가 전 민중이 다함께 잘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탈 수도 없는 지하철 요금이나 면제해주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공영입장로나 할인해 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인가. 장애인의 취업은 늘려주지 못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부담금만 걷어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몰라 찢찢매는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인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취업된 장애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생계가 보장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는 것인가.

이름만의 법이 아니라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에만 급급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80만의 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 안에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과 노동권의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장애인중의 분신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장애인중을 탄압하고 벼랑으로 내몰아가는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밝히고 4백만 장애인, 나아가 기증민중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올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 우 리 의 주 장 -----

- 중증영세장애인 생활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 기증민중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 노점상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단속반 해체하라 !
- 최정환분신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

1995. 3. 15.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장애인 고용촉진 쉼기대회

■ 내용

95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장협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산재노동자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쉼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세 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종각에서 마로니에 공원까지 거리선전전을 펼쳤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자-장애인 공동결의문

수백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땀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일터이다.

장애인들은 이른바 '비장애인'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발생률이 전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속에서 오늘의 비장애인들은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불량품이 결코 아니다. 외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종류나 등급에 따라 적절한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일거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와 '삶의 질'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속에서도 수백만 장애인들의 삶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채 비참하기만 하다. 법률상으로 지난 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발표에 따르면 94년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0.4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의 장애인 고용기피와 의무고용 위반시 많지 않은 부담금만 물리게 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건물에 휠체어용 화장실조차 없는 등 장애인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속에서 얼마전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최정환씨가 분신자살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과 때만 되면 일회성 행사나 벌리는 정부의 잘못된 장애인정책은 송두리채 바뀌어 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이 땅의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단체인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와 장애인단체인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산업재해자들의 단체인 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자와 장애인의 연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사용자들의 장애인고용기피를 조장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라!
1.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원성속에 직업소개소의 역할이나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정상화하고 장애종류와 등급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역할이나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정상화하고 장애종류와 등급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
1. 장애인들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준비의 소속 1천2백여개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

1995년 4월 20일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장애인노점상 이덕인열사관련 투쟁

■ 사건개요

95년 11월 28일, 인천 연수구의 아암도 앞바다에서 한구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변사체의 당사자는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회원이었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남, 29세)씨로, 95년 11월 24일부터 공권력과 철거용역의 노점철거에 맞서 망루에서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다 25일 저녁 9시 경에 망루에서 내려간 뒤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이에 전장협을 비롯한 12개의 단체들은 ‘장애인노점상 故 이덕인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 故 이덕인씨 노점활동 과정

이덕인씨는 6급 3호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6월부터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결성한 “장애인 자립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도에서 노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노점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여러차례에 걸친 구청의 협박 속에서도 이덕인씨는 필사의 몸부림으로 노점단속을 거부하였다.

■ 아암도 철거계획의 의혹과 허구성

아암도 철거에 앞서 기획된 아암도 개발은 급조된 것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채 의혹점만을 안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예비비에서 5억 6천만원을 절삭선 철거 경비로 지출했고, 그후 이것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로 인해 몇몇 공무원의 훈장상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는 철책선 철거 후 새로 발생된 노점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지 않고, 공권력과 철거용역 반원들을 투입하여 강제철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현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과욕과 행정부재에서 출발하였다는 지적이 인천내의 지배적 여론이다. 이렇듯 최기선이 장애인 문제와 도시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언론발표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이 증명되고 있다.

■ 강제 철거 과정

11월 24일 오전 7시, 공권력과 철거용역 등 1,500여명이 아암도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 난입하였다. 노점을 하던 30여 노점상,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강제철거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30여 노점상, 장애인 들은 강제 노점단속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10월경에 건설한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권력과 철거용역들은 망루에서 농성을 전개하는 농성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함께 내려 오라는 협박을 하며 혹한의 추위속에 소방차를 동원하여 소방차의 물대포로 망루의 노점상 장애인들에게 물을 뿌려 얼려 죽이려 하였고 돌맹이를 던졌다. 그 과정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은 쏟아지는 물과 돌맹이를 몸으로 막으며 필사의 저항을 전개하였다.

공권력에 의해 쏟아지는 물대포와 돌세례를 맞아 이미 탈진의 지경에 이른 망루 농성자들은 공

권력에 의해 일체의 식수와 음식물을 차단당한 채 뜯눈으로 밤새 주변을 경계하며 죽음과 같은 추위와 싸워야 했다.

망루의 농성자들은 살인적인 추위와 물대포, 돌맹이 세례 속에서 28일까지 5일 동안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견디어 내야 했다. 28일 아침 시신이 발견되자 공권력은 황급히 망루를 무력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고, 농성자들은 이덕인씨의 죽음이 확인되자 전의를 상실하고 농성을 해제하였으며 전원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 실종과정

25일, 한모금의 물이 간절해 공권력에게 “물만이라도 마시게 해 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그 위에서 굶어죽기 싫으면 내려오라”는 차가운 경멸만 되돌아왔다.

25일 저녁, 이덕인씨는 연행 후 구속될 시 준비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의 미달조건이 우려되었고, 고립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외부로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공권력의 포위망을 뚫을 결심을 하고, 이석근씨와 그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후 8시 45분경에 실행에 옮긴다.

망루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경운기 통로를 통해 포위망을 뚫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망루의 뒤쪽으로 지상까지 먼저 내려간 이덕인씨는 이석근씨가 내려오기도 전에 공권력에 발각되었으며 그 후의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이때 주변 상황은 망루 위 농성자를 연행하기 위해 약 200여명의 경찰(백골단, 전경)이 어룡소 해안초소 주변에 있었고, 군도 대민 마찰을 우려한 상부의 철수 지시로 24일부터 초소에서 철수하여 28일 오후에 재투입되었다.

■ 시신 발견 과정

28일 오전 8시경, 극도의 허기와 추위에서 보급된 음식물로 근근히 버티오던 농성자들은 망루에서 50여미터 떨어진 바닷가에 한구의 변사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망루 농성자들은 즉시 주변의 경찰(당시까지도 경찰 200여명이 포위망을 치고 있었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 시신은 다름 아닌 지난 25일 행방불명되어 망루 농성자들을 시름에 빠지게 했던 이덕인 씨였다.

발견 당시의 이덕인씨는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물속에 얹어져 있었으며 시신의 뒷모습은 줄로 포박을 당한 형태(죄수를 호송할 때 양손목과 양팔을 함께 묶는 포박방법)였으며, 시신을 뒤집어 똑바로 눕히자 두 손목이 밧줄에 묶여져 있었다. 또한 시신의 얼굴과 뒷머리, 양쪽 어깨, 팔 등에는 상처와 피멍이 수두룩하였으며 이덕인씨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었다. 시신의 손목에 포박된 줄은 노점상들이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10밀리 두께의 줄이며 어룡소 초소 및 철망 주변에 많이 널려 있었다(이것은 당시 사진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 시신 검안 과정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측에서 나와 조사를 하였다. 오전 11시 50분, 유가족들은 시신을 세광병원으로 옮겼으나, 남인천의원 원장 박용섭씨가 검안하였다. 그때 의사는 “얼굴과 팔 상체 등에 상처와 피멍든 자국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자신의 소견을 얘기했으나 이후 확인 과정에서 박씨는 이를 부인하였다.

이 당시 조문객을 위장한 경찰이 여러차례 영안실 주변을 배회하였는데,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유가족과 노점상들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조문객임을 지속적으로 자처하다 몸에서 무전기 등 경찰 관련 물건들이 나오자 성급히 세광병원을 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세광병원에서 5차례나 있었다.

오후 6시 30분, 유족들은 보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하여 시신을 세광병원에서 중앙길병원으로 옮겼다.

■ 시신 탈취 과정

29일 새벽 4시경 시신을 보호하던 학생측의 대표가 최기선 인천시장과 시경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무전기로 상황보고되는 것을 보고 시신탈취에 대한 사항을 예측하였다.

당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시 경찰 책임자가 방문하여 상황을 보려 하였을 때, 인천연합 양재덕 의장은 경찰 책임자에게 시신탈취를 우려하여 하루 연기하여 경찰측과 함께 시신을 부검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장지휘책임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4시 45분 공권력 1500여명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중앙 길병원의 영안실을 침탈하였다. 당시 병원의 영안실에는 이덕인 동지의 시신발견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점상과 학생, 민주단체회원 등 100여명이 시신을 지키고 있었으며, 공권력은 쇠파이프와 곤봉, 오함마 등으로 중무장한 채 사방으로 나뉘어 벽과 유리창을 뚫고 난입하였다.

공권력은 깨진 유리와 벽돌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와 곤봉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영안실에 접근하였고 당황한 학생들과 민주단체회원들은 공권력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깨지면서도 어떻게든 시신을 지키고자 모래와 각목 등(영안실 입구에 내부 공사중이었음)을 집어 들고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순식간에 몰려든 공권력의 폭력 앞에 시신을 지키던 100여명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4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20여명이 공권력에 끌려가 중상(진단4주 이상-머리가 터져 20-30여 바늘을 꿰매고 안면이 함몰되고 쇠파이프에 맞아 실명의 위기에 처하는 등 부상)을 입은 11명을 제외한 경미한 부상자 9명(2명 석방, 7명 구속)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8시간 동안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어 앉혀놓고 경찰들이 번갈아가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당시 병원침탈에 동원되었던 전경들에게 연행 학생 7명의 얼굴을 보여주며 한 사람씩 지적하게 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방어를 폭력으로 매도하여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측은 무작위적으로 학생들의 죄목을 조작하여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자백을 강요하여 구속하였고, 심지어 인하대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전경에게 거짓증언을 하게 하여 삼을 들고 있었다고 강요받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측은 구속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학교를 찾아와 시위를 하면 구속·수배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

이날 공권력은 시신을 탈취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도, 시신을 탈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저항하는 학생들에게 무차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덕인 동지의 유족(이덕인씨 친형 이덕창씨)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강제 납치하여 이덕창씨가 시신의 부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덕창씨를 강제로 입회시켜 부검을 실시하였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로 가져간 경찰측은 불과 1시간만에 더 이상의 부검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시신의 장기와 머리(뇌)를 일부 드러냈으며 시신의 팔과 가슴, 얼굴 등에 나 있는 상처부위를 도려내고 시신을 봉합하여 유가족에게 돌려 주었다.

경찰측은 시신을 부검한다는 명목으로 시신에 남아있던 폭행의 흔적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 투쟁일지

11월 30일

노점상, 학생 1,000여명 인천시민회관에 모여 “장애인 노점상 故 이덕인 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시신탈취 규탄대회” 개최

규탄대회를 마친 1,000여명이 인천시청으로 집결하여 농성 중 공권력으로 인해 강제 해산됨

12월 9일

빈민 및 학생 700여명 중심으로 5·18 국민대회 사전집회 개최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으로 마무리 집회

12월 15일

“인천지역 일어서는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노점상 故 이덕인 열사 사인진상 규명과 구속학우 조기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개최
유가족을 중심으로 약 100여명 청와대 항의방문, 공권력에 의해 모두 연행됨.

12월 16일

장애인노점상 故 이덕인 열사 살인만행규탄대회 및 김영삼 정권 민중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대회
공권력의 물리적 탄압에 맞서 3,000여명의 빈민 및 민중운동단체와 학생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 이후 명동성당에서 마무리 집회

12월 22일

청량리, 영등포 롯데광장, 신촌, 인천시민회관 등에서 지역별로 동시다발 항의집회 개최

12월 23일

해고노동자 조수원동지 집회전 비대위 명의로 사전집회 개최

1월 5일

96년 새해들어 첫 번째 투쟁으로 청와대 항의방문, 유가족을 중심으로 빈민단체 회원 약 300여명
청와대 항의 투쟁 전개도중 공권력에 의해 약 100여명 연행됨

1월 12일

조계사에서 진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개최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한 검찰에 대해 이덕인 열사의 양손이 포박된 경위에 대한 해명 등 제반의 의혹에 대해 진상추구를 요구함.

1월 13일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인천지역 하루주점을 인하대학교에서 개최함.

1월 14일

96년 투쟁의 아침을 맞으며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루주점 개최

1월 15일

이덕인열사의 49제를 맞이하여 추모대회개최
인천 부평역에서 약 1,500여명의 빈민 및 민중운동 진영에 단체 회원들이 모여 행진후 부평역 광장에서 인천시장 화형식을 끝으로 집회 마무리.

1월 19일

이덕인열사 비대위에서 투쟁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민중운동 단체에 제안하여 결성함.

1월 22일

장애인 노점상 故 이덕인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담동성당 무기한 단식 농성.

‘장애인노점상 故이덕인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인천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전국유가족협의회,

민중화실천을위한가족운동협의회, 새날청년회, 민중정치연합인천시협, 진보정치연합인천지부

성명서

**김영삼 정권의 이덕인 열사 살인만행에 대한
은폐조작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8일 인천 아암도에서 장애인 노점상 故 이덕인 열사가 손이 밧줄에 묶이고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9일 새벽 4시 45분경 1천여 명의 경찰이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중앙길병원 영안실로 난입하여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였으며, 영안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구타를 자행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7명의 학생들을 구속하는 등 총 11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강제로 탈취해간 고인의 시신을 신속히 부검하여 익사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하고는 재부검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일부 장기를 빼내고 피멍이 든 상처부위를 절개한 채 시신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었다.

시신발견 당시 양손목에 밧줄이 묶여있고, 얼굴과 상반신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피멍과 상의가 벗겨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근거를 보았을 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어떤 방법으로 타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하여 “익사라고 사료됨”이라는 애매한 결론을 통제하면서 이번 사안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노점상 故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영삼 정권의 타살사건에 대한 은폐조작기도를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이덕인 열사의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책임자가 처벌될 때 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1. 살인 및 시신탈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1. 언론 통제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1. 살인절거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 1. 살인 만행 은폐조작 김영삼정권 물러가라!

**장애인 노점상 故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725-5025, 725-4558)**

경고문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남부경찰서장에게 보내는 경고문

故 이덕인 열사의 주검이 발견된지 꼭 49일이 되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故 이덕인 열사는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한 채, 차터찬 냉장고에서 구천을 떠돌고 있다. 강제로 시신을 탈취했던 패륜아 경찰에게 열사가 고깃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던 유가족의 울분과 오열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강제로 열사의 시신을 빼앗는 무리에 맞서 싸우던 학생들도 감방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강제 철거로 구속된 죄없는 노점상들과 빈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49일이 지나어도 단 한마디도 없이 그저 우리의 투쟁이 수그러들기만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죄가 감춰질 줄 믿는 모양이다. 오로지 침묵과 폭력만이 자신의 과오를 없애줄 줄 알고 있는지 초조하게 경찰의 방패 뒤에서, 오로지 은폐와 오리발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인천시장 최기선씨와 총경 연수구청장, 남부경찰서장이다.

오늘 열사가 우리의 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 여기있는 우리 모두는 아주 단호하게 결심한다. 열사의 부류쁜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눈을 치며서 오직 살인마를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너희 살인마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1.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놈에게 몽둥이가 약이다. 시민의 혈세를 끌어 주인인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은 분명 개, 돼지 보다 못한 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한다면, 놈들은 분명히 죽어야 한다. 우리는 인천시장 최기선씨와 연수구청장 남부경찰서장이 더 이상의 은폐와 폭력으로 故 이덕인 열사와 유가족, 인천시민을 기만한다면, 우리는 몽둥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퇴진과 살인에 대한 댓가를 받게 할 것이며, 이 세상에 정의가 어떻게 살아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 인천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의 살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제 시민의 삶의 터전을 살인적으로 철거하며,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빼앗는 반인륜을 스스로 저질렀으며, 이제는 태연하게 왜곡하고 은폐하는 인천시장 최기선씨와 연수구청장은 자신의 살인만행을 날날히 밝히고 용서를 빌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느냐? 만약 아직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공개사과하고 퇴진하라!

3. 우리는 故 이덕인 열사투쟁으로부터 경찰의 본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경찰은 철거용역 강패들이 죄없는 장애인 노점상을 패고 짓밟는 것을 말리려는 커녕 잘 때리라고 고통을 정리해 주었다.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웃었다. 열사의 시신을 탈취할 때엔 유가족에게 고깃덩어리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르는가 하면 저항하던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부수고 팔을 부러뜨리고 우리를 개고 난입하여 사방을 때리고 부셨다. 그리고 영안실에와서는 행패를 모조리 짚어갔다. 방금 사람을 죽이고도 몸싸움을 하는 학생과 노점상의 머리를 방패뒤에서 부수려고 내리치는 것들이 경찰이다. 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의 살인행위와 과잉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고 보상하라!

4.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직업이 없고, 노점을 하건간에 누구도 그것을 이유로 탄압을 받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세상에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로지 믿는다. 그 믿음이 있는 이상 열사는 항상 부류쁜 눈으로 살아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 경고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다짐한다. 열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 열사가 될 것이다. 열사가 외롭지 않은 길이라면 우리는 바다라도, 불이라도 헤치고 전진할 것이다. 만약 단 하나라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죽음을 각오한 민중들의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남부경찰서장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 이덕인 열사 살해주범 최기선을 박살내자!
- 강제철거, 살인철거, 최기선을 박살내자!
- 열사의 뜻 이어받아 빈민생존권을 쟁취하자!

장애인 노점상 故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725-5025, 725-4558)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투쟁

■ 투쟁일지

1996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 행정쇄신위원회, 각 정당,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한 건 제출(전장협 소개의 글, 공개 질의서, 관련법안, 장애인 자동차 관련 면세안, 경승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신문광고 첨부)

6월 14일

전국 20여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서명지지운동 요청. 서명운동 시작

6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신 : 건설교통부 관할이다.

7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회신 : 성실하게 검토하겠다.

7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회신 : 통행료 면제 불가

7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 통행료 면제 불가

7월 15일

건설교통부에서 회신 : 신한국당으로 제출한 본 건이 이송되어 회신. 7월,10월회신과 동일

8월

건설교통부, 도로공사의 회신에 대한 반박문, 장애인복지신문과 전장협신문에 발표. 신한국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장애인 특별위원회에 제출

9월 1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 통행료 면제 불가

9월 20일

정기국회 상정 계획. 11월 말경 항의 및 집회준비.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서명단체 및 개인 명단 제출

11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 : 통행료 50% 감면 결정.

■ 평가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무성의 속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경승용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 발표에 맞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특별팀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공문접수 및 서명진을 시작, 5개월 만인 96년 11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장애인 마크 부착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문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본 협회는 정부가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를 보였다는 것에 일부분 환영을 하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장애인에 대한 특혜나 시혜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생존권의 확보 차원에서 전액 면제되어야 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이후 지속적으로 50% 감면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촉구자료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되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대비 16배에 달하는 실업률, 40%에도 못 미치는 교육 수혜율, 편의 시설 문제 등 장애인의 삶은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장애인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은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대중교통수단, 도로턱, 계단 등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 장애인 차량에 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볼 때 차량구입과 유지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허다하고 견인을 당했던 장애인 차량도 전체 장애인의 차량에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다름없는 차량을 말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통행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승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과 국가유공자 전액무료제도에 유독 장애인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에서는 장애인 이동 전반에 관한 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을 촉구하며 장애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장애 관련 단체의 힘있는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개질의서

본 협회는 최근 정부가 경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운행중인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는 시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승용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써의 장애인의 승용차는 그들의 발이며 힘체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취업, 편의시설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 LPG장착 허용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고속도로 통행료만은 이러한 복지시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특히 경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통행료는 전액 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애인 승용차의 각종 세금 등이 면제되고 있는 LPG장착도 허용하는 시점에서 유독 고속도로 통행료만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협회는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며 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1996. 6. 13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한국도로공사 답변서

전국장애인가족협회 귀중

1. 장애인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재 요청에 따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1항에 대하여

○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어느 분야에서든지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당해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시간과 비용의 한도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도로의 신설 및 유지 관리하여 특수차량 이외에는 형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부담하여야 되는 현 법규로써는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장애인 통행료 면제는 불가하며

- 현재 국가유공자중 군경 중상이자(1-5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조치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호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공헌한 공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1항에 의거 면제 조치되고 있으며,

- 경자동차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소형화를 자연 유도하여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통난 해소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국민의 근검생활과 경제대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로써 장애인차량 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귀 협회와 같이 수많은 단체 및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 차량 통행료 면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공사는 법적 위임 근거를 토대로 면제조치하고 있음을 통보하오며,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련한 조치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정부의 관련부처와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한국도로공사사장

건설교통부 답변서

전국장애인가족협회 귀중

1. 전국장애인가족협회에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96-01-041('96.6.13) 및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장관께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유료 도로법에 의거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하여 얻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 당해 도로의 유지관리와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 현재 귀 협회(위원회)이외에도 한국산업재해근로자협회, 대한성인장애복지협회, 대한성인장애복지협회, 대한노인회, 멸공진리사상계몽운동본부 등 각종단체로부터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 요청이 많으나,
- 무료이용차량의 증가는 고속도로건설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에 추진이 어렵고 유료이용자의 상대적 불만을 야기하며 현행 자동요금징수체계로는 장애인 차량의 식별이 곤란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인 경우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보철용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무료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 현재로서는 전체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하오니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회신에 대한 반박문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에 관한 장애인계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공색한 변명으로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있으며, 400만 장애인은 그들이 내세우는 거부이유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90년 이후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량의 톨게이트비 면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6월 전장협은 경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로 할인 발표에 따라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재정 적자의 이유와 장애인차량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전장협은 건교부의 회신공문 내용이 우리 사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문제를 단순한 경제 논리에 국한시키려 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세계화시대, 삶의 질 향상, 2000년 이후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한다는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전장협은 건교부의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에 대한 불가 방침에 대해 그 부적절함을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건교부와 도로공사가 내세우는 재정 적자의 논리는 장애인의 문제가 단순한 경제논리에 좌우됨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에 대해 불가방침을 통보한 건교부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첫 번째의 이유로 '신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차량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건교부의 이러한 대답이 얼마나 공색한 대답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에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은 지하철, 철도요금의 할인 및 면제,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면제, 1가도 2차량에 부과되는 통과세 면제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면제 규정을 만든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삶의 열악함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왜 사회간접기반시설인 고속도로는 재정 적자의 이유로 통행로의 면제를 불허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같은 사회간접기반시설인 지하철이나 철도요금의 면제는 지하철공사나 철도청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인가?

매년 지하철공사나 철도청 역시 적자를 내고 있으나 사회간접기반시설의 공공성에 비추어 현실적인 지하철, 철도의 요금인상 등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 있을 뿐 장애인들의 무임승차를 유료화하는 것으로 적자를 메우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철 공사는 오히려 신설하는 역마다 리프트 시설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보호차까지 요금을 면제하는 등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로 50%할인 시책에 있어서도 건교부는 주차공간의 확대, 승용차의 소형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장애인 승용차만은 그 공공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교부의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전화요금 할인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의 할인 역시 한국통신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에 그 이익을 환원하는 사회간접기반시설의 공공성에 기업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출자기관의 기업은 이윤추구의 경제활동보다 공공성에 우선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건교부와 도로공사만이 사회간접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일반 민간기업과 같은 형태의 경제활동만을 하려고 하는가?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재정 적자의 이유로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에 관한 건교부의 불가 방침은 정부투자 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경제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이윤추구만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사회간접기반시설인 고속도로의 운영에 관한 공공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 통행시 장애인차량을 쉽게 구별 할 수 없다는 건교부의 답변에 400만 장애인과 전장협은 어처구니없는 마음을 느낀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할 때 스티커가 발부된다. 스티커가 발부되는 이유는 장애인차량과 일반차량을 구분하기 쉽게 함으로써 장애인차량에게는 각종 세제의 면제, 주차우선권 등 다른 일반차량보다 이득권 확보 차원에

의한 혜택들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있다는 담당자가 장애인차량 구별의 어려움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거부의 이유로 지적인 것은 정말 어의가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발부한 증명 스티커를 국가기관에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겠는가?

또한 건교부의 회신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로공사가 어떻게 그들을 구분하는지를 묻고싶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차량스티커는 색깔만 다를 뿐 크기와 모양은 똑같다. 다른 것은 국가에서 발부된 차량 스티커 이외에 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매우 작은 스티커가 하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상이자의 스티커는 구별이 되고 장애인 차량의 스티커는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이다. 건교부와 관련 부서인 도로공사는 국가기관으로써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로 400만 장애인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400만 장애인들도 경제성장위주정책의 희생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평등한 복지시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회신내용 공문 중에서 건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400만 장애인의 복지를 대변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인가.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지하철 요금 면제, 철도요금 할인 등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한 복지시책들이다. 본 협회는 이미 건교부에 접수된 관련 조항을 첨부하였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400만 장애인 역시 지금까지 경제성장위주 정책과 잘못된 교통·의료 정책 등 국가 발전의 희생양임 명백히 밝힌다. 우리 나라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자만도 매년 6만 여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경증의 장애인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장애인 발생 비율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 출생비율이 선진성장애보다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훨씬 높다. 현재 많은 수의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로 국가의 경제제일주의 원칙과 잘못된 교통정책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런 분들을 과연 국가 유공상이자들보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못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국가의 기여도를 따지기 이전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은 구조적인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작은 제도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400만 장애인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많은 복지정책들을 믿고 따라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대보다 실망이 더 많았음을 알기 바라려 다시 한 번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삶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정부의 관련부처와 협의하라는 건교부의 회신공문은 고속도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의 주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하부 기관으로 두고있는 건설교통부의 떠넘기기식 행정이며 이러한 건교부의 관료주의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전장협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공문을 보낼 때 건설교통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민원실 등 정부 각 부처에 함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회신내용은 모든 기관이나 정부부처들이 일관되게 자기부처의 소관이 아니므로 건교부에 지시 또는 협조공문을 접수시켰다는 답변을 해왔다.

우리 400만 장애인과 전장협은 정부가 스스로를 세계화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처의 책임있는 행정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특히 분명한 책임주체인 건설교통부가 아직도 관료주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타부처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우리 400만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전장협은 건교부와 도로공사의 불성실한 답변 자세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자세로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1996년 8월

사회단체 전국 장애인 한가족 협회

(2)

장애인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

■ 기획 배경

1. 취지 및 목적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척박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다.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사회화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부족도 아닌 편의시설이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를 다녀도 또래 학우들과 같이 공부할 수 없으며, 배가 고파도 학교식당에 가지 못하고, 화장실이 급해도 갈 수 없고, 심지어 학교계단에서 떨어져 죽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인 것이다.

어느 대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장애인학생들만 따로 학교와 떨어진 복지시설에서 교육시키겠다는 발상이 공공연히 신문지상에 오르는 상황은 대학교육에서도 장애인의 분리 교육을 초래하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학 내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전을 통하여서 대학 내 편의시설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대학 내 편의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Program Concept 및 전개방향

- 사진전을 통하여 학교내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한다.
- 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학교신문에 공개질의서 통하여 교내 편의시설 확보를 제기한다.
-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확보를 촉구한다.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사모집을 홍보한다.

■ 사진전 기본기획

1. 행사명칭

가. 행사명칭 :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대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사진전

나. 캐치프레이즈 :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

2. 행사 시기 및 장소

가. 시기 : 1996년 9월

나. 장소 : 건국대학교

3. 추진 조직

가. 주최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나. 주관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세부계획

1. 조직과 역할

가. 기획 및 섭외팀

- 전체 일정을 조정, 점검한다.
- 장애인문제에 대한 교육자료 수집과 홍보
- 사진전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관리
-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나. 촬영팀

- 건국대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자체 촬영
- 전시될 사진에 대한 선정작업

2. 작품내용 및 확보 방법

가. 국내사진

- 주제별 관련사진(교육, 편의시설, 노동, 생존...)

나. 국외사진

- 미국내 대학의 편의시설

다. 사진협조확보방법

- 건국대학내 자체촬영
- 전장협, 장애인복지신문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COMA, 키비탄
녹향회<사진동호회>, 민족예술인총연합, 사회사진연구회
- 해외자료 : · 대사관을 통해 해당국 기관으로 사진전 협조 공문발송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폴란드, 중국, 캐나다...)

· 해외특과원(이경미, 박경직) 촬영협조

3. 대외협력

-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건국대학교 교무과, 장애인복지신문사,
한겨레신문사, KBS사랑의 가족, SBS, 한양대 키비탄,

장애인 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요구안

1.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차별 금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입학에서 장애로 인하여 학과선택에 일률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있어 편의시설부족으로 인한 차별, 수업에 있어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평가, 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교육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 과정에서는 부족하지만 일정정도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형태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의 교육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교육부는 장애인에게도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책임을 마땅히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초·중·고 과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을 고등교육과정까지 확장시켜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시행령(가칭)'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에 나타나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책임인 것이다.

2. 교육부는 대학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

교육부는 장애인의 교육과정상의 특성이나 평가도구 또는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학진학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초·중·고 과정에 국한되어있던 장애인 교육기회를 고등교육과정에까지 확장시켜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을 실행하였다. 교육부는 당초에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시설 확충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원방침을 전면 백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대학은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입학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증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벗어나 입학대상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제한하고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선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복지시설에 장애인만 따로 교육시키겠다는 분리교육을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이 없이 장애인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각성하고 당초 예상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즉각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의무화하라.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기회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장애인 교육에 의지가 있다면 국 공립대학부터 먼저 특례입학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국 공립대학이 특례입학제도의 시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상실된 전시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전시교육행정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교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공립 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4. 교육부는 대학종합평가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수업지원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항목을 첨가하라.

1만불 시대에 사회복지 최빈국 수준의 부끄러운 모습은 대학교육의 수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개방화를 앞둔 시점에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종합평가를 도입하였다. 대학종합평가 항목들은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부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여건에 관련된 조항은 하나도 없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이야기하지만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망신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세계화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종합평가 항목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프로그램 항목을 첨가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장애인학생교육방안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

장애인 특례입학이 실행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교육부의 역할과 더불어 개별 대학의 책임도 중요하다.

장애인 대학생의 학고수업 및 생활에 있어 어려움은 편의시설, 수업기자재 등의 부족이외에도 평가방법, 교수와의 의사소통, 교우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강의실의 조정, 자원봉사자 활용, 시급하고 가능한 편의시설 마련 등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으로 장애인 대학생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장애인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대학생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사진 . 자료집 111)

장애인 대중교통권 확보운동

■ 경과보고

1997년 7월 20일

‘장애인대중교통 이용권리를 위한 연대모임’ 결성(뇌성마비연구회 바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1997년 7월 23일

연대모임 이름으로 “서울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저상버스도입 확대를 건의.

1997년 8월 5일

KOEX에서 열린 97 서울 국제 국제 대중교통전에 연대모임 이름으로 참석하여 전시되어 있는 저상버스(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를 시승해보고 보완점을 건의함.

1997년 8월 13일

전장협과 편의모임이 만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결성을 협의.

1997년 9월 1일

녹색교통, 시민교통환경센터 등 시민단체들에게 연대모임을 제안함.

1997년 9월 23일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준비모임을 가짐.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제안서

1. 취지

서울시에서 7월 말에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버스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로 97년 말까지 100여대를 운영하고, 2단계로 98년 상반기에 200대를 확충하여 총 300여대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저상버스를 단지 10대정도를 시범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중증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겨우 몇 개 구에서

장애인부르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민영체제로 운영되어 온 버스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버스) 이용권리가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포기한채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버스이며, 장애인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몇대의 셔틀버스 형식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운운하는 것은 편의적이고 전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장애인의 실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운영하게 될 공영버스에 대하여서는 전면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버스(또는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로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민영버스에 대하여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하여 연대모임을 제안합니다.

2. 목적

- 서울시 공영버스에 전면적인 장애인의 이동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민영버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리의 법적 보장

3. 주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결성하여 진행한다.

4. 참가 확정단체

뇌성마비연구회 바쁨,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5. 심의단체

녹색교통,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회, 한벗회, 부림의 전화, 재활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먼저운동, 빗장을 여는 사람들, 학생단체 등

6. 일정

- 8월 29일 1차모임(장소, 시간은 참여확정후 추후 통지)

7. 연락처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3391-2251-2 담당 : 박경석)
- 장애인편의시설축진모임(312-5720-1 담당 : 전정옥)

성명서**“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들에게 버스는 그림 속의 떡이었습니니다. 아무리 비싸도 택시를 타야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버스는 승차대가 너무 높고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장애인의 외출을 막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영버스마저 장애인을 외면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8년도에 도입하는 100대의 공영버스 가운데 저상(底床)버스를 단 2대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민영버스가 외면한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의 버스 이용권을 서울시마저 외면하는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서울시민입니다!

장애인도 서울시민입니다. 장애인도 공공의 세금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대 중에 단 2대만이 저상버스이고 99년도에 10대를 시범적으로 더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서울시의 공영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장애인이 이 두 대의 저상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이것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 2대는 생색내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애인을 서울시민에서 제외시키는 결과입니다.

공영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임산부와 유모차를 가진 어머니들은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영버스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서울시의 공영버스가 진정 시민의 발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영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공영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되고 공영버스가 서울시 전역의 노선에 배치될 경우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 등의 이동과 생활과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출을 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지 못하던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는 공영버스를 이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보다 저렴하며 보다 편안하게 서울시를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버스는 모두에게 편합니다!!!

공영버스는 장애인과 임산부만을 위한 버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스의 승차대는 78cm로서 다리가 불편한 노인 등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저상 버스는 높이가 38cm로 크게 낮추어져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유모차도, 임산부나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이제 공영버스의 저상버스화에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997년 7월 23일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모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

■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활동일지

10월22일

- 각 당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개정'에 관한 질의서 발송
-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위의 질의서 답변 받음

10월23일

- 민주당으로부터 위의 질의서 답변받음

10월24일

-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11월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방송사의 수화 및 자막방송 협조요청
- 방송3사에 대신 후보 TV토론시 수화 및 자막방송 요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모델 투표소 제작에 관련된 협조요청

11월5일

- 방송3사에 대신 후보 TV토론시 수화 및 자막방송 요청

11월7일

-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후보에게 각 후보자 정책발표 및 모델 투표소 개막 참여 요청

11월12일

- KBS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 요구를 위한 항의방문 중 무력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함

11월1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 방송사의 수화 및 자막방송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1월1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사항을 방송사에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음

11월15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위한 제1회 범국민 서명운동

11월17일

- 각 당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개정'에 관한 질의서 발송

11월20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위한 모델투표소 개막식 및 모의투표 실시

11월21일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냄

11월22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위한 제2회 범국민 서명운동

11월28일

- 남부지원 민사1부 판사실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가처분신청권에 관한 1차 심문

12월2일

- 남부지원 민사1부 판사실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가처분신청권에 관한 2차 심문

12월5일

-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소결정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자료

■ 취지 및 목적

-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자신의 주장을 굴절됨이 없이 한표로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이런 기본권마저도 무시당한 채 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장애인은 기본적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조차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투표소의 20%가 2, 3층에 위치해 있고, 1층에 있어도 몇 개의 계단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혼자 힘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 시각장애인의 점자투표용지 및 점자로 된 홍보물의 미비로 인하여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것, 청각장애인은 대선후보의 TV토론에서 수화나 자막방송이 되지 않아서 전혀 대선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인 것이다.

-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이에 우리는 장애인 참정권 운동본부를 통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려나가고자 한다. 또한 정부당국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 전개방향

- 각 지방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지부단위를 통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장애인 참정권의 문제를 부각해 나간다.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실태와 대안에 대한 자료집을 만든다.
-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당국에 책임있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범국민서명운동에서 서명작업과 동시에 포스터와 팻을 통하여 홍보한다.
- 선거당일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중증장애인의 투표를 돕는다.
- 장애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장애인 모델투표소’를 만들어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를 홍보해 나간다.
-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받기위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한다.

-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단체, 학교내 장애인관련 동아리 및 관련학과, 그리고 학생회와 연대 결합하여 진행한다.

■ 행사명칭

- 가. 행사 명칭 :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
- 나. 캐치프레이즈 : “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

■ 행사 시기

- 가. 사 기 : 1997年 10月 24日(金) - 12月 18日(木)
- 나. 장 소 : 지역별, 사안별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 세부 계획

가. 범국민 서명운동

1. 범국민 서명운동 준비 지침

- 범국민 서명운동은 중앙과 지역 그리고 각 단위별로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여 각자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명운동의 집중력을 모으기 위하여 몇차례 운동본부 중앙에서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다.
- 장애인 참정권의 실태 파악 및 대책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홍보한다.
- 운동본부에서 포스터, 선전지를 제작하여 각 단위 서명운동 전개시 배포한다.
- 서명용지는 운동본부에서 제작하고, 각 단위는 복사하여 사용한다.
- 운동본부에서 플랭카드, 걸개그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단, 각 지역 및 단위는 자체 제작하여 사용한다.)
-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팻말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 및 재정을 담당한다.

2. 중앙운동본부의 범국민서명운동 세부 일정

일 자	장소 및 시간	준비물	참여단위	비고
11월 15일	- 서울역 앞 - 오후 12시 - 오후 4시	서명용지, 포스터, 플랭카드, 선전지, 걸개그림, 팻, 책상, 걸상, 깃발	참여단체, 전장협 서울지부, 중앙 각 분과, 부설기관	공연 준비
11월 22일	- 잠실 롯데 백화점 앞 - 오후 12시 - 오후 4시			
11월 29일	- 명동성당 앞 - 오후 12시 - 오후 4시			
12월 6일	- 탑골공원 - 오후 12시 - 오후 4시			

- 중앙 단위는 서명운동 기간동안 매일 노원역 또는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지역은 지역 운동분부를 중심으로 시기에 맞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학생 단위는 각 학교별로 조건과 시기에 맞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서명용지는 중앙의 운동분부로 모으고, 차후 공익소송 및 법개정을 할 때 사용한다.

나. 장애인 모델 투표소 설치

1. 취지 및 내용

- 투표전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는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진 모델투표소를 만들어 전시함과 동시에 모의투표를 전개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립회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 각 당의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낸다.
- 지체, 청각, 시각 장애영역별 단체와 협조하여 모의투표에 참여케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한다.
- 각 방송사, 신문사를 통하여 홍보한다.

2. 세부내용

- 일시 : 1997년 11월 17일(月) - 20일(木)
- 장소 : 정립회관 강당

다. 공익소송

1. 취지

- 공익 소송을 통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을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2. 내용

- 각 방송사에 대선후보 토론시 수화 및 자막방송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공문을 통해 알아본다.
- 소송 대상 : 각 방송사
- 기대 결과 : 각 방송사의 대선후보 TV토론시 수화나 자막방송 실시
- 추진단위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 / 참여연대 (섭외)

라. 장애인 투표율 표본조사

마. 선거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조직 운영

■ 우리의 주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후보정보)와
완전한 투표참여를 보장하라!!

1) 법정인쇄홍보물을 점자로 제작하라

- ㄱ.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법정인쇄물(소형인쇄물)중 시각장애인유권자가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점자홍보물을 발송해야 한다
- ㄴ. 이를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2) 방송물은 자막 및 수화를 삽입하라

- ㄱ.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방송, 경력방송 등 방송을 통한 후보자 정보나 홍보는 반드시 자막표시 및 수화표시를 해야 한다.
- ㄴ. 선관위 주관의 경우 비용을 선관위가, 방송시설 주관은 방송시설이, 후보자 홍보의 경우 후보자가 각각 그 비용을 책임지며, 이에 소요된 후보자 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서 제외한다

3) 대중연설에서는 수화통역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대형 멀티비전을 통한 수화통역을 해야한다.

- ㄱ.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에 의한 연설회에는 반드시 가장 앞자리에 청각장애인용 자리를 확보해야하며, 수화통역자를 배치해야 한다.
- ㄴ. 합동연설회의 경우 선관위부담, 정당·후보자에 의한 연설회에는 후보자 부담으로 하되 법정선거비용에서 제외한다.

4) 투표소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ㄱ. 수화통역사 및 장애인 투표 보조자
- ㄴ. 투표함 및 기표소의 높이가 장애인이 기표 및 투함하기에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
- ㄷ. 투표소내 장애인 출입이 가능할 것
- ㄹ. 투표소내 혹은 근거리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을 것
- ㅁ.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한다.
- ㅂ. 약시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5) 장애인 부재자 투표를 가능한 지양하고 장애인의 직접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로의 이동을 보조할 것

6) 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97 대선행동계획

1. 장애인 참정권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 국민 선전

지방자치가 실현됨으로서 많은 투표가 실시됨에도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주권행사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장애인이 사회의 주인으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인간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운동으로 견인한다.

- 1) 장애인 참정권의 완전 보장 촉구 포스터 부착 및 국민 서명운동
- 2) 제 진보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운동

2. 장애인 참정권확보를 위한 위법 투쟁 및 이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한 소송투쟁

헌법 제23조는 선거권을 국민의 권리로 확인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마치 기분날 때 떠드는 구호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관련법과 국가권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함께 소송을 통한 권리 확보 작업을 병행한다.

3. 집단 의사표현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의 실현을 위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제 사회적 피해는 국가임임을 밝혀둔다.

4. 선거참여 거부투쟁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선거참여 거부투쟁도 배제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5.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실천행동

- 1) 장애인 선거 참여 보조를 위한 자원활동조직 구성
- 2)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행동조직 구성

성명서

헌법 제 24조에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선거법 제6조의 3항과 1항에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것과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해 놓았다.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에의 참여와 그 보장은 국민이 주인 되는 삶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작용한다.

그것은 정치와 행정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의 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참정권 즉, 투표행위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초되는 권리임에도 장애인들은 선거참여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는 정부의 주장과 민간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보통은 인구의 10%를 기준으로 하여 4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유권자로 추정되는 장애인의 수는 320만여 명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선거관련 정보의 차단과 투표소의 편의시설 미비 등 참정권 행사에서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매체가 총동원되어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각 당의 움직임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장애인의 선거참여에 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절차 과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대선 후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실례로 91년 6월 20일에 있었던 지방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총 투표소 15,043곳 중에 1층이 아닌 투표소는 1,506곳으로 10%였으나 95년 6월27일에 있었던 제1회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17,230곳 중에서 1층이 아닌 투표소는 20.9%나 되는 3,618곳으로 문민정부에 들어서 1층이 아닌 투표소가 2배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장애인의 표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96년 9월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때 주요 투표장소인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고작 32.4%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의 선거 참여 보장언커녕 장애인 수의 정확한 통계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멀기만 하게 느껴진다.

현실성 없는 복지 공약은 450만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정부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장애영역을 고려한 선거관련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와 아울러 투표과정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의 설치를 제도화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450만 장애인과 함께 정부의 의지와 실천을 지켜볼 것이며, 또한 우리의 투쟁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없애야 할 것을 없게 하는 권리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는 몸짓이 될 것이다.

1997년 10월 24일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장 애 인 참 정 권 확 보 운 동

전경련, 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 전경련,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배경 및 경과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98년 3월 30일 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의무고용폐지, 여성근로자 생리휴가폐지 등 70대 핵심규제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전경련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있으며, 정부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고용추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 이와 같은 발표가 있는 후 각 장애인계에서 심하게 반발하였고, 특히 우리 협회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만나면서, 공동대응의 길을 모색하여 4월 20일에 20개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하여 약 200여명이 전경련회관 앞에서 의무고용제 폐지주장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2시간여동안 뭉싸움을 벌이며 계란을 던지는 등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 결국 전경련에서 공식사과를 하고 의무고용제 폐지주장을 철회했으며, 장애인계 주간지에 사과광고를 냄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 지어졌다.

■ 규탄대회 행사계획

- (1) 행사명 : 전경련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 (2) 목 표 : ①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주장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한다.
② 국가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부각한다.
③ IMF 원흉인 재벌해체를 주장한다.
④ 국가의 의무고용을 준수와 고용분담금 회피 문제를 부각한다.
- (3) 주관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4) 일 시 : 1998년 4월 20일, 늦은 2시 - 늦은 6시
- (5) 장 소 : 여의도 정경련회관 앞
- (6) 참가예상인원 : 200 - 250명
- (7) 행사내용 :
 - 사 회 : 김대성 전장협 부회장
 - 규탄사 : 이석형 전장협 회장
 - 지지사 : 참가한 장애인단체의 장

- 연대사 : 참가한 학생단위 및 사회단체의 장, 책임자
- 전경련 화형식
- 전경련 회관 앞 거리, '주장 직기'
- 문화행사 : ① 길놀이
 ② 노래공연
 ③ 퍼포먼스
- 전경련 회관 점거 또는 거리행진

■ 연대 제안서

수신 : 각 사회단체

발신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화 : 3391-2251~2/ 담당 : 박경석 조직국장)

제목 : 전경련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1. 4월의 따뜻한 동지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는 450만 장애인의 사회·정치·경제적 권리 쟁취와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3.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4. '경제살리기'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노동권마저도 전경련이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함께 연대하여 전경련의 주장을 철회시킬 수 있으면 합니다.

▶ 규탄집회

제목 : 전경련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일시 : 1998년 4월 20일(월, 장애인의 날)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앞

주관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연대사항

1. 참여단체 등록
2. 집회 참여 여부
3. 지지 및 연대사

(1)

▶ 함께 합시다.

- 자세한 사항 문의와 참여할 단체, 개인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담당 : 박경석 조직국장
- 연락 : 전화 : 3391-2251~2, 전송 : 3391-2253, 호출 : 015-947-0320
- 통신 : 나우누리(노들야학), 천리안(senal21)

▶ 당면 상황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3월 30일에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비롯한 여성근로자 생리휴가제 폐지, 법정 퇴직금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 전경련은 그동안 줄기차기 기업에 부담이 간다고 「300인 이상 기업 의무고용 2%」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인하하려고 획책해 왔었다. 이제는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만 자유로운 IMF 정세속에서 기업부담을 내세워 아예 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IMF 시대에 비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다지만 장애인도 IMF 이전에도 실업률이 60% 이상이었다. 물론 60%이상의 실업률은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과 학생, 노인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시키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고, 살인적이고 비인간적인 실업률에 허덕여 왔던가를. 이것은 분명 인간에 대한 짐승같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이며, 사회와 국가는 차별을 철폐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이 나라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착취해가는 재벌기업의 총수들 모임인 전경련에서 전지전능한 '경제살리기'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장애인의무고용제마저 폐지하자고 한다. 장애인을 2%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길거리에 내팽겨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이 몇푼되지 않는 부담금을 내면서 그것이 마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업규제정책이 이나라 경제가 이모양 이꼴이 되어버린 원인인양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분명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지옥같은 상황에서도 철저한 침묵과 기다림만을 강요당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이대로 물러선다면 지옥같은 현실을 넘어 '생죽음'으로 물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침묵과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없다. 개뻐다귀 같은 [전경련]의 주장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대로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다.

(2)

■ 보도자료

발신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수신 : 각 신문사 사회부, 방송국 보도국 사회부

제목 : 전국경제인연합회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 지지를 위한 규탄대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MF를 틈타 장애인생존권의 기초를 이루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폐지를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제 장애인 단체와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4월20일 장애인의날에 전경련회관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

주관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참여단체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지체장애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교통장애인협회, 뇌성마비연구회 바름,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에바다사태해결을위한전국 대학생비대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연대해동네트워크, 전국노점상연합회, 노원시민모임, 광진시민모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대표간사단체 : 전국장애인가족협회(회장 이석형)
연락처 : 3391-2251-2/930-0320

집회장소 : 전경련회관 앞
집회시간 : 4월 20일 오후2시

장애인은 경제가 호황일 때도 심각한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 심각한 장애인 고용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지만 편견과 사회제도적 장애로 인하여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장애인중 32%만이 취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들은 생계를 위해 거리의 영벌이로, 노점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몰린 장애인들은 온갖 사회의 멸시와 편견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싸우다 어이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고용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장애인에게 고용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첫째, 심각한 경제적 상태로부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계보장입니다. 둘째, 장애인에게 자아실현과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증대시키며, 이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형성의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민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전국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재벌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역대정권은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 하였으며,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도 없이 그 책임을 민간기업에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사회적의무도 망각한 채 의무고용을 무시하고 몇푼 안되는 돈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나마 지키지도 않은 의무고용을 경제위기를 틈타 장애인의무고용을 폐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집단과 이윤에만 눈먼 천박한 기업이 이 나라를 망치고 그 책임을 국민과 장애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습니까? 가족과 단란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저임금에도 일거리가 있다는 기쁨에 열심히 살아온 장애인입니까? 이 경제위기의 주범인 부패한 정치집단과 천박한 기업이 경제회생을 명분으로 소리없이 일해온 노동자를 해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권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폐지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담할 고통조차 없는 450만 장애인은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박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유린당할 수 없습니다. 물려설 곳도, 분담할 고통조차 없는 450만 장애인은 이러한 더러운 음모를 분쇄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것이며 참다운 복지세상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란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취업 노동자의 일정비율을 고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이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이란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최저임금의 60%를 장애인고용을 위한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요 대기업의 고용현황**

그룹명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율(%)
현대	124,475	2,476	238	0.19
대우	66,679	1,328	332	0.5
삼성	89,610	1,780	96	0.04
엘지	92,805	1,846	208	0.2

*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 0.62%(541명)

성명서

IMF를 불모로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짓밟으려는 전경련을 규탄한다.

IMF 경제위기를 틈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폐지시키려는 전경련의 음모에 대해 사회정의와 전장애인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이는 장애인의무고용이 장애인에게 베풀어주는 특혜인양 생각하는 재벌들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장애인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전경련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는 바이며, 그간 장애인고용문제를 기업에 맡긴 채 뒷짐지고 있던 국가의 안이한 태도에 경고를 보낸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책임이다.

공장에서, 도로에서, 병원에서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는다. 그렇다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먹고 잘살아보자고 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장애발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한다.

고용에 있어 기업의 책임은 장애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60%는 실업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장애인을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척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무고용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의실현의 작은 내용에 불과하다.

적합직종이 없다고?

지체장애인이 은행창구에서 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신지체인이 건물청소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시각장애인은 왜 교사가 될 수 없는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인정해주는 기업의 정당한 태도가 형성된다면 장애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껏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차별금지라 아닌 할당고용제를 채택하여 오히려 기업의 안이한 태도에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신들의 장애인 기피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합한 직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분담할 고통조차 없다.

IMF이전에도 장애인은 자살을 생각했다. 아니 수많은 장애인이 자신이 장애라는 이유가 아닌 차별과 그에 따른 생활고로 자살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정의 생활고로 이미 많은 장애인이 열배, 백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IMF경제위기의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기업과 이들과 유착했던 검은 권력이다. 그런 기업과 권력이 이제 국가경제를 볼모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여 자생하려는 의지없이 또다시 땅칠고 헤엄치듯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재벌들의 검은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도 고용의무를 이행하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지 벌써 7년이나 됐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 이행사항은 97년 12월 현재 의무고용율 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88%에 불과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오히려 기업의 의무고용폐지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가? 관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부여되는가? 관은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기업은 없다는 말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것은 단지 기업에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에 있어 결코 자유로운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부담금이란 간접강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장애인과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전경련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실히 준수하고, 장애인의 노동권리 및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장애인의무고용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 장애인과 사회정의의 저항을 받을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하며, 책임을 다할때까지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라. 우리는 450만 전 장애인과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장애인의무고용폐지 철회와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 1.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폐지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 1. 전경련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
- 1. 정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기타 성명서 모음

■ 5·18 특별법 제정 서명 운동 관련 성명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5000억 비자금 수사로 어지러운 정국입니다. 이러한 역대 대통령들의 부정부패는 세계화를 외치며 21세기를 준비한다는 현시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비자금의 1%밖에 안되는 50억만이라도 장애인복지에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임을 생각하면 더욱 울분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전 노태우대통령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살의 역사 80년 광주 5·18의 직접적인 책임자였으며 전두환 전대통령과 당시 반란의 수뇌부였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애 이번 비자금 사건은 국민들을 더욱 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번 비자금과 관련한 책임있는 수사와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미 15년이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며 5·18 항쟁당사자나 그 가족, 광주시민을 울분에 떨게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시민폭동으로 매도당했던 광주 5·18 민중항쟁은 이미 민주화를 이르기 위한 시민 투쟁의 역사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그 당시 반란과 학살의 책임자들은 단 한사람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버젓이 권력을 휘두르며 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을 맞아 대국민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물었으나 계속 검찰을 비롯한 정부 권력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되었고 광주시민을 비롯하여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전 종교계의 종교인과 신부, 목사, 교사, 학생, 대학교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숫자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계에서만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특별검사제도를 위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것을 결의하였고 정부당국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엄연한 일주체로서 역사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해왔으며 특히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장애인의 사회,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에 장애인계에서는 가장 먼저 동참하여 400만 장애인이 5·18 문제의 해결에 함께 나서 이 땅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있음을 알려갈 것이다.

국회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5·18 문제의 올바른 해결없이 역사는 바로 설 수 없다.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1995년 10월 30일

전국장애인가족협회

■ 에바다 사건관련 성명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이 땅에서 4백만 장애인들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거리로 내몰린 장애인 노점상을 가차없이 몽둥이와 방패로 짓밟아 버리는 공권력과 아직도 장애인시설의 파렴치한 비리를 옹호하며 비리의 주범을 감싸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지난 96년 11월 평택에 위치한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공금유용에 대한 비리는 4백만 장애인과 올바른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또 다시 분노와 허탈감을 주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단체중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협회중 하나이다. 에바다농아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농아원 이외에 학교 및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이 두 곳의 비리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좌절과 아픔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정부와 관련기관이 이들 단체를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장협회의 비리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장회장이 형사고발되어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장협에 대한 감사는 장회장의 비리를 축소, 은폐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에바다농아원 사태 역시 해당 관청은 비리의 주범인 최성창 일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기 매듭짓기 위해 왜곡 축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중앙정부에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정부가 사건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4백만 장애인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지난 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감사에서 관련공무원들의 불법사함을 내부 감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공금유용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 유용 및 사용처와 횡령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위법사실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에바다재단의 집단적인 비리는 1~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감사결과 밝혀졌으며, 이는 해당관청의 공무원과의 결탁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관련 비리공무원을 색출해 내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에바다학생들에 대한 경찰과 재단측의 가혹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에바다 재단의 최성창 일가를 퇴진시키고, 학교를 공립화하여 시설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내용에 대한 납득이 가는 조치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현정부는 부도덕, 불법과 결탁한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한명의 장애인중이라도 고통속에 살아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중을 탄압하고 벼랑으로 내몰아 가는 현정부의 부도덕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그리고4백만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올 때까지 힘차게 싸워갈 것이다.

1997. 3. 4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4백만 장애인에게 봄날은 오는가!!

어둡고, 척박한 이 땅에 장애인으로 태어나 죽음의 고비에서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이들에게 얼어붙은 땅은 녹아내리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존재하는가!!

지난 96년 11월 27일 평택에 위치한 에바다농아원, 특수학교, 복지관에서 일어난 최성창일가의 비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의 돈을 더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있지도 않은 재단 직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이중 착복하고, 어린 학생들을 감금·협박한 사실들을 우리는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비리가 저질러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경찰 수사결과 나타났는데 이를 감독, 관리할 해당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데 에바다 재단의 비리는 관련공무원과의 결탁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비리 공무원을 색출, 처벌하지 않으면 정부와 해당관청은 4백만 장애인의 분노에 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최성창이 나타나 힘 없고 갈 곳 없는 장애인을 볼모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시설의 비리는 운영자의 도덕성 문제 뿐만아니라 시설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화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만큼,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객관적인 운영지침에 따른 지도, 감독단위를 구성하고,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의 따름아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회에서 시설운영을 볼모로 자신의 배속을 채우려는 집단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시설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경기도 광주의 삼육재활센터, 부산 호정원 사건등을 통해 충분히 보아왔다. 이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탈 수도 없는 지하철 요금이나 면제해주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고공임장로나 할인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인가? 이것이 진정 국민의 안정과 푸요로운 삶을 책임질 국가의 모습인가? 우리 4백만 장애인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모든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장애해방 그날까지 투쟁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은 시설내의 인권탄압과 부정, 비리 등이 발생해서는 안됨을 각성하고, 에바다 사건에 대한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이 복지 당사자를 위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울러서 시설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 국 장 애 인 한 가 족 협 회

■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 수상 관련 성명서

미국의 루스벨트 재단이 장애인 복지에 힘쓴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주는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 상'의 1회 수상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는 발표는 이 땅 400만 장애인에 대한 모독임이 명백하다. 루스벨트 재단이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여기 몇 가지 밝혀두고자 한다.

지난 7월말 부산에서는 한 장애인 노점상이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던 중 대책없는 막무가내 단속으로 인해 분신하는 일이 있었다. 96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자신과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목숨을 내놓은 장애인이 무려 1백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95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60%가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300인 이상 업체에 장애인을 2%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부기관도 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저렴한 부담금을 내고 있을 뿐이다.

특수교육기관은 여전히 부족해서 정부주장에 의한다고 해도 여전히 반수 정도의 장애인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다수 중증장애인은 집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겁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교통사고로 2만여명의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3만여명의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재활의 기회나 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정부는 삶의 질 세계화를 외치며 '복지선진'의 길로 들어선 듯 떠들어대지만 정작 꼭 필요한 때는 사회복지에 어디로 가는 지 자취조차 보이지 않는다. 얼마전 발표한 97년도 정부 예산 심의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를 위해 무엇인가 큰일을 할 것처럼 하더니 국방비는 전년도 보다 12%로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삭감하여 GNP 대비 1%에도 못미치는 예산(일본 등 선진국은 3-5%)을 세우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허울뿐인 선전문이었고 그 속에서 장애인 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은 670억(95년도)으로 법인단체 및 시설 지원을 하고 나면 정작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쓰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길이였다.

우습게도 루스벨트 재단이 있는 나라 미국에서는 최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86년도 세계 각국 인권 현황보고서'에서 장애인들의 인권 및 대우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근년에 많이 고조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 상'의 수상은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어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 대다수 장애인을 한미간 외교적 희생물로 삼는 정치적 술수일뿐이다.

루스벨트 재단은 애초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라며 제 1회 수상국 선정과정에 대한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당장 한국에 대한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 상' 수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이번 수상과정에 대한 일부 의혹을 낱낱히 밝히고 상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400만 장애인이 이번 수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소와 비난을 포하고 있는 지 알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를 이런 정치적인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4백만장애인과 함께하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김재훈씨 사망관련 성명서

청각장애인 노점상 김재훈씨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또다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정환 열사와 이덕인 열사가 죽어간 후에 우리는 또다시 빈민장애인의 죽음을 보아야 했다.

이 사회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채로 살아왔고, 결국은 죽음으로 떠밀리는 삶이 곧 우리 장애인중의 삶인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도,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생존권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살아남기 위해 거리로 나와 노점을 해야만 했지만, 그 노점마저도 단속반과 용역반에게 쫓겨 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이 땅의 장애인이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빈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죽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IMF라는 전대미문의 국란에 휘말려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는 재벌의 몸불림과 재개발에 휘말려 수많은 민중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또한 정권의 철저한 비호아래 폭력적, 살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애국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고, 외화를 많이 버는 것이 애국이라는 식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재벌들을 비호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천5백만 민중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몇몇의 재벌을 살리려는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이라는 명제에도 결코 걸맞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방도들을 다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재훈씨 사망 사건으로 보다 명확해진 노점상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철거 용역 강제의 고용과 이에 따른 폭력행사, 폭언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용역강제의 고요금지를 촉구한다.
2.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고 무자비한 단속을 즉각 중지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3. 김재훈씨 사망사건에 관련된 책임자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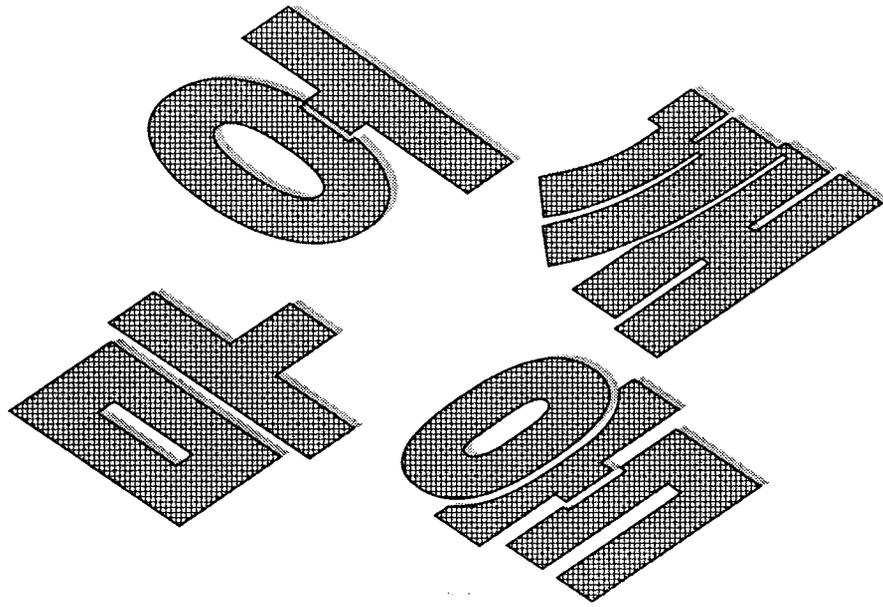
1998.2.26

450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홍보출판

◇ 어깨동무

◇ 열린세상



6월호

지난 4월 20일은 제16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T.V에서는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방영되고 무슨 체육관에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기념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왜 뜻 모를 허전함이 남는지.....

화려했던 장애인의 날이 끝나고 1주일인가 지나고 부산에서는 한 장애인이 한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 안에서 느껴야 했던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남들처럼 일하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단지 장애인이라서 너무나 이루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4월 20일 서울 도심 종로에서 있었던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는 주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을 달라!"고 외쳤던 하나된 함성은 장애인도 일하면서 이 사회에 업연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을 앞당기는 힘찬 내딛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아이가 커서 제 앞가림이나 하며 살아야 할텐데.....'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걱정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장애정도나 유형에 맞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7월호

얼마전 T.V에서 선희학교 학생들의 농성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희학교는 서울 종로에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인데 직업교육 거부를 주장하며 농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직업교육만 시켜서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지적능력에 문제가 없는 청각장애 학생이라면 굳이 특수학교에 가지 않아도 될텐데.....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몇 개 지역의 특

수학교 설립 반대도 생각나고 특수교육 = 특수학교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가끔 상담견화를 받습니다. 7살인데 특수학교를 보내야 할지 특수학급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 라는..... 대부분 장애정도가 경한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고 그때마다 아동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염려되어 특수학급에 보내길 어려워하십니다. 특수학교는 "분리"의 성격이 강해서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통합을 생각한다면 선뜻 보내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특수학교에 보내고 나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서 편할 것이라는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포레집단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멀고 구태의연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라는 딱지 때문에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통합교육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특수학교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처럼 장애아동은 무조건 특수학교로 보내는 때가 아니라면 특수학교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보내기만 하면 아무 근심걱정없는 곳이라고 여긴다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되도록 자꾸 근심걱정해야 바람직한 모습도 만들 수 있겠지요!



8월호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개정된 지 불과 2년, 아직도 개정법 이후 완전한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조기교육 문제와 제대로 시행해 본적도 없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제도 같은 것들이 생각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잘못 알았겠지 싶었다.

그런데 6월 18일자로 입법예고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움직임은 사실이었고, 그 내용이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올해 2월 새롭게 시작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입학절차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었다. 예전처럼 해당학교에 원서를 들고 찾아갔다가 간단한(?) 입학시험 과정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몇 번의 다짐을 받고서야 겨우 안도하는 부모님들..... 그 동안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입학하기 얼마나 어렵고 가슴 떨리는 절차였으면 이렇게들 불안해 하실까 안타까웠었다.

하지만 이제 심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역별(구,군단위)로 확대 실시되면 간편한 절차로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될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선발권을 심사위원회가 아닌 각급학교의 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다시 예전처럼 특수학교 한 번 들어가려면 몇 년을 줄 서있어야 하고, 학교별 선정기준에 안 맞으면 입학은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 게다가 일반학교는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낼 일이 아닌가! 결국 입학할 위해 부모들은 알아서 돈도 갖다 주고 울며짜며 사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대로 조기교육은 무상으로, 초·중등은 의무교육이라는 법 조항을 허망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 최소한 뒤로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탄과 한숨을 뱉쳐버리고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특수교육도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되기까지 부모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최소한의 것, '의무교육' 이라는 법조항이 무색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것은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격리, 소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잘못 개정된다면 막아야 한다. 무더위를 뚫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자연스럽게 거부의 몸짓을 모아낼 때이다.

9월호

밤늦은 시간, 거리는 한산하고 그러나 집집마다 불이 켜져 환하고 모두들 비슷한 긴장속에 있다가 갑자기 환성을 질러 서로의 관심과 연업을 확인하던 때가 있었다. 얼마전 화려하게 진행되었던 애틀랜타올림픽 때이다. 세계 197개국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치뤄졌던 올림픽은 세계에 이렇게도 나라가 많았나 싶게 모여들었고 그만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러나 올림픽이 치워진 나라에서 불과 2주일 사이에 장애인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체육잔치가 장애인, 일반인 따로 치뤄져야 한다는 것에 쓸쓸할 뿐이지만.

한 때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따면 그것으로 출세가 보장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 체육은 뛰고 부딪히고 땀흘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최선을 다할 것' 이 그 최대의 목표였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야 할까?

물론 각각의 체육경기가 그 역사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 세계적인 행사의 "가름"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사를 갈라놓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다. 88올림픽을 치른 후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요즘에는 대부분의 구단위까지 체육센터

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달 어깨동무를 꾸미면서 소개했던 서울시내 체육센터만해도 그 종류나 지역이 무척 다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들 생활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이 굳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있는 체육센터는 감히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화려한 올림픽 뒤에 장애인올림픽이 가려지고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이 속상해서 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똑같이 몸을 움직여 쌓인 피로를 풀고 생활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체육문화 정도는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세계 120개국의 나라가 참여한 장애인올림픽이 열렸다.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땀다는 소식도 있고, 전체 종합 12위라는 성적을 냈다고 한다. 선수들이 돌아오면 요란한 빵빠레도 없겠지만 그 대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 많아지길..... 그것도 어디 후미진 곳이 아니라 동네에 다른 일반인들 가는 곳으로 같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되길, 제발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선수들을 맞게 되길 바란다.

10월호

올해 세 번째로 대학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어떤 어떤 장애인이 어느 유명대학에 진학했다더라는 이야기가 어쩐면 눈물나는 감동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으리라. 게다가 부러운 적도 있었을 거다. 우리의 많은 엄마들이.....

하지만 작년, 그리고 작년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들이 과연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강의실마다 계단은 많고 마땅히 이용할 화장실이나 공중전화도 없어서 이거 학교생활이 거의 극기훈련같다고 한다. 그래서 꿈을 갖고 들어간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장차 대학에도 보내야지 생각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불러만 놓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은 대학의 현실을 바로 볼 때가 되었다. 아직 우리 아이는 어려서, 혹은 정신지체라서 대학진학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눈을 돌리지

말고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대학의 이런 무분별하고 계획없는 개방은 조기교육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직업교육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만 확대되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특수교육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을 거다.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제는 대학이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교육이고 특수교육이다.

올해에도 1200여명의 장애학생을 선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 이제 문을 여는 노력에 더해 어떤 장애학생이라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싶다.

11월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경험한 것들은 각자의 생활에 정보로 쓰이기도 하고 가치관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나 어렸을 때의 경험은 살아가는데 더욱 많은 영향을 준다. 요즘처럼 정보와 문화가 개방된 때에는 더욱욱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버겁도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아동 교육에도 이런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장애아동의 성장과 사회생활도 일반인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되도록 많은 경험을 조기부터 하는 것, 그것도 바른 경험을 일찍부터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특수교육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기통합의 중요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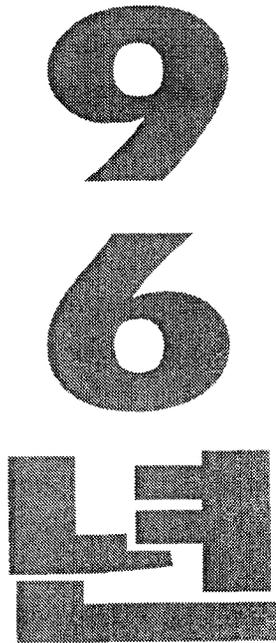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어른과 다르다. 어른들처럼 간접 경험으로 쌓여진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다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을 보면서 함께 자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거리감이 없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처음 장애인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왜곡되게 바라본다. 아이들은 마치 화선지처럼 새로운 것이 잘 스며든다.

가끔 어떤 엄마들은 일반아동인 자기 아이가 장애아동과 함께 공부하면 그 아동을 따라한다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른이 하기에 따라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은 그외에도 많다. 부모의 잘못된 언행이나 방송매체의 상업적인 언행 등을 따라할 때 그렇다고 부모와 떨어져 살게 하거나 방송매체를 완전히 격리시키면서 아이들을 키우지는 않는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옳고 그름을 아이의 시각에 맞게 설명하고 바른 자세를 갖도록 교정하며 키우지 않는가! 장애아동과의 어울림도 마찬가지다.

장애아동의 조기 통합교육은 지극히 당연한 세상사는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만큼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 모두에게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움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12월호

이야기 하나

1996년 제주, 어느 조기교실

시설을 확장하고 시에서 재정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찾아갔다. 시청직원은 어디에 등록된 기관이냐고 물었고 우리는 아무 곳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지원이냐고, 그리고 왜 아무데도 등록하지 않고 기관을 운영하느냐고 되려 혼만 나고 나왔었다.

이야기 둘

1996년 대전, 어느 조기교실

세들어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철거를 당하게 되었다. 시에서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필요한 감정평가를 나왔다. 시청직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고 우리는 아무 곳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가버렸다. 시교육청에, 시청에,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모두 다 왜 등록도 하지 않고 기관을 운영하느냐? 불법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고 되려 혼만내고 좀 생각해 준다는 곳은 웅변학원으로 혹은 보육시설로 등록을 하라고 한다. 7년동안 온갖 정성을 들여 장애아동을 교육한 조기교실이다.

이야기 셋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장애아동 조기교육에 이제 정부가 나서겠다고, 조기교육은 무상으로 시키겠다고 개정되었다. 조기교육기관을 명명하는 특수유치원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정리해 명문화시켰다.

제5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교육관련 행정가나 특수교사 등 전문가들은 누구

나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 아이들의 조기교육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가?

위에 소개한 이야기는 장애아동 조기교육의 무상교육이 법제화된 지 2년이 된 바로 지금 실제하는 이야기들이다. 한국특수교육협회에서 발행한 전국특수교육요람을 보면 우리나라 사설 조기교실이 95년 현재 200여개가 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기교실은 사설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은 특수학교 유치부와 다르지 않은 조기특수교육이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지난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곧바로 이들 사설 조기교실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조기교육 무상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세운 바 없기 때문이다.

분명 법에는 조기교육이 특수교육의 한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을뿐더러 정부의 책임하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200여곳이 넘는 이른바 사설 조기교실이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등록해야하나 고집하다가 무국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손상받는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은 누가 보상한다 말인가? 어느 기관보다 어려운 실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채우는 누가 보상한다 말인가?

어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설 조기교실은 막했던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명맥을 이어오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 온 곳이다. 이제 명백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든, 사립특수유치원으로서의 인가이든,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조기특수교육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1월호

지난달 18일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 찬바람에 굵은 손을 모아 수화로 구호를 외치는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 이 어린 학생들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에바다복지회 재단의 청각장애수용수용시설

의 교사와 원생들이다. 이들은 2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재단 비리에 대한 공개, 교장 구속, 관선이사 파견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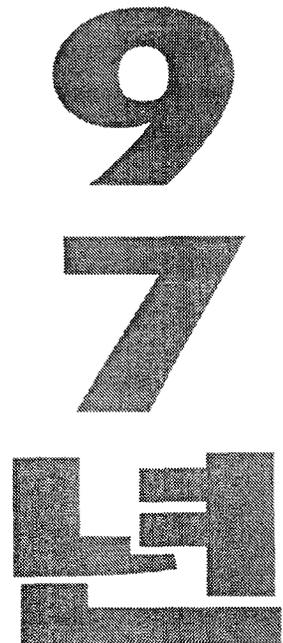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추위에 떨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폐쇄, 족벌체제, 사유재산 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형식적인 정기감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운영은 형, 누나, 삼촌 등의 가족잔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 일가의 사유재산 축적의 발판으로 시설이 전락되고 있다.

에바다 복지회의 경우도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현재 재입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에바다학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예외없이 족벌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시설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족중 한 명인 서무과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구속시켜 버리고 다른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허허로운 웃음밖에 안나온다. 최근에는 농성중인 임신 8개월의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복지회의 이사장은 이번 농성은 학교에 지각해서 혼이 난 학생들의 사사로운 감정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시설비리는 운영자의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화로 인하여 생기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많다. 정부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지침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전문적인 감독단위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설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9 7 보

않아 왜곡된 시설운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다. 선진복지국가를 외치는 정부는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권력을 아끼고 다른 데에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탄압, 부정과 비리에서 공권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올

해만 해도 삼육재활센터의 횡령비리 사건, 특수학교 설립 거부 사건, 에바다복지회 비리 등 크고 작은 시설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정이 아닌 곳에 수용되어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 한 결코 ‘선진’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능력함이 시설비리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해결의 시작은 쉽다.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 학생들이 내자식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인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것만으로도 평생 자유롭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이런 현실은 죽어서도 아물지 못할 상처가 된다는 것을 단 한순간만 생각해보면 책상앞에 앉아 회전의자만 돌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디 97년에는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월호

" 날치기와 장애인 복지 "

97년을 시작하면서 국민들 최대의 관심사가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노동계의 전면적인 파업에 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법이 장애인고

용촉진법이나 특수교육진흥법이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장애인, 혹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그러면 그렇지, 언젠가는 장애인 생각해 주는 나라였나" 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며칠전 일이다. 같이 일하는 장애인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범국민대회에 가자는 말에 "언제 장애인이 국민 대접을 받았어야 국민대회를 가지" 하고 답했다. "그러니까 국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야지" 라고 응수하긴 했지만 씩씩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알 것 같다. 지하철 파업이다, 버스, 택시 파업이다 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마치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고 어쩌면 날치기 통과된 법이 장애인 관련 법이었다 해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스운 말로 '나, 국민 맞아?' 하는 심정들 때문이라는 것을

장애아동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도 3년이 지난 요즘에도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안고 고민해야 하는 나라.

장애인의무고용율 2%가 규정된 지 5년이 넘는 요즘에도 공개시험에서 장애 때문에 탈락되어야 하는 나라.

영화라도 한번 보려고 계획해도 도움없이는 집밖으로 나가기도 참 힘든 나라.

장애인 시설은 한적한 시골에나 만들 수 있는 나라.

이런 실정에서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 이웃으로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자. 5만, 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교수, 종교인들이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몇주째 계속해도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아무 소리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 국민으로 대우해 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아이 교육 문제로 분주하고, 사는 문제로 고단할지라도 이런, 저런 세상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인도 국민임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천만이라고 한다. 천만명이 관련된 법을 새벽 6시에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는 나라라면 400만 장애인정

도 관련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 버릴 지 알 수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재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제 필요에 따라 재벌들의 요구만을 그대로 수용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날치기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자, 마음과 귀를 열고 이번 일이 나와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3월호

"대통령과 그의 아들"

노동법, 안기부법 등이 국회에서 날치기 제정되어 한동안 어수선했던 정국이 물을 끼얹은 듯 음산하게 조용해졌다. 이쯤하여 '한보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촉각이 그 사건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가난은 죄가 아니다"고 배웠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의 없음은 충분히 죄가 되고도 남는 것 같다.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작은 돈 대출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고 까다로운데, 역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돈도 쉽게 대출받기도 하니 말이다. 게다가 없는 사람이 위장자한테 조금 짊어 주는 돈은 뇌물이라고 잡아가더니 있는 사람들의 큰돈은 '떡값'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아무튼 '한보사태'의 위력은 대단해서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고, 머리를 조아려 재임기간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 못지 않은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아들도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한다.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도 쉽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법도 어찌 그리 간단한지 모를 일이다. 없는 국민은 '한보사태' 이후 급격하게 쪼그라든 경제위기의 주범인양 '경제살리기'에 고심하여 치솟는 물가에 시름만 늘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부견자견이라고 했던가!

몇 개월전 아버지인 대통령은 '루즈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받으며 장애인 복지에 힘쓸 것을 다짐했었다. 아마도 대통령의 그 수상소식에 황당해하지 않은 장애인이 없을 터인데, 아직 그 황당함이 가시기도 전이었을 때 대통령의 아들은 장애인인 모 국회의

의원을 빗대 "그 절룩 절룩 거리는 놈"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장애인을 향한 비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가장 생생한 현장이다. 그것도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비어를 썼다면 그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다수의 장애인 은 '국민'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의 '국제장애인상' 수상과 그의 아들의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표현'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보다도 웃긴 유머가 아닌가! 안타깝게도 아주 씩씩하게 우스운 유머이지만.

경제의 불안은 곧 나라의 불안이고 국민생활의 불안이다. 곧, 국민의 기본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다. 이럴할 때 장애인 복지는 또 한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미 경제불안을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장애인들은 줄라맬 허리도 없는데 허리띠를 줄라매라 하고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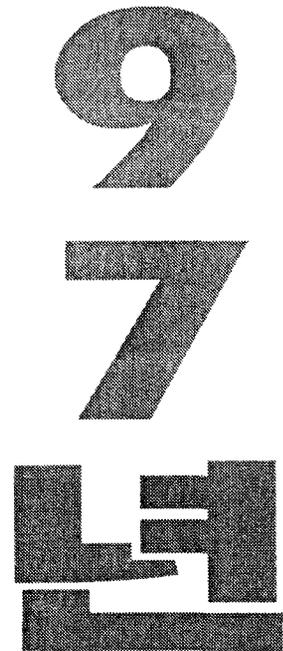
아들의 망언을 빌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남은 재임기간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4월호

"제2회 국민 걷기대회"를 준비하며

지난 3월 13일 부산 신평지하철역 입구에서 "생산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한줄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한 박명철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거부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10여년을 열심히 공부하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장애인 학생들, 노점상 철거에 항의해 분신한 장애인 등.....

과거정부에 비해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라고는 없는 이 땅에 루즈벨트 장애인상을 수여한 미국의 루즈벨트 재단.

장애인 부랑자들로 가득찬 것같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장애인 고용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두 번째 걷기대회를 준비하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다. 물론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해낼 수 있는 노동의 생산물과 노동력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보다 낮게 평가되고 양적으로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나 무능력자로 판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도 필수적이지만 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정책개발과 기술교육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과 기타 그룹 홈, 자립생활을 위한 센터,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은 것 같다.

장애인이 편해지면 일반인도 편해지며 장애인 문제가 해결되면 기타 일반인의 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회적으로 모두들 공유할 수 있으면 하며 장애인문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문제로 공유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율의 확대와 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의 확보와 지하철 및 버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시설개선, 상급학교 및 기술

교육의 기회 확대와 심화교육 및 자립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모두들 노력하자.

걷기대회를 준비하며 올해가 마지막 '장애인 고용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걷기대회' 행사가 되길 바라며 더 이상 억압과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기회가 많은 열린 사회가 다가오길 기대

해본다.

6월호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논의 "를 보며

얼마전 한 구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주소변경을 알리는 전화였는데 이름이 낯이 익었다. 몇 개월 전에 주소변경을 알리면서 자신의 아이가 강남의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이사를 하게되었고 자신의 집도 이사를 해서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 이사간 지역의 인근 특수학교를 열심히 찾아다니던 엄마가 전화를 했었다. 학교마다 자리가 없다고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학'이라는 절차로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 입학하는 것으로 해서 알아보라고 말 쓰드렸었는데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주변 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하고 예전에 다녔던 학교를 따라서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으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지난해에 있었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한 토론의 자리였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심사, 배치에 대한 권한을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로 전환하자라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 때 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었다.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학교에 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바로 그 장면이 떠올라 대체 지금 이땅에서 모든 장애학생이 원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씩씩해지고 말았다.

지난해 말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5개년 발전 방안을 보아도 이제 어디서든 특수교육을 받는 일은 아주 쉬워진 듯 느껴진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의 교육문제 때문에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습도움실이니, 장애에 맞는 자유로운 학제 도입이니, 자원봉사 전산망이니 하는 형식적인 틀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속해야 하는 아동의 문제나 교사의 문제, 교육내용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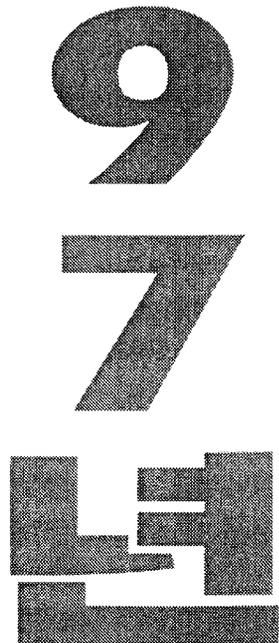
이제 6월이면 두 번째로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될 듯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만 형식에 치우치는 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한다. 형식은 국가가 만들고 내용은 부모나 교사의 개인재량으로 채우는 식의 특수교육이 아니라 국가와 부모, 그리고 모든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형식과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구조가 법제화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8월호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10일 시내버스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버스개혁위원회를 구성,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98년까지 공영버스 300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진 이 대책안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프트 장착 저상버스 마련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다. 공영버스 300대중 1-2대를 장애인용 버스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야기 하나)
 남씨는 올해 32살의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모처럼 맞은 연휴동안 시내에 나가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버스도 전철도 탈 수가 없습니다. 몇 날동안 고심하여 생각해 보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동네 어른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옴 했지만 영화관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영화를 보는내내 화면의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억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들 내는 세금도 다 내고, 남들처럼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탈 수 있는 시민인데..... 장애인인 것도 억울한데 남들보다 몇 십배나 비싼 택시요금을 지불해야만 어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지하철도 요금은 할인되는데 도대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나도 남들처럼 버스를 타고 어디든 다니고 싶습니다. **(이야기 둘)**
 거주머니는 오늘도 13살의 아들을 들쳐업고 아들의 학교로 등교를 한다. 뇌성마비인 아들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집과 학교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등학교길에서는 업마의 등을 이용한다. 집근처의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업고 다니는 게 좀 나았는데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부터는 아들을 업고 버스에 오르내리는 것이 위태롭기 짝이 없다. 복지관같은 곳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면 아들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버스를 복지관 바깥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걸까? 장애아동을 두었다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이렇게 들쳐 업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그냥 이렇게 혼자 한 숨쉬며 힘들게, 혹은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비교하고, 닦은 척하고 싶어하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휠체어장애인들도 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니까! 마침 서울시에서는 민영버스의 운영체계와 서비스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버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단계적으로 그 숫자를 늘이겠다고 하면서 98년까지 300대를 마련한다고 한다.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참에 목소리 한 번 높여보자.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편의시설이 마련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용할 수 있



고, 그것으로 이미 질높은 버스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될테니까!

무리한 요구라고 말하지 말자.

점차적으로 늘려가자고 하지 말자.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미 구입한 버스를 나중에 편의시설 장착한 버스로 다시 바꾸는데 드는 돈이 더욱 많아질 테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1-2대 저상버스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보다 지금, 조금 더 투자해서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약돼서 좋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짐수따서 좋고.

자. 이제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9월호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은 다른가?

며칠 전 한 구독자로부터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지난 호(8월호)에 나갔던 서울지역 보육시설 안내에 관한 것이었다. 한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을 소개했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장애아동을 안받는다고 한다.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도저히 그대로 물어둘 수 없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전화기를 끼고 앉아 한 곳, 한 곳 전화를 걸어보았다. 아뵘! 그 독자의 말씀대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집



에서 장애아동을 정식으로 통합교육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통합"이라고 당당히 인쇄되어 있는 안내표를 보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화가 나기도 했다.

그들 대부분 어린이집에는 적어도 1명정도의 경한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아마도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그 단순한 사실을 보고 "통합 보육시설"이라는 판정을 내렸던 모양이다.

한 일간지에서는 시청자료를 참고로 기사를 썼다고 하니 말이다.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 한 엄마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있는 다른 보육시설에 대해 물어 왔다. 물론 그분은 전일제를 원하기 보다는 자신이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물었었다. 동네마다 어린이집, 놀이방 등 많은 보육시설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선풍 떠오르지 않아 무척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게다가 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이 이런 주간 보호시설을 원한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서울시내에 구립어린이집만 거의 5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에게만은 아직도 이렇게 문턱이 높은 것이다.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받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특수교사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면 이런 저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재미있는 일이다

교육부에서는 "통합교육"을 이야기하며 일반유치원에 장애아동이 들어가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가들은 한 가지를 요구하면 딱 그 한 가지밖에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니 딱 교육부에서만 이력저력 움직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난 모르는 일'이란 태도로 그 많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모른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어린이집을 탓할 일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장애아동 통합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만드는 일에 할 투자를 이미 있는 어린이집에 하면 작은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아동들은 24시간제, 영아전담, 학령기 아동

방과후 지도 등으로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세밀한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다. 장애아동들도 동네의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일반아동들과 함께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래보다. 그래서 아주 어릴때부터 함께 놀고 공부한 아이들이 장애, 비장애 나눔없이 자연스럽게 한 동네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어머니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인가?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빌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지 못한 점 깊이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10월호

"장애인 채용 박람회"와 고용부담금 속이기

9월 4-5일 양일간 [97 하반기 채용박람회]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9월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해로 삼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개최한 행사였다. 채용박람회장에는 장애인을 모집하는 크고 작은 업체 65개와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 2천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65개 업체에서 모집하는 장애인은 4백 86명이었으나 행사동안 취직이 된 사람은 115명이었다고 한다. 신청한 업체들이 제시하는 임금은 5-60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4개 업체만 1백만원대여서 전체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일하는 장애인"을 만들어 내는 자체가 마치 상품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박람회에 전시되어 있는 '구인'이라는 상품을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장애인"의 대열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이런 식이라면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은 평생가도 "일하는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박람회라는 일회적 행사로 장애인 취업의 문제를 간소화시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취업의 문제는 교육권 확대와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직업훈련 등의 체계화된 준비작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체계와 직업훈련 과정에 대

한 심도 깊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이런 노력없이 단순히 사업체와 장애인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일종의 책임회피가 될 수 있다.

일마전 바로 이런 사실을 입증해 주는 일이 생겼다. 95년, 96년 2년동안 2%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를 줄여 신고해 부담금을 적게 낸 사건이다.

미납금 총액이 6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 사업체가 2%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고정된 사실이며 이제는 고용부담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당혹스런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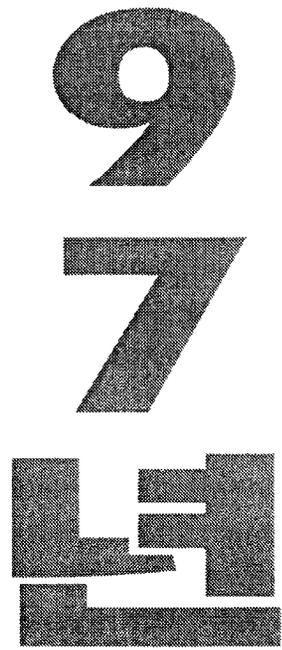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꿈을 잃게 만드는 달인 것 같다. 그저 장애인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사업체와 일할 수 있다는 장애인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기업들의 고용부담금 안내기와 줄여서 내기를 보며 노동부와 공단은 실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부터 정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벌기"만을 위한 것인지, 기업들은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지 등등.

자신들이 장애인이란 생각하고, 자신들의 형제와 자식이 장애인이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맞춰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형제 또한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장애인을 마치 팔, 다리가 못쓰게 되면 미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로봇 인형처럼 취급해도 내탓이려니 참고있는



것에 대해서. 물위에 대책없이 떠 다니는 보기가 싫은 기름처럼 분리된 채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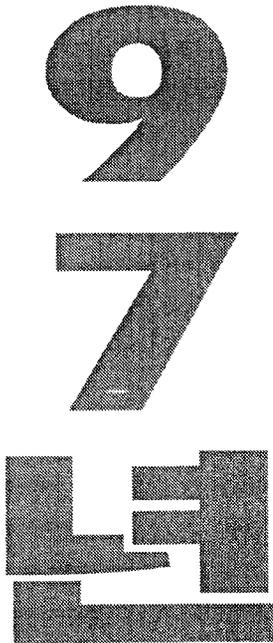
11월호

특수교육 발전방안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지난 해 11월 교육부는 '1997년-2001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본지 97년 1월호 참조) 장애아동의 전원 취학, 장애유아교육 확대, 재택교실 설치, 학습도움실 설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다들 어려운 문제라고 여겼던 관계 부처간 협력문제도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보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얼마전 있었던 98년도 교육예산 확정과정을 보면서 과연 교육부가 보여주었던 것이 진정한 의지였는지, 단순한 발표회였는지 의심하게 된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전체 국민총생산 대비 5%에 해당하는 21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9.3%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 예산은 31% 감소한 1백 32억 4천 5백만원으로 올해보다 6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으며, 애초 교육부에서 올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액수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런 처사는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또다시 특수교육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일이다. 발전방안을 발표할 당시 97년 올한해만 소요예산이 871억이라고 되어 있었으며 98년에는



1,148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실제 투자액은 계획했던 소요액의 22%정도인 192억 4천 3백만원으로 거의 모든 사업들을 흥내만 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전체 교육예산은 19.3%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은 31% 감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직도 정부가 장

애인을 교육대상으로 파악하지 않을뿐더러 장애인은 무용지물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이것, 저것 다 해주겠다고 발표해놓고, 한참 기대와 희망으로 앞날을 그려보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 마치 배고픈 강아지에 게 먹이를 주었다 뺏는 것과 똑같은 야비한 짓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이제 부모와 특수교육 관련자들은 교육부가 아니라 재정경제원과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부모님들과 특수교육 관련자들은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데 역할을 해왔다. 그들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발전방안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교육부는 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그런데 "돈" 밖에 모르는 재정경제원은 아직도 장애인을 "경제성"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오랜기간동안 교육부를 움직이고,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어느 정도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생각된다. 이제 그 노력의 대상을 바꿔보자.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부모가 요청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번처럼 재정경제원 같은 데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계획이 없던 때보다 더 암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 알만큼 안다.

어디를 터야 막힌 물꼬가 트일 지 업마들 모일 때 마다 수다로 의견을 모아보자.

더 이상 수다로 해결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주먹을 쥐고 찾아가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인간의 삶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말해보자.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서보자.

12월호

장애인 복지야 대통령선거

'4년 연속 본선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며 월드컵 축구 열풍이 한 차례 나라 안팎을 들뜨게 했다.

그 열기가 식으며 국민들의 시선이 점차 제 15대 대통령 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잇따르는 대기업의 도산과 불황으로 살기 힘들어졌다는 경제적 불안감을 그

대로 안은 다소 무심한 시선이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큰 정치일정이기에 각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경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참모들과 마련한 정책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 선거는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전이 돋보인다.

그런데 여기서도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 일찍부터 TV를 통해 후보들을 볼 수 있었고, 이제는 토론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후보들의 정책이나 토론 내용을 청각장애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자막을 이용하거나 수화방송을 하면 청각장애인들도 납득 시켜하는 시간에 같은 내용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뿐아니다. 선거직전 유권자들에게 보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유인물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받아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유세때나 선거와 관련된 각종 유인물중에 점자 인쇄물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투표용지도 점자가 아니라서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투표할 업두를 낼 수 없다.

또 있다. 선거당일이 되어 투표하러 가보면 2층에 있는 투표소는 왜그리 많은지..... 실령 1층이라고 해도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경우 납의 도움없이는 투표장에 들어가기조차 어렵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가 꾸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방송사, 각 후보자 들에게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수화 및 자막방송, 점자안내서, 점자 투표용지,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해서 항의하면 저기가 안하는 거라고 하고, 저기에 연락하면 여기서 안하는 거라고 한다. 한 방송국에서는 후보토론회때 자막이나 수화방송이 함께 나가면 '정상인의 시선을 혼동시키고, 판단력을 흐린다'며 못한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방송되는 뉴스시간에 나오는 토론회 요약내용에 나오는 수화방송이 자신들의 조치라고 말한다. 심지어 지체장애인인데 왜 수화방송을 요구하냐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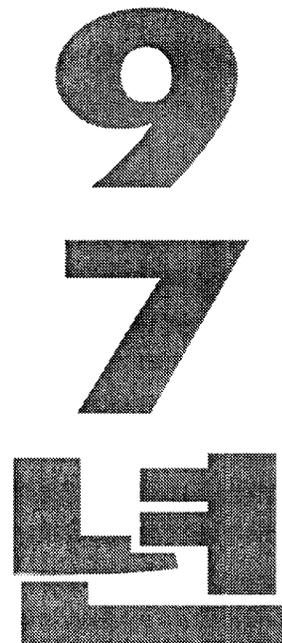
선거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알 권리가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비밀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들

대충 알아서 하라고 한다. 들을 만큼만 듣고,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갈 수 있는 것만큼만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말라는 식이다. 이런 처지에 누가 장애인 복지공약으로 무엇을 내놓는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는 투표행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투표행위까지 가기 전에 차단당하는 권리가 너무 많다. 한 후보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휠체어 장애인인 그 후보를 찍으러 올라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만화같은 이야기인가? 투표소를 1층에 만들면 되텐데.....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투표소를 선정할 때 장애인 및 노약자 유권자를 조금만 생각해 주면 되는 일이다.

수화 및 자막방송이나, 점자 안내서와 투표용지는 돈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별도로 비용이 드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모쪼록 이번 선거에서는 320만 장애인 유권자도 자신의 삶과 직결된 장애인 복지공약을 제대로 보고 들어서, 납득처럼 자유롭게, 비밀투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각 후보자들, 그리고 각 방송사 모두 각성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위해 마음과 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월호

새정부와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지난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각 후보들 간의 선거전이 한층 고조되던 어느 날엔가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전격 발표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IMF경제시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경제살리기"라는 후보들의 공방으로 표현되던 시기였다. 또한 현직 대통령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게놓은 시기였다.

누가 보아도 고개를 갇히려게 만드는 발표였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것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인지..... 특히나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는 "특수교육 5개년 발전방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의 실정은 급기야 "국가 부도"사태를 남게 하였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아마도 국민들의 불신과 욕지기를 잡시나마 피해보려고 생각해 낸 것이 '장애인복지 계획 발표'였던 모양이다. 임기내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예산을 삭감시켰던 것이 사회복지였고, 이미 발표한 장애인 교육정책이나 고용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데 말이다.

그래서인가,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발표를 맞는 심정이 '반가움'이 아니라 '슬픔'이다. 아직도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는 어려울 때 잠깐 국민들 마음을 현혹하는 꾀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예 모른척 할 때보다 더욱 압답하고, 서글픈 생각이 든다. 도대체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기고 발표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또한번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그 정책들의 시행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자.

슬픔도 안타까움도 새로운 도전의 마음으로 승화시켜자.

이제 새정부가 들어선다. 몸이 좀 불편한 대통령과 함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아 당당하게 국민들게 보이겠다던 사람이니,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대해보자. 이전처럼 그쳐왔던 자리에서 고고한 학처럼 기대만하지 말고,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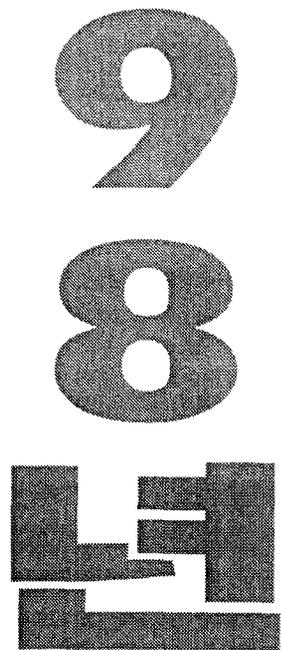
것에 맞는 도전정신을 발휘해보자.

새정부가 계획하는 장애인복지 계획도 12월에 발표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이니,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눈여겨보자. 당사자의 가장 전문적인 안목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신랄하게 꼬집어 주자.

그리고 발표된 모든 계획들중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챙겨갖자. 정책이라는 것은 일간지에 발표되는 문서가 아니라, 우리들 각각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이다.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한 번 눈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좀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도 작구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써먹을 것은 써먹어야 잘못된 것도 빨리 고칠 수 있고, 모자라는 것도 채워넣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98년 한 해동안 "경제살리기"에 주눅들지 말고, 챙길 권리는 다 챙기며 살자. 권리를 다 포기하며 살린 경제는 결국 국민을 죽일 뿐이니까.....



2월호

새대통령에게 바란다.

구미시의회가 98년 시예산안 심사에서 구미 YMCA 어린이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보조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내일신문 216호

.... 정부는 최근 기존 10% 예산 삭감 방침보다 더 확대한 15%선까지 일반예산을 축소시킬 것을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예외없이 15% 삭감방침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장 정부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의 올해 사업 실행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신문 421호

오랜 정치연륜과 수많은 시련속에서도 자신만의

98년

신의를 지켜왔던 사람으로 끝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먼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두 사람이상만 모이면 화제가 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평소엔 너무 거대해서 겁이 화제가 될 수도 없었던 이른바 재벌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놀라고 살림살이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새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지 않도록 하고, 가정 살림살이가 안정되게 하고, 국가 신용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무원 임금 삭감, 정부기구 구조조정, 긴축재정 등으로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하며 여러 차례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제를 왜 살려야 하는지요? 국민들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들도 하나같이 발뚎고 나서서 달려도 모이고 금도 모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지예산 삭감이랑이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사람이라면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좀 더 아끼고, 줄여야 겠지요. 하지만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헐벗고 굶주리는 식구의 옷가거나 양식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쓰이는 재정을 조정하고,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전부터 한결 같이 어려웠던 부분의 재정은 삭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하니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쪼개서 나눠쓰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도 그렇게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야지 어떻게 더 뺏어갈 수 있습니까?

정부 긴축재정은 지금 시기에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획일적인 예산 삭감은 국민들 각자의 처지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복지부분 예산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70년대 어려웠던 경제를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헤쳐 나오고 보니 남는 것은 분배불균형, 황금만능주의, 온갖 부정과 비리 뿐이었던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보다 나은 국민생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 수 없는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중에 많다는 것을.....

3월호

전기에너지 절약과 장애인

월간 어깨동무가 속해있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세들어 사는 건물은 6층 건물이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 6층 건물에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얼마전 다음과 같은 격문이 엘리베이터에 붙었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1998년 1월 5일부터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기 사용 제한을 아태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 통상산업부 공고 제 '97-157호)

.....

* 송강기는 3층이하 은행금지 및 4층이상 격층사용 (병원, 관광호텔, 아파트 및 화물용은 예외)

위의 전기사용 제한 조정명령 조치에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안내문을 보았을 때는 우리 사무실은 5층이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후 회원 한 사람이 아이의 돌잔치를 사무실 근처에서 하려고 하니, 마땅한 식당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2, 3층에 있는 새로 생긴 식당이 좋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정작 당일에 가까웠을 때, 우리는 주변에 좀 넓다란 1층 식당을 찾으러 헤매다녀야 했다. 그 회원은 장애인이었다고, 덕분에 축하객의 대부분이 장애인이었는 데, 엘리베이터없이 2, 3층 식당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비아저씨에게 이야기했더니 공고문에 장애인 예외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고 더 이상 힘을 써주지 않았다.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장애인이 매일 드나드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4층이상만 가동한 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혹 사무실이 3층쯤 있었다면 IMF시대가 끝날때까지 문을 닫든가, 4층이상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사정은 우리 건물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지하철역사안의 에스컬레이터도 운영을 멈추고 있다니, 장애인은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런 조치는 부분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활의 전부를 흐트러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에게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휠체어를 탄 한 회원은 요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전기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전기에너지 박탈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안내문 괄호안에 들어 있는 '화물용은 제외' 때문에 화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밤새도록 밝혀져 있는 기업들의 네온사인이나 상가의 네온사인은 당연히 꺼야 한다. 가정에서도 필요없는 전기소비는 지양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단힘' 단추를 누르지 말아서 전기

를 절약해야 한다. 장애인도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아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결국 대국민적인 전기절약 행사에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들 조금씩 절약해야 하는 것은 많지만 기본생활을 박탈당하는 절약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산업부는 '97-157호 공고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의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추가하든가, 엘리베이터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98년

4월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자유롭게 하자!

4월이다. 세상은 어수선훘도 시간은 자기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 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 장애인의 날이 더욱 가슴에 닿는 것은 IMF라는 시대정황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이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IMF 한파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불러 오고 있어, 매일 1만여명 이상씩 실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취직되어 있는 장애인은 정리해고 대상 1순위라는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마다 취직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직한 장애인에게 더욱 서글픈 하루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여러 노동단체에서 이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정리해고는 아니라고 말해 왔고, 정부도 나름대로 실

9 8 년

직자를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오히려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재벌들은 장애인 2%의 무고용을마저 낮추려고 한다고 하니, 장애인의 날을 맞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은 남들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법의 시행규칙을 마련,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근린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 등에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의 접근권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제정된 법령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들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기만 한다면 장애인의 사회생활이 훨씬 왕성해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장애인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할 지 난감하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수년간 고심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는 경제위기로 모든 것을 줄이고, 아껴야 하는 때이다. 이미 있는 시설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 어려운 시기라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복지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미 지난호에 언급한바 그대로 경제위기가 곧바로 장애인을 운신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는 어느 때보다 더욱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지, 시행해야 할 규칙을 안 지켜도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정말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자유로워졌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을 축하한다고 커다란 경기장

에 장애인을 몰아놓고 연예인들 불러서 한 판 놓고 खेल 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TV에서도 자수성가한 장애인만 보여주지 말고, 자수성가하고 싶지만 여력까지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달라진 공공기관을 소개한다거나, 경제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대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시도가 쌓여야 비로소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속에서 자연스럽게 일하며 살아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장애인을 유별나게 혹은 무능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보자.

5월호

경 추(?) 제 18회 장애인의 날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앞에는 머리에 검은 띠를 두른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다. 고층빌딩앞 인도에 오롯이 모여 있어서 어찌보면 초라한 행색같았지만 그들 내부는 진지한 긴장감으로 충천해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별로 없는 그 길에서 그들은 이런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폐지 주장하는 전경련은 각성하라!" "IMF 진짜주범, 전경련을 해체하라!"

전경련은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경총과 함께 우리 나라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 해 온 곳이라 할 수 있다. 정경우착의 온상이며 현재 맞고 있는 IMF 경제 위기의 책임이 많은 곳이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 재벌의 견고한 성(城) 같은 곳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재벌들의 기업구조조정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경련을 중심으로 뚫뚫몽친 재벌들은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보다는 노동자에게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를 해고시키거나 여성 생리휴가를 폐지하자 는 등의 계획이나 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경련은 지난 3월 30일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 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개혁과제에는 300인이상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2% 폐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 장애인들은 IMF 이전에도 취업하기 힘들었다. 장애인도 노동권리와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그것도 많은 장애인들의 죽음과 싸움으로 만들어 진 것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고 그 핵심내용이 300인이상 기업체에 장애인 2% 의무고용제이다.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갖아가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대통령 취임때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요즘은 비장애인도 실직하여 살기 어렵는데 장애인까지 챙길 수 있는냐고. 그러나 어디 생활의 어려움이 실직자에게만 있는 것인가? 실직한 비장애인의 어려움이 상대적인 것이 라면 장애인의 일자리 없음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 고통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비장애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미 장애인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장애인이라 받아 주지 않아 매년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실업사태를 빚는 경제위기시대에 장애인이 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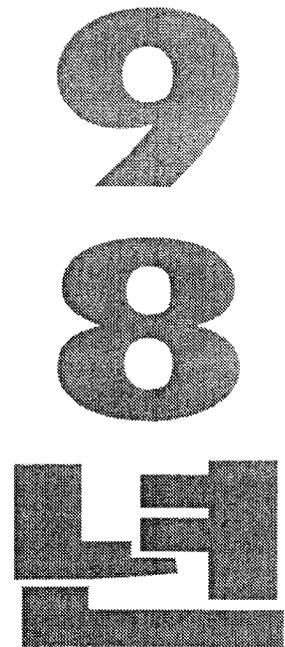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장치마저 거둬들인다면 장애인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월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앞에 모인 장애인들은 이런 절박함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이며 마침내 작은 승리를 거뒀다. 전경련의 상무이사가 그들 장애인 앞에 나와 정식으로 사과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덧붙여 장애인관련 신문 3개에 전체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사과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작게는 이번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지부터 크게는 앞으로 장애인 노동권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까지 우리의 할 일은 많다. 그런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짧은 자유를 맛보았다는 것으로 이번 장애인의 날은 결코 쓸쓸하지 않았다.



7월호

"한국의 특수교육 지표"

지난 6월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의 특수교육 지표' 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6세-21세의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령인구의 4.23%인 48만7천9백6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9.85%인 4만8천89명만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9.7%, 중학교 11.26%, 고등학교 5.15%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수학교는 지난해 1백14개에서 98년에는 1백18개로 4개교가 신설되었고 특수학급도 3천6백26학급에서 3천7백28학급으로 1백2개학급이 늘었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경우 담당교사중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90년 68.3%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는 54.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통계자료를 접하면서 교육부의 '장애아동 완전취학' 정책은 언제쯤 실현되려는 지 걱정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실제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조사되지 않은 것이며, 전국의 무수한 시설에 버려진 채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또한 포함되지 않은 것일 텐데.....

9 8 년

그나마 조사가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들도 9.85%밖에 교육을 못받고 있다니.....

교육부 특수교육담당관실은 진짜로 장애아동을 교육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9.85%의 아동들이라도 교육을 받는 것은 아마도 부모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 뿐 교육부의 의지는 아닐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장애아동 완전취학'의 기치를 들고서도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 있다. 여전히 특수교육행정이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특수학급은 계속 늘리면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증거는 또 있다.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아이들이 교육받는 수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특수교육 행정의 형식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특수학급에 다니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반아동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각각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장애아동은 절대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중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생기지 않는다.

부모들이 아이를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과 한숨으로 지새는 지 안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눈물과 인내로 지켜내려는 통합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을 교육부의 형식적인 행정이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좀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많은 정성을 들일 줄 아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잘하는 자식에게만 정성을 들이려 한다. 물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대부분은 여전히 좀 부족한 장애아동에게

더 많은 정성을 들인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를 제대로 받아 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도 크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떤 힘있는 세력의 공식적인 지원없이 장애아동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정책과 그 실현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번 결과를 보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뵈게 될 큰 한숨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8월호

2000년, 특수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

지난 6월 30일 교육부는 '유치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통합교육, 학생중심, 직업교육, 치료교육 활동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초등부 1학년부터 고등부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통합하고 고등부 2,3학년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신지체, 정서장애의 경우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 12년 무학년제 개별화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학년별 수업이 아니라 능력별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에게는 일반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의 내용도 학업중심에서 생활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직업교과의 경우 사양직종인 자수, 편물 등은 없애고 제과, 제빵, 금속공예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지난해부터 거론되었던 교육과정 개정안이 결국 확정, 발표되었다. 통합교육, 학생중심, 직업교육, 치료교육 활동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특히나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일반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통합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일반교육과정 체제의 적용은 곧, 일반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의미하며 이런 교류를 활발히 하더라도 일반학교에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완전 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9

8

번

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술 중심은 곧 아동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이전의 학업중심 개별화교육계획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던가, 보조교사 제도를 공식화해야만 비로소 개정안의 생활기술 중심교육은 실현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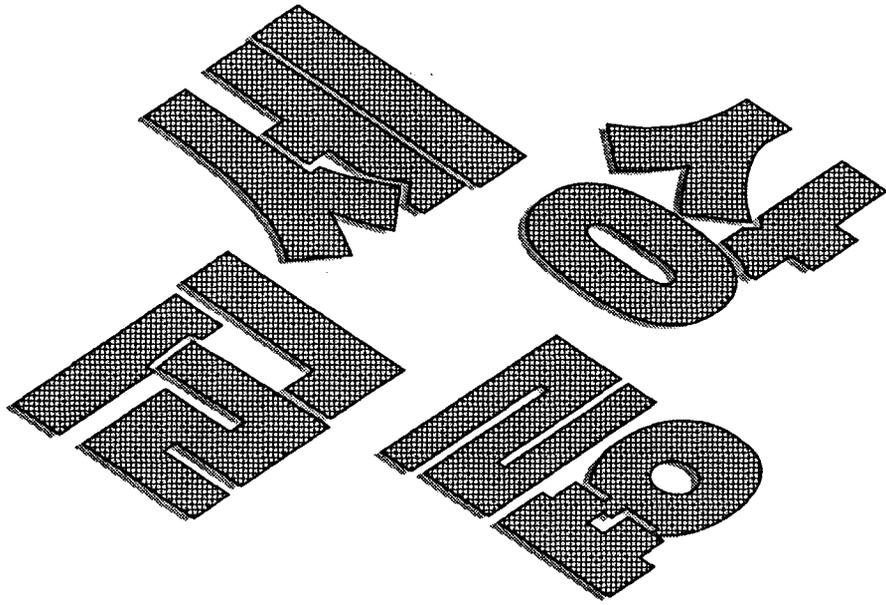
걱정스러운 것은 또 있다. 장애학생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으며, 현재는 전공과라는 형태로 집약, 운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구조를 보자. 특수교사가 직업시간을 담당하는 곳이 태반으로, 1주일에 몇 번 직업시간을 갖는다고 아이들에게 직업기술을 가르칠 수도 없고, 졸업 후 어딘가 취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만으로 과연 직업교육은 강화될 것인가? 사양직종을 없애고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직종에는 시설투자비도 많이 들 것이고, 실질적인 직업기술을 가르칠 전문교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직업교육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즉, 새로운 직종의 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도 더 들여야 하고, 적절한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져야만 직업교육 강화는 실현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예산확보,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의 정책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

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장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서 교육과정 개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좋은 계획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또 한번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주길 바랄 것이다. 부디 능력별 개별화교육 중심이 '우열반제도' 같은 것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개정당시의 기본 방침이 철학이 되어 아주 작은 단위의 정책을 시행할 때도 적용되길 바란다. 그런 작은 단위의 발상의 전환이 모여 특수교육 전체의 모양과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늘 깨어있기를 바란다.



제1호

장한협과 장청련 전격 통합

지난 8월 27일 고양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던 장애인운동청년연합(이하-장청)과 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장한협)의 통합수련회에서 200여명의 회원님과 내외빈을 모시고 통합식을 치뤘다. 장애인계의 큰 관심을 일으켰던 이번 통합에서 장청과 장한협은 총회를 통해 통합을 결의했고 황광식 회장을 통합조직의(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 전장협) 총회장으로 옹립했다.

통합식에서 각 단체 통합에 대한 총회결과 발표와 기간에 활동과 평가를 슬라이드로 담아 상영했고, 내·외빈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다.

장애인총연맹 송영옥 회장님과 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회장은 그동안의 분산적인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벗어나 장애인단체의 단결을 얘기했고 이러한 속에서 이번 통합을 이후 청·장년 조직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통합의 결과 및 향후방안

이번 통합까지 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장청은 변화된 정세속에서 장애인운동을 어떻게 유지,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장한협은 실제 장애인계의 움직임에 대응하는데 있어 실천력의 부재와 친목단체의 한계 등 두 단체는 상당한 위기의식이

팽배했었다. 이에 두 단체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통합논의를 정식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장청은 이제까지 선도적 투쟁으로 인한 대중사업의 부재를 극복하고 장한협은 실천력의 부재라는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통합조직의 이후 행보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임의단체가 겪는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운영경험이 일천하고, 향후 통합사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를 포괄하는 조직화 사업, 이제까지의 관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전문화 사업 등이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조직화를 장애인만의 집단화로 이해하거나 또한 장애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과 노동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똑같은 장애인이라는 동류의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이며 해악일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은 인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어쩌면 사회에서 병리화된 집단이 아닐까?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무시와 탄압위주의 정책에서 정부도 한발 물러서 일정부분의 떡고물을 던져 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비판위주의 사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단위의 구체적인 대중확보 방안이나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전방과 대안으로서 전문화시키는, 자기 단위의 철저한 진지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 조직도 지역사업의 구축,

실제적인 자기대중의 확보, 활동가들의 전문화, 새로운 세대교체의 준비 등을 동력으로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확산을 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기획에 대해서는 각 집행부에서 차후 발표하겠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장애인 운동의 핵심이며 주인은, 영세 장애인 다시 말하면 장애인중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장애인 문제를 당겨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계의 대안적 상황에 대한 모색을 기쁘게 맞이하며, 좀더 깊은 장애대중의 바다로 통합조직의 닻을 올릴 것을 기대한다.



제2호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위법 부당한 조치

‘장애인 정강용씨 7급 공채시험 탈락’

93년 8월 8일 시행한 충청남도 행정직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원손장애인(3급 3호) 정강용(31세, 대전시 서구 도마2동 317-80)씨가 충청남도 도청측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임용의무에 대하여 충실한 이행을 하지 않아 불합격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당시 행정직 7급의 합격점수는 82.22였으며 정씨의 평균점수는

는 78.33이어서 만약, 장애인인 정씨가 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 5점을 받았을 경우 합격했을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정강용씨는 가산점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강용씨는 11월 8일 충청남도 이동우 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신청을 하여 12월 21일 충청남도에서 행정심판이 열렸으나 결국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도청은 309명의 채용 결과 9급에 한하여 장애인 4명을 뽑았으며 이는 시행령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209명중 4명은 1.96%로 법률이 정한 2%이상 고용은 아니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주장으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정강용씨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채용 실태는 0.58%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나마 9급 행정직에 편중된 형편으로 출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부당한 법 적용과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총무처가 실시하고 있는 7급 및 9급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군 필자에게 가산점 3점~5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은 법앞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엘리트 장애인들은 일반 취업이 무척 어려워 공무원시험을 많이 준비하는데 7급시험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때문에 애초 볼 생각도 못한다.

평균 3~5점은 총점에서 30~50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정강용씨는 과감히 도전을 하였으나 충남도청은 조금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용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정강용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취업의 문을 수 차례 두드렸으나 면접에서 번번히 떨어진 경험을 갖고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정강용씨가 공무원 시험으로 방향을 선회한

까닭은 공무원 시험은 면접이 없어 시험에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애초 장애인 응시할 수 없게끔 높은 벽을 쌓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

잘못된 고정관념

현 총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있어 큰 차별을 두고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군사정권의 잔재임이 틀림없다.

군 복무를 마치면 7,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무조건 3~5점의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과 여성들은 직업선택에 있어 말뿐인 자유를 갖고 있을 뿐 실제로 응시조차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여 급여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시험에서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1세기 선진국가로 가는 이 마당에 군사문화의 잔재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총무처 및 내무부는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평등이며, 차별이며, 차이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정강용씨 사건

에서 보듯이 올바른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장애자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국가행정에서 배제된다면 400만 장애인과 2000만 여성은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무너지는 한국농업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은 결코 안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 유세때 농민들에게 친명한 공약이다. 그러나 1993년 12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은 육백만의 농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에게 백기를 들으로써 약속을 파기했다. 전국적으로 연일 농민, 재야, 학생, 시민단체들이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 농산물 개방지지 운동을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UR(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은, 말이 개방이지 우리는 완전히 손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타 산업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은 이제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농가인구의 대량이농으로 대량실업, 도시빈민, 생태계파괴, 공해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대를 거는 것은 장애인들과 국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애국적 관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애용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제3호

94 정세전망 평가

개별운동주체 냉철한
생각과 자기반성
연행되어야

편비기적 활동지속...
운동의 과학성과 진보성
실현의 자기전망 필요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시발로한 국제정세의 급변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사회 내부의 변화 또한 실로 그 추이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점진적으로 진척된 우리사회의 민주화, '문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민중운동의 영향력 약화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의 성장, 북한사회주의 체계의 위기 현상 등이 불과 1년 만에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민중운동진영 내에서는 그간 진행되어온 변혁운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논쟁 또한 지속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한편 민중운동의 현실 상황과 일정 정도 맥을 같이해 온 장애인운동진영의 현 상황은 민중운동의 이러한 현실을 더욱

어실히 드러내 주는 한 단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실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간 운동의 주체로서 장애인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제기하고 심신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등을 건인해 왔던 장애인 임의단체들의 와해와 통폐합 경향은 장애인운동의 명맥과 정통성의 준거 자체를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초보적이거나 장애인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왔던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전지대연)'의 실질적 침체와 가장 진보적인 활동을 하던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의 대중력 상실에 따른 장한협과의 통합과 유일한 상시 대중공간으로 기능을 해왔던 소모임 그룹들의 활동정지 사태와 유명무실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현실 상황의 산술적 변화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 운동의 전망에 대한 중심 쟁점을 상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체제 흡수적 성향의 관련 장애인 단체와 법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관련 자원활동그룹, 관련학과그룹 및 연구단체 등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재단체 간의 이념적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상의 구분조차 불분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물론 그간의 장애인운동이 장애인 문제 자체를 사회적 시각

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미흡하나마 현실 사회 속에서의 해결 전망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해 왔음은 평가받을 만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양대 법안 투쟁 등의 다양한 현장활동들을 통해 이러한 관점의 사회적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향후 장애인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과 논의를 양적인 차원에서나마 확산시킬 수 있었던 점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시기에서의 운동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그것이 어떠한 단계이든) 진일보를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힘있게 제시할 수 없는 최근의 무기력한 상황이다. 어떠한 운동이든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축적을 전수하고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마련이다.

현재 장애인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운동 내적 요소들의 역사적 단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운동이 탄생해야만 했던 역사적 맥락과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 요소들을 야기해온 사회적 연관의 테두리가 변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운동 주체 자신의 침체와 약화로 인해 그간의 성과들을 소화하고, 보다 진일보된 형태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칫하면 운동의 활동과 논리가 더 이상 주체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운동의 주변부적 요소들로 흡수, 분해되어 버리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고찰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위에 언급한 사실과 같은 시기적 한계 속에서나마 현시기 장애인계의 현상적 흐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와 무관하게 최근 장애인 단체들의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활동의 양적·질적인 정체와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변신의 노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 출범한 김영삼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복지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복지정책만큼은 이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장애인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들의 활동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현실적 대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임의 단체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체의 해체나 단체간 통합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나름대로 활동 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중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며 보다 구체화된 형태의 문제들을 그 관심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중화, 구체화의 노력은 그 성패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 대중의 실질적인 삶으로 한 단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가치와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경향으로 개별 단체들 간에 드러나고 있는 단체이기주의적 성향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장애인계 전반의 시사적 공동 사안이 부재하다는 점과 단체 간의 의식적 성향을 구분할 만한 중심 테마가 부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중화 프로그램의 분산화 자체가 단체이기주의적 측면으로 오인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지금 더욱 문제시된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내외적 상황 변화와 중심 쟁점이 증발됨으로 인해 의식적 구분에 의한 발전적 의미의 입장 차이가 아닌 단순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단체간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이며 실제로 이것은 단체간 교류의 단절의 형태로까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은 필연적으로 장애인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비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전의 단계와는 달리 보다 세부적인 영역으

로까지 활동의 조정자 확산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준비기적 활동의 지속을 예상할 때 운동의 주변부적 요소들의 구성이 병행되는 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구성의 질적 내용과 잠재적 가능성 및 올바른 방향성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운동주체 간의 냉철한 성찰과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운동의 과학성과 진보성 실현의 자기'전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4호

장애인복지 외면한 문민정권

올해도 구태의연한 4월20일
장애인의 날
문민정권 출범이후 오히려
장애인복지 후퇴

지난 1981년 유엔(UN)이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한데 이은 당시 정권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지 올해로 13 회를 맞았다.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4월 23일 '장애인의 날'은 부산한 분위기 속에 지나갔다.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날을 기념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신문, 방송 매체에서 연례행사처럼 마지못해 우리들을 위해서 지면과 프로그램을 할

애해서 고맙다. 그러나 바로 이날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음독 자결한 어느 장애인의 자화상 속에 정신분석적 잠재된 소외의식이 이같은 모순 속에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의 갈등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애인들 자신은 이 땅에서 사회개혁과 경제발전상의 외형적 발전의 순리개념을 일년 365일 '장애인 날'에 현실 모순을 낭만적 경향인 감상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반화시키지 않았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날'을 한낱 계몽 캠페인 수준의 행사나 수행하고 장애인들의 오락축제로 망각해버리는 모순된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줄 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 자신들은 이런 허무주의적 감상론에서 벗어나서 자성적 자아를 발전시켜 모순된 사회를 정확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정의 부재와 경제정의를 제도화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사회로 계속 유지되는 한 어려운 처지의 우리 장애인들의 죽음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모순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발견해서 과학적 처방책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여론 형성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적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개혁 차원에서 사회복지운동에 전반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사고를 소유한 신(新) 장애인운동 중심체 세력이 총결집해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단 없는 개혁의 간판으로 집권한 문민정권은 과거의 개발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 경쟁력 명분 아래 선 성장 후 분배 논리를 더욱 앞세워 서민들과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사회복지)상의 요구를 짓누르고 허리띠를 졸라 매게 하고 있다. 집권 초기 중단없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지속할 것만 같던 환상은 현재 시점에서 직시하면 일시적 개방의 허구성임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고, 무한 경쟁 논리에 서민들의 고통분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국제화', 세계화를 남발하고 다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국제화'를 안해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엑스포가 열렸단 말인가. 최근 공기업에 대한 재벌의 나눠주기 정책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곧 이은 국민주식 폐지는 김영삼 정권의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이고 기득층 세력을 위한 경제정책임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민정권 출범이후 오히려 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일련의 평가와 비판은 과거 군사정권의 지배 논리에 의한 정권지속성을 담론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은 시혜 위주의 소비성 서비스적 후생복지정책의 논리인 것이다. 이것을 고스란이 이어받을 양심에 '문민정부'라는 고상한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에 낙후성의 주요 원인은 시혜를 중심으로 한 '소비성복지정책'이었다. 또한 생산 매커니즘에 '노동력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사회 복지정책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정부당국자들이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을 선천적 장애인들을 제외한 산업재해 노동자나 교통사고를 당한 후천적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능력위주로 차등화 해 오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부담은 빈약한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수용시설 보조, 보장구 지급 등의 시혜적 명목으로 장애인 중 생보자 및 의료보조 대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대상도 추정 장애인의 2%도 안되는 비율이며 동시에 생보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들보다 별로 차등이 안나는 저소득장애인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박정희 군부정권이래, 계속 이어온 선 성장 후 분배 정책 목표를 그대로 문민정권에 신경제 5개년계의 한 해 예산편성 과정을 이어 받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 성격을 보더라도 경제성장위주의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부분이 30% 늘어난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항만, 철도등의 확충과 방위비가 올해 보다 5.6% 증가한 10조4천9백억원의 이른다.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21.2%가 증가한 3조 3천 5백 2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예산 편성도 예년과 차이점을 발견할 점이 없다. 변화의 조짐이 없는 형식의 일관된 예산 편성, 무엇보다 장애인 대중과 소외계층의 시급한 복지 문제보다 보훈대상 관련 예산에 편중된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고 클럽 겸 우루과이라운드 (UR)와 그린라운드 (GR)의 논의를 결정한 경제협력 개발기구 즉, OECD에 96년의 완전 가입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가입 일정을 공식통보하기로 함으로서 기구 가입이 본격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 통상무대에서 정식으로 선진국 대접을 받게 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여기까지 오게 된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의 무작정 선진국으로의 목표는 좋았다. 그러나 과정의 있어서 불합리성 모순이 심하게 노출이 되어서 목표달성이 순조로울까 걱정된다. 우리에게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이 나라 최고 지도자에게 묻고 싶다.

제5호

사회복지정책 향후계획 및 발전방향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또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2000년 GNP 대비 사회복지장 예산규모 1.5% 수준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 사회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악된 내용은 지난달 위원회 주최로 한국보건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문건을 토대로 작성되어진 것이며 이는 위원회 향후추진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5월 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수렴, 보완 후 최종보고서안 확정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추진계획서에는 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하며 최종 보고서 및 세부추진계획서를 6월초에 작성(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95년도 보사부 예산에 반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이 정부의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전장협은 위원회 문건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보다 지면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와, 현재로선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정부에서 향후 사회복지정책 공식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안에 대하여 장애인계에서 먼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1~2회에 나누어 실는다.

1회는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 2회는 1회를 근거로한 세부항목으로서 ㄱ.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 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계획 ㄷ. 주요 사업계획으로 준비되어 있다.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은 첫째, 사회복지업무가 읍·면·동의 일반 종합행정체계내에서 보호대상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상당한 복지재원을 투입하면서도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 및 보건 및 복지 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2개소와 보건복지사무소 3개소를 선정하여 95년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둘째, 민간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부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자를 발굴하여 자원봉사 이용자와 연결시키는 “자원봉사안내소”를 94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현행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94년 중

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완전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생계보호가 불가피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실시해야 하며 94년 현재 최저생계비를 실시해야 하며 94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66%에 지나지 않는 생계보호수준을 2000년에는 100% 수준까지 향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95년부터는 32만 여명의 거택보호자에게 연 5만원 수준의 피복비를 지원하고, 96년부터는 11만 8천 가구의 무주택 거택보호자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주거비를 차등지급하며, 2000년부터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넷째,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6.2%로까지 증가될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95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모든 생활 보호대상 노인에게 확대지급하고 2000년까지는 월 7만원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5~20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을 95년 중에 시도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설치 운영키로 하는 한편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 “노인주간노인보호시설” 및 “노인장기보호시설”의 확충을 통해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맞벌이부부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까지 2,300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읍·면·동당 1개소 이상씩 설치해야하며, 민간이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약15%의 일반회계예산증가율(예상증가율)보다 높은 매년 20%정도씩 20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2000년에는 GNP 대비 사회보장 예산규모가 현재 0.9%수준에서 1.5%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 발전방향은 5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 중에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여 6월말까지는 보건사회부가 최종확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6호

사회복지정책 향후계획 및 발전방향

**민간부도의 공동모금 제도 확립
회저 생계비에 미달,
자립지원정책의 실효성 미흡**

지난 5호 '사회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이어 이번 호는 발전 방향을 근거로한 구체적 내용을 신기로 한다.

이번호 연재 내용은

- (1)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
-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계획
- (3) 주요사업계획, 등으로 정리된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방향에서 제안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2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I. 배경 및 방향

경제발전수준에 비하여 복지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는 서구복지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간의 상호보완 상승작용을 다음방향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우리의 경제수준에 걸맞게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시켜나감,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등 복지역량을 재고시켜 국민의 급증하는 욕구에 대처코자 함.

I. 사회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공직부조제도에 의한 생계 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자립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사회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의 물질적 서비스에 한정되고, 재가복지, 사전예방

적 전문적 서비스가 미흡하며, 사회복지행정이 비전문적인 일선 행정기관에서 수행됨에 따라 복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국민들이 복지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하다.

2.향후 복지여건전망

우르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각종 사고에 의한 복지수요 유발, 가족의 복지기능 저하 등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1) 기본목표

국가발전에 부응하는 복지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성장 잠재력배양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수립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킨다.

2) 추진전략

생산적 복지의 추구,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자립정책 강구, 전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내실화,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 재정분담원칙의 확립,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제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과 같은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II.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

확

II-1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방안

1. 현행 복지행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일선 사회복지업무가 일반 종합행정체계내에서 획일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상당한 복지 재원을 투입하고도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등 취약 계층의 사회통합과 자활, 자립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기본원칙

복지행정조직의 핵심단위인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며, 일선기관 시범사업을 실시(5개 지역 2년간)하여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시·군·구에 확대 설치 개편한다.

3 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 개편방안

사회복지전담형 : 시·군·구청장 직속으로 별도의 '사회복지사무소'설치
보건, 복지 통합형 :보건소에 복지기능을 통합한다.

1) '사회복지사무소'설치, 운영방안

조직은 소장 밑에 생활보호과, 복지사업과, 총무과 및 상담실을 설치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한다.

관장업무는 시·군·구청의 사

회과와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에서 수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업무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종합 관장하고 지역사회의 민간복지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며, 전문적인 상담 지도 및 시설 의뢰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요인력충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 및 부녀복지상담원 등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인력을 흡수하며 추가 소요인력은 최소화.(개소당 전문인력은 20명 소요)

2) '보건복지사무소'설치, 운영방안

조직은 소랑 아래에 진료검사와, 보건사업과, 복지사업과, 생활보호과, 총무과 등 5개과를 설치하며, 군지역의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복지지소'로 개편하고, 관장의 업무는 현행 보건소 업무와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통합 관장한다.

소요인력 충원은 현행 보건분야 인력과 동일하고 사회복지전문인력은 「사회복지 사무소」 소요인력과 동일하며, 다만 일반 및 기능직은 최소인력만 보강한다. 단, 소장은 의무직, 보건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용한다.

4.시범사업추진계획

보건복지사무소 3개소(도시지역 2, 군 지역 1)와 사회복지사무소 2개소(도시 1, 군1)를 선정, 95년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

며, 운영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를 부담한다. 다만, 시범사업기간동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사무소는 보건소, 시, 군, 구민회관, 자치단체직영 사회복지관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다.

II-2.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육성 및 전담체계 확립

1.기본방향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각종 민간기관을 육성, 발전시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발굴, 육성 및 관리의 체계화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확립과 기업 및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의 사회복지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2. 추진방향

1)민간복지전달체계 확립

현행 사회복지협회의 조직, 기능 인력을 재편하여 민간사회복지분야의 유기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회원의 자격완화 및 기업인, 종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지방의 사회복지협의회조직 및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육성, 발전시킨다.

2)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및 관리의 체계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제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자원봉사 참여회

망자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자원봉사안내소」를 94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자원봉사 수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망구축(중앙 및 시·도 95년)하고 자원봉사자 선발, 교육, 배치 등 관리기능을 체계화한다.

3)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도입

현행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94년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공동모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중앙과 시·도에 공동모금회를 설립하며, 행정사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지부의 공동모금부에 위탁운영한다.

4)기업 및 종교재단의 사회복지참여

기업 및 개인의 참여를 위하여 장학사업위주의 기존 재단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를 권유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없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유료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육성한다.

종교재단의 사회복지시설운영시 사회복지사의 법정채용기준을 완화하고, 개별종교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시 법인설립요건을 완화시켜주며 종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적극 활용한다.

제7호

의무고용을 1% 지지 위한 단식 농성

장애관련 단체들 하향조정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 가져

기업의 하향 염모에 분노, 범장애인계 대책기구 제안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황광식, 이하 전장협) 회원 5명은 장애인의무고용을 1% 하향 조정을 저지하고 범장애인을 포괄하는 대책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민주당사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단식은 지난 27일 전장협을 비롯한 15개의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을 1% 하향조정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대회장 임통일 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직후 전장협 산하 장애인의무고용을 1% 하향조정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임태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89년 장애인들의 힘겨운 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장애인 2% 의무고용율이 지난 9일 민주당과 상공부의 당정협의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의해 1%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단식에 앞서 결의대회에 모 60여명의 사람들은 국회 앞에

서 의무고용을 1% 하향조정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정부와 민자당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무책임성을 규탄하고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주최측은 민자당에 책임있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여 이상득 상공부 정책조정실장의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이상득 정조실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부분에서 많은 탄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의무고용율의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그동안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장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끌어 졌다"며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대회를 저지하려 나온 전경과 몸싸움이 있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겨 평가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전장협 회원들은 "민자당의 보다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전체 장애인계가 자신의 이권을 떠나 진정 4백만 장애인 공동의 이해에 근거한 대책기구를 만들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임을 선언했고 자원활동연합회(회장 하용희)의 2명이 이를 지지하며 1일 지지단식에 참여했다.

이날 참가한 단체는 곰두리차량봉사대, 교통장애인협회,

씩뜸, 자원활동연합회,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푸른하늘가족모임 등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이외에도 장애인계는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상공부 항의방문, 전장협의 제 1회 장애인가능경진대회에서의 침묵 시위 등이 있었고 DPI 지장협, 장애인복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서 범 장애인계 공동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설

국민의 정부인가, 기업의 정부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명백히 규정된 '사회복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을 치장하기 위한 미사여구일 뿐인가? 우리는 '문민정부'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군부독재의 시퍼런 서슬 앞에선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민주와 복지와의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제는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들린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문민정부가 그토록 외쳐대던 개혁의 본질에 대해 하나 하나 의구심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5·6공 시절에도 철마다 등장했던 국제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해묵은 구호 앞에 노동자, 농민의 요구가 또다시 묵살되고 있다. '복지'라는 단어는 꺼내기조차 두렵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호언은 어디로 갔는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뿌리조차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 사회복지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그들은 민간 기업의 입김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을 하향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는 없으면서 기업활동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자명하다. 결국 장애인은 '시장'으로서의 가치 이상일 수 없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결코 부당한 주장을 해오지 않았다.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노동력을 가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당장에 선진국형 복지를 내놓으라는 것도, 고귀한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장애인을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을 주장해왔을 뿐이다. 복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떼어 주었다가 필요하면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복지라는 식의 발상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선

사고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은 장애인에게 있어 최소이자 최초의 권리 획득 과정이다. 직장이 없는 장애인에게, 계단을 내려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 승차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400만 장애인 중 무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제는 우리의 문명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고용촉진법은 법안의 통과와 시행령 발표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장애인의 수가 90만명 수준이라는 가정 하에 적정 기준 고용율 2%가 산출되었고 그나마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의 산출에 의하자면 이러한 기준의 시행령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해도, 전체 실업 장애인 중 10분의 1도 안되는 인원만이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도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91년 이후 지금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정부가 발표한 고용의무인원 3만9천명의 22.3%만이 고용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여전히 장애인의 수를 100만명 미만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용 장애인 중 상당수는 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법의 효과로 추가 고용된 순인원은 1,085명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주장대로라면 60만명이 넘는 실업 장애인의 600명중 1명만이 추가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가 막힌 결과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분석과 준비의 방만은 결코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대목이다. 기업이 부담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발견도 아니요, 굳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해서야 알 수 있는 어려운 경험도 아니었다.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시행 의지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1%가 경쟁을 알린다?

정부와 민자당이 발표한 소위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의 일환으로 장애인의무고용율을 1%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 장애인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선, 얼마 전 노동부가 발표한 '94~98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의 뒤늦은, 그리고 그나마 제한적인 장애인 고용의 개선 전망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 의하자면 소요 기금의 대부분을 기업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이제 노동부의 계획은 또다시 4년 후에 반성문으로나 남게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1% 하향조정의 논리는 '현실화'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율이 고용의무를 한참이나 밑도는 0.39%이므로 의무율을 1%로 낮추어도 장애인 고용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레변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노출인데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

나아가 3년간 적립된 980억의 부담금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의 대기업이 달성하고 있는 한해 매출액이 수조에 달하고 있다. 물론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단 1억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장애인의 생존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이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산업인력 확보에 재투자되는 셈이 아닌가. 우리는 최소한의 이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자당이 이를 그대로 수렴하여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기업을 향한 귀만 열려있는가. 민자당의 장애인 복지는 선거철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가.

하나의 정부에 속한 부서들이라면 일발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계획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순간 순간의 '정책'만 있고 일관된 '정책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총체적 무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고용촉진 시책이 벽에 부딪히면 보사부, 교육부,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차원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나가야 하지 않는가.

화살의 방향이 뒤바뀌고 있다. 경제 정책의 오류라기보다 본질적인 경제 구조의 분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한 규제완화인가?

지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대해지지는 자본의 힘이 국가를 축소시키고,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논리에 밀려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분야의 후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자가 참아야 하고, 장애인이 차별되어야 하고, 환경이 훼손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라는 논리로도 양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질적 투자에 대한 보증없이 규제완화라는 단기적인 방편을 내놓는 것, 특히 장애인, 환경, 산업안전 등의 국민적 생존에 관한 부분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걸맞지 않다. 단편적이 측면에서만 자본을 살찌우는 이런 정책이

진정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이성적인 판단마저도 포기한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시적인 복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실행까지 이어지겠는가.

지금은 고용촉진법이 그렇지만, 이후 교육, 편의시설, 의료, 생활보장 등 어느 것 하나 지금의 경제논리로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고,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삶이 경제논리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가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은 장애인이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제8호

범장애인계 대책위원회 구성 기사화

장애영역별 · 관련단체 통합과 취업문제 감시하는 연대포럼 의의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을 하향조정 움직임을 계기로 장고법 실질고용의 감시 기능을 하게 될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정상화를 위한 범장애인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구성이 기사화 되고 있다. 현재 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를 열고 일단 장애인영역별 대표단체의 관련단체를 총망라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각 단체의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과정에 있다. 공동대표에 추대된 인사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김학목회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의 지영관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장기철회장,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의 김완회장,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의 박일상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염요섭회장, 한국장애인연맹의 송영욱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조일목회장 등 8인이며 현재 지영관회장, 장기철회장, 조일목회장은 승낙서를 보내왔고 대부분의 대표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승인절차와 이들의 회동을 거쳐 구체적인 조직구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고법. 정상화를 위한 범장애인계 대책위원회 구성은 장애인문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취업문제의 감시기능을 하는 최초의 장애인계 연대조직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반목과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현 장애인계의 거의 모든 단체를 망라하는 결집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얻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민자당에서 발표한 장애인의무고용율 1%하향조정은 몇몇 단체나 언론 등에 철회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공식적인 철회의사를 명쾌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가진자와 못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말이다. 그리고 장애인앞에 산적해 있는 교육, 의료, 취업, 편의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이다.

최근 정부가 흑자예산 운운하며 떠들썩하게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계에 그토록 외쳐 오던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예산에 다름 아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올해보다 21% 증가된 6백 17억 원이다. 매년 10%내외의 증가율을 보여 왔던 것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율이다.

그러나 수처상의 몇%증가율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예산의 80%가량이 시설로 지원되는 구조의 모순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장애인복지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이미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 대통령 선거때 재야쪽에서 출마한 한 후보가 '4백만 장애인'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0%를 책정해야 한다'고 한말은 현재 전체예산의 0.2%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예산 문제점은 정부 내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8년 대통령 직속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한해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2천억을 산정해 건의했다. 그간의 물가상승을 제외하고서도 내년예산은 1/3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부족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보사예산은 전체예산에서의 점유율이 92년 4.62%에서 93년 4.35%, 94년 4.10%로 축소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4%에도 못 미치는 3.96%에 머물게 된 것이다. 냉전이 해소되었다고,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떠들어대는 집권층과 수구세력들이 총 예산의 1/3가량을 방위비에 쏟아부으면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점점 깎아내리고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예산으로 4백만을 처절한 삶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취업, 교육, 편의시설, 의료 등 산적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걸맞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게 하고, 승용차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떡고물보다 예산의 확보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인 것이다.

정부는 보사예산 자체를 한정해놓고 한해는 노인복지, 한해는 장애인복지, 한해는 생보자복지 등에 편중되게 예산을 편

성하는 잔피를 부리지 말고 대폭적으로 보사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물론 결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 줄리는 없다. 장애인계의 총 단결과 4백만 장애인들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사회복지 제부분의 연대가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제9호

'장애인 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발표회 가져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간사 박희석)에서는 지난 27일 '장애인대학생실태 및 의식조사 발표회'를 한양대 제2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장애인 관련학과, 장애인 관련모임, 장애인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 활동 기록집'에는 지난 7월의 공동세미나 자료와 이번 장애인대학생 실태조사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장애인 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장애인 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는 장애인 내의 각 집단의 특화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중 장애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94년 현재 전국에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은 1백9만2천4백64명이고, 이 중 서울지역 35개 대학에 있는 대학생은 28만9천9백56명으로 전체의 1/4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학교 공문발송과 조사원의 방문으로 파악된 본 조사의 대상인 장애인 대학생은 28개 대학에서 총 1백32명이다.

이 수는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 의식조사보고(정립회관. 전국 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공동조사,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 의식조사보고, 1989)에서 서울지역 지체장애인 대학생이 2백30명 분석된 것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파악된 명단에 기초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일대일 면접조사로 예비 조사를 한 후 우편조사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3부로, 이는 조사대상자의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조사가 장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현 사회에서 전체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소수의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94년 전체 고등학교 3학년생의 대학진학률이 33.6%였던 것과 비교해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경우(93년)는 3% 남짓만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뿐이었

다. 장애인 대학생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공문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행동지향으로 사회변혁의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후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집단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대학생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사회문제보다 장애인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이들의 특성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장애인 대학생이 대학 진학까지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현재 대학생활에서의 문제점, 장애인 대학생의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정치의식 등을 조사하여 현재 장애인 대학생 집단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남녀의 비율은 약 7:3으로 전체 대학생의 비율에서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더 높고,

연령은 전체 대학생보다 군복무를 하지 않음에도 1~2세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시기가 약간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비율이 높아 점차 장애인. 대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학과별로는 큰 편중은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2) 장애인 대학생의 장애특성

장애인 대학생은 (표 1)과 같이 지체장애아 치중, 분포되어 있었다. 즉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는 거의 폐쇄되어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 장애정도는 응답자 중 중증의 장애인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증의 장애인의 응답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발생원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따라서 장애 발생시기도 5세이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3) 장애인대학생의 생활수준

장애인대학생의 생활수준은 전체 대학생보다는 하층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한달 평균지출액의 분포도 전체대학생의 지출액 분포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생활비 충당방법은 부모에

<표 2> 장애인대학생이 생각하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

분류	빈도	백분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1	43.8
장애인 인재의 양성	11	22.9
정책확보를 위한 노력	11	22.9
국가경제의 발전	2	4.2
우리사회의 민주화	1	2.1
모르겠다	1	2.1
없다	1	2.1
합	48	100.0

의지하는 것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제한된 취업 기회 속에서 생활자립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희망 이질적 교육

장애인 대학생의 대입 이전의 학교생활은 전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취학시기는 거의 정상 이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형태는 일반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특수학교의 형태보다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는 초등, 중등

의 기초교육을 받는 과정에서의 기회의 평등이 먼저 보장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 대학생활

지체장애가 대다수인 장애인대학생에 있어 이제 대학입학시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대학 내의 생활에서는 이동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인 이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대학 내 학업활동과 비학업적 활동을 위한 여러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장애인 대학생은 졸업 후의 진로를 취업보다는 진학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표1> 장애인 대학생의 장애유형별 분류

분류	빈도	백분율
하지장애	25	58.1
상지장애	4	9.3
뇌성마비	5	11.6
청각장애	1	2.3
기타(척수,중복장애등)	8	18.6
합	43	100.0

났다. 스스로의 적성을 진학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실은 취업의 문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 상황이 반영된 결정인 것이다. 취업 분야는 전문직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전공의 선택 과정에서 직종의 선택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취업시의 어려움은 시설이나 직종의 문제보다는 타인의 인식 즉 편견에 의한 배제를 더 우려하고 있었다.

(6) 장애인문제의 인식과 해결

장애인 대학생은 (표 2)와 같이 전체 장애인 문제를 복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특히 편의시설의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었

다.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이러한 정책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을 장애인 대학생들은 인식개선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장애인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장애인들의 조직화된 노력이라는 응답이 많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 대학생의 역할은 전문분야로 진출한다는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먼저 장애인 대학생의 양적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전 사회구성원속에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소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소수의 대다수는 지체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거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구가 소수라는 사실 그 자체가 현 사회 장애인 문제의 한 단면인 것이다.

장애인 대학생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장애인 대학생 특례입학이라는 조치가 아니라 조기 교육, 초, 중, 고의 교육 속에서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장애인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안이한 자세의 교육방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는 통합교육의 시행과 일반학교 내에서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 버클리대의 경우도 장애인 대학생은 일반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대학 내에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들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등하교시, 강의실 이동시마다 불편을 겪어야 하고 도서관, 화장실의 이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학교생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비단 이동권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제반설비나 개호인 등이 요구된다. 학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 적절한 부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담 등도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이후의 생활, 특히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취업에 있어 다시 한 번 벽을 느끼게 된다. 복지관등을 통해 제공되는 직종이 단순 생산직 위주이므로 자영업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장애인 대학생 상당수가 대학졸업 이후 진학을 하고자 하고, 선택하는 직종이 개별화된 전문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취업난은 전체 대학생에게도 심각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문제는 분명 장애인 대학생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이상의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전체의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장애인 대학생들의 모임을 원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학생이 장애인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시도는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계속 존재해 왔다.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의 활동들이 그것이었고,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서울지역의 올림터(올림터는 대학생만의 모임은 아니었지만 구성원의 상당부분이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정립단이 그것이었다. 그 외 활동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각장애인 대학생회도 존재한다.

이들의 역할은 장애 관련된 법인, 임의단체 대다수가 장애인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을 때, 강력한 문제제기와 선진적인 투쟁으로 장애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현재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문제에 있어 활동 자체가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대학생 집단의 일원으로 장애인 대학생은 장애인 문제를 전체 사회문제 속에서 바라보면서 장애운동이 결코 지엽적인 것이거나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만이 할 수 있

다는 경직된 사고는 장애인 문제를 한 집단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체 운동 속에서 장애인 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체 장애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 대학생은 문제의 당사자이자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전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다.

시설

또 다른 형태의 '생색내기' 아니길....

탈시설 유도하는 사회통합에도 위해

삼성전자가 총 2백34억원을 들여 설립한 '무궁화전자' 수원 공장이 지난달 4일 모습을 드러냈다. 총 건평 4천여평의 무궁화공장은 장애인 1백여명, 비장애인 50여명이 함께 매월 2만여대의 전화기를 생산하게 되며, 내년 1월 본격 가동에 앞서 현재 장애인 33명과 비장애인 22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무궁화공장은 일단 취업부분에서 1백여명의 장애인이 대기업 사원으로 고용된다는 측면과 모범적 복리후생 시설을 갖추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물리치료실, 노래방 등이 갖추어진 복리후생 시설은 삼성의 전 공

장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모범적 사례로 확대될 수 있는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궁화공장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고용이 집단화라는 격리수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러 선진국에서 보듯이 장애인복지가 시설중심에서 탈피해 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복지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번에 준공한 무궁화전자나 현재 노동부가 국회에 상정한 광고법 개정안은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평등한 사회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이다.

둘째, 전시효과에 대한 우려이다. 삼성전자는 무궁화공장을 20여개의 계열별 산하로 두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복지 상황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자립작업장 형태의 공장을 첨단시설을 갖춰 지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광고보다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자립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이나 타시설 임직원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을 자주 보아왔다. 장애인 노

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등 뒤로 각종 시찰단들의 다가온 시선을 의식해야 했던 것이다.

셋째, 노동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무궁화공장에 입사한 22명의 장애인노동자는 35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임금이 과연 비장애인의 임금수준과 동등하게 책정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주)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못하는 등 노동자들의 의사표시가 심하게 통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지덕지'한 것으로 주입하고 그들에게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할 때 이들의 권리와 의사표시는 철저히 통제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생산성 문제는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가전제품 조립을 하청받아 일하는 정립전자가 관련 하청업체 중 생산성이나 불량률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별다른 우려의 소지가 없을 듯하다. 이 밖에 무궁화공장이 사원아파트 근처에 세워진다는 이유로 삼성직원들이 '장애인 시설 반대' 등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소외 받아야 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삼성의 무궁화공장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기

업의 '생색내기'가 아니길 기대한다. 국내 10대 대기업중 장고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율이 0.04%로 최하위인 삼성에서 2백30여억원을 들여 무궁화공장을 설립했다는 것은 한국사회 장애인 복지정책의 아이러니이다. 이번 무궁화공장의 준공이 국내 대기업들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89년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제정된 장고법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국가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궁화공장 개원이 장애인 완전고용의 평등한 사회참여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되길 많은 장애인들은 지켜볼 것이다.

제10호

1994년 장애인계 평가 장애인계에도 다사다난했던 한해

작년, 1994년은 나라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빈발했던 한 해였다. 암울한 사막에 80년대가 도야를 왕진하고 90년대 새로운 디지털문화의 시대와 개인적 감성의 시대가 열광의 자본주의를 흔들며 놓고 있다. 또한 90년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배고픈 민중들의 외침을 터득하고 빵조각을 더 얻기 위해 자본주의경제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수정사회주의로 헨들을 돌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의 생산력에 대한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먹고, 먹이고, 뜯고, 뜯기고, 밟히면서 그렇게 자본주의의 일반적 생산양식은 숨가쁘게 고통치며 생동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우리에게 세계화 원년으로 정하게 하고, 열강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날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했으며, 어느 요란한 공장의 기계부품인 듯 생산을 위한 생산,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속도전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의 직접적 생산자가 [누구나]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간접적, 직접적 접근방식에 피해자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지난해에 세금비리사건과 한강다리 붕괴사건, 또 많은 사건들과 모순의 한계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장애인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단적인 예 가운데 덩치가 큰 것은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89년 청년 장애인들의 힘겨운 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2% 의무고용율이 작년 8월 9일 민자당과 상공부(현재의 재정경제원)의 당정협의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의해

1%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본 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의 항변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장애인과 일반대학생들의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가두행진과 민자당사 항의방문은 적극적 대응양상의 표명이었고, 특히 5인의 전장협 청년회원들의 민주당 여의도당사 단식 농성투쟁은 장애인계의 단순한 문제의식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장애인계에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2월 25에는 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안이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국가조정기구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부처 간에서도 파워쉽이 가장 낮은 부처인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중앙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결의하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본 협회와 장애인계는 실효성 없는 기구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즉각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한 본 협회는 반대 성명서까지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계의 반발에 대하여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선에서 문제점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본래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조정기구의 역할은 국가 장애인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지닌 핵심부서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상설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조정 기구기능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기구로 제역할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또 다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한편 당시 보사부는 국가조정기구의 설치를 규정하는 회의자료에서 행동계획안의 중요조항에 대해 행동계획안을 오역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사부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전반의 체제적이고 장단기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작년의 장애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정강용씨 공무원시험 탈락사건이었다. 지난 1993년 8월 8일 시행한 충청남도 행정직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왼손장애 지체3급인 정강용씨를 군필면제자라는 이유로 가산점 5점의 불이익을 주어 공채시험에서 탈락을 시켰던 것이다. 충청남도의 이 같은 처사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직권 남용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1994년 1월에 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는 [정강용씨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낸바 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처사는 올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마당에 지방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복지발전에 적지 않은 과장을 물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작년에는 교육부의 [장애인 특례입학] 허용 발표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에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시설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비인간적인 '노비문서'로 지적되어 왔던 [친권포기각서] 공개사건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비인륜적인 사건으로 기록 될 것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범시민운동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 되었으며, 특히 노장지협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표준규칙을 마련하고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1994년은 많이 일이 있었던 한해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장애인운동이 퇴조양상을 보인다고 단정지으나 본 협회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1995년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생산적이고 비약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제12호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 열린다

-장애인 스스로 낙후된

장애인복지문제감시할 책임 의무-

34년만에 부활된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여당인 민주당의 참패와 민주당과 자민련의 승리, 그리고 무소속의 약진이라는 참패표를 찍으면서, '신여소야대'라는 말을 제도 언론에서는 새롭게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자치선거는 기초(구.시.군)단체장과 광역(시.도)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만큼 많은 국민들은 혼탁과 부작용을 우려했었다. 여느 때와 같이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열심히 강조했으나, 결국 금권, 관권에 잡음이 작으나마 진동했다.

또한 선거 막판에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등은 지난 세월동안 계속됐던 고질적 병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입지강화를 위해 지역 차별화 전략을 여전히 구사함으로써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말았다.

결과야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이제 풀뿌리민주주의 즉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요한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 자신의 의사와 책임하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정치제도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통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하나는 삼권분립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을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나누고 권력남용을 방지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는 권력을 중앙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각 지역에 분산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일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인 것이다.

아울러 참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당연히 참정권자로 한 표를 행사한 만큼 생활상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장애인 스스로 그 지역에 낙후된 장애인 복지문제를 거론하고 고민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19일(프레스 센터)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이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교육, 예산, 고용, 의료, 편의시설 등의 문제를 부분별, 지역별로 거론하기도 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에서는 지자체 선거 전인 6월 2일 지자체 입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본 협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정책개발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지방자치를 계기로 장애인도 정치적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관심을 집중해 주체적으로 지역단위의 복지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가 압력단체로서, 역할의 걸맞은 자구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운동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사설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운동

6.27 지방자치선거가 끝났다. 결과를 보는 각당 및 국민의 희비는 엇갈렸다. 결과야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시대는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린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가 지역단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사고와 지역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개발에 앞장서게 됨으로서 지역발전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 큰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각 시·도는 자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타성에 젖은 수동적인 자세로 시·도의 발전을 남의 일처럼 여겨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된 지금 중앙정부에 무조건 의지하고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무능력으로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낙후된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정부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달될 것이고, 하나의 압력단체로써 선의의 권력행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압력단체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이고 설득과 타협해 나가야 할 대상이 현재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지방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그 원칙 중 제일은 가진자보다는 소외되고 꺾박받는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는 어느 개인, 단체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지방조직이 앞장서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를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여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주체로서 떳떳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

장애인 운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맞았다. 각 지역마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결집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조직에 속해있는 각 장애인 단체는 사안에 따라 연대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장애인 단체가 앞장서서 연대의 틀을 잡고 사사로운 이익에 현혹되어 장애인 복지를 왜곡하는 단체를 선도하여 올바른 장애인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4호

제1회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고용촉진 걷기대회

1. 행사취지

1990년에 심각한 장애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은 보건복지부의 ‘95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가능한 장애인의 32%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낮은 임금과 지위, 열악한 작업환경, 일반사회와의 분리고용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분명히 사회적 책임에 관계되는 부분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장애인 고용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제1회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고용촉진 걷기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행사목적

- ▶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사회 인식 개선
- ▶ 장애인 노동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 ▶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
- ▶ 장애인과 일반이 함께 더불어

어 사는 공동체의식 형성

▶ 장애인 복지의 구현

3. 걷기대회 전체 일정 및 개요

(1) 주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 개최일시 : 1996년 4월 7일~4월 20일

(3) 대회장 : 강원용(목사, 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4) 집행위원장 : 윤석용(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5) 본부장 : 채종걸(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6) 대회전체일정 : 제주(4월 7일), 부산(4월 9일), 울산(4월 10일), 대구(4월 12일) 대전(4월 13일), 온양(4월 14일), 청주(4월 15일), 강릉(4월 17일) 성남(4월 19일), 서울(4월 20일)

(7) 총 참가예상인원 : 8,000여명

(8) 본대회(서울)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일시 : 1996년 4월 20일 오후 1시

▶ 참가예상인원 : 3,000여명

▶ 행진구간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명동성당

행되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

서도 통행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티코, 타우너,

다마스 등의 경승용차 지원방

안의 하나로 지난 6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톨게이트비)

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관련기사 3, 7면)

이에 대해 본 협회는 즉각 공

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장애인차

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전액 면제 시행을 촉구했다.

본 협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장애인들

의 승용

차는 그

들의 목

발이며

회체어’

임을 강

조하고

‘교육, 취

공개질의서는 ‘장애인 승용차

에 대한 각종 세금 등이 면제

되고 있고 LPG 장착도 허용되

는 시점에서 유독 고속도로 통

행료만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

인가’를 묻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제 장애인단체 및 회원들

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장애인 운전자 김정임씨(31, 지

체3급) 역시 “불일이 있어 지

방을 다녀올 때마다 톨게이트

비가 큰 부담이 되곤 했다” 면

서 “이제 경승용차까지 할인이

되는 마당에 장애인 운전자들

사건일지

1996. 6. 13 건설 교통부, 행정쇄신위원회, 각 정당, 보건 복지부에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한 건 제출 (전장협 소개의 글, 공개 질의서, 관련 법안(장애인 복지법 제10조), 장애인 자동차 관련 면 세안, 경승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신문 광고 첨부)

1996. 6. 14 전국 20여개의 장애 관련 단체에 서명운동지 지 요청, 서명운동 시작

1996. 6. 25 보건복지부에서 회신 : 건설교통부 관할이다.

1996. 7.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회신 : 성실하게 검토하 겠다.

1996. 7. 10 건설교통부에서 회신 : 통행료 면제 불가

1996. 7. 12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 통행료 면제 불가

1996. 7. 15 건설교통부에서 회신 : 신한국당으로 제출한 본 건이 이송되어 회신, 7.10의 회신과 동일

1996. 8.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의 회신 공문에 대한 반박문 장애인복지신문과 전장협신문에 발표 신한국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장애인 특별위원회(전장협 반박문, 한겨레신문 여론광장, 동아일보 독자투고, 장애인복지신문 독자투고)제출

1996. 9. 10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 통행료 면제불가

1996. 9. 20 정기국회 상정 계획, 11월 말경 항의 및 집 회준비

건설부와 보건복지부에 서명단체 및 개인명단(20여 개 단체, 1700명)제출

1996.11. 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 : 통행료 50% 감면 결정.

제15호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차량 면제돼야

최근 경승용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제도가 시

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 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해 철도, 지하철, 국공립공원 등의 요금을 할인 또는 전액면제하고 있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LPG 장착을 허용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금까지 아무런 할인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1-5등급 장애인들은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제16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보며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가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여왔으나 정부의 무성의 속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는 경승용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 발표에 맞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통행료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관계 부처에 공문접수 및 서명진을 시작, 5개월 만인 96년11월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장애인 마크 부착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문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본 협회는 정부가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를 보였다는 것에 일부 환영을 하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면제가 장애인에 대한 특혜나 시혜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생존권의 확보 차원에서 전액 면제되어야 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이후 지속적으로 50%감면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제17호

변화와 개혁의 기치 올린 지장협

지난 해 12월 한국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중앙회가 제천시 지회와 공모해 국고보조금 4천여만원을 유용한 사건으로 인해 조직내부의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장협 전국의 시도협회장이 장기철 중앙회장의 퇴진을 결의·서명하고 지난해 12월23일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동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지장협의 사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의미를 간추려 보면 먼저 장애계의 지도급 인사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념과 철학의 부재에서 그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구태의연한 법인운영과 특정 개인에 의한 장애인 복지의 실현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산적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지장협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하부 지방조직에서조차 그 동안 중앙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며 밑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는 단체의 법인운영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상부조직이라는 권위주의로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사건이 되어 복지부의 감사 직전예(1년반이 지난 뒤) 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장애인 단체의 변화와 개혁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지장협 시도협회장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자성의 목소리에서 책임을 감추고 회피해 왔던 장애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일신시키는 긍정적인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장협이 새로운 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운동 방향을 정립한다면 그 과정은 장애인계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약에 관하여

지난 96년 12월 26일 80%(한겨레신문사조사)에 달하는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분여간의 방망이소리에 노동법 및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호텔에 대기하면서 전세버스까지 동원된 이날 날치기 통과는 가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기독교, 불교, 가톨릭, 교수, 변호사, 기자들까지…… 20만에 달하는 시위대는 전국을 저항의 물결로 뒤덮고 있다.

현재 제도언론이 정부와 민주노총간에 대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시위대의 주변에는 시민들의 박수가 들끓고 있고 매일 몇십만 명이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약 무효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의 서명운동에 기꺼이 필력을 더하고 있다.

개약에 관련한 움직임은 결코 소수의 것이 아니며 노동계와 정부와의 대립만도 아니다. 바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대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천오백만 국민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번 사안에 40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즉 주권 주체로서의 국민)을 포괄하고 있는 장애인계는 왜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가?

이번 사안과 장애인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더해 본다. 이번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약은 과거 몇 가지의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91년 U.R. 협상 및 타결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농업, 광업, 서비스업 등에 걸친 광범위한 개방과 관세 철폐와 무분별한 인력 수입, 곡물수입, 이로 인한 농업과괴, 이농현상 등을 낳게 한다. 이는 무역역조, 적자 운영들을 낳게 하고 곧이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국가 경쟁력 약화는 대 무역에 있어서 재벌 중심의 소수 독점화를 낳게 되고 최근 들어 연이어 이어지는 중소기업 부도 사태는 미의 결과라 하겠다. 중소기업 불안정, 이농현상은 광범위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고용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저임금을 형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잉여노동력과 저임금은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 마저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자본측은 선택적으로 해고와 저임금, 근로조건 악화 등을 강요하게 된다. 자본과 정권 측의 이러한 상황 판단에 기간 민주화 바람이 가져다 준 노동운동은 기필코 제거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제민주단체조차 안기부법 개약을 통해 용공음해 공작으로 같은 선상에서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개약의 주요 요지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노동가능한 장애인에게 있어 노동으로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측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회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현존해 있는 강제적 조항(장애인고용촉진법)조차 아무런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400만 장애인에게 있어 이번 날치기 개약은 주권 주체로서의 주권을 날치기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 민주노총의 사회대개혁 범주에서 추진되어온 2%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위노조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노조의 무력화, 정리해고제(1차 감원 대상은 장애인이 될 것이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안기부 수사권 확대로 인해 대선관련 야당측 후보에 대한 용공음해 공작, 민주단체들의 선거운동 불법화로 공안정국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사회의 전면적인 극보수화는 민생관련, 복지관련 입법화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현재 장애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움직임이 난항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력하나마 지금의 장애인 복지가 80년대 사회민주화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기간 장애인계는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는 냉소적으로 일관해 왔고 계층이기주의에 근거해 자기 목소리만 높여 왔다.

내부적으로도 계속된 버리와 운영마비로 굶을대로 굶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사회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보일 때 400만을 포괄하고 있는 장애인계도 사회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입장 표명을 내와야 한다.

장애대중이 무지하다면 깨우쳐야 하는 의무도 장애인계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대중은 결코 무지하지 않다. 고용되어있는 장애인 노동자 역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자립 작업장 역시 이런 상황인식은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계는 장애대중의 이런 인식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혹시 장애인계 조차 시혜와 동정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본다. 답에 있어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장애대중을 생각하기 보다 자기 얼굴을 드높이는 매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각성할 일이다.

96년 4월 장애인복지 공동대책 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장애인 고용을 화두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계기와 과정에 익숙하기 보다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침묵보다는 함성으로 깨우쳐 일어날 일이다. 선각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말이다.

제18호

에바다 농아원 107일째 농성중

우리 나라는 지난 해 9월 11일 미국의 루즈벨트 재단에 의해

제 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의 수상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수상 배경은 지난 82년 UN(유엔)이 채택한 '장애인 행동 계획'을 실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에 크게 노력한 '공로'였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후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러 루즈벨트 대통령 흉상과 상금 5만 달러를 우아한 모습으로 받아 들고 왔다.

그로부터 2개월이 조금 지난 11월 27일, 평택에 있는 청각장애인 수용시설인 에바다 농아원에서 재단 측의 정부 지원금 횡령을 이유로 청각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여 경찰이 권총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100일이 넘게 농아학생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인 '에바다 특수학교'와 수용시설인 '에바다 농아원', 그리고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에바다 복지회 재단측의 부정부패와 시설비리 사건으로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전형적인 시설 비리이고 신한국 복지의 기만과 무책임의 가장 큰 상징이다. 에바다 복지회 재단은 에바다 특수학교, 농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 수첩 등을 위조해 수 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횡령하였고, 가족 및 친인척 등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허위 기재 또는 이중기재해서 국고를 횡령하였다.

또한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학

교 관리비 등 특수학교 운영비를 횡령, 각종 후원금을 착복,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착복, 학생들을 재활작업장에서 노동시키면서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 원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최성창 재단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거기에 더하여서 미군들의 에바다농아원에 위문공연을 가서 원생들의 호감을 산 뒤 미군부대로 초청해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장애아동들이 '자선의 너울'을 쓴 미국에게 치욕을 당하도록 내팽겨 쳐졌는데도 에바다측과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수상과 에바다농아원 시설비리 사건은 신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제장애인상 받았는데 장애인의 생존을 갇아먹는 비리 시설장은 어찌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 재단을 통해 농아원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사회정책의 기조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책임 소홀의 문제이다.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외치면서 모든 사회적 관계 및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시장경제적 관계에 던져 줄 수 있는 '떡고물'로 보고 있어 시설비리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써 작용되어왔

다. 한마디로 국가의 책임회피가 에바다 시설비리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시설비리를 초래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쥐게끔 되어 있다. 개인에게 맡겨진 운영권은 얼마든지 사유화되어 개인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게다가 정부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기에 쉽게 시설의 비리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에바다 시설비리 사건을 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보면, 우선 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시설 내의 인권탄압과 재정비리를 근절하고, 시설장의 엄격한 정년 퇴임제 실시, 사회의 민주적 운영 등을 통한 시설의 사회화와 함께 시설의 소규모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에 4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까지 루즈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받았다. 반면에, 에바다 농아원생들은 시설장의 억압과 착취에 못 이겨 100일 넘게 농성을 하

면서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외치고 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 넘도록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며 농성하고 있는 농아원 학생들의 바램은 무엇일까?

이제 더 이상 김영삼 대통령은 장애인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말라, 행정당국은 에바다 사건을 비리재단은 그대로 둔 채 실무자에 지나지 않는 최실자를 구속하는 선에서 미지근하게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안된다. 에바다 사건의 책임자인 최성창 이사장은 즉각 사법 처리되어야 하며, 그의 친인척들이 다시는 재단운영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모두 배제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의 책임자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장애인상을 받은 친분의 일의 보답으로라도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시설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중중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많

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이 없는 가운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오늘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이 사회의 비민주성과, 편협한 개인주의와 편견들, 편의주의, 다수의 횡포들이 모두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얼마전, 또다시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여론화되자 다시 원서를 접수받아 그 학생이 합격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당국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례입학제도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상 1-2등급의 중증장애인을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이 제도의 신설을 계기로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확충 등 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지원방안 등은 지금은 전면백지화 되었다.

각 대학은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례입학 전형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대상 장애인 중에는 중증장애인

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경증장애인 위주로 선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례입학 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도 개별입시요강에 장애인 특례입학 대상자를 '경증장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별다른 도움 없이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이 가능한 학생'으로 국한시키고 지원 가능한 학과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부 대학 학무과의 입시 담당자는 "특례입학에 대해서는 대학에 일임해 왔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없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뽑는 문제는 교육부가 간섭할 수 없는 사항"이며 현재 장애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등 특례입학에 대한 대안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특례입학이란 제도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와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각 대학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특례입학을 하는 대학에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입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입학전의 상담부터 학업, 주거, 취업문제 등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겪게되는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실현 가능케 하는 지원방법을 보장해주어야만 진정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보장될 것이다.

제19호

생산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3월13일, 박병철씨(시각장애 1급, 48세)가 새벽 1시 10분경 부산시 신평 지하철역 입구에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 자살했다.

박씨는 '생산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한 줄의 유서와 자신의 장기 일체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장기기증 증서와 장애인 수첩을 남긴 채 분신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86년부터 시력이 급격히 감퇴되기 시작, 95년 9월, 1급 시각장애인 등록을 했다. 시각장애를 입기 이전에는 이발사였으나 시력이 감퇴되고서는 잡화상을 운영하다가 빚만 지게 되어 가게를 청산하고, 97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원사무소에 구직 신청을 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다. 결국, 그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를 어찌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봄부터 이어져 온 장애인들의 잇따른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애인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의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

아 넣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해 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약법이 이땅의 노동 조건들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고, 한보비리와 김현철 비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경제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최근에 늘어난 실업자만 해도 17만을 넘어서고, 김영삼 정권의 출범 이후 문을 닫은 중소기업만도 5만을 넘었다. 경제대란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점점 사문화 되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취업의 문턱은 더욱 더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분신한 박병철씨는 단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니라, 한 줌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고자 했던 김영삼정권과 그에 결탁한 자본가의 횡포에 타살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에의 참여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온몸으로 보여 주며 죽어간 것이다.

정부는 박병철씨의 죽음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아울러 복지에 대한 이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는 장애인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0호

노동권 걸고 450만

장애인 뭉쳤다!

-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2회 국민걷기대회」 열려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는 지난해, 4월 20일(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제 1회 장애인 고용촉진 걷기대회'에 이어 장애인의 날에 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등 25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종로에 있는 제일은행 본점에서 종묘공원까지 '제 2회 국민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죽어간 장애인들의 혼을 달래는 씻김굿(민족음악인협회)으로 시작된 합동추모제에 이어서 한신대 재활학과 학생들의 수화공연과 민중가수 류금신씨의 노래 공연 등이 사전 행사로 진행되어 여느 행사보다도 뜻 깊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노동자와 장애인이 함께 법정무고용 2% 준수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였

다. 그리고, 95년 겨울 인천 아암도에서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싸우시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故 이덕인 열사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본대회가 끝나고 길놀이로 시작된 걷기대회는 600여명의 장애인과 학생들이 제일은행 본점에서 종묘공원까지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거리선전을 하였다. 행진이 진행되는 중에 전투경찰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7년이 되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각종복지시책을 늘여 놓고 장애인의 날에는 위안잔치를 벌이고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 언론도 다룰 것은 없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애인에게 온정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된다. 이 땅의 450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시혜뿐인 위안잔치도 아니고 성공한 장애인의 이야기도 아니다. 당연한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에의 참여이다. 제 밥값은 제 힘으로 벌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의 실현이다. 이번 '제 2회 국민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 장애인들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 노동 권리 확보를 위해 힘차게

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4백만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일 때 '장애인의 날' 제정의 의미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제2회 범국민 걷기대회를 마치면서..

최정환, 이덕인, 박병훈 그리고 김현욱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제2회 국민걷기대회"를 치루었다. 한 달여의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장애인의 날에 종로에서 600여명이 참가하여 장애인중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통해 울컥은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정정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장협 내부적으로는 되짚어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걷기대회'가 가지는 당위적인 의미에 대한 합의가 - 위안잔치로 기념되는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장애인의 날 - 집행부 및 전체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그래서 '걷기대회'가 이벤트식 행사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어 질 수 있다.

걷기대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치루어지는 여러가지 이벤트식 행사들과는 - 정부 주도의 기념식, 체육대회, 나들이 등 - 분명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가 노동절의 의미를 새기듯이, 장애인들이 왜곡된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새길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과제와 전장협이 대중조직으로서 1년 대중사업을 총화시켜나가는 중심고리로써, 또한 시혜와 동정으로 귀결되어왔던 장애인 문제를 당당한 주체와 권리의 문제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걷기대회'를 단순한 행사로 사고하면서 조직 역량에 따라 취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는 적어도 아니어야 한다.

'걷기대회'가 이벤트식 행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전장협 1년의 대중사업들 속에서 걷기대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장애대중들에게 알려나가며 그들을 그들 문제의 주체로 세워 정책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장협이 다른 타 단체와 다르게 건강하고 진보적인 운동단체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전장협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명력을 풍부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발빠르게 장애인과 관련된 이권개입에 충

실하는 것, 장애대중의 투쟁에 무임승차한 소수 명망가 중심의 로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러한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 생명력은 이 시대를 사는 장애인중들이 진실을 꿰뚫어보고, 말하고, 힘을 모으기 위한 희망의 물리적 근거로 기능하는 데 있다.

제21호

에바다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바다 농아원은 재단측의 비리가 불거져 나온 96년 11월 27일 이후로 계속해서 농아학생들과 교사들이 농성을 해왔다. 이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복지부에서는 최성창 퇴진과 관선이사장 파견을 지시하여 최성창 이사장은 퇴임을 하고 최실자 원장은 2년형을 언도받았다. 6월 2일에는 서울에서 143일간의 농성을 벌여온 학생들 20여명이 수업으로 복귀함으로써 이것으로 에바다 농아원의 사태는 모두 해결된 듯 했다.

하지만 아직도 에바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선이사장 파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이사로 최성창 이사장의 동생 최성오씨가 상임이사로 들어왔고, 에바다 농아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최성창 일가에게 칼자루가 쥐어져있는 것이다.

최성창 일가들이 조직적으로 농성에 가담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반 농아인들을 동원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에바다 특수학교의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중 몇 명이 주동이 되어 계획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교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마다 칠판에 "수업거부"를 써 놓고 교사의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소란스럽게 하며 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수업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도 방해, 구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교사 앞에서 장기를 두거나 책상과 교실 문을 두드리고, 책상 위에 드러눕고,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고, 교사가 칠판에 쓴 판서를 지우는 등 노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농성장에서 돌아온 학생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최실자 원장은 죄가 없고 성령이 가득하다"며 최원장을 두둔하며, 오히려 모든 잘못을 교사에게 돌리고 있다.

이들 수업거부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계획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교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하고 있다. 또한, 농성참여 학생들은 현재 에바다 농아원에서 퇴소를 당하여 농아원 근처에 집을 얻어 기숙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성창 일가가 자신들이 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몇 명을 사주하여, 에바다의 문제를 학생들과 교사와의 갈등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과 교사에 대한 보복 내지는 자발적(?)으로 에바다를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성창 일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법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없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성창 일가를 농아원 이사진에서 완전히 퇴진시키고, 학교를 공립화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족벌체제를 뿌리 뽑고, 시급하게 관선이사를 파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바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들과 재단측의 가혹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하는 등 에바다 농아원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22호

서울지부 주관으로

제17회 열린마당 치뤄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육재활센터에서 서울지부의 주관으로 제

17회 「열린마당」을 가졌다. 바위처럼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날은 행사를 여는 마당으로 1부 개회식과 각 지부의 회원들을 맞이하는 환영행사가 진행되었다. 2부 환영행사에서는 전장협의원 1년을 함께 돌아보는 슬라이드 상영 시간이 마련되었고 다음날은 배우는 마당, 열린 마당, 물짓 마당, 새날 마당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배우는 마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대선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선거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 마당과 물짓 마당에서는 체육대회와 물놀이로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녁에 진행된 새날 마당은 충북대학교의 락그룹인 「소용돌이」와 서울지부의 「아카펠라팀」이 초청되어 무르익은 분위기로 행사의 마지막 날을 이끌어 주었다.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했다는 것과 비회원들을 참여케 하는 방법도 고민했어야 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23호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에 부쳐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투표정보획득과 투표과정에서 아직도 '이방인'인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05만명에서 400만명사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유권자로 추정되는 장애인 수는 72만명에서 270만명이다.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투표정보획득과 투표과정에서 아직도 '이방인'인세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는 물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투표소의 19%가 2,3층이거나 지하에 있어 지체장애인 혼자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텔레비전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 실시가 없어 청각장애인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을 수가 없다. 선거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후보들도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에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 투표율을 전국 평균치인 7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투표율은 커녕 정확한 장애인구의 통계조차 없다.

이제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걸맞게 장애인의 진정한 투표권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 전장협)는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장애인 선거 참여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를 찍느냐”하는 문제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정치적 소외를 없애기 위해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전장협은 각 장애 영역별로 나누어 설치되어야 할 투표소 편의시설 및 선거 관련 홍보물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권리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450만 장애인들과 투쟁할 것이다.

▷ 지체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 투표소는 반드시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 계단대신 경사로 설치. 경사로는 넓고 완만하게.
- 장애인용 주차장 준비
- 장애인용 화장실 준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 텔레비전 후보토론회때 자막 (수화통역은 문제있음 : 화면 크기가 작고, 수화 사투리가 많음)
- 대중연설시 대형멀티비전을 통한 수화통역
- 대중연설시 앞자리의 일부분

을 청각장애인용으로 할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접자투표안내문 발송
- 각 후보의 법정유인물(정책, 공약)을 접자나 확대활자(큰글씨)로 유인물제작, 발송
- 투표소에 접자투표용지 비치

▷ 공동

-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 배치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정을 선관위에서 일괄 부담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 모든 선거구에 중증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수송 준비

사실

장애인은 노예가 아니다!!!

중세시대에는 여성 청각장애인을 몸종으로 삼았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마녀로 몰려 죽어갔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독일인의 품종개량”을 위해 희생되었다.

사실 장애인이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앞선다. 그들의 질서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힘의 논리는 소위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명백하게 적용되고 있다.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야만적인 일들이 21세기를 향하는 백주대낮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7일 KBS ‘추적60분’에서 장애인을 인신매매 시키는 서해안 섬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서해안 섬들의 장애인 강제노역사건은 한국 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해안 열도가 대규모 장애인수용소군도로 변하고 있다.

현재 서해안 섬에 붙들려 노예 생활을 하는 장애인은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염전이나 김양식장 등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서 장애인들을 인신매매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며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팔려온 장애인들은 서해안 섬 소금밭에 흩어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은 커녕 톱하면 구타와 감금을 당한다. 탈출도 불가능하다. 섬주와 선원들이 조직적인 무선망으로 결탁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용소군도가 서해안 일대에 형성되고 있는 동안 경찰당국이 한 일은 아무것도

도 없다.

극적으로 탈출한 염전 인부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착취 끝에 죽어갔을 것이다.

팔려간 장애인들은 명당 20-5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취직을 미끼로 유인하여 섬으로 팔아 넘겨졌다. 누가 이들을 그곳에서 죽여가게 하고 있는가?

서해안 섬에 있는 많은 염전업주와 선원들,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참으로 인두겁을 쓴 짐승들이다. 서해안을 살살이 뒤져서, 모든 염전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전부 처벌하고, 갇혀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구해내야 한다. 대선정국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조기에 사건을 결말지어서는 안된다. 이 순간에도 어느 섬에선가는 장애인들이 강제노동과 구타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이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었다는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쉽게 브로커들에게 유인되었던 것은 그들의 생계가 그만큼 급했고, 그들이 살아갈 방도를 정상적인 고용체계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가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와도 결부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제24호

320만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24일,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이하 전장협)는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보장의 의무화,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련 방송물의 자막방송의 의무화와 함께 시각장애인유권자를 위한 법정 인쇄홍보물 점자 제작의 의무화를 촉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 실현 의지를 요구하였으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위한 대시민홍보전의 일환으로 11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시작으로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20일에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델 투표소의 개막식과 모의 투표를 시범 운영하였다. 이날 운동본부는 각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여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려 하였지만, 한 후보도 참석하지 않아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냉담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11월 12일, 운동본부는 한국방송공사 앞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해산 당하고 말았다.

자막방영의 불가 이유로 방송사측은 후보들에 대한 비장애인 시청자들의 혼란 우려와 기술상의 문제를 들었다.

11월 21일, 운동본부는 한글문화연구회 박용수 이사장,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변승일 이사와 함께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TV수화 및 자막방영」에 관한 가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12월5일 법원에서 방송3사에 대통령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기까지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사설

시일이방성대곡 (時日也方聲大哭)

나라안이 너무 시끄럽다.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신문이

며, 방송에서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온갖 말잔치에 국민들은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대선이 온국민의 관심사인양 떠들어 대고,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나라가 바뀐다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와중에도 환율은 건국 이래 최초로 1000원이 넘어 2000원을 육박하며,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없이 부도가 나고, 명예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늘어나고, 주가는 폭락하며, 대기업마저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어수선하다 못해 불길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대란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IMF(국제 통화기금)에서 달러를 원조 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깟 달러좀 원조받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IMF에서 달러를 원조받는 것은, 외국에서 차관을 빌어 쓰는 문제와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IMF에 우리 나라의 경제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난을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달러를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 나라의 경제를 그들이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그야 말로, 정치적으로만 독립국이 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야!시일야방성대곡(時日也方聲大哭)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조선이 일본에 넘어감을 보며 장지연이 한 말이다. 조

국이 식민지가 되어 외세가 관을 치는 세상이 됨을 보고 한탄한 말이다.

한데, 오늘 바로 그 말이 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보면서, 아직도 수천만원짜리 밍크코트와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있는, 졸부들과 천민자본주의의 알랑한 상류계층들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오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고통 분담은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잔업에 철야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들고도, 어려운 시국이라며 구깃구깃 구겨진 푼돈을 저축하고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한보가 무너지고, 기아가 무너질 때, 우리 정부는 뒷북만 치고, 부랴부랴 사건 수습하기에만 바쁘지 않았는가?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과 박찬호로 우리 국민의 정신을 쪽 빼놓고, 나라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혀 놓지는 않았는가?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통곡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에 앞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어느나라 사람인지부터 생각하자.

나라 살리는 일에 이제는 서민들만 몰아넣지 말고, 가진자들

이 나서라. 해외로 달아날 생각일랑 버리고, 모아놓은 달러부터 내 놓으시라.

제25호

'98대의원총회 - 제2의 도약을 위한 안정화 · 내실화 기약

지난 97년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충북 진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98 대의원총회 및 97년 제4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사회전반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상 소외되어온 장애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항상 장애인의 문제해결에 최일선에서 싸워온 전장협외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복지부분의 전반적인 어려움은 전장협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축소 내지는 현상 유지될 전망이고 일부 장애인 관련 정책 또한 경제논리에 밀려 후퇴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장협외는 대외적인 활동보다 안을 정비하고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세에도 공세적인 사업계획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93년 이후 계속 어려워지는 전장협외 물적,인적토대의 마련 없이는 장애인운동의 맥을 이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조직 내에 주류를 이뤄 조직의 안정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초안을 마련 중앙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앙위원들의 토론은 사뭇 진지하고 비장함속에서 진행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97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에 대한 심의와 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심의과정에서 97년 한해의 사업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함께 98년 사업기조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중앙위원회에 이어 열린 '97 대의원총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 총회장의 간단한 설명에 이어 보고별, 사업별로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하였고 문제제기에 대한 토론도 벌여 98년 전장협외의 새로운 사업과 방향에 대해 의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 상정, 의결된 98년 전장협외의 사업기조와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조 : 제2의 도약을 위한 조직의 안정화, 내실화

사업목표 : 재정토대의 구축, 지부조직강화, 회원의 재생산, 홍보사업

* 제2의 도약을 위한 조직의 안정화.내실화

1. 재정토대의 구축
 - 1) 보험사업(재정특위)
 - 2) 복지용품 보급사업(재정특위),
 - 3) 후원회조직사업(상근부회장, 조직국;조직사업, 사무국;관리사업)
2. 지부조직강화
 - 1) 지역중심의 모델사업개발(상근부회장, 조직국, 사무국)
 - 2) 조직체계의 정비, 강화(조직국)
3. 회원의 재생산
 - 1) 과학적인 회원관리 체계 구축, 지부소모임 활성화(조직국)
 - 2) 통신회원확대 (사무국, 정보통신부)
 - 3) 자원활동분과 강화 (조직국, 또바기)
 - 4) 노점분과 강화 (조직국, 노점분과)
4. 홍보사업
 - 1) 열린세상 (사무국, 편집홍보부)
 - 2) 열린마당 (강원지부, 중앙사무소)
 - 3) CUG활용 (사무국, 정보통신부)
 - 4) 월간어깨동무 (사무국, 어깨동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에게 한 약속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

현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여당이 된 것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군사독재로, 전두환 독재로, 그리고 그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던 노태우 정권 그리고, 야당이었음을 내세웠고, 문민정부였음을 내세웠지만, 민정당과의 연합으로 세워진 민자당의 문민독재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국민의 손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

사실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리라는 순진한 믿음 따위는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집권여당의 눈가림에 속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대선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대통령이 되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의욕도 많을 줄 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라 했던가!

때마침 우리 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할 일이 막중하다는 뜻이리라. 이제 그의 정치 행로는 다시 시작했다고 본다.

오랜 집권여당의 묵은 정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문득,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초기가 기억난다.

청와대 안가를 부수고, 집무실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고 국가보안법의 수사권을 박탈했던 그의 화려했던 개혁의지를 보며, 한때 국민들은 난세의 영웅을 본 듯 들떠했었다.

그러나 탕크처럼 밀어붙이던 그의 개혁의지는 신한국의 거품 속에 사라지고,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약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은 모든 것을 다시 뒤로 되돌려 놓았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곡히 바란다.

부디 야당시절을 잊지 말기를.... 함께 최루탄을 마시고 국가보안법에 희생되고 빨갱이로 몰리던 그 시절을, 그리고 그 시절 국민에게 단호하게 했던 약속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구이언(一日二言)이면 이부지자(二父之子)라 했다.

올해는 IMF의 한파로 온 국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정리해고, 임금동결, 감봉, 물가 상승, 고금리로 인해 서 밀어닥칠 국민들의 허리띠 조르기는 극에 달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도 이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강해지는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하지만, 이 고통분담을 국민들에게만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들은 어디에도 없고, 개미처럼 일만 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이 돌반지와 결혼반지까지 빼서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국가의 행동들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7년 이후 10년동안 쌓아온 우리의 민주화의 결실들을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위해 얼마나 싸웠던가.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러한 우리의 피와 땀의 소산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부수기는 쉬워도,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야당의 대통령이 라고 편들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대통령은 오직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다.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제26호

제1회 한가족의 밤 행사 성황리에 마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 전장협)는 2월 28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광진구 정립회관에서 98 제1회 한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장협주최 전장협후원회 주관으로 후원회의 활성화와 후원회원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하였는데 50여 후원인이 참석해 처음 행사치고는 성공리에 마쳤다는 평가가 있었다.

1부 식전행사에서는 전장협의 사업을 알리는 슬라이드 상영과 연도별 전장협 활동 소개 및 98년도 전장협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이어 후원가입요령 및 후원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부 본행사에서는 채종걸 후원회장의 인사말과 이석형 전장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채종걸 후원회장은 먼저 전장협에서 활동했었고 전장협의 사업에 관여했던 가까운 지인들을 중심으로 후원의 밤을 개최한 것은 예전에 전장협을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전장협을 도와주어야지 후원회의 명분도 서고 전장협의 든든한 배경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후원회의 활성화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또한 후원금은 자동이체를하여 지로용지의 낭비도 줄이고 또 후원일도 잊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하였다. 이어 이석형 회장은 조직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회가 기본이 되기에 이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재정사업은 사상누각이므로 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인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

가 있었다.
3부 식사 및 뒷풀이에서는 식사를 마치고 후원회원들의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후원의 밤행사는 해마다 개최할 예정으로 다음행사에는 좀더 많은 후원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약속을 하며 제1회 한가족의 밤 행사는 막을 내렸다.

사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복지부이전에 반대하며

최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복지부이전에 대한 문제가 장애인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문제 제기하여 발생한 공단이 전문체는 공단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기된 것인데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함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수 없이 지적이 되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는 틈을 이용하여 장애인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하루아침에 복지부로 이전하자는 발상은 실로 장애인 문제를 가볍게 보거나 다른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안하무

인의 자세인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여타 다른 장애인문제와는 달리 장애인 문제의 핵심의 사항이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주의에 기초해 바라보아야 한다. 좀더 장애인계와 이와 관련된 부문으로부터 자문 등 의견수렴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장애인 2%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이를 50인 이상 기업체로 범위가 확대하여야 하고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은 업체에는 강한 제재를, 많이 하는 업체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이제는 장애인의 고용을 단순히 복지의 차원이나 노동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산력을 가진 인간의 가치활용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한 제공과 노동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 않게 노동을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수와 대가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을 직업재활의 문제로 바라보는 일부 사이버 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장애인의 노동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 고용은 평등의 문제, 인간가치의 실현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주된 입장이 되어야 하며, 재활의 문

제로 바라보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을 장애인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장애인문제 이니까 장애인 전문 부서에서 맡긴다는 것은 장애인은 무인도에서 장애인끼리 살면서 교육도 따로하고, 의료도 따로받고,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장애인끼리만 결혼하고, 장애인 공화국을 만들어 살아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근로의 의무, 노동의 의무를 장애인도 행사할 수 있게끔 철저한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세워 장애인의 노동을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물론 이 말은 중증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전문화와 이를 수용할 체계를 세워야 한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중증과 경증, 평가기관과 훈련기관, 알선기관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어느 행정부서가 도맡아 한다고 장애인 고용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공단은 반성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부의 관료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같은 대도시는 각 구청에 직원을 파견 근무시켜 산하 각 동의 사회복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장애인의 취업업무를 돕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 구의 사업체를 파악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은 장

애인의 여러 문제 중 하나이기
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관련단
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하여 그들의 자문을 경청하여
야 할 것이다. 공단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공단의 이전문
제가 아니라 존폐문제로 바라
보아야 하며 장애인 고용을 책
임지고 있는 행정부와 정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제27호

전경련,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주장 철회

경제한파를 틈타 장애인의무고
용제를 폐지하려던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음모가
장애인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철회됐다.

전장협 등 장애관련 20여개 단
체회원 2백여명은 4월20일 장
애인의 날을 맞아 여의도 전경
련 회관 앞에서 '전경련, 장애
인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본행사에서 이석형 전장협회장은
“전경련의 장애인의무고용
제 폐지주장은 장애인들의 생
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
정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재벌 자신이 아닌, 노
동자와 장애인에게 돌리는 것
은 명백히 책임회피이며, 장애
인 고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장애인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이다”고 밝혔다.

이석형 회장은 기초연설을 통
해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투쟁
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을 다짐
했다.

이 행사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
독점재벌의 성장은 장애인, 빈
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것
”이라며 “현재 지켜지지도 않
는 장애인고용 2%를 전경련
쪽에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어
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전국노점상연합 양연수 고문은
“전경련의 음모를 막아내고 장
애인, 빈민이 인간답게 살아가
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들의 정
치세력화를 이뤄내자”고 강조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경련 깃발
화형식을 갖고 전경련 회장단
을 면담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장애인들과 전투경
찰 사이에 심한 몸싸움도 있었
다.

한편 대표자들간의 면담에서
전경련의 전상렬 상무이사는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 주장
의 철회 ▲대기업의 장애인
2%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각
기업의 노력 촉구 ▲장애인계
4개 주간신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 등을 약속
했다.

사설

전경련의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 음모를 보며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성근로자 생리휴
가 폐지,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 등 '70
대 핵심규제 개혁과제'를 발표
하였다.

전경련은 그동안 줄기차게 기
업에 부담이 간다고 '300인 이
상 기업 의무고용 2%'의 자아
애인의무고용율을 인하하려고
획책해 왔었다. 이제는 IMF
정세속에서 기업부담을 내세워
야에 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
하고 있다.

IMF시대에 비장애인의 실업률
이 높아가고 있다지만 장애인
은 IMF 이전에도 실업률이
60% 이상이였다. 물론 60%이
상의 실업률은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과 학생,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시키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에
서 배제되어 왔고, 살인적이고
비인간적인 실업률에 허덕여
왔던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나라 사회적 부의 대
부분을 갖고 있는 재벌기업 총
수들 모임인 전경련에서 전지
전능한 '경제 살리기'의 몽둥
이를 휘두르며 기업이 살기위
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해
야 한다고 한다.

장애인을 2%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벌금(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
유로 철저히 고용을 외면하

는 기업이 몇푼되지 않은 부담금을 내면서 그것이 마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업규제정책이 이나라 경제가 이모양 이꼴이 되어버린 원인인냥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주요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삼성은0.04%, 현대는 0.19%, 엘지는 0.2%, 대우는 0.5%이다. 재계의 평균 고용율이 0.5%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기업일수록 그 수치는 낮다.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도 0.8%에 불과하니 오히려 기업의 의무고용폐지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에게 고용은 심각한 경제적 상태로부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계보장이며, 자아 실현과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의무고용제폐지를 통한 기존의 장애인 고용기회를 정당화시키려는 전경련의 비인간적 발상은 기업의 경영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형상인 것이다.

다행히 4월 20일에 열렸던 본 협회 및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들의 규탄집회시 전경련은 자기들의 주장을 철회했고 장애인 관련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였다.

앞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자세를 주시하며 장애인 고용문제와 실업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부 록

◇ 대의원대회 자료집

95년도 정기
96년도 정기
97년도 1월 정기
97년도 12월 정기
98년도 임시

◇ 전장협발간자료 간행물

◇ 역대 임원 및 후원자 명단

◇ 전장협정관 간행물

대의원대회자료집

95년도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정기 대의원대회

일시 : 1995년 1월 21일 - 22일

장소 : 경주 국민유스호스텔

1. 1995년 사업 운영 계획서

(1) 목표

- * 협회 운영의 안정화
- * 지부확대 기반 구축
- * 조직의 역량강화

(2) 슬로건

1천회원과 함께 하는 진장협 재도약

(3) 기본방침

- * 회원매가운동
 - 회원관리 강화
 - 교육자를 통한 회원 교육
 - 장애대중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 * 재정자립
 - 사업별 후원회 구성
 - 기업적 재정사업 도입

- * 지부 집행부의 활성화로 내부의견 수렴
 - 지부 집행부 회의 활성화
 - 제2회 임원수련회 등을 통한 집행부교육 실시
- * 지부 거점확보 및 지부확대
 - 2개 지역에 지부설립
 - 5개 지부 거점확보
- * 신문 부수 확대 및 증면
 - 12면으로 증면
 - 5,000부로 확대
- * 사업의 능률화
 -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 일꾼의 전문화
- * 대외협력사업 강화
 - 지자체에 대비한 사회단체와의 협력강화
 - 장애인계의 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구축
 - 장애인관련 제약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협력

2. '95년도 주요사업

(1) 총괄계획표

순서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내 용	시 기	비 고
1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서 간부 세미나 • 중앙활동가 세미나(단기) • 신입활동가 교육용 자료집 제작 • 전장협 신문을 통한 교육 • 지부 활동가 교육 • 지부 회원교육 • 노들야학 	매월 1회 12월-2월 2월 매월 연2-4회 월2회	
2	사 업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날도서방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개설 • 지부사업 안정, 보완 및 지원 • 노래패 창단 	4월	
3	조 직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부 사무실 확보 • 각 지부별 활동인자 확보 		기초활동가 수련대회 기초활동가 교육사업
4	편 집 홍 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발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의 대변혁 - 신문사업 후원회 모집운동 - 신문배급의 강화와 영역확대 - 표지명칭 공모 - 창간 2주년 기념 12면 증면 - 편집위원회 구성 - 신문편집의 장비 확보 • 리플렛 제작 	3월	
5	청년학생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운영위원회' 유지 및 확대 • 지역사업 착수 • 자원활동 분과 강화 • 대학생 실태조사 후속사업 		

(2) 연간 사업계획표

月	사 업 내 용
1	대의원 총회
2	지역사업 선정
3	지역장애인 명단 및 욕구조사
4	노래패 창단, 장애인 관련 단체 정책단위 간담회
5	장애인 대동제
6	서울 새날도서방 개관, 지역사업 공간확보
7	제 14 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수련대회
8	노들야학 2기 졸업식 및 3기 입학식, 공동세미나
9	새날도서방 개관 기념식 및 새날 문집 발간, 전국 기초활동가수련대회
10	제 2 회 간부수련회
11	전장협 신문 창간 2주년 기념식 및 12면 증면
12	각 지부 총회

3. 각 부서별 사업계획

◇ 교육부

교육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운동의 이념을 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활동가 재생산의 기반이 됨과 아울러 지부회원교육의 기틀을 형성하고, 일반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95년도 사업을 행하려고 한다.

물론, 장애인문제와 여타 사회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 전달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근거해서 각 성원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업을 기록으로 남겨 자료집화하여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교육내용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병행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운동론 세미나, 중앙부서 간부세미나, 신입활동가 교육 자료집 제작,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각 지부의 회원 교육 프로그램

우편과 전장협 신문을 이용하여 지부 활동가와 지부회원이 중앙의 사업방향과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부의 교육주체들을 조직부와 연계하여 공조를 통해 강화하고, 전체수련회·간부수련회 등의 행사를 교육기회로 충분히 활용한다.

<3> 비회원 교육 프로그램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장애인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야학의 안정화를 꾀한다.

1. 중앙부서 간부세미나

가. 목적

현재 전장협 중앙위의 활동가들의 의식이나 이론의 폭을 넓히고, 전체 남한사회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활동가가 전체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재학습 속에서 역량을 강화하여 경험주의를 극복하며 새로운 장애인 운동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대상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의 부서장, 차장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주제가 공고된 이후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부서원들에 한하여 부서장의 동의하에 참관할 수 있다.

다. 주제

정세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주제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주제의 결정은 세미나에서 부서장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라. 일정

매달 3번째주 금요일 2시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마. 기타

이 세미나는 이미 94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고, 교육부는 세미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세미나를 통해 나온 자료는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로 자료집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단, 중앙활동동부서장 및 지부의 지부장과 교육부장에게는 반드시 배포하도록 한다.

2. 중앙활동가세미나(단기)

: 장애인문제와 장애인운동론 세미나

가. 목적

1) 장애인운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개별적인 사안에 매몰되어 활동역량을 소진하는 중앙의 활동가를 위해 장애인문제와 장애인운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 장애인문제를 구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시킨다.

3) 개별사안에 대해 전장협의 방향에 맞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대상

사회과학적 기초지식을 갖고있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의 경험이 없는 중앙의 활동가.

다. 세미나 내용 및 일정

기간 : 12월~2월 총4회

1부 장애인의 현실과 문제

장애인 개념

장애인 실태 : 빈곤, 취업, 교육, 시설, 의료, 결혼, 여성, 편의시설, 인권 등 장애발생원인과 예방의 의미

법

정책

2부 장애인운동론의 이념적 고찰 및 올바른 장애인 운동론 정립

3부 현실 장애인 운동

한국의 장애인 운동사
장애인관련단체의 활동

4부 장애운동의 새로운 모색 : 강연

라. 기타

전체내용을 총괄해서 자료집화한다.

중앙활동가, 지부회원, 일반대중들에게 배포한다.

3. 신입활동가교육

가. 목적

전장협에서 처음 활동을 하고자 들어오는 이들이 각 부서로 편제되기 이전에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육을 통해 신입활동가들이 좀 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

음과 동시에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료집을 제작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 놓는다.

나. 대상

전장협에 입회한 신입활동가

다. 자료집구성

1. 전장협소개글
2. 전장협의 93, 94활동내용
3. 조직표
4. 조직표에 따른 중앙조직소개
5. 지부소개
6. 의결기구 및 회의체
7. 재정확보방법 및 운용 상황
8. 부서별 실무교육일정
9. 통합이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소개 글(부록)

라. 기타

2월 중 완성할 예정임.

4. 전장협 신문을 통한 교육

가. 목적

지부원들과 전장협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달 발행하는 전장협신문을 통해 장애인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공감대를 넓힌다.

나. 대상

전장협 신문독자(지부회원 중심)

다. 방법

2월 혹은 3월부터 편집 홍보부의 협조를 얻어 전장협 신문의 정규 판을 확보한다.

시의를 반영하지 않고 주제를 미리 설정하여 기획 연계하는 형태를 띤다.

라. 여상내용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실태1 : 취업
3. 장애인 실태2 : 교육
4. 장애인 실태3 : 의료
5. 장애인관련단체소개1

6. 장애인관련단체소개2
7. 장애인관련단체소개3
8. 장애인 운동론 : 사회운동으로의 장애운동1
9. 장애인 운동론 : 사회운동으로의 장애운동2
10. 장애인 운동론 : 지금까지의 장애운동
11. 장애인 운동론 : 앞으로 나아갈 길
12. 총괄

5. 지부활동가교육

가. 목적

전장협 각 지부의 교육담당자들이 지부에서의 교육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또한 각 지부에서 행해진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나. 대상

각 지부의 교육담당자들

다. 방법

연 2~3회 수련회를 갖는다.

라. 기타

이 프로그램은 조직부와의 공동프로그램이므로 조직부와의 상의 후 자세한 사항들은 결정할 것임.

6. 지부회원교육

가. 목적

지부회원 중 장애인문제에 대한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부자체 내에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중앙 사무국과의 교류가 어려워 학습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을 극복해 부고자 개별 통신교육을 하고자 한다.

나. 대상

학습을 원하는 각 지부의 회원 3인에서 5인 정도.

다. 방법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우편으로 보내온다. 이때 알고싶은 부분이나 원하는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내온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개별적인 수준에 맞춰 응답을 해주고 추가 학습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라. 기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지부의 교육담당자들과의 상의 후에 결정할 것이다.

예산은 회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7. 야학

95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들 장애인 야학을 안정화시키고,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계획될 것이다.

1. 교사세미나 신설
2. 학생회 구성
3. 수업시간의 보강
4. 수업 외 활동을 통한 교육

◆ 사업부

1. 95년도 사업 기본방향

전장협은 현재 전국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중앙 사무국과 지부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 불신감등으로 조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중앙 사무국 사업부는 중앙 사무국과 지부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여 일사분란한 조직사업을 안착화 시킴과 동시에 중앙사무국 사업부의 상시사업을 안착, 확대, 강화시키는데 주력한다.

(1) 목표

- 사업부 상시사업의 안착화 및 확대 강화

· 중앙 사무국 사업부와 지부 사업간의 원활한 교류 통로의 정착

(2) 기본방침

가. 상시사업의 안착화 및 확대 강화

- 도서방의 안정 및 보완
- 도서방 신설
- 도서방 자원활동가의 지속적인 확보
- 도서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후원회원 확보
- 일요운동회 자체 운영위원회 신설 추진
- 일요운동회 정기사업 안착화
- 일요운동회 후원회원 조직사업

나. 중앙 사무국 사업부와 지부 사업간의 원활한 교류 통로의 정착

- 각 지부의 고유사업 파악 정리
- 중앙 사무국 사업부의 사업 홍보
- 각 지부와 지부간의 원활한 사업 교류의 중간역할 수행
- 각 지부와 중앙사무국 사업부간의 지상토론의 장을 마련

2. 95년 주요사업 계획

(1) 새날도서방

가. 도서방의 안정 및 보완

- ① 새날지 발간
 - 매월 20일 원고 마감
 - 매월 25일 발간
 - 매월 말 발송
- ② 새날문집 발간
 - 매년 8월 원고 마감
 - 매년 9월 개관기념일에 맞춰 발행
 - 매년 9월 말 발송
- ③ 새날도서방 개관 기념식
 - 매년 9월 행사
 - 상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을 추후 완료 (회원예 대한 설문조사와 가입서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념식의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임)

나. 도서방의 확대 및 강화

- ① 새날 자원활동가 모집
 - 연중 수시로 모집
 - 지역신문 및 각 대학신문을 활용한 홍보
- ② 새날 후원회원 모집
 - 연중 수시로 모집
 - 지역신문 및 각 대학신문을 활용한 홍보
 - 각 출판사에 지속적인 홍보와 후원요청
 - 지역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후원요청
- ③ 도서방 신설
 - 95년 주력 사업
 - 세부사항은 조정 중

(2) 지부사업 안정, 보완 및 지원

- ① 지원사업 : 각 지부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초자료 파악, 분석 후 세부계획 작성
- ② 중앙사무국 사업부의 사업홍보
- ③ 지부와 지부간의 정부교류 매개역할
- ④ 각 지부와 사업부간의 지상토론 개설

(3) 노래패 창단

◆ 조직부

1. 각 지부 사무실 확보

- ① 필요성
 - 지부의 체계적 기풍마련
 - 지부의 항시적 연락망 구축
 -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추진
 - 대외적 공신력
 - 각 지부간 연락체계 확립
- ② 계획 및 일정
 - 4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 6월까지 안정적 재정방안 마련계획 추진
 - 9월까지 재정체계가 마련된 지부를 먼저 추진
 - 12월까지 전 지부에 확대

2. 각 지부별 활동인자 확보

① 필요성

- 상시적 사업집행력 확보
- 중앙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골간 조직 확보
- 각 지부별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
- 각 지부별 효율적 회원관리

② 계획 및 일정

- 분기별 진행(가능한 지부 먼저 추진)
- 4월까지 가능한 기초활동가 파악
- 9월까지 교육사업
- 9-10월중 전체지부 기초활동가 수련대회
- 11월 제2차 교육사업
- 12-1월 중앙사무소 각 부서 실무교육

3. 지부 순회

-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파견한다.

4. 연구사업

- 조직부내의 독자적인 연구사업 진행

★기초활동가 수련대회

(1) 목적

-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의 기초활동가들이 서로 같이 활동한다는 공감대 형성
- 기초활동가들이 끈끈한 소속감과 각 지부에 대한 연대감 고취
- 조직활동의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 마련

(2) 세부일정

- 9월 : 세부 프로그램 작성
- 9월 초 : 장소 섭외 및 공문 발송
- 9월 중순 : 기초활동가 수련대회

★ 기초활동가 교육사업

(1) 목적

- 올바른 역사관과 전체 사회를 객관적으로

로 직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고체계 확립

- 이것을 통한 올바른 장애문제 인식과 실천의지 고양

(2) 세부일정

- 2-4월 : 기초 활동인자 파악
- 9월 : 제1차 교육사업
- 협조 부서 : 교육부

◇ 편집홍보부

기초방침 : 편집홍보부는 대 내외에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의 홍보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아울러 조직의 역량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1. 신문사업 상·하반기 발전전략 및 실천 방안

95년도 신문 공식 캠페인 :

“전장협과 함께

21세기 통일복지시대를 열어 갑시다”

1) 상반기 5대 중점사업 목표

(1) 신문기사의 대 변신

기존의 전장협신문의 지루하고 형식적인 면을 과감히 개편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감각으로 시대와 회원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기사를 담는다. 특히 기관지로서 중앙과 지부, 지부와 중앙이 관계를 수평적 유지체제로의 원활한 각 조직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독자적 신문사업 후원회 모집운동 전개

신문운영사업의 원만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후원금관리체제가 필수적이다.

- 후원회 : 일반인을 대상 -- 예) 모금운동
- 광고후원회 : 중소기업체와 출판사 등 -- 예) 방문, 우편 의뢰

(3) 신문배급의 강화와 영역 확대

기존의 형식적인 배급체제를 탈피하여 신문 홍보의 기능적 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타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당일 배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배급장소의 점진적 영역확대를 꾀한다.

(4) 부원확보에 총 역량집중

편집홍보국의 역량을 총동원, 결집하여 부원 확보율을 최소 10인 이내로 한다.

(5) 표지명칭 공모 채택

총회에 일임한다.

2) 하반기 4대 중점사업 목표

(1) 창간 2주년 기념 12면 증면 사업

창간 2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복지의 전문적 신문으로서 양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12면으로 대폭 증면과 동시에 발행 부수를 5000부로 대폭 확대한다.

(2) 완전 독자적 신문발행자금 확보

상반기에서 이어지는 후원회 사업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리하여 완전 독자적 발행자금 확보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

(3) 편집홍보부 직속기구인 편집위원회 구성

전장협 신문이 사회복지 전반에 전문적 신문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직속기구인 (가칭)편집위원회를 10월에 구성한다.

(4) 신문편집의 필요한 장비 확보

카메라, 녹음기 등 취재장비 구입

2. 리플렛 제작

(1) 시기

- 1995년 3월

(2) 목적

- 일반국민에게 전반적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특히 완전한 장애인복지의 시급함을 역설한다.
- 전장협의 대내외 이미지 홍보용으로 용이성을 띤다
- 신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3) 내용

- 앞에 목적 1,2와 같다.

◆ 청년학생특별위원회

목표 : 전장협이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회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계 내에서의 진보성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 관련 단체와 보다 유기적인 연대체계 구축을 모색한다.

1.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의 유지 및 확대

- 영역별 활동가 재생산 구조 확립
- 계승사업 : 장애인 대동제, 공동세미나, 장애인관련단체 정책단위 간담회

2. 지역사업 착수

- 지역사업 전담팀 구성
- 지역운동 사례 조사 및 분석 (1월)
- 모델지구 선정 (95년 말에는 2곳으로 확대)
- 지역 장애인 명단 확보 및 욕구조사
- 공간 확보 (상근자, 전화 등 설비 마련)
- 프로그램 선정 (2-3가지 내용으로)
- 프로그램별 소모임 구성 : 지역 자원활동가 및 장애인 모집
- 지역 활동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관계 설정
- 지역 이벤트 프로그램 마련 : 지역 선전
- 모델지구 확대 방안 수립

3. 자원활동 분과 강화

- 활동체계정비 ~ 책임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팀별 활동제 도입
- 자원활동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작업

- 제 2시설팀 구성
- 지역사업 참여

4. 대학생 실태조사 후속작업

- 지역사업과 연관
- 독립적인 행사 추진은 추후 결정

별첨

94전장협협동평가

사무국장 : 김 대성

93년 8월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장애인 운동청년연합이 통합한 이후 94년은 내부적으로는 두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통합의 의미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한 한해였다.

통합 이전 두 단체는 활동의 기간과 주무대, 방식, 구성인자의 의식차, 연령차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애인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의 전망과 활동방향의 수립이 필요했고 산재해 있는 활동인자의 재조직과 안정적인 사무실운영을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94년은 협회 재정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대중의 참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의 비판적 대중조직으로 나가자는 94년 활동방향을 정하고 1차적으로는 지부와 지부간, 중앙사무국과 지부간의 단결을 2차적으로는 회원의 참여의식 고양과 목적 의식적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각 지부에서 개최한 6차례의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지부와 지부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채널을 열었으며 가능한 모든 회원의 의사와 지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틀을 구축하였다.

94년 7월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의 새날 도서방과 일요운동회를 인수함으로 인해 기존의 전장협 사업과 함께 협회 위상에 맞는 사업은 질적, 양적으로 풍부하게 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회장 출연금과 관심 있는 후원자의 찬조금 및 후원금과 기업방식의 재정사업 도입으로 일정정도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장협의 지부운영 체제는 중앙 하달식이나 낙하산식 지역책임자 선정 등이 아니라 태동시기부터 민주적인 절차와 자유로운 모임형태를 가지고 있어 지부조직의 자발성과 민주적인 활동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형태이나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장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전망의 미비와 사업방향의 오류와 활동의 침체로 인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는 현상유지 차원 상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94년은 통합조직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지부와 회원들에게 제시해주고, 전장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적에 대해 강고한 결함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위원회 및 중앙사무국(집행위원회)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발전하였고, 지부 또한 충남 지부건설과 대전 푸른피와의 통합 등 확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역량부족으로 부산, 대구 등 7개 지역에 대한 연락거점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홍보적인 측면은 8회에 걸친 전장협 자체신문 제작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외적인 홍보는 소기의 성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전장협의 존재에 대한 대외홍보는 가시적인 것을 비롯하여 일정정도 이루어 냈지만 전장협이 추구하는 내용에 대한 홍보는 이렇다할 것을 전달해 내지 못했다.

회원의 의식고양의 측면에서 보면 94년에는 뚜렷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제1회 간부수련회와 회원수련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하반기의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부가 독립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회원 및 신입회원 교육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대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 청년 학생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위해 여러 조사활동과

자체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고 장애인 대중에 보다 깊숙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방향도 모색한 시기였다.

전반적으로 94년은 전장협의 가능성과 이를 확인하는 시기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이론적 토대를 준비하였고, 또한 올바른 실천을 위한 조직강화와 의식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앙사무실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부서원의 영입과 조직 전문화를 모색하였으며, 협회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활동연혁>

- 1월 8일 9일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서울)
- 2월17일 대외협력국장에 김상욱씨,
연구실장에 송병화씨 선임
재정사업 자판기운영
- 3월12일 제 3 차 중앙위원회 회의(경기도)
노들야학입방식 및 2학기
- 4월 7일 전장협신문 3호 발행
- 4월25일-5월25일
제 1회 전장협 아카데미 개최
- 4월25일 편집출판국장에 강태훈씨 선임
- 4월25일-26일
제1회 장애인대동제 참여
- 5월 3일 공사간담회 참가
- 5월 6일-7일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강원도)
- 5월14일 전장협신문 4호 발행
- 5월17일 광주참배
- 5월21일 노들야학 중검반시험 5명합격
- 6월 5일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의
일요운동회 인수
제 1회 일요운동회의 날 기념행사
- 6월24일 전장협신문 5호 발행
- 6월25일-26일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대전)
- 7월 1일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의
새날도서방 인수
편집출판국장에 김종환씨 임명
- 7월28일 전장협신문 6호 발행
- 7월30일-8월2일
제 13회 전국수련회
- 8월24일 전장협 호외 발행

- 8월27일 장애인의무고용율 1%하향조정저지와
범장애인계 대동단결을 위한
결의대회 공동주최
- 8월27일-31일
장애인의무고용률 1%하향조정저지와
범 장애인계의 대동단결을 위한 민주
당사내 단식농성
- 8월28일 청학산하 자원활동분과 또바기 출범
- 8월30일 전장협신문 7호 발행
- 9월 4일 제2회 장애인 낚시대회 공동주최
- 9월25일-26일
제6차 중앙위원회 회의(광주)
- 9월30일 전장협신문 8호 발행
- 10월 1일-3일
제 1 회 전장협 임원 수련회
- 10월11일 중앙부서 명칭변경 및 개편
사업기획단 신설 단장에 김상욱씨
집행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국장에 김대성씨
조직교육국을 조직부와 교육부로
조직부장에 정태수씨,
교육부장에 이경미씨
편집출판국을 편집홍보부로
부장에 김종환씨
사업부 신설 부장에 이석구씨
여성국과 대외협력국은 폐지
- 11월13일 전장협 신문 8호 발행
- 11월26일-27일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제주도)
- 11월27일 장애인대학생실태조사 발표회 참가
- 12월14일 장애인7급 공무원 임용봉쇄에 대한
기자회견 공동개최
- 12월19일 공단주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

96년도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정기 대의원대회

일시 : 1996년 1월 20일 - 21일

장소 : 강원도 강릉

1995년도 사무국 사업활동보고

평가틀

1. 각 부서별보고
2. 사무국 전체보고
3. 각 사업별 평가기준
 1. 95년 전체 사업 계획에서 상정했던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가?
 2. 사업별로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는가?
 3. 활동인자의 참여정도나 새로운 활동인자를 남겼는가?
 4. 장애대중의 반응 혹은 참여정도가 어떠한가?

I. 각 부서별보고

* 문화사업부 *

◆ 문화사업부 전체보고

95년 문화사업부의 사업 목표는

1. 사업부 상시사업의 안정 및 확대 강화
2. 중앙사무국 사업부와 지부 사업간의 원활한 교류통로의 정착

1항의 경우 새날도서방 이용률의 증가, 도서방 신입회원의 증가 및 후원인의 증가 등으로 안정기조의 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부의 새날도서방 개관지원 및 서울 지역 개설 작업을 통해 일정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음. 그러나 세부 평가에서 보듯이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와 자원활동가의 적극적인 개발, 일꾼의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사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음.

2항의 경우 중앙사무국 사업부와 지부간의 유대를 일정정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한정적이었던 아쉬움이 남음. 96년까지 지속적인 관계 모색에 힘써야 함

1. 새날도서방 사업

가. 도서방 사업의 안정화 측면

- 새날지 발간 : 연초의 기획 안에는 새날회지를 안정적으로 발간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회지의 정기적, 지속적인 발행이 되지 않았다. 회지의 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첫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 둘째 안정적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중요 요인이다. 현재는 2명의 새날도서방 일꾼이 새로 들어온 상황과 노원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구청의 지원과 적극적인 후원인의 발굴, 월간 “새날을 여는 사람들”의 지면 강화로 광고주를 개발 자체 운영 능력의 배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지의 내용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

- 새날문집 발간 : 올해 9월 발행을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월간 “새날을 여는 사람들”의 내용 강화와 지면 확대로 문집의 역할이 사실상 줄어들어 따라 올해의 문집은 약식으로 계획하고 있음.

- 새날도서방 개관기념식 : 9월 예정이었으나 전장협 전체의 사업일정의 빠듯함과 재정조달의 어려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취소하였다. 96년부터는 9월 새날도서방 개관식을 없애고 지역도서방의 개관 기념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새날도서방의 확대 및 강화 측면

- 새날도서방의 자원활동가 모집 : 연초 지역신문등을 이용하여 자원활동가를 모집, 활동하였으나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미비와 적절한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여 확대 재생산 되지 못하였다.

- 후원인 모집 : 연초 일부의 인맥을 통해 후원인을 모집하였으나, 지속적인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원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 후원인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후원금은 20-25만원정도 들어오고 있다.

- 도서방 신설 : 현재 대전, 울산, 제주에 새날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서울에는 내년 2월 개관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에 만들어진 도서방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울산의 경우 상근하는 사람이 없어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도서의 구비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는 사무실의 이전 및 개·보수 작업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

2. 새날도서관 설립 추진위원회

- 공동사업운영위원회의 일일호프, 청계천 노점에서의 꿀 판매(40개), 발기인 모집, 모금함 돌리기, 장애인차량대출금등으로 재정 확보하려고 노력함. 현재 550만원정도 확보된 상태임. 청계천 노점의 경우 구청 단속반과의 대치 및 우천으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3. 노래패 노뚝돌 보고

- 95년 하반기 노래패의 활동은 9월 2일에 있었던 창립공연 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공연평가와 노래패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신입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가. 창립공연 보고

- 재정 부족과 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 팸플렛, 포스터, 티켓 제작에 있어 준비기간이 짧아 문제점이 있었다.(예상외의 지출, 오타)

- 공연준비 체계에서 지휘체계가 불명확하여 어려움 발생.

- 공연내용에 대한 노래패내의 공유작업이 부족하여 공연내용을 가슴으로 안아내지 못했음.

- 공연 이후 노래패 활동에 있어 가지게 될 의의 등을 공유할 기회가 없어서 공연을 통해 패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음.

- 기능적 전문성과 장애인 노래패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노래패 내에 있어 왔는데, 공연을 통해 장애인 노래패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음.

나. 노래패의 현 상황

- 창립공연 평가와 패원들의 상황점검을 통해 일부회원은 탈퇴하고 현재 회장(추경미), 노래교육부장(차은영)을 임원으로 활동중.

다. 신입회원 모집

- 장애인 언론에 광고냄. 현재 4명의 신청자와 만나고 있음.

* 편집홍보부 *

- 지난 4월 13일자로 편집홍보부를 맡은 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따랐다. 부서장으로 능력부족때문에 부서원 모집과 통솔력과 조직력, 활동자금 모금 방법의 한계를 드러냄을 통감한다.
- 최근에는 한양대 사회봉사단에 협조요청을 제기하여 일주일에 3명의 대학생 봉사단이 편집홍보부와 문화사업부 일을 돕고 있다.
- 하반기에는 전장협 신문이 7월 15일 12호와 10월 30일 13호가 발행됐다.
- 신문의 내용면에서 다소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회원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 전장협의 사업내용을 일반회원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집의 배려가 아쉬웠다.
- 홍보사업은 집회, 행사, 사회단체, 재야단체 연구소, 대학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주로 신문 배포로 전장협을 알렸다.
- 최근 대외협력부의 공백으로 편집홍보부에서 대신 업무를 일시 맡았었다.
- 편집홍보부 활동은 부장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차다. 부서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 조직교육부 *

◆ 조직교육부 전체보고

- 조직교육부가 노점분과, 야학, 교육분과, 자원활동 분과, 지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받아 안는 등의 양적인 확대는 상당부분 진척되었다. 그러나 95년 한 해는 상반기 이후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의 사업에 결합되어 지부사업(활동인자 확보, 안정적 지부확대 및 사업확대 등)에 대한 실천적 내용마련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리고 장자추 사업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수 없는 오류가 발생되었다.

이렇듯 외형적 틀이 확대되는데 비해 그것을 집행, 관리할 만한 인자의 부재로 인해 분과활동과 지부 사업을 적절히 배치하고 운영하지 못하였다.

1. 교육분과

- 활동내용 : 교육분과는 8월 25일 4명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첫 모임을 가진 후 지금까지 10여차례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서울지역 소재 조기교실 실태파악, 교육상담 전화서비스, 가정방문 교육 서비스, 교육정보지 “어깨동무” 2회 발행, 장애아동 가족지원 센터, 다운센터, 장애인 야학, 동부교육센터, 한국교육개발원등 교육기관 방문조사, 전국부모대회 참가, 제1기 부모학교등에 참가하여 교육분과 사업을 홍보하였다. 동부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31곳, 특수학교 2곳(다니엘학교, 육영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공부방 설치와 관련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활동평가 : 4명의 분과원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한 정보지나 가정방문 서비스가 작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아동이 현재 4명으로 늘어났으며 어깨동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구독신청이 들어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교육분과 사업방향에 대한 정리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 분과 역량과 장애아동 부모 조직화를 위한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정하였다. 사업내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사업별로 주체를 정확히 세우는 등 역할 배분을 할 필요가 제기되어 사업별 실무담당자를 역분 하였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점점 방대해지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한 재정확보

부분이다. 가정방문 교육 서비스를 유료로 하여 최소한의 재정, 특히 “어깨동무”발행 및 발송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아동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깨동무” 구독료, 후원자 조직화를 통해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노점분과

- 올해 3월 노점상 최정환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전노련과 빈민문제에 공유하면서 장자추가 논의되고 이에 따라 전장협 노점분과가 건설되었다. 기간 사업에서 8명의 구속자와 8명의 불구속자를 포함 18명이 법정, 구치소로 가는 가열찬 활동을 하였다. 청계천서의 2차에 걸친 노점확보 싸움, 강변역, 인천 아암도등의 현장 실천과정이 있었다. 그 성과에 따라 외형적인 회원 확대와 유통회사가 생기게 되었으며 전장협의 조직사업으로의 노점분과가 일정한 성과를 받아 안게 되었다. 또한 대중 활동공간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빈민으로서 장애인을 생활의 공간에서 만나고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빈민조직과 연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몇 가지 성과와 함께 문제점들도 상당히 도출되었는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본다.

가. 지장협, 성장협의 노점사업에 대한 개입과 방해행위

- 기간 장관에서 대중사업에 대한 정책이 몇 년이 되었다. 그 시기에 전장협 노점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관심과 행동으로 개입되면서 사업내용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관심과 행동으로 개입되면서 사업내용에서 혼선이 오고 있다. 이들 사업작풍은 재생산되지 못하고 지도부의 이익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관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단체는 대체로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나. 현장 집행에서의 문제

- 전노련과 함께 현장에서 자리 개척할 때의 과정에서 지도력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확보한 회원이 전노련이 중심이 된 지도체계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향후 노점분과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고 장자추 사업기조를 바로 잡는 노력을 요한다.

다. 빈민운동으로서의 정립이 부족하다.

- 전장협이 경험하지 못한 활동공간(빈민운동)이기에 현장에서의 전술이 생소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돌출되는 과정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 특징인의 전술로 바라보아야 할지 빈민조직의 생리를 적용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후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 노점분과 사업의 방만성

- 분과 전망에 대한 기획과 관리가 시급하다. 중간 관리자들의 교육내용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필요성과 당위성에 입각한 사업은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조직상 층부와 공유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힘있게 추진되기에 한계가 있다.

3. 자원활동분과

가. 회원의 참여도

- 자발성을 기초로 구성된 만큼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이 없었고, 이 때문에 회원 자격이 유연해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사기 진작에도 방해가 되었다.
- 다양한 기대와 참여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회원들을 무리하게 중앙의 일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선발, 배치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했다.

나. 부서활동

- 교육부 : 신입 회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1차 교육(장애의 종류, 장애인 문제, 장애인의 깃발인 생존권과 노동권)은 핵심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았고 진행상의 문제(형식 또는 교육참여율)를 해결하지 못했다. 2차 교육(새로운 자원활동)에서도 참여율 저조로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위한 고민이 부족

하였다. 시설 활동에서의 규칙등 기본 교양에도 신경을 썼어야 했다.

- 기획부 : 제도권 교육팀 이외에는 신설 프로그램의 내용 생산이 부족하였다. 나들이 기획과 사회적응훈련(자연 학습관)은 구체적 기획 단계에서 일반 회원들과의 인식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부서장과 부서원의 협력체계도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못했다.

- 홍보부 : 소식지 “또바기”의 발간은 대내적으로 회원들을 결속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대외적으로 “또바기”를 알려내는 데에는 미흡했다. 신입회원 모집 활동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다. 회원들간의 상시적 연락체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시설활동

- 시설 측에서는 수용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와 기록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장관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 활동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대와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라. 대외활동

- 전장협내의 다른 여러 단위들과의 의사 소통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공동사업운영위원회 활동에의 참여는 수동적으로 임하였다. 가장 크게 지적된 부분은 중앙과의 연계인데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집행부

- 집행부내에서 조차 자활분과 활동의 기초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서장들간의 협력 체계나 책임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무리하게 회원들의 질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양적인 확보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호적 인사들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했었다.

4. 지부보고

- 3개 지역(인천, 부산, 충북)이 지부 준비과정

을 밟고 있으며 새날도서관 지원이 4개 지역에 확대, 실시 및 준비중에 있다. 그리고 전체 회원들이 작년도 수련회보다 훨씬 배가되어서 수련회에 참여했고 3개 지부가 사무실을 얻었다. 또한 지부별로 새롭게 추진된 사업들은 성남지부의 공부방, 대전지부의 야학, 울산지부의 장애인 전화 서비스등 전체 회원들이 전장협 사업에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높았고 전체적으로 지부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시도가 많았던 해였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와 회원들의 참여도가 향상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부가 시도되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거나 회원들의 참여 욕구를 받아 안지 못하였다. 그것은 각 지부를 책임있게 끌어갈 만한 주체의 없음과 집행부 구성에 실패한 것이 그 요인이라 할 것이다.

II. 사무국 전체 사업보고

* 사무국 전체사업보고 *

- 문화사업부와 조직교육부는 상반기동안 일정 유기적 관계를 갖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하반기 들어 조직교육부가 노점분과로 집중되면서 문화사업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 각 부서간 유기적 관계형성이 어려웠던 것은 결정적으로 활동인자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새날도서관 사업이나 노점분과 사업이 일개 부서가 담당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 사무국 사업이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긴 했으나, 실무역량 배치를 통해 안정, 강화시켜 내지는 못했다.

- 그러나 노점분과, 교육분과등을 만들어가며 사업의 전문화를 시도해가고 있다는 것은 일정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조직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활동가의 활동방식에서 적극적인 프로근성이 없었던 것 같다. 개인 사정에 따라 활동의 폭이나 내용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사무국 조직을 그 일의 내용에 맞게 개편하자.

<제안> 전장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사업 및 전체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조직확대 및 전문영역의 내용을 담당하는 조직국으로 양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지금 형태는 조직사업과 부서사업을 모든 부서가 관여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조직교육부 사업을 중심으로 다른 부서가 자기 역할을 가져가기 힘든 구조인 것 같다.(예를 들면 회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고민, 지부 모든 회원과 공유해야 하는 문화사업부 고유 업무와 새날도서방 운영은 별개로 사고되어야 한다.)

개편의 형태는 부서 고유 업무와 전체사업(중앙위원회, 대의원총회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사무국장, 문화사업부, 편집홍보부, 교육부)과 새날도서방, 노점분과, 교육분과, 자원활동분과, 노들야학등 조직확대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조직국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 사무간사 활동보고(간사 개인의 활동 보고를 하기보다는 사무간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전장협은 대중조직을 표방하는 단체이고 중앙의 조직체계가 부서별로 되어 있기에 사무간사의 역할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는 사무실 상근자로서 사무실의 정리정돈, 자료정리, 비품 관리 등의 완전한 사무보조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실 청소, 컵씻기, 신문 및 각종 우편물 정리, 복사기등 비품 관리, 전화 받기, 팩스 공문 관리 등의 일반 사무직의 경리와 비슷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사업과 관련된 각종 기획 안이나 실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이 맡으며 사무국회의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활동이 다분히 반복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어서 오는 우려가 있으나, 그런 문제는 전장협 활동 및 장애인 운

동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 협력해 주어야 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른 활동영역으로 활동의 폭을 이전, 확대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다.

둘째는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돕기 위한 조직적인 역할을 들 수 있다. 사무국장 역할 중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 사무국 전체사업에 있어 회의 구조에 들어가 논의하고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장과 동등한 조직활동가로 위치 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청소 및 자료, 비품 관리는 상근자 및 각 부서장이 공동으로 담당해 주어야 한다.

95년 사무간사의 활동은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2가지 역할을 다 하도록 요구받았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 활동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많았다. 이후 사무간사를 둘 때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사무국 내에서 집단적으로 논의 결정하여 개인적인 혼란으로 지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96년도 전장협 사업 계획

I. 사업 목표

-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에 주력한다.
- 회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각 지부간 연대의식을 강화한다.
- 회 운영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II. 중점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걷기 대회
- 제 15 회 전장협 수련회

장애인 고용촉진 걷기 대회

I. 목적

95년 두 번에 걸친 빈민장애인의 죽음은 현재 장애인 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으로부터 소외'에 대한 보다 폭

넓은 공감대 형성 및 폭로, 장애인 2% 고용의 현실적 실현을 요구함에 있다.

2. 추진방향

- ① 전국 지부 함께 하는 걷기대회
- ② 전장협이 중심이 된 고용에 문제를 확산
- ③ 장애인 고용 2%에 대한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요구

3. 사업내용

- ① 4월 6일에 제주도에서 출발 4월 20일 서울 도착
- ② 전국순례에 5~7인 동행
- ③ 빈민장애인문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위해 연구팀 구성
- ④ 전장협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진전

1. 총괄계획표

사업 분야	세부 사업명	기간	비교
간행물 발간사업	신문 발간 교육정보지 어깨동무 발행 새날을 여는 사람들 발행	격월 매월 격월	편집홍보부 교육분과 새날도서관
문화 사업	새날도서관 운영	상시	문화사업부
교육 사업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청회 전국지부 활동가 세미나 장애아동을 위한 공부방 설치, 운영 전장협 활동가 수련회	상시 4월 27일 하반기 9월 경 상반기	교육분과 조직교육부 교육분과 조직교육부
자원활동사업	시설활동	상반기	자원활동분과
협력교류사업	장애인 단체 및 시민, 종교단체와 교류사업	상시	대외협력부
재정 사업	유통회사 운영	상시	기획사업부
영세장애인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	노점확보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상시 상반기	노점분과 기획사업부

신문발행 사업

1. 목적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사회를 내다보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은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불평등 구조와 억압적 계층에 속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수준은 중진국답지 않게 후진국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취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장협신문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인권문제의 낙후성과 심각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재정확보 방향

21C전초까지 전장협의 완전 자립화운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 자립화운동에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장협 신문재정에 취약기반 극복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 방법1 : 신문후원회 구성 - 적정 업체노동조합 선별중심으로 '신문후원단' 구성운동을 단계별 사업접근 형태. (구성방식=공문, 제의, 청탁)
- 방법2 : 물품판매기획단 구성 - 전문컨설팅업체에 자문을 의뢰, 중저가의 히트상품을 선정하여 각 기업 매점과 백화점등에 납품형태.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전담반 구성)
- 방법3 : 출판사업 - 특정 출판사와 후원 협의

의 하에 장애인운동 역사에 관한 자료편집, 상품화 하여 공동 판매 형태.

- 방법4 : 신문광고 후원 - 기업이미지광고에 주력, 우선 국영기업 홍보과를 중심으로 광고 후원 요청

3. 전장협 신문 지면구성

- 신문발간형식 :

매수-8면, 횡수-격월, 부수-3,000부

- 신문내용 : 1면 장애인복지관련 중심 포커스
- 2면 중심포커스 세부기사
- 3면 시사정보 정치
- 4면 시사정보 사회, 인권소식
- 5면 사설, 컬럼
- 6면 전장협, 회원소식
- 7면 만화, 장애인단체 동정
- 8면 전면광고

4. 편집위원회 조직사업

- 목적 : 전장협 신문 편집의 진보성에 충실하기 위해 우선 신문편집의 대중성과 전문성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시급한 개선방향으로 편집위원회 구성이다.
- 의의 : 편집위원회 신설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주 관건이므로 전장협 신문의 전문성, 대중화에 기여함이 크며, 그밖에 사회복지연구사업, 세미나개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방법 :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연구팀이나 사회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섭외, 구성방식은 최대한 자율적 조직활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과 객원 편집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장애인 교육 전문 잡지 “어깨동무” 발행

1. 목적

장애인 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인 장애아동 부모들이 아동 교육과 관련한 제반 권리 획득, 우리 나라 장애인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부모들이 장애아동 교육권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부모들이 장애인 교육의 주체로 서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 창간 준비호를 2회 발행한다. (95년 9월 - 12월)
- 96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구독자를 확보하고 전문기자를 확보한다.
- [올바른장애인교육을생각하는교사모임]이 고정란을 담당, 지속적으로 교수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 97년 하반기 공보처에 장애인 교육 전문 잡지로 등록한다.

3. 사업내용

- 월간지로 발행한다.
- 구독자를 확보, 구독대상 사업을 기획한다.
- 재정확보 : 구독료(월1,000원, 년10,000원)및 후원금, 가정방문서비스 수익금(월 30만원)
- 정보지 내용 : 진학관련 정보, 교육행정, 제도적 측면의 정보, 여러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정보, 교사가 제안하는 교수프로그램 정보, 기타

새날을 여는 사람들 발행

1. 목적

새날도서방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시, 수필 등의 원고로 직접 참여하여 협회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도서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장애인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 발간계획 : 95년도 새날을 여는 사람들은 월간 발행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재정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원활한 발행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물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격간으로 발행을 하기로 하고 일정을 지키기로 하였다.

- 발행월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발행부수 : 1,500권
- 발송계획 : 회원 500부, 장애인단체 100부, 후원회원 170부, 각 지역도서관 300부, 문화사업부관련단체 100부, 자체보관 330부

3. 사업내용

회원들이 보내오는 각종 문학작품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전문 기사를 확보하여 탐방기사, 기획 기사 등을 풍성하게 담는다.

새날도서관 운영

1. 목적

새날도서관은 지난 해동안 안정적 사업기반의 확립에 힘입어 96년은 힘찬 도약의 해로 정했다. 우선 현재의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회원의 욕구 수렴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실천사항으로 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무실 확보, 장서 만권보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선진적 활동가들의 확보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추진방향

- 지속적인 회지 발행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보의 전달과 새날도서관에 대한 홍보
- 새날문집을 창작작품집으로 발행하여 회원들의 참여도와 창작의욕을 고취

3. 사업내용

1) 도서대출 서비스

- 지방의 회원은 우편을 통한 도서의 대출 및 회수
- 서울의 회원은 직접 방문 배달
- 지역주민(비장애인)에게 도서관 실비 개방

2) 도서구입 대행 서비스

- 회원이 원하는 도서의 구입대행 배달 및 발송

3) 각종 장애관련 정보 상담, 안내서비스

-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정부시책 정보의 상담 및 안내
- 장애관련 단체에서 하는 행사 안내

4) 기타 프로그램

- 장애인 청소년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영화 감상실 운영
- 독서 인구의 확대를 위한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무료 연극 공연
- 우수 장애학생 장학사업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1. 목적

- 정규교육에서 소외받은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보한다.
-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한다.

2. 추진방향

- 중입 검정고시반(청솔반), 고입 검정고시반(불수레반), 대입 검정고시반(한소리반) 세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반 담임이 수업과 학생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으며 교사대표를 위시한 부서장(총무부, 사무부, 편집부)들이 야학행사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교사회에서 담당한다.
- 실무와 별개로 야학 회계 감사와 운영보고를 분기별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전장협 1인), 운영위원(전장협 1-2인, 야학 교사대표, 부서장 1-2인)으로 한다.
- 야학예산은 정립전자에서 전액 도움받는다.

3. 사업내용

- 한소리반과 불수레반은 주 4일(월, 수, 금, 토), 청솔반은 주 2회(화, 목) 수업을 진행한다.
- 년 1회(1,2월 중) 재정마련과 야학홍보를 위한 하루호프를 실시한다.
- 격주로 교사회의를 실시하고 월 1회 교사세미나를 실시한다.
- 5월엔 소풍을 10월엔 수련회를 실시한다.
- 고입·대입 검정고시는 년 2회(5월, 10월) 중입 검정고시는 년 1회(5월)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육”을
주제로 한 공청회

전국지부 활동가 세미나

1. 목적

- 장애아동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 역할을 확인하고 그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요구되는 상설적인 지역부모모임을 구성한다.
-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성동구 지역의 장애인 교육 종합 계획 수립에 기여한다.

2. 추진방향

- 공청회 준비팀을 구성한다.
(교사, 부모의 참여를 보장한다.)
-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작업
 - 성동구 지역내의 장애아동 인원과학과 교육기관 실태 파악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
- 재정확보
- 홍보

3. 사업내용

- 일정은 96년 4월 말경으로 한다.
- 성동구청 대표, 지역 학부모 대표, 국회의원, 교수 및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상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성동구 지역의 장애인 교육 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 부모참여를 통한 장애인 교육 개선 사례를 발표하여 부모 모임의 필요성 및 부모 참여를 공론화 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1. 목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등의 제 분야들이 지역 중심으로 편재됨에 따라서 장애인 운동 또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전장협은 ‘8개 지부 및 3개 지부 건설 준비’라는 외형적 틀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으나,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각 지부들의 활동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제 여건에 기반한 장애인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동가 양성 및 훈련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전장협은 ‘지부활동가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세미나의 목적은 장애인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념 정립과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이고 창조적으로 각 지부를 강화하고 장애인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기 위함이다.

2. 추진방향

- 각 지부별 5-6인의 청년활동가 구성
- 세미나 일정은 중앙과 각 지부별 상황에 맞추어 진행한다.
- 중앙에서 제공되는 자료집으로 제공한다.

3. 사업내용

- 사회복지 사상의 흐름 및 현재적 의미
- 각 영역별(법, 편의시설, 교육……) 장애인 문제
-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장애아동을 위한 공부방 설치, 운영

1. 목적

- 지역 어린이(장애아동, 비장애아동)에게 학습, 놀이 공간을 제시한다.

- 방과후 아동지도에 고심하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준다.
- 학교 교육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에 통합교육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간다.

2. 추진방향

- 4월 공청회를 계기로 모이게 된 성동구 지역 장애아동 부모님들과 협의, 구체적인 상을 잡는다.
- 설치 지역은 성동구로 한다.
- 부모님들과 후원자, 교육분과 공동의 노력으로 9월 개원한다.

3. 사업내용

- 학령기 장애아동의 방과후 지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 대상아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장애유무와 상관없이)과 다른 지역의 장애아동으로 한다.
- 수업은 고학년반 / 저학년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주 5회 수업으로, 3회는 학습, 2회는 놀이 및 음악, 미술활동을 통한 사회성 교육으로 배치한다.
-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시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교육”등 특기 교육을 기획, 실시하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 교사는 정교사 2인으로 하며 각 수업은 특수교육 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자원활동 교사를 모집, 운영한다.

전장협 활동가 수련회

1. 목적

전장협 중앙 및 전장협 각 지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활동가로서의 자질향상 및 활동가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함에 있다.

2. 추진방향

-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 추진위원은 각 지부 조직부 소속원들로 구성한다.
- 추진일정은 ‘지부활동가 세미나’ 진행상황에 맞추어 하반기에 시행한다.

3. 사업내용

- 세미나 구성원을 중심으로 모인다.
-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 세미나를 통해 나온 성과물을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한다.

시설 활동

1. 목적

이전의 봉사정신으로 대표되던 자원활동의 모습을 장애인 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학생, 직장인 등 폭넓은 대중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활동을 실시한다. 시설 장애인의 보다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켜주고 활동 속에서 시설장애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장애인 전반 문제를 좀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올바른 대안을 자원활동의 내용에서 찾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2. 추진방향

시설 방문이 가능한 시간에 따라 주말팀/주간팀을 나누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전문팀/일반팀을 구분하여 참여 가능한 횟수에 따라 주일팀/격주팀 등을 따로 만든다.

3. 사업내용

- 분과원들에게 시설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에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시설 장애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나들이 등 기획사업을 구상, 실시한다.

장애인단체 및 시민, 종교단체와의 교류사업

1. 목적

기간 연대 사업에서 평가되었듯이 사안별 결합이나 전체 조직 구도와 결합한 장기적 전망에서 대외사업은 조직하지 못하고 인원동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극복, 장기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총선,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행보에 맞추어 쟁점화 시켜내고 장애인계내의 전장협의 위치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대외 연대사업을 크게 나뉘보면 장애인계, 사회운동 단체, 청년학생, 종교계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를 사안별 결합 단체, 조직화 대상, 상시적 연대체, 후원단체 및 개인, 명망가 등으로 나누어 주소, 전화번호, 단체 내 영향력 있는 개인을 파악, 자료 교환 및 결합 시기 등을 목록화 하여 전장협내에 대외사업을 상시적 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내용

- 자료화 작업 : 단체 및 개인 파악
- 중심기조와 결합(장애인노동권리 확보의해) 4월20일 장애인고용촉진경기대회및 사진전 공청회 및 서명운동
하계수련회(활동가수련회, 전체수련회)
- 대외 사업을 위한 자료 발송
전장협 정기간행물 및 각종 자료 발송
- 각 사안별 후원 확보

유통회사(가칭, 한가족유통)운영

1. 목적

- 값싼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 장애인 상인들의 물품수급 및 판매를 원활히 하고
- 물품의 마진을 전장협 재정으로 한다.

2. 추진방향

- 전장협 노점분과를 통해 노점을 시작한 장애인노점상을 1차대상으로 하며,
- 장기적으로는 비장애인 노점상에게도 물품을 공급한다.
- 장애인노점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다.

3. 사업내용

- 명칭 : 한가족 유통회사(가칭)
- 기간 : 95년 12월 20일부터 운영중
- 내용 : 물품공급(주된 품목은 공산품으로써 운동화, 시계, 가방등) 및 전장협 재정확보
- 방법 : 전장협 출자금과 개인 1인의 출자금으로 자금운영 한다.
: 지속적으로 전문성 확보와 자금확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주최 : 전장협과 개인 1인
- 규모 : 서울시 청계천 8가 3·1아파트 앞, 8명의 장애인노점상과 2인의 비장애인 노점상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1인의 전담자가 활동하고 있다.

노 점 확 보

1. 목적

장애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장애인의 경제력 강화에 두고 현재 열악한 장

애인 생존권 문제를 장애인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노점자리를 확보, 장애인이 자립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 장애인자립 추진위원회의 계획과 지도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을 설정한다.
- 현재까지의 회원과 대기중인 회원을 중심으로 노점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 2%에 대한 규정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생산하고 그에 기반하여 노점자리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3. 사업내용

- 노점을 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을 구성, 안정적인 모임의 틀을 구축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장애인 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대기자로 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리 확보에 주력하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노점분과의 구성원 모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간다

2. 추진방향

- 중증이면서 빈민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 무료 기술강습을 하며,
- 빈민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기술습득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 기술습득 후에 지속적인 일거리를 전장협이 공급한다.
- 이후 자립작업장 형태로 운영한다.

3. 사업내용

- 명칭 : 한가족 애니메이션(가칭)
- 기간 : 96년 2/4분기 내에 설립
- 내용 : 무료 기술강습, 일거리 공급
- 방법 : 본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과 재정을 지원 받아 설립, 운영한다.
: 준 전문강사 2~3인이 강습을 담당하도록 한다.
- 장소 : 서울시 노원구
- 주최 : 전장협
- 주관 : 기획사업부
- 규모 : 강사 2~3인
: 학생 : 20명
: 운영 전담자 1명

애니메이션 사업

1. 목적

- 장애인에게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전장협은 장애대중의 현실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라는 인식전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7년도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정기 대의원대회
일시 : 1997년 1월 25일 - 26일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96년도 전체 사업보고

각 부서의 상시사업은 부서별 보고서 및 97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96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 96년 전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과 정부시책과 관련 즉시 적으로 벌였던 사업에 대한 보고만을 하겠습니다.

1. 중점사업

(1) 장애인고용촉진 걷기 대회

- 4월 7일 ~ 4월 20일
- 지역별 걷기대회의 경우 몇몇 지역은 관련 단체와 연결하여 잘 치루었고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조직 활성화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 서울 본 대회는 서울지부의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체계적인 실무 준비로 잘 치루었다.
- 장애인계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대외적으로 전장협 이름을 알렸다는 성과가 있었다.

(2) 제 15 회 전장협 수련회

- '96 장애인 열린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비회원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시도한 수련회였다.
- 숙박, 샤워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전체적인 준비면에 부족함이 많았으나, 해양훈련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장애인이 해보기 어려

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 여느 수련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비회원에게 열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이 부분은 이후 수련대회에서 잘 계승해야 하겠다.

2. 간행물 발간사업

(1) 신문발간

- 격월로 발간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발간하지 못함.
- 신문제호 '열린세상'으로 바꿈
- 편집홍보부의 주체가 유동적이었고 결국 신문을 만들 사람이 없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 내년도에는 신문발행의 목적을 회원대상 홍보기관지로 정하고 매월 발행하며 대신 4면으로 내용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2) 교육정보지 어깨동무 발행

-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가 약 200여명에 이르게 되었고, 매월 말 700부를 발행, 500부를 발송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장애아동 가정방문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발행했으나 이후 좀더 조직적인 광고후원을 얻어서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3) 새날을 여는 사람들 발행

- 부설기관인 새날도서관에서 격월로 1천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새날도서관 회원에게 발송하고 있다.

3. 문화사업

(1) 새날도서관 운영

-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독립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J Life 라는 서비스 관련 사무도 맡아서 하고 있다.

- 조직체계는 관장, 사무장, 상근 간사, 기획부장 등으로 되어 있고, 노원지역의 지역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4. 교육사업

(1)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립회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정의 대부분은 정립전자에서 후원 받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2회의 검정고시준비와 매월 학생강좌, 교사·학생 수련회, 노들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 현재 교사는 17명, 학생은 26명 정도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청회

- 4월 29일 성동 구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모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특수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공청회를 준비하며 성동구 지역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과 일정정도 관계를 만들었다는데 성과가 있었다.

(3) 전국지부 활동가 세미나

- 활동가 세미나의 필요성을 알리고 중앙사무소의 상황으로 많이 미뤄져서 현재 세미나에 필요한 교육자료집을 발행했으며 각 지부에 세미나팀 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장애아동을 위한 공부방 설치, 운영

- 서울 동대문구 남십리동에 약 20평정도 규모의 공간을 마련 12월 23일 개원하였고 명칭은 '어깨동무 공부방'으로 하였으며 97년 1월 6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 공간마련을 위해 하루찾집, 바자회, 후원자모집 등의 활동을 했으며 교사진(2명)이 꾸려지면서 구체적인 실무가 진행, 개원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홍승채 서울시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5) 전장협 활동가 수련회

- 여러 방면의 토론을 거쳐 최근 "간부수련회"로 명칭과 내용을 진하고 현재 기획안을 마련, 준비하고 있다.

- 좀 늦어진 감이 있으나 1997년 2월 22일~ 23일에 간부수련회를 갖기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5. 자원활동 사업

(1) 시설 자원활동 사업

- 자원활동분과를 중심으로 2곳의 시설(양평 은혜의 집, 퇴계원 새롬의 집) 활동을 나가고 있다.
- 현재 활동인원은 약 10여명이며 1년에 2회 정도 분과원모집을 위해 홍보사업을 펴고 있다.

6. 협력교류 사업

(1) 대외협력 사업 강화

- 장애인 단체 및 시민, 종교단체와의 교류사업으로 대외협력부가 주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대외협력부의 주체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여 큰 협력사업은 없었다.
- 상시 협력기구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에 우리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민주단체 연대기구인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 기타 여러 단위에서 하는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에 일부 일꾼이 참여하는 수준의 교류사업이 진행되었다.

7. 재정사업

(1) 유통회사 운영

- 유통회사 운영은 심한 재정난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초기 3개월 정도 진행되다가 그만두었다.

(2) 자판기 운영

-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립회관의 자판기 운영 등 자판기 사업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고민, 추진하고 있다.

8. 영세장애인 자립기반확보를 위한 사업

(1) 노점확보 사업

- 인천 아암도가 완전 철거를 당하면서 상황이 좀 어려워졌으며 청계천이 잦은 철거시비를 겪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함께 추진해야 하는 전노련과도 제대로 이야기가 안되면서 지금은 일정 담보상태에 빠져있다.
- 노점분과 및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에 기초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듯하다.

(2) 애니메이션 사업

-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독립공간을 마련, '에원동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을 개설, 상근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향상,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진 못하다.
- 최근 비수기를 맞아 당분간 문을 닫고 있다.

9. 정세와 관련하여 벌인 사업

(1)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톨게이트비 감면싸움

- 경승용차의 톨게이트비 감면에 대한 시책이 발표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중의 하나인 승용차 이용에 있어 톨게이트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하였다.
- 상반기에 3개월 여에 걸쳐 관련부처에 공문을 띄우고, 언론에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다. 초기단계에는 도로공사등 관련단위에서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하반기, 10월)

도로공사에서 장애인의 톨게이트 비용 50% 감면 시책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사진전 및 서명운동

- 건국대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자를 정립회관에서 별도로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것으로 서울지역의 10여개 대학과 연대하여 순회 사진전을 열었고 약 3만명정도의 서명을 받아 현재 교육부에 요구사항과 함께 제출되어 있다.

(각 대학의 9월 개강에 맞춰 진행하였다)

(3)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수상에 대한 항의 방문

- 9월,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첫 수상국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에 전장협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대사관으로 항의방문을 다녀옴.

- 장애인상 반환을 요구했으며 10여명의 참석자가 전원 경찰서에 연행되었었다.

- 적은 수가 참여했지만 상징적으로 일정 성과가 있었으며 장애인상 수상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대외적인 성과가 있었다.

97년도 단위별 사업계획

97년도 새날도서관 사업계획

1. 사업평가

- 전체적인 사업방향은 노원구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상근자의 확보와 재정적인 안정구조, 지역내 입지강화에 주력하였다. 우선 상근자는 간사가 적극 결합, 최소한의 활동인자를 확보하였고 보조활동가로

서 2-3인이 꾸준히 활동을 하였다. 하반기에는 상근자 1인이 더 늘었으나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직한 상황이다. 재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관장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의존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인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내 입지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업을 펼쳐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내 타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지역사업은 계획의 차질과 활동가의 안정구조 마련의 어려움으로 성과를 내오지는 못하였다. 연대는 현재 노원 지역 나눔의 집과 정기적인 미팅을 갖기로 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활동가들의 전체적인 평가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본적인 안정구조의 틀을 잡을 수 있는 한해였다는 평가와 함께 97년도에도 올해의 사업구조에 바탕을 둔 사업들을 잡아 지속적인 도서관의 정착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2. 사업방향

- 96년의 사업구조와 동일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잡기로 결정.

첫째 : 활동가의 재생산

둘째 : 안정적 재정구조의 틀 마련

셋째 : 지역내 지명도 및 입지강화

3. 세부사업계획

(1) 이동도서관

노원구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원 배가와 홍보를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함.

(2) 연극공연

지역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연기회를 마련 회원의 배가와 홍보 및 연극소모임 결성을 위해 연극공연을 하기로 함.

(3) 일상사업 안정

일상적인 도서대출 사업과 회지의 발행 등 일

상적인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로 함.

상당사업을 하기로 함.

(4)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

장애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 관리하며 장애인들이 원할 경우 정보의 제공 및

97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사업계획

월	내 용	비 고
1	-모의고사 -학생강좌	-학생강좌(年 / 10회) · 외부강사 초청강연
2	-교사 겨울수련회(1,2일) -교사 L.T. -노들하루HOF (15일) -학생강좌 -방학(木) -부식돌 발행	· 주제 : 장애인관련 문제, 노동문제, 영화 및 비디오 감상, 환경문제, 생활건강문제, 자유주제 등.... -부식돌 발행 (年 / 2회)
3	-2학기 개학식(初) -학생강좌 -모의고사	-신임교사 모집 및 훈련 · 약 2개월간의 세미나 · 참관수업
4	-중입 검정고사 -고대입 검정고사 -모의고사	-노들 하루HOF (年 / 1회) · 야학 제정사업
5	-봄소풍 -학생강좌	-교사수련회, L.T. (年 / 2회)
6	-학생강좌	· 학기별 사업평가
7	-모의고사 -학생강좌	· 학기별 사업계획 · 교사대표 선출
8	-고대입 검정고사 -교사여름수련회 -교사 L.T. -부식돌 발행 -노들 체육대회 -방학(木)	-교사, 학생모꼬지, 봄소풍, 체육대회 (年 / 1회) -서울·경인지역 장애인야학 연대모임
9	-1학기 개학식(初) -학생강좌	-노들인의 밤(年 / 1회)
10	-교사, 학생 모꼬지 -학생강좌	· 문화중심의 공연 · 노들의 홍보
11	-학생강좌	· 노들의 1년 결산
12	-노들인의 밤 -학생강좌	-운영위원회(月 / 1회) · 운영위원(6人)

97년도 월간 어깨동무 사업계획

1. 재정의 확보

1) 문제점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월발행과 발송에 드는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비용 : 편집, 인쇄비 - 500,000원
발송비 - 200,000원

2) 해결방안

- ① 구독료의 인상과 구독료 납부 안내 : 현재 년 구독료 10,000에서 15,000으로 구독료를 인상하며 어깨동무 발송시 구독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내도록 한다.
- ② 후원확대 : 어깨동무 후원금은 현재 매달 대략 200,000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후원자를 발굴, 확대하여 어깨동무의 후원인으로 실어드리도록 한다.
- ③ 광고모집 : 어깨동무의 재정확보를 위해 가장 주력할 방법으로 어깨동무 잡지등록과 함께 어깨동무라는 잡지를 알려나가면서 광고를 신고자 하는 기업이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 구독자 확대

1) 문제점

현재 어깨동무 구독자 수는 약 200-250명 수준이다. 그러나 정식적인 구독후원자 이외에도 특수교육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는 어깨동무에서 무료로 계속 배포하고 있는 중이어서 매달 400여부 이상이 배포되고 있다. 어깨동무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에게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부모님들이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해결방안

- ① 부수의 확대 : 현재 매달 700부씩 인쇄하고 있는 것을 1,000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 ② 내용의 충실화 : 매달 전화를 통한 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점등을 파악하여 내용의 내실화를 기한다.

3. 홍보사업

1) 문제점

어깨동무가 만들어진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모님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어깨동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행초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홍보를 소홀히 했던 점도 있었다.

2) 해결방안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 : 벼룩시장이나 장애관련 신문이나 잡지들에 어깨동무 홍보를 위한 광고를 실는다.

4. 인자확보

1) 문제점

어깨동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고제현, 박수현, 김수중, 이선민, 김은영 5명이나 김은영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4명이 모두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 기획회의를 하고 각개로 흩어져 있다가 원고를 들고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깨동무를 주로 맡아서 일해줄 상근자가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이다.

2) 해결방안

인자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방

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구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재정의 안정화

- 홍보를 통한 단체 및 개인 후원을 모집하고 철저한 후원과 관리를 통해 재정의 안정화를 구축한다.

97년도 어깨동무공부방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일상 교육사업의 내실화
- (2) 통합교육의 기반 마련
- (3)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토대 구축
- (4) 재정의 안정화

2. 사업내용

▶ 일상 교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 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 지속적 자원교사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장애문제의 인식을 통해 실천을 모색한다.
- 부모모임을 정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과 타 부모단체와의 교류를 도모한다.

▶ 통합교육의 기반 마련

- 지역 일반아동을 공부방에서 함께 교육함으로써 통합 기회를 확보한다.
- 인근지역 일반아동 공부방과의 연대를 추진한다.
- 통합캠프(도깨비 캠프, 민들레 합창 등)에 참여한다.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토대마련

- 동부지역 장애아동의 교육실태를 조사한다.
- 지역사회의 특수교육에 관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추진한다.
- 장애아동의 취학지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한다.
- 지역사회의 단체와 연대하여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

3. 세부 사업계획

1월 : 수업시작(방학 특기교실 운영 - 풍물교실, 태권도교실), 자원교사 교육(장애인의 삶, 부모모임실시(친목도모), 현장학습(눈썰매장), 운영위원회

2월 : 부모모임(발달장애아의 가정지도), 자원교사 교육(특수교육의 개념 및 현실), 수업지도안작성, 특기교실 운영

3월 : 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주 5회), 중등부 신설, 자원교사 모임(정신지체 아동의 이해와 특성), 수업지도안작성, 부모모임(발달장애아의 가정지도), 현장학습

4월 : 인근지역 일반아동 공부방과 연대모임, 자원교사 모임(자폐아동의 이해와 특성), 부모모임(장애아동의 부모 심리 및 바람직한 양육태도)

5월 : 전교조와 지역교육 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기념 놀이마당 참여, 자원교사 교육(학습장애, 언어장애 아동의 이해와 특성), 부모모임(양육사례발표), 현장학습

6월 : 인근지역 일반아동 공부방과 연대모임 및 통합수업 회지 발행, 자원교사 교육(부모 및 형제 상담), 부모모임(발달장애아동의 생활자립 훈련과 지도)

7월 : 방학 특기교실 운영, 자원교사 M.T. 통합놀이 캠프(도깨비 캠프)참가, 부모모임(발달장애아동의 학습지도), 자원교사 모임(수업지도안작성)

8월 : 전장협 수련회 참가, 자원교사 모임(인지

학습지도), 부모모임(취미교실)

9월 : 정규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정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현장학습, 자원교사 교육(놀이 및 사회성지도), 부모모임(장애아동의 성교육)

10월 : 통합놀이한마당 참여, 자원교사 교육(개별화 교육 기획안 작성), 부모모임(장애아동 교육과 정책적 과제)

11월 : 현장학습, 자원교사 교육(우리 나라 장애 복지 현실), 부모모임(장애아동의 진로지도)

12월 : 방학 특기교실 운영, 어깨동무 가족의 밤, 회지발행, 자원교사 세미나 및 교육자료집 발행, 부모모임(친목도모)

<별첨>

<p>▷ 97년도 신임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p> <p>선거관리위원장 : 현 회장 채종걸</p> <p>선거관리위원 : 상근부회장, 서울지부 정태영 경기지부 노민규, 충북지부 김원태 대전지부 최일권, 충남지부 차상록 경남지부 이광제, 광주지부 이종균 제주지부 김정훈, 강릉지부 정선교</p> <p>선거관리위원회 간사 : 서울지부장 정태영</p>	<p>▷ 97년도 신임회장 선거 입후보자 소개</p> <p>이름 : 이 석 형 (37세, 지체장애 1급 1호)</p> <p>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5-40</p> <p>학력 : 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81년 2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86년 2월)</p> <p>경력 : 82년~85년 대학정립단 연구부장 88년 장애인복지신문 창간 발기인 91년~94년 장애인복지신문 총무국장역임 97년 현재 S & J Life 대표 및 서로물산 편의용품점 실장</p>
---	---

표 창 패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충북지부

귀 지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불평등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본 협회의 1996년도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제1회 장애인고용촉진경기대회'와 회원관리 부분에서 다른 지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맞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1997년 1월 25일

전국장애인가족협회장 채 종 걸

공 로 패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제주지부

귀 지부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1996년도 '전국 장애인 열린마당' 행사를 주관하여 참가한 모든 장애인에게 독특한 해양체험을 선사하고 아울러 제주지역에 본 협회를 널리 홍보한 공로가 인정되어 1997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맞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1997년 1월 25일

전국장애인가족협회장 채 종 걸

감 사 패

서울시의원 홍 승 채

귀하는 199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또한 본 협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장애아동 보육시설인 어깨동무 공부방 개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는 등 협회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심에 1997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의 자리를 빌어 전체 회원이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1997년 1월 25일

전국장애인가족협회장 채 종 걸

97년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정기 대의원대회

일시 : 1997년 12월 20일 - 21일

장소 : 충북 청소년 수련관

1. 97 사업보고

1. 전체사업평가

97년 전장협 사업기조는 조직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 일상대중사업의 인적, 재정적 안정구축
-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극대화
- 일상적 연구사업의 여건조성
- 대선 관련 사업
- 지부조직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한 매개사업의 구상
- 일상사업의 지부이관과 활동가의 재생산 및 회원의 배가
- 역량에 맞는 인권사업의 전개

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하면

- 1) 97년 사업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상대중사업의 인적, 재정적 안정구축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 재정적 측면에서 대중사업(건기 대회, 수련회, 버스투쟁, 참정권....)은 조직에 부담을 끼치지 않았고, 일정 정도 도움이 되었다.
 - 조직2부 산하 어깨동무 공부방이 인적, 재정적 문제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identity와의 갈등 그리고 IL센터로의 전환등 여러 가지 문제로 6월에 문을 닫게 되었다.

- 월간 어깨동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진행중이며 현재 사무국으로 이관되어 있다.
- 노점분과는 노점특위로의 발전을 상정하였으나 인적, 재정적 기반의 부족으로 현재의 모습을 담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정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현재 부채의 청산 및 활동자금을 준비해야 할 과정에 놓여 있다. 노점분과 자체의 회원확보는 담보상태이며, 종로 지역에 1자리를 확보하였다.
- 어깨동무는 인적 재정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자체적인 사업을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다.

- 2) 최소 인력을 투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 최소 인력의 투여가 극단적인 개별화와 고립화를 초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전문성의 축적은 조직국 내 월간 어깨동무의 경우 일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일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전문성을 이야기할 것이 없다.
 - 조직내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직국 산하 많은 인자들이 사퇴하거나, 분과가 폐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3) 지부조직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해 매개체가 될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 매개체가 될 사업은 간부수련회, 걷기대회, 참정권 확보운동등으로 열거될 수 있겠다.
 - 지부조직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사업의 기획, 횡수, 인자, 재정, 책임주체 등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 간부수련회 및 상반기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부순회를 통하여 지부를 견인하는데 일정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 4) 중심사업의 설정에 있어서... 전장협 역량의 배가와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중심사업이 계획성 있게 구상되거나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본다.
 - 중심사업의 성과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하다.
- 5) 일상사업의 지부 이관과 활동가의 재생산 및 회원의 배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많은 이건을 나타낸 부분으로 평가된다.
 - 회원의 배가 사업을 체계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본다.
 - 회원증 정리 문제에서 서울은행을 통한 회원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총 110명 정도만이 신청하였을 뿐이다.
- 6) 역량에 맞는 인권사업을 전개하여 회원대중의 의식을 고양하고 활동인자를 재생산한다.
 - 일정정도 여러 가지 인권사업을 전개하였으나 회원대중에게 남는 사업이거나 활동인자를 재생산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2. 부서활동

1) 사무국

전장협의 사업 및 재정의 원활한 흐름과 다른 국 및 부서의 보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전의 사무국 모습을 답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져 왔다. 이는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의 부족이 있으며 전장협이 가지는 한계 - 인력과 사업운영의 문제점(사업이 소수의 몇 명에게 편중되는 문제, 사업에 대한 활동가 전체의 이해부족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 하겠다.

가. 편집홍보부 - 정기적인 발행, 다양한 내용, 친근감 있는 편집으로 회원에게 다가가려던 『열린세상』은 절대인원의 부족으로 정기적인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내용의 변화도 취재 및 편집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그때그때 발행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나. 정보통신부 - 전장협 사업에 참여있던 통신망에 전장협 홈페이지개설 사업은 후반기에 나우누리에 단체포럼 개설을 계기로 사무국의 정보통신부로 명명하고 현재 전장협의 홍보 및 회원간의 정보교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운영에 관한 내규의 마련등 산적한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며 조금씩 이러한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 월간 어깨동무

1. 발행상황

-3,4월호 합본호를 제외하면 매월 시기에 맞춰 발행하였다.(총 11권)

-9월까지의 600부를 발행하였으며, 현재는 8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전국의 특수학교, 조기교실,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에 발송하고 있다.

-현재 유료 독자는 260여명이 되며, 후원자는 15명 정도 된다.

-현재 편집장의 2인이 만들고 있다.

2. 열악한 재정상황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매달 발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팀원 3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 후원금을 내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98년에는 재정안정을 위해 구독자 배가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광고 후원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자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3. 인력부족

-현재 3인중 2인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독자관리, 현장취재같은 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의 질적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독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98년에는 최소한 월급 받는 상근자를 두거나 객원기자 형태를 활용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르. 정체성 부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잡지로서의 자기위상에 걸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 다른 기관에서 발행중인 함께 걸음이나, 실천특수교육 같은 잡지들과 외형적으로 비교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장애인 전문 교육잡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형식과 내용을 날 빠르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조직국

(1)기조

-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학습세미나 및 전장협 아카데미를 상정하였으나, 아카데미는 진행되지 못했다.

-중앙의 각 분과의 활성화를 통한 일꾼 확보는 또바기와 같은 경우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문제와 더불어 각 분과의 안정적 위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조직의 체계적인 행정역량의 향상은 조직국내의 인자의 확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자가 떨어져 나감으로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시나브로 조직화

가. 각 분과의 안착화 및 활성화

-또바기 : 안정적인 활동은 담보되고 있으나 활성화 및 방향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어깨동무 공부방 : 해체

-노점분과 : 담보상태이나 빈민특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월간 어깨동무 : 사무국으로 이관

나. 학습세미나의 활성화

-각 분과장을 중심으로 한 학습세미나가 진행되었음.

다. 외곽 조직의 건설에 대한 지원

-에바다사건, 걷기 대회, 수련회, 버스투쟁, 참정권을 통한 연대사업은 진행되었으나 전장협

중심으로 묶여나가지는 못했다.

라. 조직국 내에 교육·연구 및 연대를 담당할 부서를 조직화한다.

-교육·연구는 정책실 중심으로 사업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연대는 즉자적인 형태로 담보 하였다.

(3)장애대중과의 만남을 강화해 나간다.

가. 이동생활도서관

-초기에 생활도서관과 함께 진행하였음.

-상계동 지역의 장애인 조직화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나. 장애인 체견 공간을 활용한다.

-5월 20~23일 장애인체육대회 기간동안 사진전 및 전장협, 새날도서관 홍보를 하였음.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전장협을 알려내는 효과를 가졌다.

-구체적인 업무 분담 및 인력배치, 실무준비에 미흡하였다.

-재정적인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4)조직2부 사업

가. 서울은행과 연계한 회원증 발급

-1차 110명 발급

-이후 지지부진함.

나. 간부수련회

-2월 간부수련회 가평에서 중앙위원회와 더불어 실행하였음.

다. 지부순회 및 이동간부학교

-지부순회 : 2회 (지부상황 check 및 회원 가입서 받기 위하여 열린마당 준비)

-대선 준비 및 지부총회를 위해 9~10월 계획하였으나 대선 준비는 조직국 자체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조직자체문제로 인하여 (조직 1부장 사퇴 등) 실시하지 못하였음.

-지부순회로 인하여 일정정도 지부와의 결속력을 가졌다.

3. 정책연구실 사업보고

1)정책1팀 경과보고 및 사업보고

- 7월 5일 : 1과제팀 결성 (팀장 : 이경미, 팀원 : 고재현, 박진숙, 박찬오, 유금희)
- 7월 7일 : 장애인의 자립생활(IL)에 관한 연구 계획서 제출. 연구원 총원 : 김수중, 임기현
- 8월 23일 : 1차 연구 발표회(장애관련 법, 제도, 정책의 현실적용 상황검토), 자료집 발간
- 9월 18일 : 유금희 연구원 활동중단
- 10월 8일 : 연구원총원 : 유영근
- 10월11일 : 2차 연구 발표회 (장애운동검토). 자료집 발간
- 11월20일 : 박진숙 연구원 활동유보
- 12월 중 : 3차 발표회 및 1과제팀 해소 예정

*1과제팀은 구성원 대부분이 다른 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 1~2회의 모임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이러한 각 연구원의 상황과 연구주제에 대한 내용의 확대에 의해 계획 당시 9월 말 끝나게 되어있는 연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과제팀의 궁극의 목표는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도와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립생활을 구현하고 사회환경의 개선을 꾀함으로써 사회성원으로써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 속에서 연구를 진행시켰고, 연구를 총괄하는 단계에서 장애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2)정책2팀 경과보고 및 활동보고

- 연구과제 : 각 장애인복지법안 비교 분석
 - 연구팀원 : 김은희, 고명선, 이연재
- 정책 2팀은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2개당(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의 법률안 비교, 검토작업을 연구주제로 8월부터 꾸러졌다. 당시 연구원은 이연재 한 사람으로서 정책실장과 1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이루어졌다. 10월에 정책연구실 간

사였던 김희찬씨가 연구원으로 합류하였고 현재의 팀을 구성한 것은 11월로서 연구를 시작한 것은 4달째에 접어들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월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8~10월 : 장애인복지법 및 각 당 법률안 비교 파일 작성, 매주 수요일 정기모임
- 11월 : 김희찬 연구원 개인사유로 연구원 잠정 연기
고명선, 김은희 연구원 위촉
연구과제 공유
각국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자료집 수집 (진행중)
싱가포르, 독일, 미국,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개인학습 및 발표 (자체 세미나)
- 12월 : 이연재의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취업으로 정기모임 2주간 중단 (12월 10일 모임 재개 예정)

2. 98 전체 사업기초

전장협은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단체입니다.

97년 한해에도 전장협은 장애인참정권운동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정도의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조직역량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한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직의 역량은 크게 재정과 활동가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량이 아직도 일천하여 힘있게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98년은 IMF의 관리 속에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또한 정치적 변동도 요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장애인복지, 사회복지를 어떻게 확보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진행되어온 복지정책 및 예산을 지켜내는 것도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 정세가 어려워질수

록 성급히 대응하는 것은 내부역량이 고갈될 뿐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인게는 좀더 힘을 합하여 어려운 난국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전장협은 이러한 어려운 정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98년 전장협 사업기조를 '조직의 안정화와 내실화'로 정하고 먼저 재정적인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안이하게 대처했던 재정의 확보방안에 대해 이제는 전 회원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활동가의 재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하여야겠습니다.

3. 98 사업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재정 토대구축 1. 지부조직강화 1. 회원의 확대·재생산 1. 홍보사업 |
|---|

4. 사업내용 및 총괄계획표

4-1 조직재정의 토대구축을 위하여

-전장협의 98년 총 기조는 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조직의 강화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조직재정의 안정을 통한 지부조직의 강화와 회원의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전장협 중앙사무소와 지부의 재정구조를 우선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중앙과 각 지부는 이러한 기조아래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조직재정의 안정화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4-1-1) 후원조직의 강화

-그 동안 전장협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후원조직 건설에 매진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후원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 후원회원의 감소와 정체를 반

복하여왔다. 이러한 결과로 조직 전체의 재정 상태와 후원자의 확대재생산이 힘이 들게 되었다. 98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후원자 배가와 관리에 중심을 가지 재정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1-2) 회원회비 납부운동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납부 운동의 진개를 통해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각 지부의 재정적인 자립의 기초를 만든다.

4-1-3) 재정사업의 적극적인 운영

-현재 소극적으로 진행중인 자동차 보험사업과 장애인 복지용품 사업을 적극적, 공세적으로 운영, 조직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주축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담당자를 두고 가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4-2 지부조직강화

-지금까지 지부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지부의 상황은 침체와 정체의 상황에 있다. 이러한 지부의 정체를 극복하고 활발한 지부의 활동을 위해 중앙사무소와 지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2-1) 지역중심의 모델사업개발

-지역대중의 조직화 없이 대중조직의 활로를 찾을 수 없다. 적극적인 지역중심이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대중이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지부의 강화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각 지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전장협 중앙사무소는 지부의 지역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지부의 지역사업개발 및 안착화에 대한 지원을 한다.

4-2-2) 전장협 조직체계의 정비·강화

-각 지부의 운영회칙 및 조직구성, 회원과약을 통해 전체 조직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가의 실무교육을 통해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올바르게 알려내고 지명도를 높여 회원들이 소속감 고취를 위해 노력한다.

4-3 회원의 재생산

4-4-1) CUG의 적극적인 활용

-회원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명단확보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해 정확한 회원수의 파악, 회원의 이동에 대한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 이제는 단순한 회원의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회원의 양적인 확대와 이를 통한 활동가의 재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재가 장애인의 컴퓨터 통신 이용률의 증가와 통신산업의 발달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증대로 이어져 전장협의 대외적인 홍보에서 방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현재 운영초기를 지나 안정기조에 접어든 나우누리의 CUG를 적극활용, 전장협의 공식적인 행사 및 사업들을 빠르게 알려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4-3-1) 소모임 활성화

4-4-2) 『열린세상』의 활용

-지부에 있는 회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부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명부에 있는 회원이 아닌 지부를 살아 숨쉬게 하는 회원으로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전장협 중앙사무소는 현장조직력 강화와 관련된 모범사례를 취합, 각 지부에 정부를 제공하고 지부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각 지부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한다.

-통신망을 이용한 홍보가 대외적인 홍보에 주력한다면 열린 세상은 대내적인 홍보에 주력한다. 이는 우선 회원에게 임하는 신문으로서 자리하며 전장협내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부와 지부, 중앙과 지부,

4-4 전장협 홍보

-전장협의 홍보는 전장협 활동 및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4-5 '98년도 사업총괄계획

사업기조	사업목표	사업명	주체	비고
제 2의 도약을위한 조직의안정화·내실화	재정도대의 구축	보험사업	재정특위	
		복지용품 보급사업	재정특위	
		후원회 조직사업	상근 부회장	조직국:조직사업 사무국:관리사업
	지부조직강화	지역중심의 모델사업개발	상근 부회장	조직국 사무국
		조직체계의 정비, 강화	조직국	
	회원의 재생산	지부 소모임 활성화	조직국	
		통신회원확대	사무국	정보통신부
		자원활동분과 강화	조직국	또바기
	홍보사업	열린세상	사무국	편집홍보부
		열린마당	강릉지부	중앙사무소
		CUG활용	사무국	정부통신부
		월간 어깨동무	사무국	어깨동무

5. 사업별 세부계획

5-1 보험사업

현재 중앙은 회원(회장)이 가지고 있는 동양 화재 화재보험 대리점을 재정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실적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주종을 이루는 자동차 보험은 비록 대리점 수수료율(7.5%)은 적으나, 보험사간의 가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 대리점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위해 후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살린다면 후원(재정)사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목적 : 재정확보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동양화재 별 대리점

2) 취급품목 :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 예) 복지관 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개인연금 등

3) 사업형태 : 보험판매

4) 사업내용

A안 - 중앙의 보험대리점을 모든 지부가 활용한다.

ㄱ. 중앙의 별 대리점을 중앙과 지부가 모두 활용한다.

ㄴ. 지부가 확보한 보험의 대리점 수수료 7.5%중 1%를 기념품 제작비 및 관리비로 하고 나머지는 지부의 수익으로 한다.

ㄷ. 이 안은 보험료 산출, 보험계약 확인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B안 - 각 지부가 지부사업용으로 회원중 1인이 보험대리점을 획득한다.

ㄱ. 지부는 전 지부 회원과 후원자들이 합심하여 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ㄴ. 지부는 대리점수수료 지급 통장을 오픈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ㄷ. 사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

킨다(후원자 관리, 사은품 증정)

ㄹ. 이 안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5) 세부계획

ㄱ. 후원모집 유인물에 보험후원 내용을 넣는다.

ㄴ. 전장협 이름의 사은품을 제작한다.

ㄷ. 후원관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

6) 수익성 : 평균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연 보험료가 50만원 정도다. 보험료가 50만원이면 대리점 수수료는 37,500원 (=500,000원*0.075)이다.

3. 중앙의 담당 부서 : 재정특위

4. 98년 목표 : 중앙 순수익 1,200만원(300대)

5. 장기목표 : 5년 목표로 연6,000만원 재정확보

5-2 복지용품 판매사업

전에 재정사업으로 시도해봤던 S&J 라이프사업과 형식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올해의 복지용품 판매사업은 우리의 역량에 맞게 개편하여 조직의 역량에 과부하 되지 않는 정도로 실시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조직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개인에게는 복지용품의 구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자립에 도움을 준다.

1. 목적

1) 중심목표 : 재정사업

2) 부대목적 : 할인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전

2. 사업 내용

1) 사업주체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2) 취급품목 : 모든 장애인복지용품

3) 사업형태 : 유통

4) 사업내용

- ㄱ. 노매장, 노샘플 판매 : 지부에 브로셔와 가격표를 준다.
- ㄴ. 할인판매 : 소비자 가격의 80-90%
- ㄷ. 전장협은 주문만 받고 대금 거래는 직접 판매사와 소비자가 한다.
- ㄹ. 흐름도 : 홍보-소비자상담-소비자주문-(중앙연락)-판매사연락-거래확정-대금송금-판매사택배-판매사후원비지급(월말정산)

5) 수익성 : 후원금은 중앙이 받아 각지부로 매월 말에 배분한다.

- ㄱ. 후원금 총액 = 소비자가격 - (대리점가격 + 할인가 + 택배비)
- ㄴ. 지부가 판매할 경우 중앙은 후원금의 20%를 관리비로 남긴다.

6) 홍보 : 열린세상/나우누리CUG/새날/어깨동무/노뚝돌/기타 개별 홍보

7) 특징 : 매장이 없다. 초도물량비 혹은 보증금이 없다, 물류부담이 없다.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처리한다.

3. 중앙의 담당 부서 : 재정특위

4. 98년목표 : 총매출 4,000만원, 수익(후원금) 600만원

5. 장기목표 : 재정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한다.

5-3 후원회 조직사업

1. 목적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몇 사람의 노력이나 몇 단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함께 할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함에 있어 재정이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재정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의 회비는 지부살림에도 모자라고 있어 중앙의 활동은 재정사업과 후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추진방향

후원회는 한두 사람의 거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여러 사람의 작은 정성으로 모아지는 것이 안정적이고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므로 소액다수를 원칙으로 조직한다.

3. 사업목표

98년 안에 2,000구좌 개설한다.
금액으로는 2,000,000원

4. 세부계획

가. 후원금액
1구좌는 1,000원으로 한다.

나. 후원방법
전장협지로를 이용하거나 은행온라인 이용

- 다. 반대급부
 - 전장협신문 열린세상과 월간 어깨동무, 새날소식지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전장협 사업시 관련 자료를 발송
 - 전장협행사 및 사업참여 우대

라. 후원의 밤

5-4 지역중심의 모델사업개발

1. 목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각 지부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많은 고민을 해왔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제시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좀처럼 지부현실에 적합한 사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에서 먼저 지부사업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 봄으로서 얻은 시행착오 등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지부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추진방향

개개의 장애인은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든 후 시범지역을 선정해 실시한다.

3. 사업목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최소의 역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 세부계획

가.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지역의 장애대중이 원하는 요구를 수렴하는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나. 대상 및 지역선정

지역과 대상에 따른 상이한 요구는 피하고 가급적 어느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다. 사업선정

사업에 따른 재정과 활동인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5 조직체계의 정비강화

1. 목적

각 지부의 상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부의 업무집중성과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앙과의 상호 연결성이 부족한 결과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각 지부운영회칙 및 조직구성, 회원과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활성인자들의 확보와 실무교육을 집중한다.

2. 추진방향

중앙과 지부와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안정화와 내실화를 꾀한다.

3. 세부계획

1) 각 지부의 지부운영회칙 및 조직구성, 회원과약을 통하여 전체 조직의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2)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인자들의 확보와 실무교육에 집중한다.

3) 각 지부의 사무실 확보와 상근 간사1인을 확보하고 또한 회의체계를 확립하여 통신망을 통한 보고체계를 만든다.

5-6 소모임 활성화

1. 목적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여 조직을 강화한다.

2. 추진방향

1) 각 지부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만남과 모임을 통하여 회원들과의 만남의 공간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조직을 강화해 나간다.

2) 다양한 모임을 개발하여 회원들과의 만남을 일상화하는 것과 동시에 회원등록을 체계화하여 전장협 회원의 동질적 의식을 공유하고 높여 나간다.

3) 현장조직력 강화와 관련된 모범 사례를 취합, 전파하고 현장조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각종 사업을 전개한다.

3. 세부계획

가. 월례회 모임의 강화

나. 바둑, 체육활동, 문화기행 등의 지역별, 과제별 모임을 만든다.

5-7 통신회원확보

그 동안 많은 대중사업을 통해 회원의 확대와 활동가의 재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회원과 활동가의 증가는 정체 및 담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의 확대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올해의 기초에서 회원의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잡아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를 하였다. 이에 전장협 사무국의 정부통신부는 올 하반기에 새로 시작한 나우누리의 단체포럼을 활용하여 이전에 활동하였던 회원을 중심으로 재

조직하며 새로운 회원의 배가에 노력하고자 한다.

1. 목적 : 구회원에 대한 재조직 및 신규회원의 확대
2. 사업방향 : 1차적인 중심목표는 구회원에 대한 재조직에 중점을 두어 아이디 보급운동을 전개하며, 포럼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회원의 확대를 해나간다.
3. 사업목표 : 회원 5배 배가
4. 세부계획
 - 가) 구회원에 대한 자료정리
 - 전장협 및 구 울림터, 장청의 회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 재조직의 기초를 다진다.
 - 나) 구 회원에 대한 가입유도 편지 발송
 - 전장협의 포럼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 구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다) 정기채팅을 강화
 - 통신의 꽃인 정기채팅을 강화하여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재미있고 유익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
 - 라) 자료실의 보강
 - 단순한 회원의 만남의 장을 넘어 포럼에 오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5-8 자원활동분과 강화

1) 사업기조

- 또바기 위상 혹은 정체성 확립
 97년 또바기 활동의 문제는, 4년전 전장협 중앙이 자활분과 출범시켰던 조직 내부적 목적의식(사업의 외향적 풍부함)과 '올바른 자원활동의 상'이라는 거창한 명분 사이에서 제 위치를 자리잡지 못한 채 방황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97년의 성과로서 평가되었던 회원의 양적 확보와 중앙 사업에 결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분과회원의 내부적 분화라는 점과 연결된다. 98년은 또바기를 통해서 전장협을 알게되는 사람들이 활동에 대해 생애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닦는 일에 매진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장협 내에서 분과가 가지는 위상을 재조정하고 분과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심기조를 두어야 한다.

2) 사업내용

- ① 팀별 활동 안정화를 통해 분과를 강화한다. (➡ 분과가 기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팀 : 시설프로그램 정착화 - 놀이교육 프로그램 준비, 참가인원 점검, 시설활동 일지 작성 등.
 - 홍보팀 : 회원을 두 조로 나누어 모집하여 개인별 시설방문 횟수를 줄인다. ex) A조 : 첫째주 활동, B조 : 둘째주 활동.
 - 교육팀 : 신규회원 교육형식의 다양화 -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
- ② 시설활동을 안정화하여 기획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둔다.

현재 분과의 정기 활동일정으로 시설활동이 월3회를 차지하고 있다. 구성원의 특성상 주말에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또바기는 일상사업(시설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아 다른 사업을 기획할 여지가 없으므로 회원을 확대하여 전체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실제 활동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계획, 홍보팀의 구분 모집 계획이 그것이다.
- ③ 열정적 회원의 생애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item을 개발한다.

④ 월별 계획

월	계 획
1월	위상에 대한 합의 (98년 계획 공유)
2월	신입회원 모집
3월	신입회원 기초교양 / 시설사업 안착화
4월	4월 장애인의 날 선전과 중앙사업 결합
5월	시설활동 / 열성회원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한 item 기획
6월	기금마련 일일찾집
7월	분과 M. T.
8월	열린마당 참여 / 창립제
9월	신입회원 모집
10월	구 회원 중심의 세미나 강화
11월	Item 시도
12월	97년 사업 평가 및 98년 사업 공유

6-9 「열린세상」

전장협회의 공식적인 활자매체로서 97년도의 기초인 쉬운 신문, 친근한 신문을 지향, 회원들에게 읽히는 신문으로서 자리매김하여 회원들의 상호 정보교환과 지부와 지부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전장협 사업에 대한 회원개개인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 회원에게는 전장협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한다.

1. 목적 : 전장협 활동에 대한 홍보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사업방향 : 신문보급체계의 정비를 통해 회원이면 누구나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전장협 활동에 대해 홍보, 회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3. 목표 : 정기적인 발행, 확실한 보급체계 확립
4. 세부계획
 - 가) 읽히는 신문지향
 - 회원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과 편집기획으로 친근감 있는 신문발행
 - 나) 보급체계의 확립
 - 누수 되는 회원이 없도록 회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전장협 회원이면 누구나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5-10 열린마당

열린마당의 취지인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착화시키며 이를 통해 전장협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하며 회원들에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의 친교시간을 제공, 회원상호간의 결속력을 높인다.

1. 목적 : 전장협회의 활동상에 대해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2. 방향 : 회원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비회원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장협 조직에 대한 홍보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3. 목표 : 전장협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

4. 세부계획 : 담당지부와 협의조정

5-11 CUG

97년 사업기초에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잡힌 CUG의 개설은 하반기에 나우누리에 개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시행에서 오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98년에는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전장협에 사업에 대해 빠른 홍보와 함께 빠른 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8년 회원 및 내용의 강화를 통해 양적인 확대의 해로 잡는다.

1. 목적 : 자료실의 강화
운영 안정화
2. 방향 : 전장협에 대한 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고급정보의 전달에 주력한다.
3. 세부계획
 - 가) 작업분담체계의 확립
 - 각 메뉴별 담당주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나) 각 지부의 담당자 선정지원
 - 각 지부별로 게시판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에 대한 포럼의 취지 및 목적, 통신교육 등의 자료집을 만들어 지원하며 필요하면 출장교육도 한다.
 - 다) 자료실강화
 -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후 자료실에 정기적으로 올려 회원들이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다.

5-12 월간 어깨동무

1. 안정적인 재정확보

현재 월간 어깨동무는 구독료 수입 30%, 후원금 수입 70%로 발행, 발송되고 있다. 그나마 후원금 수입 중 30%는 어깨동무 팀원의 개인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가 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구독자 배가 운동, 광고 후원 확보 운동을 들 수 있다.

(1) 구독자 배가 운동

매월 20명 이상의 독자를 6개월 정도 확보하면 구독료 수입이 일정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방식대로 가만히 앉아서 전화 오는 독자만 받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조기교실 등 교육기관 직접 방문, 부모모임을 통한 직접 홍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독자 배가에 나서야 한다.

(2) 광고 후원 확보 운동

매월 15만원 이상의 광고 후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은 독자 및 전장협 회원들의 가게나 사업체를 광고후원 대상으로 섭외,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이 또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 및 회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모회와의 연대를 통한 내용 강화

정신지체인 권익을 위한 서울 부모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독자 배가에 도움을 받는다. 또한 부모를 위한 정보잡지인 만큼 부모들의 직접적인 의견개진의 통로로 부모회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한다.

3. 독자와의 직·간접적 교류 확대

현재 월간 어깨동무는 매월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서 독자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깨동무의 질적 발전을 늦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98년에는 매월 최소 10명의 독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도 메모하여 내용 및 형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할 것이다.

4. 전장협 홍보 강화

월간 어깨동무는 전장협 기관지는 아니지만 전장협 발행물로서 전장협의 활동내용이나, 사

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98년 전장협의 사업기조에 맞춰 회원 및 비회원에게 어깨동무의 존재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전장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98년도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임시 대의원대회

일시 : 1997년 10월 31일 -11월 1일

장소 : 정립전자 교육관

대의원총회에 부쳐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현실은 장애인의 삶에도 고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확보를 위해 쉽 없는 정진을 다짐한 우리 전국장애인가족협회는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전장협은 친목적 성격의 대중조직이었던 전국장애인가족협와 운동조직인 장애인운동청년연합이 대중적인 장애운동의 가치를 걸고 통합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장애인의 권리를 깨우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각 지부별로 지역운동을 함과 동시에 노동권확보를 위한 걷기대회, 참정권확보운동, 버스편의시설확보운동 등, 타 단체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장애인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사회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은 여기저기 구멍투성이입니다. 이는 우리의 운동이 결코 멈출 수 없으며, 더 튼튼한 조직으로 더 힘차게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이 철저한 자기 반성을 거쳐, 결코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사무실의 간부와 활동가들은 올 해 초부터 꾸준히 발전을 위한 방안을 위한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열린마당 때 임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본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통합 건을 논의했으며, 지금껏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장애인연맹과의 단체통합을 통한 변화와 발전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운동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변화와 성장의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운동은 뛰어난 선각자와 투철한 몇몇의 투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대중이 당당한 권리실현으로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산고를 겪는 아픔으로 총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1998년 10월 20일

전국장애인가족협회
회 장 이 석 형

전장협과 DPI 통합추진 경과보고

7월 17일 전체임원회의

- 전장협과 DPI와의 통합제안서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7월 24일 98년 제1차 임시중앙위원회 회의

- 전장협과 DPI와의 통합제안서 검토 및 심의 (안건의 중차대함으로 인해 각 지부별로 의견수렴후 다음중앙위원회에서 추진가부를 결정하기로 함)

8월 14일 98년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회의

- 지부의견 수렴
- 통합내용 및 통합추진결정
- 통합추위원구성(통합추진위원 : 이석형회장, 김대성부회장, 박경석조직국장, 안재찬충북지부장, 채종걸전회장)

9월 1일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 협상대표결정(이석형회장, 박경석조직국장)
- 세부 통합내용 결정

9월 2일 제1차 통합실무대표자회의

- 통합원칙 합의(대중조직, 중앙위원회, 지부인정등)

9월 8일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 통합조직형태(안) 결정 (이사회, 사무총장, 지부, 중앙조직, 재정등)
- 통합추진일정 결정

9월 9일 제2차 통합실무대표자회의

- 통합조직형태 및 재정, 사무실등 논의

9월 21일 제3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 통합조직형태 논의 및 결정 (이사회의 설치 및 역할)

9월 23일 제3차 통합실무대표자회의

- 통합조직형태 합의 (이사회등)

10월 8일 통합추진위원회 4차 회의

- 통합정관초안검토 및 결정

전장협과 DPI의 통합제안서

제안자 : 중앙위원회

제안일 : 1998년 10월 17일

제안처 : 대의원총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한국장애인연맹(DPI)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1998년 10월 17일

중앙위원

이석형, 김대성, 정태영, 김대형, 안재찬, 차상록, 정선교, 이광제, 강성범, 이종균, 채종걸, 박경석

별첨1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위해

별첨2 DPI 소개

별첨3 DPI 회장소개서

<별첨1>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위해]

장애운동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즉,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체계에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이 노동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받아야 할 비자립적 인간으로 규정되는 현실의 벽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애인 대다수는 장애인 문제의 구조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장애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은 범 장애인조직의 결성을 방해하고, 기존의 여러 장애인모임과 단체의 활동방향이 구성원끼리의 위안, 친목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내·외적 조건의 열악성과 절대적 빈곤은 의식의 공감대 형성이나 장애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여유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노력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없는 세상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동적 투쟁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장애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이고 실질적인 단일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주요사안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확장되고 있는 영역별 전문화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장애유형별 조직이 강화되어 각 장애유형에 따른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연합을 결성하여 지자체 단위의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며, 장애인영역이 타 사회단체와 연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문제를 일반화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대중들이 직접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이를 통해 여타 사회부문 속에서 자신의 존재기반을 실현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건설될 때 진정한 장애대중이 장애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운동을 요구받고 있다. 변화되는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국내정세 더 작게 장판의 정세는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운동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것은 변화되는 정세에 얼마나 공세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전장협의 활동과 장애운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속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장애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선택으로 대외적 인지도와 장애운동의 올바른 열의를 갖고 있는 DPI(한국장애인연맹)와의 통합을 제안한다.

<별첨2>

[DPI 소개]

(1) DPI 창설의 배경과 목적

1) DPI창설배경

- DPI는 1980년 캐나다의 위니펙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재활협회(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세계각국의 장애인 250여명에 의해 발의, 태동되었다.
- 1981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51개국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제1회 세계대회를 가짐으로 창설, 출범하였다.
- DPI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UN장애인 인권선언' 등을 배경으로 창설된 세계 최초 유일의 국제적인 통합장애인단체이다.
- DPI는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의 약자이며 한글로는 '국제장애인연맹'으로 쓴다.

2) DPI의 목적

- 세계의 항구적 평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정의의 실현하고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며
- 장애인을 장애인에게 하는 물리적 환경, 사회보건환경, 교육환경, 근로환경 등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 이들 모든 제도와 시설을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하고
- 각 국 정부가 모든 분야의 개혁과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배려, 보상하게 하는 운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2) DPI의 조직

1) DPI의 조직

- DPI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이다.
- DPI는 최상위기관으로 세계회의를 두고 그 시행기관으로 세계평의회를 두고 있다.
- DPI는 사무국을 캐나다의 워니펙에 두고 산하에 여성문제위원회, 인권위원회, 평화위원회, 자립생활위원회, 불어권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 DPI는 기관지로서 Disability International을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다.

2) DPI의 지역조직

- DPI는 각국사별로 국가회의를 두고 세계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지역회의를, 지역회의의 집행기관으로 지역평의회를 두고 있다.
- DPI의 지역조직은 1>아프리카, 2>아시아 태평양, 3>라틴아메리카, 4>북미 및 카리브해, 5>유럽으로 나뉘어 있다.
- 한국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 지역은 다시 1>동북아시아, 2>동남아시아, 3>남아시아, 4>서아시아, 5>오세아니아 등 5개의 소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무국은 필리핀의 마닐라에 두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의장은 태국DPI의 나콩 상원의원이 맡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장은 한국DPI 송영욱회장이 아태지역 부의장을 겸해서 맡고 있다.

3) DPI의 가맹국

- 1997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117개국이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가맹국은 21개국이다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태국, 레바논, 몽고, 대만, 몰다이브, 홍콩)

(3) DPI의 국제회의를 통한 활동

- DPI의 1981년 국제조직으로 출범한 이래 매 4년마다 세계회의를, 매 2년마다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 세계평의회와 지역평의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 매년 개최되는 세계평의회와 지역평의회는 '지도자연수 세미나'를 함께 열고 있다.
- DPI는 이 지도자연수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 전문가 및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역평의회 및 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국

1983년	방콕/태국	한국불참
1984년	아델라이드/호주	한국참가 [회원국 가입]
1985년	다카/방글라데시	한국불참
1985년	동경/일본	한국참가
1986년	서울/한국	한국개최
1987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한국참가
1988년	방콕/태국	한국참가
1990년	수바/피지	한국참가
1991년	싱가포르/싱가포르	한국참가
1992년	북경/중국	한국참가
1993년	다카/방글라데시	한국참가
1994년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한국참가

1996년	마닐라/필리핀	한국참가 [96년 1월 개최]
1997년	뉴델리/인도	한국참가 [97년 1월 개최]
1998년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한국참가 [98년 2월 개최]

***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

1984년	아델라이드/호주	한국참가
1988년	방콕/태국	한국참가
1992년	북경/중국	한국참가
1994년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한국참가
1996년	뉴델리/인도	한국참가
1998년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한국참가

(4) DPI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활동

- 1) DPI는 UN총회가 결의 선포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2) DPI는 UN과 UN 산하 전문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 ILO(세계노동기구), UNDP(개발계획), UNICEF(국제아동기금)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장애인문제에 전문가 집단으로 UN을 자문하고 있다.
- 3) DPI는 1986년 11월 UN ESCAP(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장애인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4) 1987년 6월 DPI는 태국의 방콕에서 ESCAP와 함께 [UN 장애인 10년]을 중간평가, 점검하는 지역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5) 1990년 DPI는 UN 총회에 보고한 장애인 관련 보고서인 [인권과 장애](Human Right and Disability)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6) DPI는 1992년에 끝난 [UN 장애인 10년]과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에 관한 장기계획인 "장애인

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Standard Rules for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초안을 UN 사회개발위원회 산하 특별사업단과 함께 작성하여 UN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1993년 UN총회에 의해 이를 채택시켰다.

7) DPI는 [UN 장애인 10년]의 연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선포된 [아·태 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의 결의와 선포를 위해 ESCAPE과 협력하여 그 기초를 다졌으며, 특히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행동계획](the Agenda for Action for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5) 한국 DPI의 연혁

- DPI가 태동된 1980년 캐나다 '국제재활협회 세계대회'에 당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와 김석재 목사가 참석하여 DPI의 창설을 적극지지.
- 1984년 호주에서 열린 제1회 아·태지역 총회에 송영욱 변호사가 참석하여 회원가입을 허가받고, 송영욱 변호사는 아·태지역 평의회 이사로 진출.
- 1986년 지체장애인 10명, 시각장애인 5명, 청각장애인 5명 등 20명이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국DPI로 정식 출범.
- 1986년 서울 웨라톤 위커히호텔에서 DPI 아·태지역 평의회 및 제5차 지도자연수 세미나를 개최.
- 1987년 스톡홀름 세계평의회에 대표 파견.
- 1990년 8월 아·태지역 DPI 지도자 연수세미나 참가보고 세미나 개최.
- 1992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린 제3차 DPI 세계대회 대표 파견.
- 1992년 6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992년 8월 제1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
- 1992년 12월 중국 CDPF와 의향서를 교환, 우호조약 체결
- 1993년 2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 수립 북경회의 보고회 개최
 - 1993년 5월 제1회 한·중 장애인 교류사업 개최(서울)
 - 1993년 8월 제2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
 - 1993년 9월 제5차 미·일 장애인협의회 옵서버 참가
 - 1993년 11월 ILO 전문가회의 및 DPI 아·태지역 지도자 연수세미나 참가
 - 1994년 1월 ESCAPE 주최 장애인 단체 실무자 연수교육 교육생 2명 파견(필리핀)
 - 1994년 6월 제2회 한·중 장애인교류사업 참가(북경)
 - 1994년 7월 RNN(Regional NGO's Network) 마닐라 캠페인 참가
 - 1994년 8월 제3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
 - 1994년 11월 DPI 아·태지역 총회 및 지도자 연수세미나 참가
 - 1994년 12월 DPI 세계총회 참가(호주)
 - 1995년 6월 RNN(Regional NGO's Network) 아·태 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캠페인 참가
 - 1995년 7월 제3회 한·중장애인 교류사업 개최(서울)
 - 1995년 8월 제4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
 - 1996년 1월 DPI 아·태지역 지도자 연수세미나 참가
 - 1996년 6월 제4회 한·중장애인 교류사업 참가(북경, 천진)
 - 1996년 8월 제5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 개최
 - 1996년 9월 RNN 캠페인 참가(뉴질랜드), 본연맹 송영욱회장 부의장 피선
 - 1997년 1월 DPI 아태지역 총회(뉴델리, 인도)참가
 - 1997년 6월 제5회 한중장애인교류사업 개최(서울)
 - 1997년 8월 제6회 국내지도자연수세미나 개최
 - 1997년 10월 RNN서울캠페인 참가(본연맹 송영욱 회장 RNN의장으로 피선)

(6) 한국DPI의 사업내용

- 홍보, 계몽사업
- 교육, 연수사업
- 조사사업
- 자료 편찬사업
- 법률구조사업
- 제도개선사업

- 정책개발사업
- 국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사업
- 장애인 및 장애단체 지원사업

(7) 1998년 활동계획

- 국가조정위원회 설치 촉구를 위한 회의(2월부터 2회 완료)
- DPI 기획담당자 훈련 참가(2월, 말레이시아)
- 제16차 DPI 지도자연수세미나(5월, 방콕)
- 제6회 한·중 장애인교류사업(5월, 중국 북경)
- RNN 홍콩 캠페인 참가(8월 홍콩)
- 한·미·일장애인연맹 창설 준비회의 및 시카고포럼 98(10월, 시카고)
- 제7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11월, 국민은행 연수원)
- 제6회 DPI 세계회의 참가(11월, 멕시코)
- 제8회 세미나(12월, 서울)

(8) 자료 발간(미공개)

- DPI문고 4 : 중증장애인의 성생활
(스웨덴판 번역, 포켓판 120면)
- DPI문고 5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이드북
(영문판 번역, 신국판 230면)
- DPI문고 6 : 맹도건 훈련 지침서
(영문판 번역, 신국판 200면)
- DPI 정책자료 시리즈 1-3 : 각국별 정책자료집(번역 및 집필, 포켓판 각 100면, 곧 출간)

- 자료집 발간
 - * 제8회 세미나 자료집
 - * 제7회 국내지도자 연수세미나 자료집

- 보고서 발간
 - * NGO회의 참가보고서(집필중, 4월)
 - * 제6회 한·중 장애인교류사업보고서(6월)
 - * RNN 캠페인 참가보고서(9월)
 - * 한·미·일 장애인협의회 창설 준비회의 보고서(10월)
 - * 제6회 DPI 세계회의 보고서(11월)
 - * 제16차 아·태지역 DPI지도자 연수세미나 보고서(7월)

<별첨3>

[한국DPI 회장 소개서]

- 성 명 : 송영욱
- 생년월일 : 1937년 11월 30일
- 장애상태 : 대학3년당시 소아마비 이환
(양하지마비)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우빌딩 924호
- 학력
 - *1956년 서울 보성고등학교 졸업
 - *195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경력(1963년 ~ 현재)
 - 변호사 사무실 개업
 -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주)대우 외 20개 상장기업 법률고문
 -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 법률고문(현재)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감사(현재)
 - 서울장애자올림픽조직위원회감사(1984~1988)
 - DPI 아·태지역 부의장, 동북아지역의장(현재)
 -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현재)
 - 장애인복지신문 회장(현재)
 - 대통령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1988-1989)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현재)
 - 아·태지역민간단체 연합회(RNN) 의장(현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현재)
- 수상
 - *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 국민포장
[대한민국]
 - * 1992년 UN 장애인10년 공로상
[ESCAP]
 - * 1944년 백로상
[대한변호사회]
 - * 1995년 가톨릭언론문화상
[한국천주교]
 - * 1996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서울대학교]
 - * 1997년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보성고등학교]

DPI 정관(안) 요약

한국장애인연맹의 정관은 전장협의 정관을 기본 토대로 하여 만들었으며, 그 중 새로 만들어진 부분과 중요하게 바뀐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5조 사업에서 세계장애인연맹(DPI)을 통한 국제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사업이 추가됨.

제10조 대의원은 회원 수에 상관없이 각 지부는 5인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단 서울특별시만 10인으로 함. 또한 대의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함(장애인부모도 장애인으로 함).

제5장 회장과 사무처가 새로 만들어 짐.

제24조 회장의 자격을 장애인이어야 함을 규정함.

제30조 사무총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과 동반선출 됨.

제6장 지부·지회·분회에 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짐.

제7장 이사회 부분이 새로 만들어짐

제36조 이사회는 회장, 사무총장(상근이사), 회장이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된 이사로 구성함.

제37조 이사회는 회장에 대한 정책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음.

제8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짐.

제40조 전문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설치함

제41조 전문위원회는 연맹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과 협조사항을 담당함.

정 관 (안)

작성 : 1998.11.

한 국 장 애 인 연 맹

전 문

이 사회의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회 평등과 완전한 사회 참여 및 공정한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발전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역사와 사회 발전의 주체임을 제약당하고 있으며, 또한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인류 사회 발전의 엄정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여 모든 장애인들의 이해와 단결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소외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과 살아 있는 경험을 이어받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이며, 장애인이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연맹의 명칭은 한국장애인연맹(국제명 DPI Korea), 약칭 한장연(이하 연맹)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① 연맹의 중앙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

역시·도에 지부를 둔다.

② 연맹은 전국 지부 아래 시·군·구에 지회를 둔다.

③ 연맹은 각 지회 아래 읍·면·동에 분회나 연락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가맹) 연맹과 위상을 같이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단체에 가맹할 수 있다.

제 4 조 (목적) 연맹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본회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전체 장애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실현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여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연맹은 제 4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장애인의 주체성 정립을 위한 사업
- ② 장애인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사업
- ③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 ④ 조직 강화 및 회원 확대 사업
- ⑤ 세계장애인연맹(DPI)을 통한 국제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 사업
- ⑥ 장애인단체 및 비장애인 단체와의 연대 사업
- ⑦ 장애 예방 및 재활 사업
- ⑧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 사업
- ⑨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연맹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지부에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① 연맹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연맹의 회원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맹의 회원은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연맹의 회원은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 ① 연맹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연맹의 회원은 정관 및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연맹의 회원은 연맹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

가 있다.

제 3 장 대의원총회

제 9 조 (지위) 대의원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 10 조 (구성)

- ①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선출된 5인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10인으로 한다.
- ② 각 지부의 대의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단, 장애인 부모도 장애인으로 본다
- ③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11 조 (기능) 대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① 정관 개정
- ② 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선출 및 탄핵
- ③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심의, 의결
- ④ 예산 및 결산 의결
- ⑤ 각 지부의 설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 의결
- ⑥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대의원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12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 13 조 (개회 및 의결)

- ① 연맹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참석 인원을 정족수로 하여 개회한다.
- ② 대의원총회의 일반 의결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탄핵, 정관 개정, 병합, 해산에 대한 의결은 출석 대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정기 대의원총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2월중에 1회 개최한다.

제 15 조 (공고 기간) 정기 대의원 총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대의원에게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시 대의원총회) 회장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⑤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7 조 (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의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중앙위원회

제 18 조 (구성) 연맹은 제 4 조의 목적과 제 5 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위원을 둔다

- ① 회 장
- ② 사무총장
- ③ 지부장

제 19 조 (기능) 중앙위원회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① 대의원 총회 소집 결의
- ② 정관의 해석
- ③ 각종 시행 세칙의 개정
- ④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심의
- ⑤ 예산 및 결산 심의
- ⑥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회원의 제명 및 징계 의결
- ⑧ 지부 총회 감사
- ⑨ 지부의 설립, 합병, 해산 심의 및 지회, 분회의 설립, 합병, 해산 심의 및 결의
- ⑩ 재산의 관리 및 운영 심의

⑪ 중앙 부설 기관의 설치 및 기관장의 인준

⑫ 이사의 인준

⑬ 기타 중앙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0 조 (중앙위원의 겸직 제한) 중앙위원이 타 장애인 단체의 직책을 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개회 및 의결)

- ①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원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은 출석 중앙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2 조 (회의 및 소집)

- ① 중앙위원회 정기 회의는 년 2회로 한다.
- ② 중앙위원회 임시 회의는 회장 및 중앙위원 1/3 이상이 요구시 소집한다.
- ③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중앙위원에게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통지한다.

제 5 장 회장 및 중앙사무처

제 23 조 (회장의 선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4 조 (회장의 자격) 연맹의 회원으로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 25 조 (회장의 권한 및 직무)

- ①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 총회 및 중앙위원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연맹의 사무총장(상근이사) 후보를 지명한다.
- ③ 중앙사무처를 구성하고 직원을 임명한다.

제 26 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장의 유고)

- 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는 사무총장이 권한 대행한다.
- ②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1개월 이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회장을

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사무처의 설치) 연맹의 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에 사무처를 설치한다.

제 29 조 (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연맹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대의원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제 30 조 (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과 동반선출한다.
-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무총장 유고시 잔여임기동안을 회장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 31 조 (사무처의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 6 장 지부·지회·분회

제 32 조 (지부의 인준)

- ① 지부를 만들고자 하는 자는 지부신청서와 회원 자격을 가진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기간동안은 지부준비위로 한다.

③ 지부준비위의 대표는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33 조 (지부장)

- ①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회무를 총괄한다.

제 34 조 (지부운영) 각 지부는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내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 35 조 (지회, 분회의 인준) 지회, 분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36 조 (구성)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② 사무총장

③ 회장이 지명하고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이사

제 37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회장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

② 회장이 부의한 내용에 대한 심의

제 38 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당회가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39 조 (회의의 소집) 연맹의 이사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8 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 40 조 (설치) 회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1 조 (기능)

① 전문위원회는 연맹의 제 5 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과 협조사항을 담당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연맹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42 조 (구성)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3 조 (운영) 각 전문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 9 장 감사

제 44 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5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6 조 (감사의 직무)

①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1,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맹 재산 상황 또는 중앙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0 장 고문

제 47 조 (고문)

①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 약간 명으로 한다.

② 고문은 연맹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④ 각 지부고문은 지부장이 추천하되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에서 추대한다.

제 11 장 재산 및 회계

제 48 조 (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제 49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회 회의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

리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50 조 (재산의 평가) 연맹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중 가격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51 조 (재산 및 경비 조달 방법)

①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본재산에서 수익되는 수입과 수익사업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연맹은 목적 사업 수행 과정 중 현금 지출에 있어 일시적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중앙위원회 의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 52 조 (회계 원칙) 연맹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 조 (회계년도) 본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4 조 (회계예산) 회장은 1년간 수지에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 조 (회계결산) 회장은 1년간 수지결산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 56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대의원총회 때 보고한다.

제 12 장 정관개정 및 시행세칙

제 57 조 (정관개정) 본연맹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58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13 장 해체 및 통합

제 59 조 (해체 및 통합)

① 회원 3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중앙위원 과반수 발의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해체위원회(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해체 및 통합 준비를 하여 대의원총회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체 및 통합하고, 잔여재산은 유사단체나 통합단체에 기증한다.

③ 각 지부의 해체 및 통합은 각 지부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연맹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4 장 상벌과 탄핵

제 60 조 (표창)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 61 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① 연맹의 회원중 본연맹의 목적사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62 조 (탄핵)

① 회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회장과 사무총장의 탄핵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 (공고방법) 본연맹의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의결후 1개월 이내에 신문 또는 기관지 등에 실는다.

제 2 조 (시행세칙)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4 조 (시행규정)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연맹 정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회방법) 정관 제 6 조에 의거하여 지부사무소에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며 소정

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3 조 (입회원서) 각 지부, 지회, 분회는 회원 입회원서 받아 사본을 필히 중앙사무소에 보내야 한다.

제 4 조 (회비) 정관 제 8 조에 의거하여 연맹의 년 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단 지부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증) 연맹의 회원증은 중앙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이를 갖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산 가치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지부, 지회, 분회의 회계관리) 지부, 지회, 분회의 장은 관계법 및 본연맹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부, 지회, 분회 업무보고) 각 지부의 장은 다음 각 항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에 중앙사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지회의 장은 지부사무소에, 각 분회의 장은 지회사무소에 다음 각 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지부, 지회, 분회 총회 및 회의내용
- ② 지역별 장애인 실태 현황
- ③ 회원 확보 현황
- ④ 사업 실적 현황
- ⑤ 회비납부 실적
- ⑥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8 조 (사업 및 행사) 지부, 지회, 분회의 장은 자체 사업이나 행사 내용을 중앙사무소에 사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제반 지원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지회, 분회의 인준) 연맹의 지회, 분회의 인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맹의 정관 및 제반 규정에 동의하여 등록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② 지회는 회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분회는 회원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0 조 (지부총회) 연맹의 지부총회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각 지부 정기총회에서 지부 사업과 지부 예산 및 결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각 지부 정기총회에서 2년마다 지부장,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 각 지부 임시총회는 회장, 지부장, 지부 회원 3분의 1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 11 조 (지회총회) 연맹의 각 지회총회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지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각 지회 정기총회에서 지회 사업과 지회 예산 및 결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각 지회 정기총회에서 2년마다 지회장을 선출한다.

④ 각 지회 임시총회는 회장, 지부장, 지회장, 지회 회원 3분의 1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 12 조 (분회총회) 연맹의 각 분회총회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각 분회 정기총회에서 분회 사업과 분회 예산 및 결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각 분회 정기총회에서 2년마다 분회장을 선출한다.

④ 각 분회 임시총회는 회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분회 회원 3분의 1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 13 조 (선출)

① 지부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지부 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② 지회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지회 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③ 분회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분회 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제 14 조 (직능)

① 지부장은 각 지회를 관리하고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지회장은 각 분회를 관리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분회장은 각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부지부장, 부지회장, 부분회장은 및 각 부서장은 소속 기구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장의 유고 시에는 지부는 회장의 명예, 지회는 지부장의 명예, 분회는 지회장의 명예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지부재정의 원칙) 지부 및 지회에서 본연맹의 명의를 사용하여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부 및 지회 임원 회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필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의 승인과 중앙위원회 사후 승인을 요한다.

제 16 조 (대의원)

① 각 지부는 대의원 수가 결원이 생기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잔여 임기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지부장을 포함한 각 지부 임원 및 모든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7 조 (탄핵, 징계 및 제명 사유) 연맹은 다음항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때 탄핵,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①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적에 반하는 행위
- ② 연맹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③ 사적 권익을 위해 직위를 남용한 행위
- ④ 책임과 의무를 불성실히 이행한 행위
- ⑤ 정관 및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
- ⑥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행위

제 18 조 (탄핵, 징계, 제명의 발의)

① 탄핵은 회원 3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징계 또는 제명은 지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

제 19 조 (탄핵)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2/3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 20 조 (징계) 모든 회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 (제명) 모든 회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2 조 (사면) 회장은 징계 및 탄핵 받은 자에 대해 본연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위원의 동의를 받아 사면권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징계 절차)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탄핵, 징계 및 제명이 발의된 후 중앙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갖는다.

② 면담 결과는 다음 탄핵, 징계 및 제명의 자료가 되고 서류로 기록되어야 한다. 필요시,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장협 발간자료

전장협 발간자료집 총목록

전장협 아카데미	전장협/1994
공사 활동자료집	공사/1994
94 정책기획자료집	공사/1994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산재추방대책회의 · 전장협/1995
신입활동가를 위한 교육자료집I	전장협/1995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열사 분신관련 투쟁기록집	전장협/1995
분노-그리고 작은다짐	전장협/1995
지방자치제, 알고보니 좋으네요!!!	전장협/1995
장애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장협/1996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	전장협/1996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모형	전장협/1996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자료집	전장협/1996
장애인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확보를 위한 자료집	전장협/1996
장애인자립생활연구	전장협/1997

■ 전장협 아카데미

발 간 일 : 1994년

발간목적 : 제1기 전장협 아카데미 강의교재로
사용

내 용 :

I부 민중의 역사

1회 올바른 민중의 역사란 무엇인가?
박준성 연구원(역사학연구소, 성대강사)

2회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조현옥(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과정)

3회 현시기 한국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종박 사무처장(민중정치연합)

4회 한국자본주의 진단
박규호 연구원(한국사회과학연구소)

II부 평등의 새로운 세상

5회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사회복지 제도 진단
남구현(한신대 강사)

6회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복지 현황
김기덕 연구원(한국사회과학연구소)

7회 한국자본주의와 장애인문제
이경미 연구원(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회학 석사)

8회 한국의 장애인들, 무엇을 할 것인가?
김대성 집행위원장(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 활동자료집 1994

발 간 일 : 1994년 11월 27일

발간목적 : 94년 공사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7월
에 열렸던 '공사의 공동 세미나'와
11월에 마쳐진 '장애인 대학생 실태
조사 결과 및 분석'을 하나의 자료집
으로 구성하였다.

내 용 :

• 공동세미나

1부 기초교양세미나

장애인운동관련 기초교양 세미나를 들어가며

2부 장애인 운동론

1. 장애인운동론 제기의 배경
2. 장애인 운동의 이념적 규정
3. 다시 시작하며

3부 영역별 과제의 검토

1. 자원활동
2. 특수교육
3. 바른 사회복지 운동과 장애해방

4부 지역사업을 제안하며

1. 지역운동의 사적 고찰
2. 장애인문제의 해결과 지역운동의 연계성
3. 구체적 사업에 관하여
4. 장애인문제의 해결과 지역?

• 서울지역 4년제대학 장애인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

I. 목적 및 방법

1. 조사연구 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방법

II. 조사 결과의 분석

1. 일반적 특성 및 장애특성
2. 대학입학 이전의 교육현실
3. 대학생활
4. 장애인문제와 해결책

III. 결론

■ 공동사업 운영위원회 94 정책기획 자료집

발 간 일 : 1994년

발간목적 :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공동사업 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자 발간한 자료집.

내 용 :

제I부 기간활동의 부문별 평가

- 1. 기간의 자원활동 평가
- 2. 기간의 장애관련 학생조직 평가
- 3. 기간의 현장 평가

제II부 장애인 문제의 해결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 한국사회복지의 성격과 장애인운동의 필요성
- 2. 한국사회 계급구조에서의 장애인계층의 위치
- 3. 장애인 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 4. 이후 장애인 운동에 대한 제언

제III부 공사에 관하여

- 1. 94년 장애인계의 정세전망
- 2. 공사의 필요성
- 3. 93년도 공사활동경과
- 4. 공사 사업계획
- 5. 94년도 사업계획
- 6. 진행일정

참조문건 1. 장애해방운동의 성격

참조문건 2. 장애파트별 현황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 자료집

발 간 일 : 1995년 7월 18일

발간목적 : 산재추방대책회의와 함께 산재추방의 달을 맞아 산재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사회복지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이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내 용 :

주제발제문

-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토론발제문

- 산재장애인의 실상과 직업재활
김학기(산어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 전채장애인문제속에서의 산재장애인의 문제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 산재장애인노동자문제와 사회보장에 대하여
윤우현(전국민주노조총연맹준비위 집행위원)
-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형락(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94-'98)

■ 신입활동가를 위한 교육자료집 I

[조직소개편]

발 간 일 : 1995년 4월 20일

발간목적 : 신입활동가들을 위해 조직의 구조와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내 용 :

- 전장협의 93년-94년 활동내용
- 조직표
- 중앙조직 소개
- 지부소개
- 의결기구 및 회의체
- 각 부서별 실무교육 일정
- 부록 : 통합이전 단체들 소개글

■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열사

분신관련 투쟁기록집

발 간 일 : 1995년 4월 20일

발간목적 :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가 분신으로 절규하기까지의 삶과 소리없이 묻혀버린 슬한 죽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고 대안을 찾고자 만들어진 자료집.

내 용 :

- 권두언: 최정환동지의 가열찬 투쟁을 헛되게 하지 말라!
- 화보
- 자료집 발간의 목적과 의의

1. 최정환씨의 삶

- 인적사항
- 최정환씨 분신사건 개요
- 투쟁일지
- 성명서 모음

- 팸플렛 모음
- 최정환열사 분신관련 투쟁 평가서 모음
- 신문스크랩

2.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인의 현실:

기간의 사망사건 사례모음

3. 중증장애인 삶의 실태

- 1) 중증장애인의 수
- 2) 중증장애인의 경제상태
- 3) 중증장애인의 취업상태

4. 정부의 지원 : 현재의 장애인 관련제도, 우리의 대안일 수 있는가?

가. 장애관련법안의 검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 특수교육진흥법

나. 복지시책의 검토

5. 중증장애인생활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 생계의 측면

- 1) 정부의 생계지원 범위와 액수의 확대
- 2) 국민연금으로서의 장애연금 지급
- 3) 개호인수당, 보장구수당 지급

나. 취업의 측면

- 1) 중증장애인 직업개발
- 2)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율 상정
- 3) 보호고용의 내실화와 확대
- 4) 최저임금의 보장

다. 기타

- 참고자료 1)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 卍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에 관한 대책안

- 참고자료 2) 한겨레 신문 : 삶의 질을 높이자.--장애인의 최저생활--

■ 분노, 그리고 작은다짐

발 간 일 : 1994년

발간목적 : 전장협 노래모임 “노뚝돌” 공연 자료집

내 용 :

수록곡 : 슬픔이 기쁨에게 / 장애해방가
저 평등의 땅에 / 청계천8가
그날이 오면 / 내일이 오면
휠체어에 기대어 / 뒤돌아보아도
내 이름은 장애인

■ 지방자치제 알고보니 좋으네요

발 간 일 : 1995년

발간목적 : 95년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
도록 교육용으로 제작하였다.

내 용 :

1.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의 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지방화시대! 올바른 시민의 역할
4. 95년 지방자치선거!
어떻게 대응할까?

자료에서

- (1) 지역조사
- (2)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성공사례
- 인천시 민간탁아소의 지방예산확보운동
- (3) 지방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례

• 미리 가 본 지방자치시대!

■ 장애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발 간 일 : 1996년

발간목적 : 제1기 전장협 이카데미 강의교재로
사용

내 용 :

우리시대 사회복지사상
우리시대 장애인 복지운동의 과제
우리시대의 특수교육 발전방향
우리시대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
우리시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우리시대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고찰

한국 자본주의와 장애인 문제
장애인운동의 역사
장애인운동의 현황과 전망
특수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21세기를 향한 장애인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두가지 제안

■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

발 간 일 : 1996년

발간목적 : 장애인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
를 위한 사진·자료집. 대학들이 특
례입학으로 장애인대학생을 받아들
이면서도 교내 편의시설을 마련하
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화보와 자료들을 모아 자료
집으로 발간하였다.

내 용 :

화보

- I. 장애인대학생의 하루
- II. 장애인 삶의 이야기
- III. 한걸음 더 가까이
- IV. 또 하나의 다른 언어

자료집

- 장애인 특레입학

1. 들어가며
2. 장애인 특레입학제도와 현황
3. 장애인특레입학의 현실
4. 특레입학제도의 허와 실
5. 특레입학 실행의 문제점과 대안
6. 나오며

- 장애인 교육환경

1. 들어가며
2. 교육에 있어서 자유권과 편의시설
3. 외국의 교육환경(미국의 ADA를 중심으로)
4. 해결방안과 대안
5. 나오며

장애인 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요구안

참고자료

고등교육상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모형

발 간 일 : 1996년 4월 29일 오후3시

발간목적 : 올바른 특수교육을 고민하는 전장협
교육분과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모형을
제기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발간
한 자료집.

내 용 :

I. 서론

II. 본론

1. 현행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지방자치시대의 특수교육 발전방향
3.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모형
4. 성동지역 특수교육 실태조사
5. 성동지역 특수교육 발전에 대한 제안

III. 결론

참고자료 :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자료집 1996

발 간 일 : 1996년

발간목적 : 장애인 노동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분석하였다.

내 용 :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고용문제

- 1) 들어가는 말
- 2) 장애와 삶
- 3) 장애의 재정의
- 4)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근원
- 5) 고용촉진법이후 장애인 취업현황
- 6) 연계고용제 무엇이 문제인가

2.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진단하며

- 1) 공단의 주요사업
- 2) 공단의 문제점
- 3) 공단이 가야할 길

■ 장애인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확보를
위한 자료집

발 간 일 : 1996년

발간목적 : 장애인 대학생 특레입학제도와 장애
인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를 담은
자료집

내 용 :

장애인 특례입학

1. 들어가며..
2.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와 현황
3. 장애인 특례입학의 현실
4. 특례입학제도의 허와 실
5. 특례입학 실행의 문제점과 대안
6. 나오며

장애인교육환경

1. 들어가며
2. 교육에 있어서 자유권과 편의시설
3. 외국의 교육환경(미국의 ADA를 중심으로)
4. 해결방안과 대안
5. 나오며

■ 자립생활연구

발 간 일 : 1997년

발간목적 :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도와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립생활을 구현하고 사회환경의 개선을 꾀함으로써 사회 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내 용 :

주제1 장애인관련 법, 제도, 정책의 현실적용상황 검토

- 장애예방, 발견
- 장애진단
- 재활의료, 재활용품
- 장애인교육
- 장애인취업
- 생활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무

주제2 지역사회 복지기관 분포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검토

-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분포
- 지역사회복지기관 실시 프로그램

주제3 장애인운동검토

- 사건별 역사
-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과 장애인운동
- 장애인단체의 최근현황

주제4 외국의 자립생활운동검토

- 자립생활이란 무엇인가?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제5 지역장애인운동의 가능성 타진

- 지역운동에 관하여
- 사회복지운동에 관하여
-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자립생활센터 제안서

- 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념
-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성격
-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역대 임원 및 후원자 명단

93년 7월 통합 1대

회장 : 황광식
부회장 : 김대성

지부장 :

서울지부 : 김철호 지부장
대전지부 : 차창섭 지부장, 송희성 임시 지부장,
최일권 지부장
울산지부 : 김상욱 지부장, 하종수 지부장
충남지부 : 차상록 지부장
광주지부 : 이정범 지부장, 이종균 지부장
강원지부 : 김철순 지부장, 배문주 지부장
제주지부 : 남명우 지부장, 오성진 지부장
경기지부 : 노민규 지부장

자문 :

고문 :

중앙활동가

연구실장 : 송병화
재정사업위원회 : 김규성, 임태완
청년학생특별위원회 : 이재원
조직부(국)장 : 임태완
사무부(국)장
편집부(국)장 : 김대성, 강태훈, 김종환
대의협력국장 : 김상욱
자원활동분과 또바기 분과장 : 이철수
노들야간학교 교장 : 손복목, 최중문

95년 1월 통합 2대

회장 : 채종걸
부회장 : 김대성

지부장 :

서울지부 : 정태영 지부장
대전지부 : 최일권 지부장
울산지부 : 홍순석 지부장, 이광제 지부장
충북지부 : 김원태 지부장
충남지부 : 차상록 지부장
광주지부 : 이종균 지부장
강원지부 : 김미량 지부장, 정선교 지부장
제주지부 : 김정훈 지부장
경기지부 : 노민규 지부장
부산지부 : 갈동근 지부장

자문 :

고문 :

중앙활동가

재정사업팀 : 임태완
청년학생특별위원회 : 이재원
편집부(국)장 : 김종환, 김호원, 이석구, 한광수
조직국장 : 정태수, 이상호
교육부장 : 이경미, 고재현
자원활동분과 또바기 분과장 : 이철수, 조영임
자립사업부장 : 조성남
월간 어깨동무 편집장 : 박수연
노들야간학교 교장 : 최중문
새날도서관 관장 : 채종걸

97년 1월 통합 3대

회장 : 이석형

부회장 : 김대성

지부장

서울지부 : 정태영 지부장

대전지부 : 김대형 지부장

울산지부 : 이광제 지부장

충북지부 : 김원태 지부장, 안재찬 지부장

충남지부 : 차상록 지부장

광주지부 : 이종균 지부장

강원지부 : 정선교 지부장

제주지부 : 강성범 지부장

경기지부 : 노민규 지부장

자문 :

고문 :

중앙활동가

재정사업위원회(팀) : 이석형, 이선우, 곽철주

편집부(국)장 : 한광수

정보통신부장 : 이재원

사무국장 : 이석구

조직국장 : 박경석

자원활동분과 또바기 분과(부)장 : 조영임

자립사업부장 : 조성남, 최의왕

월간 어깨동무 편집장 : 박수연, 고제현

노들야간학교 교장 : 박경석

새날도서관 관장 : 채종걸

후원자 명단

강무하	김민식	김종환	박경숙	서승환	오진경	이상철	임영화	조용훈	한선경
강수영	김민희	김준영	박경순	서영수	오진수	이상호	임옥화	조유미	한선미
강수현	김병숙	김지은	박경준	서윤희	우민정	이석구	임태안	조윤근	한승일
강윤정	김병태	김지혜	박경혜	서재형	우복남	이석형	임형두	조재욱	한원득
강인석	김보매	김진희	박경희	서정기	우성탁	이선영	장문숙	조현관	한정훈
강재봉	김석민	김창화	박구영	선화부	위성림	이성식	장영달	조현민	한지희
강준배	김선영	김태나	박기현	손복목	유경수	이세안	장우현	조현정	함석홍
강태경	김선화	김행신	박남규	손창국	유병우	이승수	장유미	조현진	현인순
강혜영	김성복	김현수	박대호	손해복	유성민	이안중	장효정	조호정	홍기용
강혜인	김성철	김현호	박동규	송미순	유연미	이연재	전성수	주수현	홍미선
강희숙	김성호	김형두	박동욱	송병화	유영근	이연제	전성희	주수현	홍연희
고광정	김성희	김형철	박문희	송하길	육순일	이영아	전우석	진수옥	홍준석
고명선	김세방	김혜경	박민정	송한미	윤순애	이영직	전우주	진주현	홍현섭
고미숙	김세중	김혜숙	박상대	송현정	윤여림	이왕기	정 준	차양희	홍홍표
고석홍	김소희	김혜옥	박상태	송희연	윤인화	이요셉	정관하	채종걸	황광식
고성주	김수열	김화자	박상흠	승지영	윤정환	이욱인	정동주	최 민	황규동
고제현	김수정	김희운	박석균	시옥희	윤현선	이은정	정두환	최경삼	황동원
공진하	김애자	김홍규	박성미	신상아	윤혜숙	이은주	정문식	최기만	황동원
권미애	김양숙	김희영	박성희	신상희	이 름	이은하	정병민	최대규	황미향
권선식	김연선	김희정	박소연	신승애	이강미	이은혜	정소영	최미란	황섬복
권성철	김영모	김희찬	박애나	신영선	이경미	이장원	정여화	최수영	황순수
권순영	김영숙	남기원	박영실	신영숙	이경민	이재덕	정연수	최수정	황승수
권용철	김영옥	노대란	박영호	심우성	이경자	이재범	정영춘	최애정	황혜선
권혁중	김영호	노윤미	박정아	안경희	이경준	이재석	정영화	최원일	
김 현	김용건	노재혁	박정원	안명원	이경희	이재용	정우영	최원진	<단체후원>
김강숙	김용수	도은실	박정호	안준성	이광윤	이재원	정윤택	최윤희	교통방송
김경순	김우종	도태화	박종심	안진주	이규진	이점순	정재수	최은정	나눔의 집
김경자	김유형	류승형	박준재	안청하	이규현	이정원	정종혁	최응실	노들야학퇴업교사들
김근형	김윤옥	문 희	박지우	양미숙	이근희	이철승	정지연	최의왕	대광고 동문화
김기덕	김은영	문맹하	박진숙	엄태하	이내은	이철희	정진오	최해성	리폼시스템
김기라	김은형	문신원	박찬오	여연주	이대인	이춘영	정진용	최현식	사우회
김기석	김은혜	문은숙	박희석	여운남	이동환	이학덕	정진희	최현수	서독안경
김덕재	김은희	문정상	반영신	염춘필	이두혁	이혜창	정태수	최효일	선화부인회
김도식	김의회	문희경	방용숙	오경리	이명신	이혁중	정태하	편장훈	올바른장애인교육을
김동철	김인영	민선희	배승룡	오경희	이미경	이형미	정태형	표기돈	생각하는교사모임
김동호	김자균	민성숙	백의석	오길승	이미정	이혜정	조미애	하선옥	중부운수
김미란	김재은	만주원	범진혁	오부천	이만규	이호신	조미현	하용희	처갓집 양념통닭
김미숙	김정만	박 준	변홍열	오영미	이상규	임기운	조성남	하정자	태능갈비
김미연	김정미	박건희	사성근	오용탁	이상근	임기은	조영두	한래희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미현	김정영	박경미	서경석	오은정	이상옥	임명순	조영옥	한명석	향백
김미희	김정찬	박경석	서미영	오자영	이상인	임영숙	조영임	한명섭	호궁회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정관

최종개정 : 1997년 2월 24일

전 문

이 사회의 장애인들은 지금까지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인류사회발전의
엄정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한다.

이 사회의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회평등과 완전한 사회참여 및 공
정한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발전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장애인들은 역사와 사회발전의 주체임을 제약당하고 있으
며 또한 절대다수인 장애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의 현실이 이러할 때, 장애인들은 참신하고 적극적인 사상문화와 실천기풍을 세우고 모든
장애인들의 이해와 단결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과 살아있는 경험을 이어받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저해요인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참세상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전국장애인가족협회(약칭 : 전장협)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1. 본 협회의 중앙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직할시, 도에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본 협회는 전국 지부 아래 지회사무소 및 분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가맹) 본 협회와 위상을 같이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단체에 가맹할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4 조 (목적) 본 협회는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본회 회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체장
아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사회 정치적으로 실현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여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주체적 사상정립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2. 장애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조직강화 및 회원확대 사업
5. 장애인단체 및 비장애인단체와의 연대사업
6. 장애예방 및 재활사업
7.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3 장 회원

제 6 조 (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후원회원)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 8 조 (입회방법) 1. 본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부장 동의를 거쳐 입회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정회원의 입회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정회원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협회의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 협회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 협회의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 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본 협회의 정회원은 정관 및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3. 본 협회의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재산권) 본 협회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면 또는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본회에 기증한 재산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징계)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동을 자행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협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3. 정관 및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연속 납입하지 아니한 자
5. 징계방법 및 절차는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4 장 대 의 원 총 회

제 13 조 (지위) 대의원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4 조 (구성)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중앙위원)과 각 지부에서 선출된 4인으로 한다.(단, 각 지부의 정회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정회원 10인당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제 15 조 (대의원)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2.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지부대의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3. 지부장은 각 지부 대의원의 명단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 (기능) 대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탄핵
3.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의결
4. 연간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5. 각 지부의 설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중앙 부설기관 설립 및 취하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17 조 (개회) 본 협회가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참석인원을 정족수로 하여 개회한다.

제 18 조 (의결) 1. 대의원총회의 일반의결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탄핵, 정관개정, 병합, 해산에 대한 의결은 출석대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 (정기대의원총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개최한다.

제 20 조 (개최시기) 1. 정기 대의원총회 직전중앙위원회에서 개최일을 결정한다.

2. 정기 대의원총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대의원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임시대의원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4.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5.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2 조 (대의원총회 의결 재적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의원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중앙위원회

제 23 조 (구성) 본 협회는 제 4 조의 목적과 제 5 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위원을 둔다.

1. 회 장
2. 부회장 3인
3. 각 지부 지부장
4. 중앙부설기관장

제 24 조 (기능) 중앙위원회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 결의
2. 정관의 해석
3. 각종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중앙 및 각 지부사업의 심의
5. 예산 및 결산 심의
6.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회원의 제명, 징계
8. 지부총회 감사
9. 지회, 분회의 합병, 해산 심의·결의
10. 재산의 관리 및 운영 심의
1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25 조 (중앙위원의 직무) 중앙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본 협회의 부회장(상임 부회장) 1인을 지명한다.
 - 3) 중앙 부서 조직과 직원을 임명한다.
 - 4) 중앙 부설기관장의 임명 및 거부권을 갖는다.
 2. 부회장
 - 1)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서울시 지부장)각 1인으로 한다.
 - 2) 회장을 보좌한다.
 - 3) 회장 유고시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장은 각 지부를 대표하며 각 지부 및 지회와 분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제 26 조 (중앙위원의 겸직금지)** 1. 중앙위원은 본 협회와 유사한 장애인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2. 유사한 단체에 대한 심의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 제 27 조 (임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지부장, 중앙 부설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28 조 (의결)** 1. 재적중앙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중앙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원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은 출석 중앙위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29 조 (회의 및 소집)** 1. 중앙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2. 중앙위원회 임시회의는 회장, 감사 및 중앙위원 1/3 이상이 요구시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중앙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6 장 조 직

- 제 30 조 (중앙 조직)** 1. 본 협회는 제 4 조 목적과 제 5 조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 본 협회의 중앙부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조직한다.
- 제 31 조 (지역 조직)** 1. 본 협회는 제 4 조 목적과 제 5 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부 및 지회와 분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운영 규정 등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3. 각 지부는 시행세칙에 의해 지부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다.
- 제 32 조 (인준)** 1. 신설되는 지부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2. 신설되는 지회는 지부에서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신설되는 분회는 지회에서 심의하고 지부에서 인준한다.
4. 인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7 장 부설기관

- 제 33 조 (설립)** 본 협회는 중앙 및 지부에 시행세칙에 준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 34 조 (기관의장)** 1.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 협회 회장 및 각지부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의 해임 결의에 따라 회장이 해임한다.
- 제 35 조 (기관장의 임기)** 부설기관 장의 임기는 중앙위원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36 조 (운영위원회)** 부설기관에는 본 협회 중앙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37 조 (운영위원회 기능) 부설기관의 운영위원회는 부설기관의 재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제 38 조 (사업 및 회계보고) 부설기관의 장은 대의원총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사업 및 예·결산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 8 장 감 사

제 39 조 (감사 및 감사의 직무)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중앙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1,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보고 해야한다.

4. 3항이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협회 재산 상황 또는 중앙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9 장 고 문 및 자 문

제 40 조 (고문) 1.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 약간 명으로 한다.

2. 고문은 본 협회의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4. 각 지부고문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반드시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에서 추대한다.

5. 전 회장은 고문으로 하고 직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한다.

제 41 조 (자문) 1. 본 협회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간의 자문을 둔다.

2. 자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3. 각 지부자문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반드시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에서 추대한다.

제 10 장 재 산 및 회 계

제 42 조 (재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잉여금, 적립금

4)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3.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별지 1

2) 별지 2

제 43 조 (재산의 관리) 1. 제 35 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평가는 취득당시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을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45 조 (재산 및 경비 조달방법) 1.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본

재산에서 수익되는 수입과 수익사업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협회는 목적 사업 수행과정 중 현금지출에 있어 일시적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단, 일시차입금은 당 회계년도안에 상환해야 한다.)

3. 본 협회는 중앙과 지부의 재정사업을 함에 있어 중앙위원회에 승인을 필요로 한다.(단, 긴급한 재정사업일 경우 사후보고와 인준을 필한다.

제 46 조 (회계 원칙)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47 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48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회장이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9 조 (회계예산)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5일 이내에 1년간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0 조 (회계결산)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15일 전까지 1년간 수지결산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 5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년도 15일 전까지의 감사를 대의원총회때 보고한다.

제 52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장 정관개정 및 시행세칙

제 53 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한다.

제 5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12 장 해체 및 통합

제 55 조 (해체 및 통합)

1. 본 협회는 장애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를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중앙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해체위원회(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체 및 종합준비를 하여 대의원총회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체 및 통합하고, 잔여재산은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2. 각 지부의 해체 및 통합은 각 지부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협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3 장 상 별

제 56 조 (표창)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또는 상실할 수 있다.

제 57 조 (벌칙) 1. 본 협회의 회원 중 본 협회의 목적사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14 장 선 거

- 제 5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본 협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문, 각 지부에서 추천된 1인으로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고문, 중앙위원회에서 파견한 1인, 각 지회에서 추천된 1인으로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고문, 자문, 지부에서 파견된 1인, 각 분회에서 추천된 1인으로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 59 조 (구성시기)** 회장, 지부장, 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회장, 지부장, 지회장이 구성한다.
- 제 60 조 (입후보 요건)** 1.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지부장 지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15일 전에 별지4의 양식에 의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서 결정한 공탁금을 내야하며 유효득표의 15% 이상을 얻은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돌려 받는다.
 3. 본 협회의 회장, 지부장, 지회장이 재입후보시 선거일 15일 전에 회장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려하여야 한다.
- 제 61 조 (투표)** 1. 투표는 당해년 정기 대의원총회, 지부총회(지회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단, 위임장의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에만 유효하고 투표는 출석자만 할 수 있다.
2. 투표는 회원 및 대의원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부 칙

- 제 1 조 (공고방법)** 본 협회의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신문 또는 기관지등에 실는다.
- 제 2 조 (시행세칙)**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 3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계에 준한다.
- 제 4 조 (시행규정)**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 협회 정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입회방법)** 중앙사무소나 지부사무소에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며, 가입비 및 사진 3매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 3 조 (입회기준)** 본 협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단체생활의 규율을 따르며 발전적 사고를 가진 자.
- 제 4 조 (입회원서)** 각 지부, 지회, 분회는 회원 입회원서 2부를 받아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중앙사무소에 필히 보내야한다.
- 제 5 조 (입회비)** 본 협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 20,000원을 중앙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회비)** 본 협회의 년 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소속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부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 7 조 (회원증)** 본 협회의 회원증은 중앙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이를 갖고 타인에 양도하거나 재산상의 가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8 조 (지부회칙)** 지부는 정관에 준하여 지부회칙을 만들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 조 (회계관리)** 각 지부 등의 장은 관계법 및 본 협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업무보고)** 각 지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월 25일 중앙사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지회의 장은 지부사무소에, 각 분회의 장은 지회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총회 및 회의내용
 2. 지역별 장애인 실태현황
 3. 회원확보 현황
 4. 사업실적 현황
 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제 11 조 (사업 및 행사)** 지부, 지회, 분회 자체 사업이나 행사내용을 중앙사무소에 사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제반 지원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2 조 (설치)** 본 협회는 전국 일원에 다음과 같이 지부, 지회,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각 지부산하 시, 군, 구에는 각각 지회를 둘 수 있다.
 3. 각 지회산하 읍, 면, 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4. 지부가 없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13 조 (지부인준)** 본 협회에 지부인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동의하여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2. 정회원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제 14 조 (지역조직)** 각 지역의 지부, 지회, 분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1. 지부는 중앙 부서에 준하여 부서를 구성한다.
 2. 각 지부, 지회, 분회는 지역의 특성과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15 조 (지부총회)** 본 협회 각 지부총회는 다음과 같다.
1. 각 지부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각 지부정기총회에서 지부사업과 지부예산 및 결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각 지부정기총회에서 2년마다 지부장, 대의원을 선출한다.
 4. 각 지부임시총회는 회장, 지부장, 지부회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
- 제 16 조 (선출)** 1. 지부장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으로 지부선거를 거쳐 선출하며 회장의 승인을 필한다.
2. 지회장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지회선거를 거쳐 선출하며 지부장의 승인을 필한다.
 3. 분회장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분회선거를 거쳐 선출하며 지회장의 승인을 필한다.
- 제 17 조 (직능)** 각 지부장 등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가진다.
1. 지부장은 각 지회를 관리하고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지회장은 각 분회를 관리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3. 분회장은 각 부회를 대표하며 분회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4. 부지부장, 부지회장, 부분회장은 및 각 부서장은 소속가구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장의 유고 시에는 지부는 회장의 명에, 지회는 지부장이 명에 분회는 지회장의 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 18 조 (대의원)** 1. 대의원의 임기는 1995년 1월을 기준 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2. 각 지부는 대의원수가 결원이 생기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잔여임기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지부대의원 수의 결정은 중앙사무소에 접수된 정회원 기준으로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4. 지부장(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각 지부 임원 및 모든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19 조 (징계 및 제명사유)** 본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모든 회원은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 제 20 조 (탄핵, 징계, 제명의 발의)** 1. 탄핵은 회원 3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징계 또는 제명은 지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
- 제 21 조 (탄핵)** 각 중앙위원은 탄핵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2/3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 22 조 (징계) 모든 회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3 조 (제명) 모든 회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4 조 (사면) 회장은 징계대상자 및 탄핵대상자에 대해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앙위원의 동의를 받아 사면권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8 조 (징계대상 및 절차) 징계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상의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 2) 본 협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 3)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남용한 자
- 4) 책임과 의무를 불 성실히 이행한 자

2.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탄핵, 징계 및 제명이 발의된 후 중앙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갖는다.
- 2) 면담결과는 다음 탄핵, 징계 및 제명의 자료가 되고 서류로 기록 되어야한다. 필요시, 각서를 받을 수 있다.
- 3) 면담 후 탄핵은 대의원총회에서, 징계 및 제명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화 보

사진으로 보는 전장협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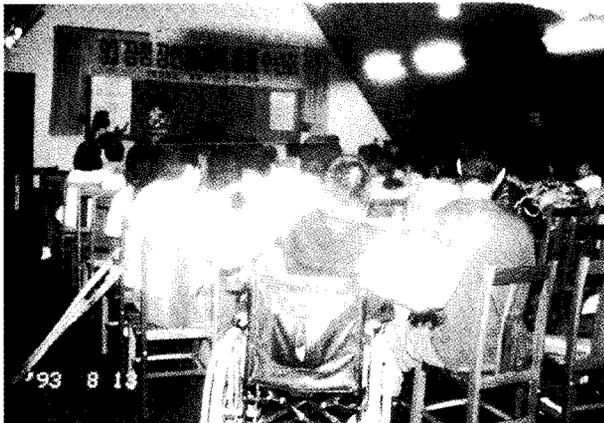
장애인운동청년연합과 장애인가족협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전장협은 장청의 진보성과 장한협의 대중성이 결합되면서 이후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운동의 진보적 입장을 견인하는 대중조직으로 활동한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노동권리확보를 위한 범국민건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의 핵심적 문제를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확산시키고 최정환·이덕인 열사 투쟁을 통해 장애인중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10여개의 지부활동과 새날도서관, 노들장애인야학, 일요운동회 등의 운영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조직으로 성장한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투쟁, 의무고용 1%하향조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수많은 대중사업과 투쟁사업을 전개했다. 전장협의 5년 여를 되돌아본다.



◀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와 장애인가족협회는 93년 통합 조인식을 갖고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93 장청·장한협 전국 통합 수련회'를 개최했다. 당시 통합 주역들의 모습(왼쪽부터 황광식 전 장한협 회장, 문성탁 당시 장한협 회장, 손복복 당시 장청 회장)



▶ 통합 수련회에서 제주지부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 통합 수련회가 시작되기 직전 옆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긴장을 풀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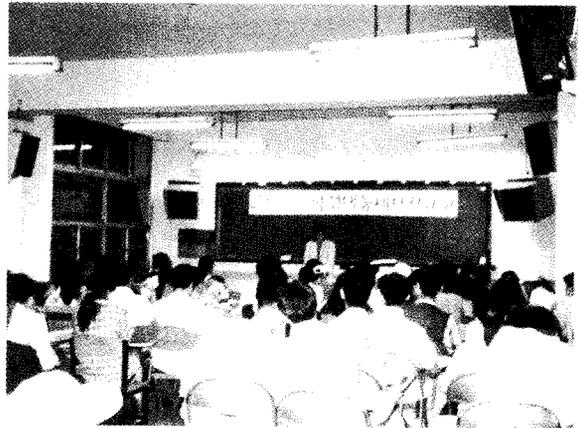
▶ 통합수련회에서 회원들이 조별 자기자랑을 진행하고 있다.

▶ 95년 3월 8일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열사가 서초구청의 강제 단속에 항의해 구청앞에서 분신자살했다. 열사는 긴급후송되어 강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월21일 끝내 숨졌다. 전국노점상연합 등의 단체와 함께 열사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



◀ 최정환 열사의 영구차가 연세대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노제를 치르기 위해 정문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천명의 전경을 배치하고 연세대에서 장례행렬이 나오지 못하도록 최루탄을 쏘며 강제 진압했다.

▶ 전장협은 대학 동아리들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쳤다. 95년 5월 29일 이화여대 사범대 강의실에서 '장애인·학생 대동제 사전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 이화여대 학생회관 앞에서 '장애인·학생 대동제'를 진행중인 이대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행사참가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매년 개최되는 전장협 수련대회가 95년에는 7월말에 삼육재활원에서 열렸다. 지부합창대회에서 김철호 지부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 95년 전장협 수련대회에 참석한 임원진 등이 행사 직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성 부회장, 황광식 전 회장, 윤석용 고문, 채종걸 회장, 김규성 회원)



◀ 수련회 참가자들이 둘째날 밤 모닥불 주위를 돌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다.



▶ '95 전장협 수련대회에 참가한 200여명의 회원들이 2박3일 간의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덕인 열사의 의문사와 관련, 95년 12월 9일 치뤄진 '장애인노점상 이덕인 열사 시인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김대성 전장협 부회장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 95년 12월 16일 '장애인노점상 이덕인 열사 살인만행규탄 및 김영삼 정권의 민중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인천 시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인천 아암도의 노점 강제철거에 항의해 망루농성 중이던 이덕인 열사가 95년 11월28일 상의가 벗겨지고 온몸이 바늘에 감긴 채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덕인 열사의 발견 당시 모습.



◀ 95년 9월 4일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함께 중구청 앞에서 '장애인노점상 탄압 및 구속자 고문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공권력은 청계천에서 장시를 하던 장애인노점상들에 대해 살인적인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장협과 전노련 회원 등 10여 명이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되었다.



◀ '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걷기대회'가 96년 지방을 순회하며 치러졌다. '장애인 노동 권리 확보를 위한 제1회 장애인고용촉진 걷기대회'가 부산장애인 사회문제연구회, 디딤돌, 참배움터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4월9일 부산에서 그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모습.

▶ 부산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에 앞서 민중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 '걷기대회'의 지방순회를 주도한 고 정태수 조직국장이 부산대회에서 결의문을 힘차게 낭독하고 있다.



▶ 96년 4월 10일 '고용촉진 걷기대회'에 참가한 울산지부 회원들이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 4월 12일 '고용촉진 걷기대회' 참가한 회원 및 대구대 특수교육과 학생 등이 대구시민회관에서 집회를 마치고 출발하고 있다.

▶ 풍물패를 선두로 대구시내를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 4월 15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개최된 '고용촉진 걷기대회' 모습



▶ 대회를 마친 충북지부 회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청주시내를 청주 시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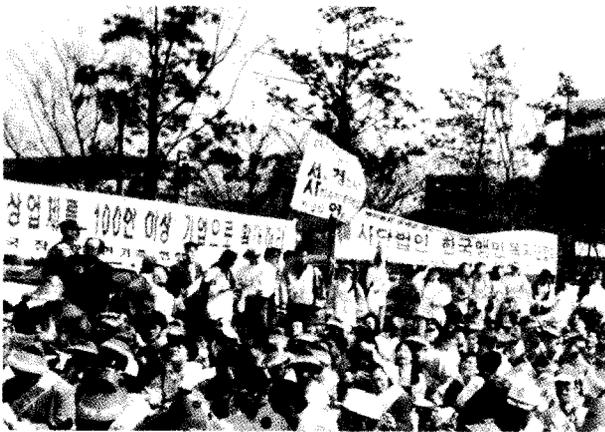


◀ 4월 17일 '고용촉진 걷기대회'를 마친 강원지부 회원 등이 비가 내리는 강릉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 열하루의 지방순회를 거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제1회 장애인고용촉진 걷기대회'가 1천5백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정태수 열사의 모습.

▶ 김대성 부회장의 사회로 치러진 행사에서 윤석용 고문이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 '96년 치러진 걷기대회에는 전장협 이외에 지체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회 등의 장애유형별 단체와 민주노총(준) 등의 사회 노동 단체가 참여해 장애인 문제가 노동권의 문제로 총론화되는 계기가 된다.

▶ 걷기대회에서 전장협 산하 노래패 '노뚝돌'이 '장애해방가' 등의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제1회 장애인고용촉진 걷기대회'를 마친 1천5백여명의 참가자들이 각 단체 임원들을 선두로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96년 3월23일 청주에서 열린 '전장협 충북지부 창립총회'에서 김원태 충북지부장, 김대성 부회장, 정태수 조직국장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96년 3월 정립회관에서 개최된 '96 전장협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채종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96년 8월 12일부터 3박4일동안 개최된 전장협 수련회에서 참가회원들이 조별로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96년 9월 18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루즈벨트상 수상을 반대하는 집회 도중 박경석 조직국장이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한 전장협 활동가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

▶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위한 연대투쟁이 96년 11월 30일 회기역 앞에서 진행되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명을 받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 96년 12월말 전장협 중앙 부서별 활동가 30여명이 모여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96 전장협의 밤'을 진행했다.

▶ 왼쪽부터 고명선, 문세경, 이석구, 곽철주, 박경석 등 중앙활동가들의 노래하는모습.



◀ 고제현 교육부장이 한 해를 평가하고 있다.



▶ 최기만 자립사업부원의 노래에 맞춰 임태완, 김종환, 박광혁, 이재범 회원이 춤을 추고 있다.



◀ 전장협 자원활동가 모임인 또바기 회원들이 노래하는 모습.





▲ '장애인 생존권 쟁취 및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제2회 국민 걷기대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97년 4월 20일 종묘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석형 전장협 회장을 비롯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임통일 교통장애인협회 회장 등을 선두로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걷기대회에서 먼저 산화해 간 장애열사들을 위한 살풀이춤을 추고 있는 모습.



▲ 걷기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 걷기대회 도중 박경석 조직국장이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을 밀어내는 모습.



▲ 제17회 전장협 수련대회 '열린마당'이 97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삼육재활원에서 열렸다.



▲ 캠프화이어 도중 제17회 열린마당의 부제인 '바위처럼 살아 가자'는 내용에 불을 붙이는 모습.

노들야학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담보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장청과 장한협의 통합직전인 1993년 8월 8일 개교한 노들야학(교장 손복목)은 그동안 중·고·대검반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노들인의 밤, 체육대회 등의 행사와 함께 장애인의 날, 9월 1일 노동절 행사, 각종 규탄대회 등의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장협 시절의 노들야학의 모습을 들여다 본다.



▲ 94년 소풍



▲ 94년 모꼬지



▲ 94년 노들인의 밤



▲ 95년 노들인의 밤

◀ 95년 노들인의 밤

◀ 96년 노들인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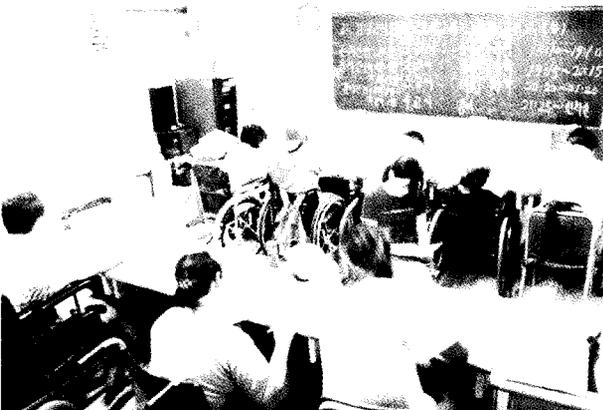
▶ 96년 모교지



◀ 97년 체육대회



▶ 97년 노들인의 밤



◀ 수업장면



▶ 수업장면

전국장애인가족협회 활동기록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수 한의원

원 장 이 수 정

서울·서대문구 북가좌2동 309-3
〈제일빌딩 3층〉
TEL: 305-0708
FAX: 308-9298
E-mail: crystal74@hanmail.net

장애인자동차는
www.lpgcar.com

장애인의 생활용품은
www.ablemall.co.kr로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문 인터넷 콘텐츠 개발/운영 회사

(주)코지라이프

문의: 02-464-8108

전국장애인가족협회 활동기록집

- 발행일 : 2002년 10월
 - 발행인 : 채종걸 · 이석형
 - 발행처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활동기록집 편찬위원회
 - 후원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 전화 : 02)457-0427
 - 전송 : 02)458-0429
 - 전자우편 : dpikorea@hotmail.com
-